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연구책임자: 조여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5년

연구책임자

조여울 (여성주의 저널 일다)

연구자

나루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정정훈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케이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이상 가나다 순

여성주의 저널 일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목차

I. 서론	18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8
2. 연구목적	19
3. 연구내용	19
4. 기대효과	20
II. 본론	21
0.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 및 차별모니터링	21
1) 현황	21
2) 인권실태조사 사례연구	21
(1) 국외 사례	21
(2) 국내 사례	22
3) 대안	23
(1)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위원회 설치	23
(2)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의 원칙 및 방법	23
① 인권신장을 위한 조사	
② 차별 개념 발굴	
③ 유형(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별, 영역별 실태조사	
④ 성적소수자 당사자적 접근 필수	
(3) 성적소수자에 대한 사회인식 조사	25
(4) 전문가 인권 모니터링 가동	25

1.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27
1-1. 성적소수자 관련 차별 법령	27
1-1-1. 동성애를 심신장애로 보는 규정	27
-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2	
1-1-2. 동성애를 AIDS등 수혈전파성 감염질환과 관련시키는 규정	29
- 군혈액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혈액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1-1-3.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	30
- 균형법 제92조	
1-1-4. 동성애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31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청소년 유해 및 사회윤리 침해 기준”	
1-2. 성폭력	33
1) 차별현황	33
(1) 동성간 성폭력이란?	33
(2) 현행법, 제도상 문제점	35
①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의 문제점	
②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문제점	
③수사기관에서의 제2차 인권침해	
④상당소와 보호시설과 관련한 문제점	
2) 사례	37
3) 정책대안	39
(1) 외국사례	39
①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 : 스웨덴, 호주	
②상담원, 수사담당자 교육 : 미국, 독일	
③상담기관 및 보호시설 : 캐나다, 독일, 미국	
(2) 정책대안	40
①기본방향	

②구체적 대안	
②-1.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 수정	
②-2. 피해자보호 및 수사기관에서의 2차 인권침해 예방	
②-3. 상담소와 보호시설	
1-3. 가정폭력	42
1) 차별현황	42
(1) 혈연가족에 의한 가정폭력	42
(2) 파트너 관계에서의 가정폭력	43
2) 사례	44
(1) 혈연가족에 의한 가정폭력 사례	44
(2) 파트너 관계에서의 가정폭력 사례	45
3) 정책대안	46
(1) 기본방향	46
(2) 구체적 대안	46
①가정폭력관련법에서의 가정폭력 구성요건 수정, 확대	
②피해자보호 및 수사기관에서의 2차 인권침해 예방	
③상담소와 보호시설	
④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통한 가정폭력 예방	
1-4. 성매매	49
1) 차별현황	49
2) 사례	50
3) 정책대안	52
(1) 기본방향	52
(2) 구체적 대안	53
①성매매 단속 확장, 다양한 성매매에 대한 처벌 방안 모색	

②성적소수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필요	
2. 차별환경 시정	56
2-1. 재화, 용역, 시설 이용 등에서의 차별	56
1) 실태 및 사례	56
(1) 시설사용 금지	56
(2) 참여 및 입장거부	56
(3) 통신 및 인터넷 접근권 제한	57
2) 차별 시정	58
(1) 성적소수자 차별금지법 도입	58
(2) 성적소수자 차별예방 캠페인	60
(3)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에 성적소수자 인권지침서 배포	61
2-2. 군대 복무상의 차별	61
1) 현황 및 차별 실태	61
(1) 현황	61
(2)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	62
2) 쟁점 정리	64
(1) 군대 내 동성애자의 적합성 문제	64
(2) 군대 내 동성간 성폭력 처벌 문제	65
3) 대안 정리	66
(1) 정책의 기본원칙	66
(2) 구체적 정책 대안	66
① 호모포비아 군의관이나 상관에 의한 자의적 처분 금지	
② 상담 및 구제 통로 마련	
③ 커밍아웃 후 정신병원 이송 및 가족 통보 금지 또는 제한 규정	
④ 군형법 92조 개정 및 남성간 성폭행에 대한 처벌 기준 개선	

2-3. 형사절차상에서의 차별	67
1) 차별 현황	67
2) 차별 사례	68
(1) 접근성 원천 봉쇄의 문제	68
(2) 성적소수자 차별적 언행	71
(3) 성폭력 적 환경 조성	71
(4) 성(별)정체성을 매개로 한 수사 과정상의 불이익	72
(5) 구금 시의 문제	73
(6) 게이에 대한 함정 수사	73
(7)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라니?	74
3) 정책 대안	75
(1)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	75
① 인권 침해 사안으로써의 문제화	
② 실태 조사	
③ 공정한 수사의 지평 확장에 대한 목적의식	
(2) 구체적 대안	76
① '검찰청 인권보호수사준칙' 의 적용 폭 확대	
②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의 적용 폭 확대	
③ '청문 감사관' 제도의 내실화	
④ 대검찰청 산하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 관행 개선위원회' 의 역할	
⑤ 인권 교육	
⑥ 인권 침해적 환경에 대한 감사 강화	
2-4. 상담기관 및 의료기관의 차별	79
1) 상담기관의 차별실태	79
(1) 동성애를 부정하는 상담	80
(2) 내담자에게 왜곡된 정보 전달	80
(3) 이성애가 '정상'이자 '순리'라고 설파	81

2) 의료기관의 차별실태	81
3) 차별 시정	82
(1) 상담원 양성과정에 성정체성 교육 필수 포함	82
(2) 의료기관에 차별시정요구	82
2-5. 매체 심의 규정상의 차별	83
1) 심의 기준상의 차별 현황	83
(1) <해피투게더> 의 사례	83
(2) 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에서 “동성애” 규정의 삭제와 청소년 유해성 및 음란성 판단과 관련한 기타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규정의 존재	84
①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표시제(엑스존 사건)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에서 “동성애” 규정 삭제	
② 청소년 유해성 및 음란성 판단과 관련한 매체별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규정의 존재	
2) 동성애 관련 심의기준 및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	86
(1) 동성애 관련 심의기준에 대한 평가	86
(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의무납본 대상에서 동성애 규정 삭제	86
(3)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기준	87
① 등급분류 보류제도 및 음란성 판단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규정 삭제	
2-6. 언론과 방송에서의 차별	89
1)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실태	89
2) 사례	90
(1) 허위 기사 작성	90
(2) 왜곡된 정보 전달	91
(3) 성적소수자 아웃팅	91
(4) 성적소수자의 존재 희화화	91

(5) 동성애의 유해성에 대해 찬반 논쟁	92
(6) 성적소수자 인권에 대한 무관심	92
(7) 차별을 정당화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	92
3) 차별 시정	93
(1) 언론 및 방송에 대한 성적소수자 인권 침해 관련 모니터링	93
(2) 언론사, 방송사 측에 차별시정권고	93
(3) 성적소수자 관련 언론보도 지침서 제작, 배포	93
(4)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언론인 교육 실시	93
3. 가족구성권	95
1) 현황 및 차별 실태	95
(1) 현황	95
(2)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	96
2) 쟁점 정리	98
(1) 현행 법리상의 쟁점	98
① 헌법 - 제 36조 1항의 해석 여부	
② 민법 - 혼인과 가족의 정의	
③ 입양법 - 양친이 될 자격	
(2) 동성혼 합법화 찬반 쟁점 ¹⁰²	
① 합법화 반대론자들의 주장	
② 합법화 찬성론자들의 주장	
③ 찬반 쟁점 비교 분석	
3) 외국의 동향과 동성 결혼 인정의 법률적 태도 분석	105
(1) 가족구성권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105
① 네덜란드	
② 독일	
③ 덴마크	
④ 미국	
⑤ 스웨덴	

⑥ 스위스	
⑦ 영국	
⑧ 캐나다	
⑨ 프랑스	
(2) 동성 결혼 인정의 법률적 태도 분석	111
① '가정적 동반자 Domestic Partnership' 와의 비교	
② '민간결합법 Civil Union'과의 비교	
③ '민간결합계약법 PACS' 와의 비교	
④ 결혼 개방과의 비교	
4) 정책적 대안	120
(1)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	120
① 가족구성권 확대의 필요성 인식	
② 차별 해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의지	
③ 장·단기적 안목의 친성적소수자적 정책 확산	
(2) 구체적 대안	122
① 성적소수자인권실태조사위원회 설치	
②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③ 기존 법률 내의 배우자 권리를 개별 법 조항에서 확대 해석	
④ 정서적, 경제적 동거 커플을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	
⑤ 결혼 제도의 완전 개방	
4. 성적소수자 대상 범죄와 인권침해	128
4-1. 혐오 범죄	128
1) 정의 및 실태	128
(1) 혐오 범죄의 정의	128
(2) 대 성적소수자 혐오 범죄 실태	129
2) 사례	131
(1)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	131
① 언어 폭력, 환경적 폭력, 물리적 폭력 등	

② 성폭력	
③ 언론이 유포하는 호모포비아	
(2)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	139
① 언어 폭력, 환경적 폭력, 물리적 폭력 등	
② 성폭력	
(3) 외국의 혐오 범죄 사례	141
3) 정책 대안	143
(1)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	143
① 정책 수립의 필요성	
② 인권 침해 범죄로써의 문제화	
③ 인권 침해 실태 파악	
(2) 외국 사례	144
① 프랑스 - 혐오 범죄 불법화 사례	
② 미국 하와이 - 혐오 범죄 가중처벌법 제정 사례	
③ 캐나다 토론토 - 형사절차 상의 성적소수자 인권 보호 조치 사례	
④ 미국 - 혐오 범죄 통계 작성을 통한 예방 강화 조치 사례	
(3) 구체적 대안	148
① 현행법에 대한 접근성 강화	
② 가중 처벌	
③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의 입법	
4.2. 아웃팅 관련 범죄	150
1) 아웃팅의 정의 및 현황	250
2) 관련 범죄 실태 및 사례	152
(1) 아웃팅 피해 사례	153
(2) 아웃팅을 관련 범죄 사례	154
① 아웃팅을 매개로 한 협박	
② 아웃팅을 매개로 한 폭력 및 성폭력	
3) 정책 대안	160

(1)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	160
① 인권 침해 범죄로써의 문제화	
② 아웃팅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대안	161
① 현행법에 대한 접근성 강화	
② 가중 처벌	
③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의 입법	
5. 교육	163
5-1. 제도교육	163
5-1-1. 교과서	164
1) 실태 및 문제점	164
(1) '왜곡된 성'으로 간주	164
(2) 성적소수자의 존재 찾아볼 수 없어	164
(3) 이성애적 가족질서를 기본으로 함	165
2) 대안	165
(1) 현행 교과서의 '간접차별' 시정 개편	165
(2) 성교육 교과서 개편 및 성교육 실시	166
(3) 교사지침서 개편 및 교사교육	166
(4) 인권 교과서 및 교과 신설	167
5-1-2. 교육환경	167
1) 실태 및 문제점	167
(1) 성적소수자를 괴롭히는 학교	167
(2) 상담창구의 부재	168
2) 대안	169
(1) 학교의 인권침해실태 조사 실시 및 시정조치	169

(2) 학교마다 성적소수자 인권교육을 의무화	169
(3) 미션스쿨에서의 성적소수자 차별금지	169
(4) 성적체성 관련 상담창구 마련	169
(5) 대안교육의 장 마련	170
5-2. 인권교육	171
1) 인권교육의 필요성	171
(1) 차별을 예방하는 방법	171
(2) 성적소수자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제공	171
(3)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교육 필요	172
2) 대안 및 방식	172
(1) 정부와 지자체의 차별예방 캠페인	172
(2) 공직자 및 공무원 교육	172
(3) 법조인과 검경 교육	172
(4) 대중교육 자료집 발간, 시민강좌 개설 등	173
6. 노동	174
6-1.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174
1) 실태	174
2) 대안	175
(1) 모집, 채용 단계에서의 차별실태 조사 및 시정조치	175
(2) 성적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적용	175
(3) 혐오범죄로 가중처벌	175
(4) 회사의 고용정책에서 성적소수자 차별예방 기준 마련	175
6-2. 직장 내 차별적 문화	175
1) 직장 내 차별실태	175

(1) 이성애적 질서 강요	176
(2) 동성애 비하 발언	176
(3) 아웃팅과 따돌림	176
2) 대안	177
(1) 직장 내 성적소수자 차별문화 실태 조사 및 시정조치	177
(2) 직장 내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177
(3) 성적소수자 차별금지 사규제정	177
6-3.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폭행	178
1) 실태 및 문제점	178
2) 대안	178
(1) 남녀고용평등법 및 남녀차별금지법의 확대적용	178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동성 간 성희롱 포함	178
(3) 성적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적용	178
(4) 혐오범죄로 가중처벌	178
6-4. 승진차별 및 해고	179
1) 실태 및 사례	179
2) 대안	180
(1) 성적소수자 고용평등을 위한 기구 필요	180
(2)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180
(3) 피해자 입증책임의 완화	181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181
(5) 차별 예방교육 제도화, 가이드라인 제시	182
7. 트랜스젠더(Transgender)	184
1) 트랜스젠더의 현황 및 차별실태	184

(1) 현황	184
(2)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	184
2)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호법리와 특례법(안) 검토	187
(1) 현행 법률에 의한 보호	187
(2) 헌법상의 보호원리	187
(3)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검토	188
① 성전환자 및 성전환수술의 정의	
② 성별 변경의 요건	
③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3) 성전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90
(1) 성전환에 관한 외국의 동향	190
(2) 독일	191
(3) 스웨덴, 네델란드	191
(4) 미국	191
(5) 영국	192
4) 정책 대안	192
(1)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 제정	192
(2) 성전환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금지 법제화	193
(3) 성전환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194
(4)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재검토	195
(5) 전문 의료기관의 지정 운영	196
8. HIV/AIDS 감염인의 인권	197
1) HIV/AIDS 감염인의 현황과 차별실태 인권	197
(1) 감염인 현황	197
(2) 차별 실태	197
(3) 인권의 문제	199
2) HIV/AIDS와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기준	200
(1) HIV/AIDS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Guidelines	200
(2) Recommendations on integrating human rights into HIV/AIDS respon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202
3)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문제점	203

(1) 차별과 편견을 강화하는 법	203
(2) 강제검진	203
(3) 취업제한	205
(4) 전파매개행위의 처벌	206
(5) 실명신고체계	207
(6)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추방정책	209
4) 정책 대안	209
(1) HIV/AIDS 예방 뿐 아니라 인권보장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	210
(2) 직장에서 수검자의 동의 없는 AIDS 검진 금지 및 감염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금지	210
(3) 진료협조 의무규정	211
(4) 전문 의료기관의 지정 및 체계 정비	212
(5)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 적극 실시	212
(6) 감염자 보호 및 복지 지원확대	213
(7) 동성애자 검진의 활성화를 위한 drop in center의 확대 설치 및 성적소수자 단체와의 협력, 지원	213
9. 시민사회 활성화	214
1)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의 실태	214
(1) 인력부족	214
(2) 재정난	214
(3) 아웃팅 위협과 활동의 제약	214
2) 문제점	215
(1) 단체설립 요건, 정부의 지원 요건	215
(2) 전문가의 기준	215
(3) 실명 요구 등의 관례	215
3) 대안	215
(1)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지원 및 양성	216
① 정부 각 부처에서 성적소수자 인권계획 수립	
② 성적소수자 인권과 복지 관련 예산책정	

③각 인권 및 복지재단에 성적소수자 분야 편성 권고	
(2) 상담소 및 쉼터 지원	216
①성적소수자 전문상담소 필요	
②성적소수자 청소년 쉼터 필요	
③전문가 및 단체 자격요건 바뀌어야	
④인권활동가 및 전문상담원 양성	
III. 결론	219
※ 참고문헌 및 사이트	221
※ 관련 용어 정리	224
부록 1 - 정책 제안	232
부록 2 - 참고 자료	267
부록 3 - 관련 국내외 문헌	278
부록 4 - 성명서 묶음	29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오랜 역사 속에서 성적소수자들은 그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이러한 침묵과 은폐의 역사는 ‘인권’이 화두가 된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계속되고 있다. 타 국가에서 성적소수자들을 명시적으로 억압하는 법과 제도가 있었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성적소수자들을 차별하고 처벌하는 등의 법령이나 제도는 적었다. 하지만 이는 성적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결과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선 성적소수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실태파악조차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성적소수자의 차별현황과 인권보장의 개념에 접근할 때, 기존 인권개념과 여타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현황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먼저 감안해야 한다.

드러나지 않은 존재의 삶에 대한 실태 및 차별현황을 분석하고 차별시정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선행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다룰 것이다. 또한 성적소수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성적소수자 인권보장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 실태를 분석하고, 차별시정을 위한 대안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이다. 성적소수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 받지 않고 살 수 있으려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시정 혹은 극복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성적소수자들에게 차별적인 현재의 법과 제도들을 분석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덧붙여 성적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밝히고, 정책방향과 기준을 제시한다.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차별현안 및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모든 영역에서 성적소수자들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2. 연구목적

구체적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성적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의 특수성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또한 성적소수자 인권침해 요인을 분석하고, 법과 제도적 차별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둘째, 한국 성적소수자들의 인권현안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셋째, 성적소수자 차별시정,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그 원칙과 방향을 모색한다.

넷째, 성적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과 법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전략을 모색한다.

3.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적소수자들이 겪는 인권침해와 차별실태를 각 영역별, 분야별로 살펴보고 차별 개선 및 인권보장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성적소수자 인권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성적소수자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내법과 제도들을 분석해 시정을 요구한다. 또한 기존 법과 제도에서 성적소수자를 구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 보완하도록 제시한다.

재화, 용역, 시설 등에서의 성적소수자 차별사례와 의료기관과 상담기관의 차별적인 관행,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군대 내 차별적인 문화 등 사회 각 영역에서의 성적소수자 차별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성적소수자 인권현안으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가족구성권’에 있어서 외국의 동향과 동성결혼을 둘러싼 법률적 태도를 분석하여 다양한 차원에서의 대안을 촉구하고,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와 아웃팅 관련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성적소수자의 노동권과 교육권의 개념을 세우고, 노동시장과 교육환경 속에서 성적소수자 차별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색해 본다.

이 연구는 주로 ‘동성애자’의 인권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트랜스젠더’와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류를 통해 포괄하기로 한다. 특히 트랜스젠더의 성별 호적정정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한 보고서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예방을 위해 ‘인권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역

설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방안에 대해 제시하는 한편,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진영의 성장과 인권활동가 양성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성적소수자 인권의 특수성 파악하고 성적소수자 인권보장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마련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모색한다. 성적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기존 법률 및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히고, 핵심 정책과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4. 기대효과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성적소수자의 인권 현황 및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그를 통해 성적소수자 인권에 접근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성적소수자 차별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셋째, 성적소수자 인권이 보장받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을 법과 제도적 대안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넷째, 성적소수자 차별시정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들을 마련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II. 본론

0.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 및 차별모니터링

1) 현황

우리 사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성적소수자들은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성적소수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경우, 사회에서 받게 될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기 십상이므로 대사회적인 ‘커밍아웃’을 한 성적소수자들은 극히 드물다. 성적소수자들이 커밍아웃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공통되지만, 한국의 경우 그 수가 손을 꼽는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 하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만연해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성적소수자들의 존재는 더욱 왜곡된다. “그들”(성적소수자들)이 이성애자 일반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일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이 만연하며, 이러한 선입견이 또한 차별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문제는 성적소수자들이 ‘드러나기’ 어려운 조건에서, 그에 대한 차별 역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적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성적소수자들의 인권현황을 알아보고, 점검해나가는 기초적인 자료를 만드는 일이다. 즉 성적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실태를 조사하고 밖으로 드러내어 공론화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성적소수자 인권지수를 측정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나갈 수 있다.

2) 인권실태조사 사례연구

(1) 국외 사례

덴마크는 1984년 동성애자 현황을 검토하고 차별 철폐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1988년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의거해, 다음 해인 1989년 세계 최초로 동성간 결합을 인정했다.

아이슬란드도 1994년 정부차원의 동성애자인권위원회를 설치했고, 동성애자의 결혼, 동성애자에 대한 범죄, 학교에서의 동성애자 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했다.

스웨덴 정부는 1978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시정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입법적 조치와 방법을 검토했다. 이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87년 '동성애적 공동생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1991년 '동성혼 심의회'라는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했으며, 동성결혼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심의를 맡겼다. 2002년엔 동성애자 커플과 이성애자 커플의 양육능력이 동일하다는 의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거해 동성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입안했다.

(2) 국내 사례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의 선례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한국 레즈비언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한국 레즈비언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박김수진)는 레즈비언인권연구소와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이하 끼리끼리)가 2004년 1월부터 2개월 간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20~30대 레즈비언 56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동성애자의 인권실태조사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됐다.

<한국 레즈비언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의 연구목적은 레즈비언들이 겪고 있는 차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었으며, 레즈비언 인권운동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조사는 레즈비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체성 구성과정과 동성교제 과정상의 특징, 차별 및 피해 경험 등 6개 항목, 총 5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최초로 레즈비언에 관한 양적인 자료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레즈비언의 현실상 모집단 선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20대와 30대 레즈비언에게 집중해 있고, 레즈비언 업소나 커뮤니티 출입을 꺼리는 레즈비언들은 제외되어 있다는 데 한계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레즈비언들은 스스로도 레즈비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동성과의 교제와 이별의 반복을 통해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수용하게 된다. 그리고 레즈비언 커뮤니티 활동과 관련 정보 접근을 통해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긍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단계로 이동한다.

그러나 사회의 동성애 혐오적 시선과, 이성애 중심주의, 가족주의, 정상 이데올로기 등은 레즈비언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방해요인이며,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박탈한다. 이 연구에서는 레즈비언들이 '알 권리'와 '말할 권리' 그리고 '구제를 받을 권리'의 차원에서 모두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문대상인 레즈비언 561명의 23%가 "레즈비언 정체성을 이유로 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피해 경험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상황, 조직 내 불이

익, 아웃팅 피해, 성폭력 피해, 금품갈취 피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를 입은 10명 중 9명은 타인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레즈비언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레즈비언연구소 연구활동가 박김수진씨는 “레즈비언 정체성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이 국가 및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사법기관, 언론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레즈비언 정체성 관련 전문 기관이 설립되고,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레즈비언 인권 침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조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3) 대안

(1)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위원회 설치

성적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때, 기본적으로 성적소수자의 인권실태가 어떤지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성적소수자의 인권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인권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인권실태조사위원회는 장·단기 목표를 가지고 성적소수자의 인권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다방면의 연구와 조사를 실시해서 보고하고, 국가는 이를 성적소수자 인권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단발성 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의 변화추이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활동의 결과가 보고되고, 성적소수자 인권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적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줄 수 있다.

(2)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의 원칙 및 방법

① 인권신장을 위한 조사

세계적으로 성적소수자들의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선 자신이 성적소수자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성적소수자인 자신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이 성적소수자들을 수치화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부분은 성적소수자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게 아니란 점이다.

성적소수자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성적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것이

며, 성적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차별을 겪는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따라서 많은 상담가들이나 연구가들이 성적소수자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전제한 채, 조사하고 연구해 온 것들(성적소수자의 성정체성 자체를 문제삼는 질문, 생물학적, 심리학적 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채 진행한 실험들)을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성적소수자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는 것은 성적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것 이자, 이들의 필요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사회에서 성적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구체화하고,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들을 명시하고 자료화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② 차별 개념 발굴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실체가 무엇 인지에 대해선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것은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적소수자들 스스로도 자신이 처한 위치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언어화시켜서' 이야기하기 어렵다. 차별개념이 없는 상황에선 차별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따라서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해도 제대로 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무엇이 차별인지에 대한 유형 발굴이 우선되어야 한다.

③ 유형(케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별, 영역별 실태조사

성적소수자들의 유형도 다양하다. 우리 사회에선 주로 동성애자, 특히 남성 동성애자를 주축으로 성적소수자들을 논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적소수자들은 각 유형에 따라 상당히 다른 환경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차별들도 각각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남성동성애자와 여성동성애자를 함께 '동성애자'로 묶어 차별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성적소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엔 반드시 유형별로 별도의 조사를 해야 한다. 더 상세하게는 연령별, 지역별 차이도 감안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④ 성적소수자 당사자적 접근 필수

앞서 말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성적소수자들은 존재를 드러내지 못한 채 살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성적소수자들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거의 막혀있고 볼 수 있다. 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성적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나 면접 등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성적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소수자 단체들이나 인권활동가들이 이 작업을 담당해야 한다.

(3) 성적소수자에 대한 사회인식 조사

성적소수자 뿐 아니라 국민들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식조사도 필요하다.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의 각 영역 별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각 영역에서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유형별로 매년 자료를 축적해 비교,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사연구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4) 전문가 인권 모니터링 가동

성적소수자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성적소수자가 겪는 차별의 실태 역시 드러나기 어렵다. 성적소수자들 스스로도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차별을 어떤 이름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40대 레즈비언 Y씨는 자신이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 애인과 함께 살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된 적이 있지만, 그것이 부당한 권리침해란 것을 알지 못했다. 고등학교 때 성교육 시간에 교사로부터 '동성애자=변태'라고 배운 청소년 동성애자는 그 상황이 억울하긴 했지만, 교사의 발언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적소수자의 차별실태연구는 성적소수자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나 면접 등을 통해서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실태조사는 당사자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전문가'(성적소수자 인권에 관한 전문가) 집단이 차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주요 언론에 나타난 성적소수자 비하, 차별적 보도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성적소수자 차별실태 모니터링은 먼저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사회 각 영역에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밝혀내고, 그 유형을 분석해 고발하는 작업을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 '개념'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 자료들은 해당 사안을 해결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차별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방법론도 제시해줄 수 있다.

1.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1-1. 성소수자 관련 차별 법령

1-1-1. 동성애를 심신장애로 보는 규정

-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2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전역 등의 기준을 정하면서 성적 동일성 장애 및 성적 선호장애라는 표현으로 동성애 기타 성적 지향을 성인행태장애로 분류하고 있으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은 신체검사 대상자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규정하면서 성주체성장애 및 성적 선호장애라는 표현으로 마찬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 “심신장애등급표”

83. 성인 행태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성적 동일성 장애, 성적 선호장애, 그 밖의 성인행태 장애)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10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성주체성장애, 성적 선호장애 등)

위 규정에서 ‘성 주체성 장애’란, 유전적 성과 행동이나 태도와 관련된 성 역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트랜스젠더를 가리키고, ‘성적선호장애’는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표현에 기초하여 군 내부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1974년 미국정신의학회가 정신질환에 대한 통계편람인 DSM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였고, 199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하는 국제질병분류 ICD-10에서 “성적 지향은 정신적 장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세계적 추세와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에도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질병분류에서 “성적 지향성 그 자체는 장애와 연관시킬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행하는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는 “동성애 또한 하나의 인간적인 삶인 동시에 애정의 형식이다”

(중학교용), “이제는 더 이상 동성애가 성도착증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등학교용)고 기술하고 있다.

영국공군은 그 동안 게이나 레즈비언의 장교채용을 거부해왔다. 2003년 1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인권법정은 “그 같은 결정은 동성애자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영국 공군은 기존의 채용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영국 공군의 대변인은 “영국 공군도 다른 군과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군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채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개개인의 성적 취향은 영국 공군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¹⁾

2002년의 보도에 의하면 대만의 경우 동성애자의 헌병대(Military Police Command) 임용을 막아온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장관은 입법원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성적 지향을 헌병대 지원자의 제한요소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며 그 이유로 헌병대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띄고 있다고 밝혔다.²⁾

이처럼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 간주하고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입대와 군대 내부의 인사 관련 규정에서 동성애 등을 인격장애 또는 행태장애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국가기구 내에 엄연히 잔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동성애 등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전역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군인사법시행규칙 및 별표1. 규정은 명백히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군대에서 퇴역할 것을 명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동성애 등 성적 지향의 차이를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로 규정하고 있는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역시 편견과 차별적 시각에 근거한 것이며,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가 동성애를 “질환”으로 분류하여야만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군대 내부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동성애자에 대한 시민권 보장의 차원에서 군입대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1) 팜뉴스 2004-08-30 13:02

2) <http://www.taipeitimes.com/news/2002/05/02/story/0000134218>

<http://www.planetout.com/pno/news/article.html?date=2002/05/02/4> 참고

1-1-2. 동성애를 AIDS등 수혈전파성 감염질환과 관련시키는 규정

- 군혈액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혈액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2조 및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채혈 시 헌혈기록카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각 별지 서식은 채혈 전에 헌혈자의 헌혈부작용을 방지하고 수혈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자에 대해 실시하는 문진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각 헌혈기록카드의 문진 사항에는 동일하게 동성(同性)과의 성 접촉여부에 대한 질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혈액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헌혈기록카드 중 문진사항 15항
최근 1년내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1. 약물(마약·각성제·스테로이드 등)을 주사하였다.
2. 불특정 이성(異性)과 성적 접촉을 가졌다.
3.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 받은 경우가 있다.
4. 한 번이라도 동성(同性)과의 성적 접촉이 있었다.
5. 해외체류나 여행 시 외국인과의 성적 접촉이 있었다.
6. 위 1. ~ 5.에 해당하는 사람과 한 번이라도 성적 접촉이 있었다.

혈액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헌혈기록카드 중 문진사항 15항
최근 1년 사이에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1. 약물(마약, 각성제, 스테로이드 등)을 주사했다.
2. 에이즈(AIDS)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 받은 경우가 있다.
3.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다.
4. 위 1-3항에 해당되는 사람과 한 번이라도 성접촉이 있었다.

위 혈액관리법시행규칙의 헌혈기록카드 문진 사항에 대하여는 2004. 8. 3.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자인권연대가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사건에 관한 결정에서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다'는 문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문진 사항을 동성간 성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HIV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되, 최소한 동성간 성접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남성에게만 한정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성접촉으로 인한 HIV 감염은 성접촉의 대상이 동성인지 이

성인지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HIV 감염자와 감염확률이 높은 방식의 성 접촉을 했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인 바, 성행위 특성 등의 이유로 남성 동성애자의 HIV 감염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나, 동성간 성접촉이 HIV 감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결정 이유로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문진 사항은 ① 동성애와 AIDS 발생사이의 인과관계를 왜곡하고 있고, ② 질문 내용의 부정확성으로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있으며, ③ 헌혈을 하려고 자원한 동성애자가 아웃팅(outing)당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최소한 동성간 성접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남성에게만 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여 이후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지만, 현재 헌혈과 문진사항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 문진 사항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일부 부정적인 사례를 일반화한 것으로, 안전한 성생활을 영위하여 실제로 HIV 감염확률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건강한 동성애자도 헌혈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낼 수 있고, 동성애자에게 헌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인 것처럼 간주되어 온 잘못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고 이는 일반인의 에이즈 예방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1-1-3.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 - 군형법 제92조

군형법은 ‘계간(鷄姦)’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동성간의 성행위를 추행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성의 유무에 대한 고려 없이 동성간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추행)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계간(鷄姦)이라는 용어의 사용 자체가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입법자의 차별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계간이라고 하여 합의에 의한 성행위까지를 “추행”과 같이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은 강제에 의한 성폭행과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같은 기준에서 처벌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군대 내에서 성(性)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군기문란사고’로 보는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된다. 남성 군인과 여군 또는 여군 사이의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반하여 남성 군인 사이의 성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은 군 사회의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남성 동성애자

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남성간의 성폭력을 오로지 '추행'으로만 보고 '강간'으로의 처벌을 인정하지 않는 법의 태도도 수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는 형법의 강간죄 규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음에 비추어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하고 유사 성교행위의 경우에도 강간죄의 적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³⁾ 기존 규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동성간 성행위를 군 기강 문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 유무, 성폭력의 수위에 따른 차등적 처벌과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 등의 효과를 고려하는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계간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강간과 추행을 별도로 규정하여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처벌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1-1-4. 동성애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청소년 유해 및 사회윤리 침해 기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납본의무를 규정하면서 시행령 별표1. 청소년 유해 및 사회윤리 침해기준에서 동성애를 변태성행위 등과 함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로서 규정하고 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납본)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등록후 처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2.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주간신문(과학·종교·교육분야를 제외한다)·잡지(정치·경제·과학·종교·교육분야를 제외한다)중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기간행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청소년 유해 및 사회윤리 침해 기준(제10조관련)

1. 남녀의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하여 성적 충동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

3)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문제는 이 보고서의 트랜스젠더 부분에서 다루었음.

2. 혼음, 동성애,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하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 4. 2.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2004. 4.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청소년 유해 및 사회윤리 침해기준”은 개정되기 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상의 개별 심의기준⁴⁾과 약간의 자구상의 차이만 있을 뿐 동성애를 혼음이나 근친상간 등과 함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차별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위 규정은 우선 “동성애”라는 표현을 바로 “동성간의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이성애”라는 표현이 바로 이성간의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라는 표현은 성적 지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동성애”라는 용어를 동성간 성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 일반의 편견과 차별을 이 법 규정이 확인하고 재생산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간의 성행위 그 자체는 성적 지향에 따른 성행위로서 음란한 행위가 아니며, 동성간의 성행위를

4) 별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제7조관련)

2. 개별 심의기준

-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

음란한 것으로 법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국가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찍는 행위를 함으로써,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것이다.

참고로 일반 간행물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출판및인쇄진흥법의 “간행물 유해성 세부심의기준”의 경우는 동성애를 음란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⁵⁾,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심의 기준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로 동성애를 제외하고 심의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동성애를 비정상적 행위로 간주하는 차별적인 인식을 법규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가 삭제된 것과 같은 이유로 삭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1-2. 성폭력

1) 차별현황

(1) 동성간 성폭력이란?

현재 성폭력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 중 ‘동성간 성폭력’은 따로 범주화되어 있지 않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성적, 환경적인 폭력 모두를 포괄하지만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이성애 중심적이고 생식기 중심적인 통념에 따라 성폭력 여부와 그 경중을 따지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성폭력은 대부분의 경우 ‘남성 가해자-여성피해자’의 구도 하에서 이야기되며,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성폭력의 경하고 중한 정도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 판단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경중도 달라진다.

5)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간행물 유해성 세부심의기준(제13조관련)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 가.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성행위 및 성기 애무장면을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것
 - 나.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가학성(加虐性)·피학성(被虐性)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행위와 근친상간(近親相姦)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 존엄성과 성윤리를 현저히 왜곡하는 것
 - 다. 강간(強姦), 윤간(輪姦) 등의 성범죄를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

이러한 성폭력의 판단 기준으로 인하여, 동성간 성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이성애자 간 성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보다 훨씬 강도가 낮다. 동성애자들 간 성폭력은 그 범죄의 악랄함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결코 '강간'의 죄목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강간의 개념이 생식기관 중심적으로, 이성애 중심적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성간 성폭력은 최대한 처벌수위를 높인다 할 지라도 현행법상에서 '강제추행' 정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폭력은 가해자, 피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발생 가능한 일이며, 결코 이성간에만 한정된 범죄가 아니다. 그리고 성폭력은 피해자의 관점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성폭력을 규정함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나 성기삽입여부는 결코 중요한 고려사항일 수 없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언행으로부터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성폭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성폭력을 '성을 매개로 한 모든 폭력' 이라고 규정할 수 있어야만 그간의 협소한 성폭력 개념의 틀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동성간 성폭력의 문제는 그야말로 '성폭력의 문제로서' 제기 될 수 있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동성간 성폭력에는 동성애자-동성애자간 성폭력, 동성애자-이성애자간 성폭력, 이성애자-이성애자간 성폭력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동성간 성폭력을 이해하고 논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 중 한 가지는, 동성간 성폭력을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성애자는 문란한 성행위를 일삼으며 자신의 성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따라서 동성간 성폭력은 당연히 그러한 동성애자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성애혐오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중 하나이다.

한편 동성애자-동성애자간 성폭력의 경우,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동성애자라는 점에 있어 공적인 경로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를 하려면 사건의 맥락 상 자신의 성정체성을 수사 관계자 및 재판부 관계자 등의 타인에게 알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가해자는 같은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를 수 있다.

설사 피해자가 굳은 의지를 갖고 고소를 하더라도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된다. 가해자, 피해자는 사건과 전혀 무관한 이유로, 즉 수사 담당자의 인권 감수성 부족과 동성애에 대한 편견 혹은 무지 등으로 인하여 멸시 당하거나 수치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 도중 가족에게 연락이 간다거

나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는 등가해자, 피해자의 성적체성이 노출되는 것도 큰 문제이다.

동성간 성폭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폭력 관련법들을 개정하고 수사담당자들을 교육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2) 현행법, 제도상 문제점

①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의 문제점

성폭력특별법은 그 제정 이후 10년의 시간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성폭력의 개념 및 범위를 수정·보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는 동성간 성폭력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되지 못했다. 여전히 여성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성폭력은 대 여성 폭력으로서만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남성에게 대한 여성의 성폭력 가해나 동성간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오히려 한계와 제약을 가질 뿐이다.

성폭력 범죄에서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구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차이는 생식기관 삽입의 유무이다. 즉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경우에는 강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인 것이다. 이와 같은 구별은 동성간 성폭력을 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게 한다. 한편 강간의 대상은 반드시 부녀이다(형법 제 297조). 이는 남성간 성폭력과 같이 남성이 성폭력의 피해자일 경우, 그 사건을 '강간'의 죄목으로 처리할 수 없게 한다. 강간의 처벌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고 반면 강제추행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을 볼 때(형법 제 297조, 형법 제 298조), 강간의 처벌이 훨씬 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식기관의 삽입이 없었다고 해서 동성간 성폭력의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이성간 성폭력의 피해자가 겪는 고통보다 덜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동성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은 이성애 중심적, 생식기관 중심적인 성폭력 정의를 유지·강화시키며, 동성간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키고 이를 근절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된다.

②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문제점

성폭력특별법은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심리의 비공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증거보전의 특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불

이익조치의 금지와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9.2.23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침'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신원보호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이것은 성폭력피해자가 사법절차에서 인권침해를 입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동성간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자신이 동성간 성폭력의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로 오인 받거나 혹은 동성애자임이 아웃팅될 것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피해자보호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성폭력특별법의 피해자보호 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③ 수사기관에서의 제2차 인권침해

성폭력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찰조사단계에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취급을 당하거나, 합의를 종용받기도 한다. 피해자들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욕을 듣거나 위협을 당하고 수사관의 고압적인 자세 때문에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심한 제약을 받거나, 필요한 증거를 외면당하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반복진술을 강요받거나 요구가 묵살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밀양 성폭행 사건에서는 울산 남부경찰서 외에 울산경찰청과 중·동·서부경찰서 4곳에 진술 녹화실이 있는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조사 당시 여경을 불러 달라는 피해 여중생의 말을 묵살하는가 하면 대질 과정에서도 가해자의 심한 욕설을 듣게 하는 등,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수사관행은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동성간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들이 이러한 2차 가해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 동성간 성폭력 범죄는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난다는 편견, 특히 그 가해자는 '변태'임이 분명한다는 편견, 그리고 동성애자에 대한 여러 차원의 무지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인권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수사과정 중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경찰을 대상으로 한 동성애 바로알기 교육이 필요하다.

④ 상담소와 보호시설과 관련한 문제점

성폭력특별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의료기관의 지정을 통하여 피해자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상담소는 ①성폭력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②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③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보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④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그리고 ⑤기타 성폭력 범죄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을 담당한다. 보호시설은 ①상담소의 업무, ②성폭력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③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지를 도우는 일 그리고 ④기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을 담당한다.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내놓는 통계자료나 사업 자료집 등 어디에서도 동성간 성폭력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동성간 성폭력에 대한 상담은 동성애자인권운동진영에서 도맡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만큼 동성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간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자신에 대하여 혐오적인 환경에 놓일 것이 두려워서 개소되어있는 일반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상담자들,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동성간 성폭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동성간 성폭력 사건을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독자적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2) 사례

①군대내 이성애자 남성-이성애자 남성 간 성폭력

A씨는 입대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고참으로부터 한 가지 명령을 들었다. 점호시간 이었는데 고참이 A씨와 A씨보다 한 다섯 달 정도 먼저 입대한 일병 고참을 일으켜 세워 “그 여장남자랑 사는 거 한 번 행동으로 재현해보라”고 한 것이다. A씨는 처음에는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고참들이랑 친해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시키는 대로 행했다. 시키는 대로 다 해야하는 줄 알았기에 그 당시에는 나쁜 감정조차 들지 않았다.

-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사례

②아웃팅을 매개로 한 이성애자 남성-동성애자 남성 간 성폭력

고등학교 2학년 B씨는 동아리 MT를 하게 되었다. 다른 동아리 사람들은 모두 잠을 자러 가고 선배와 단 둘이 남게 된 B씨는, 선배로부터 “너가 게이인 것은 알고 있다, 만약 나랑 자주지 않으면 너의 성적체성을 다 소문내겠다”라는 협박을 듣게 되었다. 선배는 나도 남자랑 한 번쯤 자보고 싶었다면서 계속 잠자리를 강요했다. B씨는 선배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결국 성폭력을 당하고 말았다.

-버디친구다کم (www.buddy79.com) 고민나눔방 게시판 사례

③아는 사람에 의한, 이성애자 여성-이성애자 여성 간 성폭력

B씨는 우연히 한 방에 엄마 친구분과 단 둘이 있게 되었다. 함께 TV를 보고 있던 중, B씨는 그 아주머니로부터 생리는 하느냐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계속 성적인 질문을 듣게 되었다. 그것은 그냥 엄마 친구로서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불쾌하게 느껴지는 질문들이었다. 그 아주머니는 브래지어를 하나고 물어보면서 B씨의 가슴을 만졌다. 싫은 내색을 했음에도 계속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가슴까지 만지자 결국 B씨가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정말 불쾌했고, 앞으로도 그 아주머니를 만날 일이 또 있을 텐데 다시는 그 아주머니를 보고 싶지 않다.

- 반성폭력네트워크, 「성폭력 이제 그만 2」 사례

④친목모임에서의 레즈비언-레즈비언 간 성폭력

가입한 친목모임에서 연 정기모임에 참석한 피해자는 만취한 한 여성으로부터 심한 스킨십을 당했다. 처음에는 다리를 손으로 감싸는 가 싶더니 나중에는 다리 사이에 까지 손을 집어넣고는 무력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수차례 “불쾌하니 멈추라”고 경고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경찰을 부르겠다”고까지 말했으나 만취한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다. 주변인들 중에는 이를 보고도 말리는 사람 하나 없었다.

- 반성폭력네트워크(kirikiri.org/network) 공개상담게시판 사례

⑤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레즈비언-레즈비언 간 성폭력

서울지검 형사5부 황인규 검사는 13일 동성연애 관계를 청산하려는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해온 박현순씨(39·여·서울 관악구 신림5동)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

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씨는 89년 9월 여성전용 헬스클럽에서 만나 동성연애를 해 온 공모씨(32)가 지난해부터 관계를 끊으려하자 같은해 6월 공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과도로 위협하고 『남편에게 동성연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황검사는 『죄질은 강간 또는 특수강간에 가까우나 동성연애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 1991년 09월 14일 (사회) 가십 22면 판 292자

3) 정책대안

(1) 외국사례

①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 : 스웨덴, 호주

스웨덴은 1984년 이미 형법에서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여 동성간의 성교뿐 아니라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도 강간의 유형에 포함시켰다. 또한 남성도 여성 가해자에 의한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성폭력 대상을 확장시켰다.

호주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진행된 각 사법관할지역의 형법개정 경향을 볼 때, ① 강간(rape)이라는 용어를 몇몇 지역에서 성폭행(sexual assault)로 대체하고 ②보다 광범위한 행위를 성폭행에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물건이나 음경 외에 다른 신체부위에 의한 질, 항문, 입의 관통이 강간이나 성폭행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③성범죄가 폭력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상해나 심각성의 수준에 따라 등급이 매개지며 ④성적 평판, 성력(sexual history), 보강증거(corroboration), 고소에 대한 규칙이 수정되었다. 미국 역시 새로운 증거규칙 : 피해자 성력(sexual history)의 증거 불인정 원칙을 두고 있다.

②상담원, 수사담당자 교육 : 미국, 독일

미국의 경우 법원 관계자들이 성폭력에 대한 편견 없는 인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 법원과 연방법원의 판사와 직원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피해자 쉼터 직원을 위한 교재를 발간하여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의료진 교육과 여러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③상담기관 및 보호시설 : 캐나다, 독일, 미국

해외의 상담기관 및 보호시설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며 피해자를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쉼터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전국 300여개의 쉼터와 250여 개의 긴급구조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부분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상담기관이나 보호시설에서의 성폭력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인식수준 자체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SANTA FE RAPE CRISIS CENTER (<http://www.sfrcc.org>)의 경우, 성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성폭력 사건을 접수받아 지원하면서 동시에 동성간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며 동성간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처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단체 중의 하나이다. 이 단체에서는 동성애혐오증 역시 성폭력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2) 정책대안

①기본방향

‘부녀’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강간의 구성원칙 등 성폭력 범주의 협소함과 그 한계에 대한 비판은 줄곧 있어왔다. 성폭력특별법의 새로운 방향 모색은 성폭력에 대한 협소한 정의를 지양하고 그 개념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성 생식기 삽입 중심의 성폭력 판단 기준을 지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동성간 성폭력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②구체적 대안

②-1.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 수정

현재 동성간 성폭력은 강제추행으로서만 처벌받을 수 있다. 그 대상을 ‘부녀’로만 한정짓고 생식기삽입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는 강간의 법정형과, 그 대상이 ‘사람’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꽤 큰 차이가 있다. 성폭력 객체의 범위의 확장과 의미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때 성폭력특별법상의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가 아닌 ‘사람’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강간과 강제추행과 기타 성범죄들을 나누는 생식기관 삽입 여부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생식기관 삽입 유무의 기준은 동성간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게 한다. 그리고 그런 기준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성폭력을 결국 남성 중심적 사고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수위가 반드시 남성성기의 삽입유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준은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무력화시키고 힘들게 할 뿐이다.

성폭력의 의미 확장과 더불어, 성폭력특별법에 새로운 성폭력범죄의 항목으로 동성간 성폭력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동성간 성폭력, 그 중에서도 특히 동성애자간 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동성간 성폭력을 다루는 특별조항은 꼭 필요하다. 현 성폭력 관련법에 수사 담당자 교육, 가해자 교육,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강화시켜 기술해야 하며, 그와 더불어 동성간 성폭력 항목을 덧붙여주어야 한다.

②-2. 피해자보호 및 수사기관에서의 2차 인권침해 예방

동성간 성폭력의 경우 언론 매체의 가십거리로 보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비공개심리가 가능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담당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사건노출과 피해자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실정이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동성간 성폭력의 경우 수사담당자들의 동성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 동성간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매뉴얼 제작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권고의 수준에 머무는 수사 준칙이나 규칙이 아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교육연수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②-3. 상담소와 보호시설

먼저 기존의 상담소와 보호시설 직원을 위한 동성간 성폭력 관련 체계화된 매뉴얼, 자료집 발간 등이 시급하다. 기존의 상담원이나 단체 활동가들도 협소한 성폭력 개념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거나 동성애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동성간 성폭력을 해결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재 동성간 성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기존의 성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동성간 성폭력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는, 동성간 성폭력 해결을 위한 독자적인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동성간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역시 법적, 의료적인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까지 여성부 등 행정기관에서 여성 폭력 피해자 센터만을 지원해 왔다면, 남성간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분리된 남성 센터 역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자적인 동성간 성폭력 상담소가 다른 기존의 상담소들과 충분히 연계 가능하도록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하며 그러한 네트워킹을 통해 성폭력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원칙과 체계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3. 가정폭력

1) 차별현황

(1) 혈연가족에 의한 가정폭력

대부분의 성적소수자들은 부모님이나 형제 등 혈연가족에게 커밍아웃 하는 일에 대하여 선불리 낙관하지 않는다. 되도록이면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커밍아웃을 하고 난 후 겪게 될 무시와 비난, 혐오, 감금, 언어적·물리적 폭력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폭력에 대한 예상과 그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숨기고 싶어도, 절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자의에 반하여 가족들에게 성정체성이 알려질 위험은 굉장히 크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들끼리 사적인 일상까지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그에 따라 서로 소지품을 훑쳐보는 일은 예사로 발생한다. 이처럼 구성원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쉽게 무시되는 가족 문화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아웃팅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조건으로써, 실제 성적소수자들은 가족에게 일기나 교제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받은 편지 등이 발각되면서 정체성이 탄로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친척이나 친구 등 주변인들이, 심한 동성애 혐오증과 아웃팅의 위험에 대한 무지로 인해 성정체성을 소문내고 알리기도 한다. 이때,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을 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성적소수자들은 곤경에 처하기 쉬우며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성적소수자들이 직접 커밍아웃을 한다고 해서 혈연가족으로부터 폭력을 겪을 위험성

이 딱히 적다고는 할 수 없다. 많지 않은 비율이기는 하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하는 성적소수자들이 있지만, 아무리 이들이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일이고 긴 시간 커밍아웃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가족구성원들의 동성애 혐오증이 강하고 성적소수자에 대한 무지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그들에 의해 자행되는 가정폭력에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성적소수자들 중에는 긴 시간동안의 준비 없이 폭탄처럼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하다. 가족들이 성정체성을 눈치 챌 것 같다는 불안, 결혼에 대한 압력,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등과 자신의 성정체성을 끝까지 숨겨야 한다는 결심 사이의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견디지 못하여 비밀을 폭로하는 식으로 커밍아웃을 해버리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성적소수자 스스로 여러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아웃팅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험상황에 처하게 된다. 성적소수자의 정체성이 혈연가족에게 알려져서 겪게 되는 가정폭력에는, 욕설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외출 금지 등 감금을 당하고 정신과 치료를 강제 받는 것,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는 것 등이 있다. 또 가족들이 당사자와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해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가정폭력은 그것이 가정의 울타리 밖으로 가시화되고 문제화되기 어렵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그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성적소수자가 겪는 가정폭력은, 그 성적소수자의 혈연가족들이 자신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성적소수자라는 점에 매우 충격을 받고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철저히 비밀로 부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드러나기 힘든 부분이다. 혹 이웃들이나 친척들이 알게 되어도 성적소수자의 입장에 서주지 않으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감금을 당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강요받는 상황 등 극심한 구속을 받는 상황에 처한 성적소수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2) 파트너 관계에서의 가정폭력

이성애자 파트너 가족에서처럼 성적소수자 파트너 가족 안에서도 가정폭력은 존재한다. 파트너 관계에서의 가정폭력에는 파트너의 다른 교제관계에 대한 의심, 감금, 방치, 언어적·물리적 폭력, 강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보통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폭력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상대를 떠나 가정을 잃고 겪을 생존문제나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가해사실을 용서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피해자는 폭력 앞에 끊임없이 무력화되고 가해자의 말에 순응하게 된다. 그러면서 폭

력은 점점 강화되고 일상화된다. 혹여 가정폭력 상황을 주변인들이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오래 있을 수 있는 일' 혹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사적인 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폭력은 계속 방치된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가해자를 납득해 보기 위해 애쓰던 가정폭력 피해자의 분노와 상처는 늘어가고, 피해자는 폭력의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이 때 법적·제도적 지원은 피해자가 상황을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해나가며 궁극적으로는 상처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가정폭력 관련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그 처벌과 방지 노력을 강화한 이유는 가정폭력이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특수성 때문이다.

성적소수자 파트너간 가정폭력도 이러한 특수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 또한 성적소수자 가족은 위와 같은 특수성과 더불어 피해자가 겪는 고립의 정도가 특히 심각하다. 동성간 결혼권이 없음은 물론이고 파트너 관계상의 법적 의무 및 권리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일뿐더러,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도 친지나 이웃 등 주변인들에게 서로의 관계를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가정폭력은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더욱 그 정도가 심각해진다. 아무에게도 그러한 폭력의 경험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심지어 상담 기회마저도 쉽게 가질 수 없는 피해자는 완벽하게 고립된 상황에 있고, 그 와중에도 폭력은 계속 발생한다. 피해자가 아무리 그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이미 가해자의 폭력은 일상화되어 피해자를 옴아매고 있다. 가해자와 헤어지는 일은, 앞으로 성적소수자인 자신이 혼자 헤쳐 나가야 할 앞날이 막막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아직 남아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어려울 수 있다.

성적소수자 파트너 관계에서의 가정폭력은 법적·제도적 지원 없이는 구제받기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적소수자 파트너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 관련 법 어디에서도 성적소수자가 가정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성적소수자 가족에서 일어난 가정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성적소수자의 가족구성권 자체를 지금 당장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성적소수자 파트너 간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처벌하는 지원체계는 만들어져야 한다.

2) 사례

(1) 혈연가족에 의한 가정폭력 사례

① 딸의 애인 살해

김모씨 부부는 최근 “우리 딸이 동성애자라며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최 모씨(60·여)를 상대로 1억1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김씨 부부의 딸(당시 48세)이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집에 찾아와 자신의 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함께 살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딸에게서 떨어져라”며 효자손 등으로 1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징역 3년을 선고받 았다고 한다.

- 동아일보, 2002년 03월 11일 (사회) 가십 31면 05판 275자

②혈연가족에 의한 아웃팅 협박

피해자가 레즈비언임을 혈연 가족 중 작은 언니가 알게 됨. 작은 언니는 피해자에게 “현재 맺고 있는 동성과의 교제 관계를 그만 두라”고 요구하면서,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다른 혈연 가족 모두에게 피해자가 레즈비언임을 알리겠다고 협박.

- 성적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사례수집 (내부자료)

③혈연가족에 의한 감금

피해자가 레즈비언임을 알게 된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의 교제를 막기 위한 수단 으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에 가두고, 외출을 방지하기 위해 창문과 방문을 나무판자 와 못을 이용해 열 수 없도록 조치함. 피해자는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방에 감금되 어, 방문 아래에 작게 뚫어 놓은 구멍을 통해 물과 음식을 어머니로부터 받아 연명 함.

- 성적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사례수집 (내부자료)

④혈연가족에 의한 정신과 치료 강요

피해자는 레즈비언임을 혈연 가족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으나, 대학교 남자 동기 에 의해 그 사실은 혈연 가족에게 알려 짐.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를 종합병원 신경 정신과에 강제 입원을 시키고, “이성애자로 만들기” 위한 “치료”에 돌입. 이 과정에 서 피해자는 극심한 심리·정서적 고통을 당함.

- 성적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사례수집 (내부자료)

(2) 파트너 관계에서의 가정폭력 사례

①의처증과 폭력

A씨는 2년 정도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A씨와 함께 사는 사람은 처음 같이 살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A씨를 때린다.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이유다. 술을 적게 마시고 오라고 하면, 술을 적게 마시고 오라고 했다고 A씨를 때리고, A씨가 잠시라도 외출을 하면, A씨가 외도를 하는 것 같으면서 때린다. 때리는 강도는 매우 높아서 남아있는 집기가 없을 정도다. 칼을 가지고 와서 죽이겠다고 바닥과 집기를 내려치고, 굶어대는 그 사람을 A씨는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다. 그 다음 날 아침이면, 그사람은 A씨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면서 사정을 한다.

- 끼리끼리 상담 사례

②레즈비언 파트너 간 폭력

서울 동부경찰서는 14일 자신과 사귀던 동성 애인이 변심한 데 격분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박아무개(23·여·전북 전주)씨와 이에 맞서 싸운 최아무개(3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3일 아침 6시30분께 최씨 집에 찾아가간 박씨는 최씨가 다른 여자와 알몸으로 누워 있는 것에 흥분해 화분을 집어던져 창문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최씨에게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 한겨레, 1996년 08월 15일 '레즈비언들의 사랑 싸움'

3) 정책대안

(1) 기본방향

성적소수자 파트너 관계에서의 가정폭력은 법적·제도적 지원 없이는 구제 받기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적소수자 파트너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 관련 법 어디에서도 성적소수자가 가정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성적소수자 가족에서 일어난 가정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성적소수자의 가족구성권 자체를 지금 당장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성적소수자 파트너 간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처벌하는 지원체계는 만들어져야 한다.

(2) 구체적 대안

①가정폭력관련법에서의 가정폭력 구성요건 수정, 확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에서는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배우자와 부모자녀관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 2호).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이와 같은 규정은 가정의 범위를 이성 배우자와 부모자녀 관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범위 규정으로 인해 이미 법 자체가 여러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규정에 따르면 친형제자매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그에 의한 폭력은 법에 의한 가정폭력이 되지 않는 등, 여전히 가정의 범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에 의해, 성적소수자 파트너의 경우 사실혼조차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의미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적소수자 파트너십을 최소한으로나마 인정을 해야 한다. 그들의 파트너 관계를 은폐하고 고립시키는 것은, 성적소수자가 자신의 파트너로부터 당한 폭력을 고소할 때 기존 가정폭력 관련법들이 보장하는 가중처벌 등의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성적소수자 파트너간 폭력을 여전히 가정폭력의 사각지대로 남겨두는 것이다. 성적소수자의 결혼권, 입양권 등 가족구성권을 지금 당장 보장하지 못한다면 할지라도, 성적소수자 파트너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은 시급하게 필요하다.

미국의 Domestic violence laws를 보면,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을 개정함으로써 접근 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명령이 성적소수자 파트너 가정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Delaware, Montana 그리고 South Carolina 3개 주에서 실행하고 있는 보호명령만이 동성 커플 관계에 적용할 수 없을 뿐이다. 연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의 경우에는 그 법이 매우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남성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등 성적소수자 파트너 가정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례법에서 가족구성원의 정의가 달라지고 가정에 대한 의미를 확장시키지 않는 한, 성적소수자 가정이 계속해서 사실혼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며 비가시화 되는 한, 그 내부의 폭력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다.

②피해자보호 및 수사기관에서의 2차 인권침해 예방

신고할 곳이 없다는 점과 더불어 신고하여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커밍아웃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성적소수자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고 주저하게끔 하는 커다란 요인 중 하나이다. 성적소수자 파트너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성정체성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담당자가 동성애 혐오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 캠페인과 매뉴얼 제작 또는 사건담당자들을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 기획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사담당자들은 동거 중인 성적소수자 사이의 폭력사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는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에 준하되 성적소수자의 정체성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수사해야 할 것이다.

③상담소와 보호시설

먼저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이성애자간 파트너 가정 안에서의 사건들만 지원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서 성적소수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을 마련해 놓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의 상담소와 보호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들을 위한 체계화된 매뉴얼, 자료집 발간 등이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나아가서는 성적소수자 관련 가정폭력만을 전문으로 상담·지원하는 상담소, HOTLINE 개설들이 꼭 필요하다. 성적소수자가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들을 위한 독자적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성적소수자 관련 가정폭력만을 독자적으로 다루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생겨도 피해자들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아웃팅 염려로 인하여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피해자들이 가지는 성정체성으로 인한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관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홍보, 캠페인을

별이는 등의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신의 상처 치유를 위하여 의료 지원체계도 갖추어져 한다. 또한 여성 피해자들을 위한 여성 쉼터, 남성 피해자들을 위한 남성쉼터가 각각 마련되어야 하며, 혈연가족의 폭력으로 인해 가출을 하거나 갈 곳이 없어진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는 반드시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④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통한 가정폭력 예방

가정폭력은 처벌보다 예방이 더욱 절실한 범죄 중 하나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가족을 신고하고 처벌받게 한다는 것에 큰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기에, 폭력이 은폐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 신고 후 처벌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는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과 캠페인의 필요성은, 이성애자 파트너 가족에서나 성적소수자 파트너 가족에서나 마찬가지이다. 성적소수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커플 간 폭력 방지를 위한 여러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성적소수자가 혈연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했거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아웃팅을 당했을 때, 이들이 가정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동성애 혐오증을 줄여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딸, 아들, 형제자매가 성적소수자일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나의 이웃이 성적소수자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외국에는 성적소수자들의 부모 모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국사회에서도 인식 변화를 꾀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분명히 가정폭력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14. 성매매

1) 차별현황

지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별법(이하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로 인해,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 현재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성매매의 구조와 형태는 갈수록 복잡하게 변하며 성산업은 더욱 성장하고 있기에, 성매매 집결지역 밖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에 대한 예방 및 처벌

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성적소수자 성매매 역시 성매매 집결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위 전통적인 성매매 방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성매매라고 할 수 있다. 성적소수자 관련 성매매에는 청소년 성적소수자 성매매, 찜질방 등 남성 동성애자들이 즐겨 찾는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기존의 성매매와 거의 똑같은 착취와 감금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트랜스젠더 성매매 등이 있을 수 있다.

트랜스젠더 성매매는 트랜스젠더가 포주의 착취 하에 놓이고 끊임없는 감시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한편 자신을 착취하는 포주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포주로부터 심리적 안정을 얻는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의 성매매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바(Bar)나 업소에서 쇼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트랜스젠더들이 2차·3차를 강요받는 형태로 대부분의 트랜스젠더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청소년 성적소수자 성매매 역시 심각하다. 업소나 중간 매개자 없이 인터넷 성적소수자 커뮤니티나 채팅을 통하여 혹은 성적소수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에서 당사자들 간의 직접적 '거래'의 형태를 띠게 되는 원조 교제는 청소년 성적소수자와 이들의 성을 사는 성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를 전통적인 성매매로부터 구별 짓게 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는 당사자들이 그 행위를 성매매로 의미화하지 않으면서 부담을 덜 수 있게 하지만 결국 성매매의 성격을 띤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듯 직접적 거래 형태의 성매매는 청소년 성적소수자들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읽힘으로써 청소년 성적소수자들을 향한 비난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 성적소수자 성매매를 유흥비를 쉽게 벌기 위한 영악한 아이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보기에, 청소년 성적소수자들이 처한 환경이 너무 열악하며 이들에게 열려 있는 사회적·문화적 선택항들이 너무나 적다. 한국사회는 매우 청소년들의 문화가 적은데, 청소년 성적소수자들의 경우에는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자신 내부의 동성애 혐오증으로 인한 자괴감, 자학만으로도 괴로운 시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성적소수자 성매매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2) 사례

① 게이 성매매

서울지검 형사3부 이상용 검사는 최근 「윤락행위」를 한 게이 박모씨(29)와 박씨의

김모씨(26)를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이태원에서 「행위」를 마친 뒤 『2만원만 받아라』 『3만원을 내놔라』는 등 「화대」 시비를 벌이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이태원을 무대로 그동안 상습적으로 이같은 「윤락 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여자 차림이었고 화대까지 받기로 한 점으로 미뤄 외형상 분명히 윤락행위에 해당되지만 성이 같은 남자끼리의 행위라는 점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해하고 있다.

- 국민일보, 1996년 07월 12일 '윤락행위 처벌 가능할까/남자와 상습 매춘 20대 적발'

②동성간 성매매 처벌 불가

서울지검 형사3부는 12일 여장을 한 게이를 진짜 여자로 오인해 택시안으로 유인,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택시기사 김모씨(26)와 게이 박모씨(29)에 대해 『두 사람의 행위를 성적 접촉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윤락행위방지법은 돈을 받고 하는 성행위를 윤락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때의 성행위는 남녀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동성간의 성행위를 윤락행위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1996년 07월 13일 '게이를 진짜 여자로 오인한 성행위에 무혐의'

③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업소

성동서 30대 구속. 서울 성동경찰서는 19일 안승길(30·주점업·서울 구로구 가리봉 1동)씨에 대해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신당5동에 「일방통행」이란 주점을 차려 놓고 김모군(17·전북고3) 등 고교생 3명이 낀 10~20대 남자접대부 14명을 고용,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남녀손님을 가리지 않고 김군 등에게 접대부 노릇을 하게 하는 이른바 「동성애자-호스트바」를 운영했다.

- 세계일보, 1997년 08월 20일 '「호모-호스트바」 적발/10대 남자접대부 고용 윤락행위'

④전화방을 통한 원조교제

대전지검 형사2부 조영태(曹泳泰)검사는 10일 남자 고교생에게 돈을 주고 동성애 관

계를 가진 '동성 원조교제' 사범 박모(62·농장운영)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동성연애자의 전화 동아리방에서 알게 된 송모(15·고1)군을 경남 함안군 월곡면 자신의 농장관리 사무실로 불러내 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동성원조교제 사범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군은 이날 호기심으로 전화방을 처음 방문한 뒤 박씨와 연결돼 "용돈을 주겠다"는 꼬임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송군이 성관계후 정신적 충격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다"며 "청소년보호법은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동성애 등 유사 성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 2000년 04월 11일 '60대 동성애 원조교제 첫 적발'

⑤인터넷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자 중고생에게 접근, 돈을 주고 동성간 성관계를 가진 성인남자가 현직검사의 제보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장 재직 시절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했던 서울고검 강지원(姜智遠·53) 검사는 지난 8일 동성애 성매수 피해자 P(15)군의 어머니로부터 상담요청전화를 받았다. 강 검사는 P군이 가출후 동성애 성매수범의 뒷에 걸린 사실을 들은 후 지난 10일 제보, 경찰은 홍모(41)씨를 용의자로 검거했다.

- 한국일보, 2002년 04월 15일 "중고생 동성애성매수 강지원검사 제보 검거"

⑥온라인 커뮤니티와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

서울지검 소년부(박태석 부장검사)는 24일 일부 동성애자들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남자 청소년을 유혹해 이른바 원조교제를 벌이고 있다는 혐의를 포착,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근 동성애 동호회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만난 중학생 최모(14)군에게 신발과 옷을 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시킨 퀵서비스업 종사자 김모씨(43)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남자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성인 남성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최근 외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의 통화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동성애자의 청소년 성매매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문화일보, 2002년 07월 24일 '인터넷 동성애자 수사/채팅으로 중학생 유혹 성매매 40代男 구속'

3) 정책대안

(1) 기본방향

성적소수자 성매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성적소수자들이 성매매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차별적 환경들을 시정하고 성적소수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성매매된 성적소수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호와 재활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적소수자들은 성적으로 과잉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즐길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성적소수자 성매매는 비정상적인 성적소수자들의 문화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등 성적소수자에 의한 편견과 혐오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적소수자 성매매가 유지될 수밖에 없게끔 하는 조건들이 현재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잊고, 성급하고 단순하게 성적소수자 성매매를 이해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아서 안 된다. 이는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적소수자 커뮤니티가 비가시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자신과 같은 성적소수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성적소수자에게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는 창구가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트랜스젠더의 경우, 트랜스젠더 업소에 드나드는 손님들은 적어도 트랜스젠더와 만나고자 하는 혐오감이 적은 사람들이므로 그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게 될 수도 있다는 꿈을 갖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성적소수자의 경우 쉼 곳이 전혀 없고 역할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성인 성적소수자와 만날 가능성도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통해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2) 구체적 대안

① 성매매 단속 확장, 다양한 성매매에 대한 처벌 방안 모색

현재 성매매 특별법과 방지법은 성매매 구성요건 중 유사성교행위를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나 성매매가 동성간 이루어졌을 때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성매매 단속은 대개 성매매집결지역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적소수자 성매매라든가 포주의 강제가 없어 보이는 다른 형태의 성적소수자 성매매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성적소수자의 존재 자체가 비가시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성적소수자 성매매는 다른 성매매보다도 더욱

음성화 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단속과 법률 적용이 없는 것은 성적소수자 성매매를 계속 재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성매매 특별법과 성매매 방지법을 적용하고 성매매를 단속할 때 그 범위가 확장되어 성적소수자 성매매도 처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성매매 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업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은 피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의료지원 등 다양한 보호정책과 재활정책을 제공한다는 피해자 지원조항들이 성적소수자 성매매의 피해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자들이나 반(反)성매매 단체 활동가들이 성적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된다. 성매매 단속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의 성매매까지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② 성적소수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필요

성적소수자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를 단속하고 벌하는 것만으로는 성적소수자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다.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듯, 성적소수자와 관련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적소수자 지위 향상 프로젝트들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성적소수자 지위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적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이 있다. 이를테면 미국 앨라배마주의 버밍햄에서 경찰과 시민단체가 함께 펼친 동성애 혐오범죄 예방 및 신고촉구 캠페인과 같이 버스에 배너 광고로 성적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문구를 넣는 등의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성적소수자 인권운동단체들이 겪고 있는 재정난, 인력난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비로소 성적소수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룹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적소수자들이 사회의 혐오적인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재화시킨 동성애 혐오증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성적소수자들이 성정체성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이나 강좌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여성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에서 개최한 <여성성소수자 자긍심갖기 프로그램 -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가 좋은 예이다. 성적소수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긍정하며 구체적인 삶의 방향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청소년 성적소수자들 역시 또래의 친구들이나 성인 성적소수자들을 만나 다양한 고

민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여러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들의 주최로 열리고 있는 <청소년 인권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은 청소년 성적소수자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공교육 차원에서도 청소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교과내용 개정, 상담, 청소년 성적소수자를 위한 동아리나 클럽활동 형성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고 성적소수자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때, 성적소수자가 직업을 선택하고 같은 성적소수자를 만나기에도 용이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대다수의 트랜스젠더나 청소년 성적소수자가 성매매로 유입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2. 차별환경 시정

2-1. 재화, 용역, 시설 이용 등에서의 차별

1) 실태 및 사례

(1) 시설사용 금지

성적소수자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은 성적소수자 인권을 위한 행사 장소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크다. '성적소수자' 관련 행사란 이유만으로 장소 사용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1. 연세대 퀴어영화제 장소대여 거부

1997년 제1회 퀴어영화제가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연세대학교 측이 장소 사용을 거부, 전원을 꺼버리는 사태가 일어났다.

사례2.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프로그램 강의실 사용 거부

2004년 이화여대 레즈비언인권단체 '변태소녀하늘을날다'는 '여성 성적소수자 자긍심 갖기 프로그램'을 학내에서 진행하려 했으나, 학교 측이 강의실 사용을 거부했다. '변태소녀하늘을날다'는 학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했다.

(2) 참여 및 입장거부

성적소수자는 행사 및 모임 등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당하기도 한다. '동성애자'란 것이 알려진 연예인 홍석천씨의 경우 국회의원들로부터 국회 출입을 거부당했고, 레즈비언 인권운동가인 J씨의 경우 모 여성단체가 개설한 여성활동가를 위한 강좌프로그램 참여를 거부당했다. 국회와 여성단체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성적소수자에 대해 얼마나 큰 혐오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사례3. 국회, 홍석천씨 국정감사장 입장 거부

2000년 11월 국회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모 의원은 □□동성애자는 정신과 치료대상□□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홍석천씨는 참고인 출석 요청으로 국정감사장을 찾았을 때, 몇몇 국회의원들이 □□동성애자가 국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해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

사례4. 여성성적소수자 인권단체 활동가의 강좌신청 거부

2004년 3월 부산광역시여성센터는 여성단체 교육강좌를 개설하면서, 여성성적소수자 단체인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활동가의 수강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했고, 부산광역시여성센터 측은 여성성적소수자 인권단체는 여성단체가 아니며, 이 단체의 활동이 '남녀평등'과 무관하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부산광역시여성센터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을 권고했으며, 부산광역시시장에게는 부산광역시여성센터의 감독기관으로서 유사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3) 통신 및 인터넷 접근권 제한

동성애를 '음란'으로 규정하던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많은 '차단 소프트웨어'가 성적소수자 관련 사이트를 차단시켰다.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의 항의와 소송 등으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차단 소프트웨어의 차단 목록에 동성애 관련 사이트들이 포함돼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작동되는 PC방에서는 이용자가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 사이트에도 접속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적소수자들은 누구보다 정체체성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며, 많은 경우 인터넷이나 통신망을 통해 다른 성적소수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은 중요하다. 그런데 통신 및 인터넷에서 성적소수자들의 정보를 차단시키고, 이들의 커뮤니티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례5. 성적소수자 관련 사이트를 '유해사이트'로 차단

통신회사의 '인터넷 유해정보 사이트 차단 서비스'들도 동성애 관련 사이트들을 차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에 따라 전국 모든 PC방과 공공장소 등에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깔게 하고 있는데, 이들 소프트웨어의 상당수가 성적소수자 관련 사이트를 차단시킨다.

6) 국민일보, 2000년 11월 3일, "홍석천, 참고인자격 출석무산"

7)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사이트에 대해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을 막는 소프트웨어.

사례6. 포털 사이트, 동성애 관련 용어 '금칙어'로 선정

포털 사이트 등 통신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동성애 관련 용어들을 '금칙어'로 규정⁸⁾해 검색이 되지 못하게 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용어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피해가 크다.

사례7. 정보통신회사, 동성애자 채팅서비스 개설요청 거절

KTF등 정보통신회사들은 서비스 기능을 확장시켜 핸드폰을 통해 채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성애자 H씨는 각 정보통신회사 측에 '동성애자'들을 위한 채팅서비스를 개설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2) 차별 시정

(1) 성적소수자 차별금지법 도입

성적소수자에 대한 재화, 용역, 시설에서의 차별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은 상당히 미흡하다. 현재로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하는 것밖에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처벌조항도 없는데다가 권고만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며, 인권단체가 아닌 개개인이 차별 진정을 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대부분 이와 같은 차별행위는 그저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8) "인터넷 서비스 업체 다음(<http://www.daum.net>)이 지난 14일부터 실시한 검색제한 조치 중 금칙 단어 설정에 동성애자를 나타내는 용어 "이반"이 포함되었다. 현재 다음 카페 메인 페이지의 검색창에 검색어로 "이반"을 넣으면 "해당 단어로는 검색하실 수 없습니다. 검색하신 단어는 '금칙어'입니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유해 단어는 '금칙어'로 분류되며 검색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와 "이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다. (중략) 금칙 단어(금칙어)는 필터링의 일종으로 특정한 단어가 포함된 자료/동호회의 검색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다. 이번 다음 측의 조치는 해당 단어가 들어간 사이트의 개설 금지와 함께 별도 관리도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 업체들은 주로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욕설/음란물/성인물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있는데, 단지 동성애자를 달리 부르는 "이반"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은 동성애를 음란한 것으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버디, 2002년5월27일, "인터넷 서비스 업체 '이반' 금칙어 설정")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강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차별은 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선 별도의 '성적소수자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이 필요하다. 이 때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이를 통해 사회의 인권의식을 고양시키려는 의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가중처벌', '손해 배상'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2004년 12월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프랑스에선 동성애 혐오 표현이나 성차별주의적 발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⁹⁾ 기존의 법적 장치가 성적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폭언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¹⁰⁾ 영국에서도 노래가사나 언론에서 동성애 혐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검찰과 경찰의 합동조사가 시작됐다¹¹⁾는 기사가 보도됐다.

9) “프랑스에서 앞으로 동성애 혐오 표현이나 성차별주의 발언을 하는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형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프랑스 하원은 8일 동성애자에 대한 취업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성차별을 불법화하는 내용의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이달 중 상원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만담가들의 여성 비하나 익살 표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안에 따르면 성차별주의와 여성 증오심을 고취하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표현이나 글을 쓸 경우 1년 이상의 형이나 최하 3만1000유로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EU) 내에서 가장 강력한 성차별주의와 동성애 혐오 금지법안이 될 이 법안은 그동안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주도해온 작품이다.” (세계일보, 2004년 12월 11일, “佛 ‘동성애 차별’ 처벌 논란”)

10) “(생략) 이 법안은 성적체성과 성적 경향성에 있어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에 가해지는 폭력과 폭언에 맞서 기존 법적 장치가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제안된 것이다. 법 제안 설명서에 의하면, '시민연대계약인 팩스(PACS)가 법으로 채택된 이래 성 소수자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그들에 대한 신체 폭력과 언어 폭력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소위 다수의 정상인들, 즉 가부장 사회 속에서 정상으로 인정되는 정체성과 성적 경향성을 가진 이들은 성소수자를 비정상적으로 매도하며 그들에게 공공연히 폭력과 폭언을 행사해 왔으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다는 것이다.

(중략) 그런데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동성애자에 비해 더 열악한 사회상황에 처해 있다. 사실 동성애자들은 2001년 11월 16일 법규정들 덕분에 직업 공간 속에서나 주거 확보에 있어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성별이나 성적 경향성으로 차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성적체성” 때문에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일다, 2003년 5월 8일, “호모포비아는 사회적 재앙-프랑스 녹색당, 호모포비아에 맞설 법안제출”, www.assemblee-nationale.fr 참고)

11) “노랫말과 언론을 통한 동성애 혐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합동조사가 시작됐다. 동성애

미국 뉴욕주 상원은 2002년 12월 17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성적 지향 차별 금지법(SONDA)¹²⁾를 의결했다. SONDA는 '성적 선호'를 이유로 한 학대와 괴롭힘은 물론, 고용과 주거, 교육, 공공서비스 등에 관한 차별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 1997년 6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암스텔담 조약을 체결하며 성적 지향을 토대로 차별하는 법이 없어야 함을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는 의무조항도 포함시켰다.

※ 유럽인권재판소는 Salgueiro Da Silva Mouta 대 Portugal 사건에서 '유럽인권협약 제 14조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당연히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 EC(유럽공동체: 유럽연합의 전신)협약 제 13조는 성, 인종, 종교, 신념, 장애, 나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2) 성적소수자 차별예방 캠페인

혐오 언어사용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불만사항이 늘어나자 경찰과 검찰이 조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유명가수 4명의 노래가사에 대해 적법여부 재심에 있다. 이들의 노래가사 중에는 동성애자를 죽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성애 혐오 언어사용으로 판결이 날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동성애 혐오언어 사용에 대한 실제 기소사례는 없었다./인디펜던트” (내일신문, 2004년 8월 13일, “8월 18일 세계의 헤드라인-동성애 혐오 가수들 경찰 조사 받아 <영국>”)

12) “뉴욕시 상원이 17일(현지시간) 뉴욕주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뉴욕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이날 '성적취향에 따른 차별 금지법안(SONDA)'이 뉴욕 상원 투표에서 34대 26으로 통과함에 따라 뉴욕 동성애자들의 31년간의 법제화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뉴욕 하원은 지난 1월 이 법안을 승인했었다. 이 법안은 지난 1993년 이후 매년 상정돼 왔으나 공화당원들과 종교단체들의 압력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었다. SONDA는 성적 취향 때문에 고용, 교육, 공공서비스 등에서 차별받는 것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 후 30일이 지나면 발효, 뉴욕은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하는 13번째 주가 된다. 뉴욕 최대 동성애자 단체인 엠파이어스테이트프라이드아젠다(ESPA)의 매트 포먼 집행이사는 "세금 문제, 동성애 젊은이들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호, 동성애자 가족의 인정 등 완전한 평등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보호를 포함한 강화안은 이날 19대 41로 부결돼 종교단체 뿐 아니라 트랜스젠더들도 ESPA가 자신들의 권익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머니투데이, 2002년 12월 18일, “뉴욕, 동성애자 차별금지안 가결”)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가 여러 형태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차별은 줄지 않고, 성적소수자들도 이에 대응할 힘을 키우기 어렵다.

따라서 성적소수자들에게 차별이나 폭력을 행하는 사람 당사자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 구제만큼 중요한 것은, 성적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키우는 일이다. 이것은 성적소수자 차별예방 캠페인을 통해 가능해진다.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한 캠페인,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의 캠페인 등을 통해 성적소수자들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이들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곧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에 성적소수자 인권지침서 배포

국회나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여성기관에서조차 성적소수자의 입장 및 참여를 거부했다는 것은 국가가 성적소수자에 대해 노골적인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 유관기관들에 성적소수자 인권지침서를 배포해서 이같은 차별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2-2. 군대 복무상의 차별

1) 현황 및 차별 실태

(1) 현황

인터넷의 동성애자 커뮤니티 게시판엔 군 입대를 앞둔 남성 동성애자들의 초초하고 불안한 심정을 드러내는 글을 종종 접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군대에 가기 싫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인 군대 내에서 자신이 혹여 동성애자로 밝혀지게 될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 실제 군대는 매우 동성애 혐오적인 사회다. 2003년 7월 상사의 성폭행을 견디다 못한 한 사병의 자살로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부가 발표한 '군대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안'만 보아도, '장병들의 인성검사를 강화해서 성적이상성향자나 이상성격소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겠다는 식의 발상이 들어있다. 군대 내 성폭력의 책임을 동성애자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군형법 제92조에 있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 역시 문제다. 이것은 강제성의 유무

등에 대한 구분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동성간 성행위 자체에 대한 혐오감과 편하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남성동성애자 두 명이 이러한 군대 내 차별에 항의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참여하고 있다.

(2)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

사례 1. 군대에서 커밍아웃 이후 생활이 어려움

A씨는 2004년도에 군대에 입대하였다. 그는 <친구사이>(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와 상담하면서 입대 후의 생활을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논산훈련소에서 후반기 훈련을 받던 중 훈련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지휘관에게 상담을 청해 처음 커밍아웃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비밀을 지켜준다는 약속과는 달리 곧 소문이 돌았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 속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국군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부모님에게까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통보되었고 한달 넘게 병원에 갇혀 지냈으며, 군의관에게 전역을 부탁했을 때 군의관의 답변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찍어오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것을 거부하자 얼마 후 다시 부대로 복귀명령이 내려졌고 자대복귀 후의 생활은 가시방석이라며 이렇게 살아야 하는 자신이 너무 싫다며 괴로움을 토로하였다.

-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상담사례 중,
2004년 7월

사례 2.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 정신병원으로 감

B씨는 이등병 시절, 선임병이 자신에게 온 편지를 먼저 뜯어 읽어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다. 이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국군 창동병원 정신과 병동에 1개월 반 정도 생활하게 되었는데 병원에 갔을 때 사람들로부터 '호모가 왔다'는 말을 들어야했고 처음 3일간은 독방에 격리되기도 했다.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 약을 먹어야했고 강제로 HIV 검사까지 받았으며 아무런 동의 없이 부모님에게까지 알려져 면회시간을 통해 부모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일이 가장 가슴 아팠다고 한다. 그는 동성애자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수군거림과 시선을 견디며 어렵게 만기제대를 하긴 했으나 군대 생활 속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제대 후에도 한동안은 불안과 초초, 수치스러움 속에 시달려야 했다고 한

다.

- 출처 : 2003년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 자료집
중에서

사례 3. 병무청의 차별적 문제인식

동성애전문잡지 <BUDDY>가 2001년 병무청 민원 상담실에 문의한 ‘게이는 군 면제가 되는가?’에 대한 병무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 병역 의무는 개인적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까지 병역의무를 강제할 수 없기에 징병검사, 재신체검사, 입영부대 신체검사, 의병전역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영 전에는 징병검사나 재신체검사과정을 통해 전문적 의학지식을 갖춘 징병전담의사가 각 부위 정밀검진을 해서 병역의무자의 군복무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입영부대 신체검사는 입영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여 질병정도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을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등위와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 도중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은 군병원에서 치료와 정밀검사를 거쳐 의병 전역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역의무 부과와 형평성과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군복무 면제여부를 안내하기 곤란합니다. 이는 징병검사, 재신체검사, 입영부대 신체검사, 의병전역제도 등을 통하여 전문적 의학지식을 갖춘 징병전담의사나 군의관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답변으로 미루어 볼 때 ‘성정체성’이 신체적인 이상 유무의 사항이거나 외관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징병검사와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판단에 맡긴다는 하고 있다. 이는 병무청이 ‘동성애자’의 존재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 무지가 편견으로까지 이어져 있음도 발견할 수 있다. 2004년 4월 18일자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병무청 병역정책과 사무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성전환자 또는 동성애자 등은 보통 사람들과는 매우 다르게 성적 욕구가 나타나므로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단체생활을 하는 데서 수치심 유발 등 대인관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을 내리고 있다”

- <BUDDY> 19호 특집 ‘동성애자의 다섯 가지 딜레마’

2) 쟁점 정리

(1) 군대 내 동성애자의 적합성 문제

2003년 3월에 러시아와 타이의 군 당국이 군대 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두 나라의 이번 조치는 다분히 보수화와 호모포비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러시아는 동성애자를 마약중독자, 성병에 감염된 자, 정신박약자와 함께 군복무에 부적합한 그룹으로 분류하면서 "신병들의 건강기준을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자금 부족과 사기 저하를 극복하려는 수단으로 소비에트 연방시대까지 사용했던 상징물인 붉은 깃발을 다시 군의 상징으로 채택한 바 있다. 타이의 국방장관 역시 군 전력의 와해가 두려워 입대 금지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군법 어디에도 '동성애'란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성 주체성 장애'나 '성적선호장애'와 같은 잘못된 용어가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등에 쓰이고 있으며, 징병담당 의사나 일선 군의관들 중에는 여전히 동성애혐오증을 가진 이들도 많다. 동성애를 정신질환이라고 보고 무리한 치료를 시도하거나 의가사제대를 시키려는 등 인권 침해적 의료폭력을 휘두르는 실정이다. 특히, 2003년 7월, 휴가 나온 어느 일병이 상사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투신 자살을 하는 사건 이후 국방부에서는 "동성애 성향자를 비롯해 이상성격 소지자를 조기 식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들에 대한 별도의 정신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안을 발표하기도 했다.¹³⁾ 하지만, 정말 이와같이 군대에 동성애자는 적합하지 않은 걸까.

결코 그렇지 않다. 미국정신의학회가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통계편람 DSM(Diagnostic &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미국정신의학회는 이미 1973년에 통계편람 DSM 제2판에서부터 동성애 조항을 정신질환의 목록에서부터 삭제하기로 결의하여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질병이나 질환이 아니라 성행동의 정상적 지향체(normal orientation)라고 인정하였다. (한국의 정신의학, 임상, 상담심리학, 그리고 사회사업 등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곳에서도 DSM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1993년 ICD-10에서 동성애를 비롯한 성 정체성 자체는 정신적 장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3) 미국 Human Right Watch 의 2001년도 연구조사에 따르면 군대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교도소 내에서 남성간 성폭력의 경우, 동성애자가 가해자라는 공식적인 근거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1998년도 이후에는 미국의 거의 모든 정신건강단체(정신의학회, 심리학회, 상담심리학회, 학교심리학회, 사회사업학회 등등)에서 공식적으로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였고,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처우는 물론, 특히 성적지향성을 고치려는 시도나 행위에 대해 반대함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동성애자라서 군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동성애자라서 군대 내 기강을 무너트리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모든 이성애자는 군대에 적합하다는 역명제도 성립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군대와 같은 조직생활이나 동성만 모여지내는 폐쇄적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뿐이므로,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인 성정체성만을 문제시 삼는 것은 차별일 수밖에 없다.

(2) 군대 내 동성간 성폭력 처벌 문제

군형법 제 92조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은 동성애 차별적인 법조항이다. 계간(鷄姦)이란 단어의 사용 자체가 군형법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변태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강제와 합의를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처벌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군대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군기문란사고□□로 보는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것에서 비롯된다. 군대의 기강이나 위신을 해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논리는 아무리 군대가 일반적인 사회는 달리 특수한 집단이라고는 하나 동성애자 차별이라는 점에서 묵인될 수는 없다. 또한 남성간의 성폭력을 오로지 '추행'으로만 보고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규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계간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동성간 성폭력도 이성간 성폭력과 같은 관점에서 다루는 법개정이 필요하다.¹⁴⁾

14) 2004년 4월 8일에 국가인권위의 연구 용역을 받아 한국성폭력상담소(연구책임자 권인숙)에서 진행한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가 공식 발표되었다. 발표된 연구 결과는 군대 내 성폭력의 문제를 '군기문란, 위반사고'로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침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며, 법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성폭력으로 인식해 '강간'으로 인정해야 함과 현행 군형법의 '계간'처벌은 동성애 차별을 담고 있으므로 개정해야 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실제 성폭력 사건은 동성애자보다 이성애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음도 밝히고 있다.

3) 대안 정리

(1) 정책의 기본원칙

군대 내 동성애자의 처우 개선 및 차별적 정책 폐지는 빠른 개선과 실천이 가능하다. 우선, 징병담당의사나 군의관의 개인적의 소견이나 지식, 가치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는 무원칙적인 관행을 버려야 한다. 이를 위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이 배제되고 올바른 지식과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 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정책 대안

① 호모포비아 군의관이나 상관에 의한 자의적 처분 금지

이미 세계적인 추세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폐지해나갈 뿐 아니라 프랑스의 경우엔 군대에서 군인들을 위한 동성애자협의회까지 인정해주고 있는 현실이다.¹⁵⁾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호모포비아적인 군의관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긍정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사병마저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의 독방에 감금시키는 등의 비인도적인 처방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

② 상담 및 구제 통로 마련

만약 어느 동성애자가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그가 동성

15) 2002년 5월 2일 타이완의 국방부장관은 동성애자의 헌병대(Military Police Command) 임용을 막아온 현재의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장관 탕야오밍(湯曜明 Tang Yiau-ming)은 입법원 답변에서 현재 성적 지향성을 헌병대 지원자의 제한요소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며 그 이유로 헌병대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타이완에는 1만 명의 헌병이 복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군 관련 사항뿐 아니라 정부 및 대민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탕야오밍 장관은 1994년까지 동성애가 질병이며 동성애자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나왔다고 설명했으며, 헌병대 대변인도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 규정이 현재의 기준에 맞지 않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http://www.taipetimes.com/news/2002/05/02/story/0000134218>)

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편견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위 환경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나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인 한국에서는 군대 내에 이러한 문제로 고민 중인 군인들이 상담을 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폐쇄적이고 강력한 상하복종의 시스템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차별이나 따가운 시선들, 린치 등을 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는 없다. 상사의 보복이나 집단따돌림, 또는 물리적이고 성적인 폭력을 당했을 경우 보호를 요구하고 가해자 처벌을 호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③ 커밍아웃 후 정신병원 이송 및 가족 통보 금지 또는 제한 규정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하거나 혹은 아웃팅으로 인해 동성애자임이 밝혀졌을 때 부대 내에서 별다른 고민 없이 동성애자 사병을 정신병원으로 보내고 그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는 일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국가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언제 누구에게 밝힐 것인가는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며, 더군다나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을 비롯하여 특히 가족들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성애자임이 제 3자에 의해 알려지는 것은 이후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일이다. 앞에서 제시한 두 사례에서도 나오지만, 동성애자라고 밝혀져 정신병원에 갔으나 병원이나 군의관들에게 특별한 치료책이 있거나 대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한달여의 병원생활에 의해 오히려 가족들과 소속부대와 모든 직속상관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더욱 악화된 여건으로 되돌아가는 것 외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④ 군형법 92조 개정 및 남성간 성폭행에 대한 처벌 기준 개선

92조에 명시된 ‘계간’이란 표현은 삭제되어야 하며, 동성간 성폭력을 군 기강 문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강제성과 성폭력의 수위에 따른 차등적 처벌과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 등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2-3. 형사 절차상에서의 차별

1) 차별 현황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적소수자들은 ‘체포 과정-수사 과정-검찰 송치 과정-구속 시-재판 과정-구금 과정’ 등 형사 절차의 전 과정에 걸쳐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매개로 한 차별을 받고 있다. 성적소수자들은 아웃팅에 대한 극도의 공포로 인하여 형사 절차에 접근할 기회 자체를 차단당하며 간혹 용기를 내어 실제 형사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성적소수자들도 수사 과정상의 인권 침해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는 성적소수자들이 국가 기관이 제공하는 일련의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총체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사 절차상에서 성적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어떠한 공식 집계도 없고 대안 마련도 없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형사 절차를 이용하는 성적소수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차별 실태에 대한 진지한 접근조차 전무하다. 이러한 상황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성적소수자들이 놓여 있는 악순환 적 차별 고리들을 나타내 준다. 드러내기 어려워 절차에 접근할 수 없고 접근 자체가 차단됨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차별 사례를 묶어 제시하기도 쉽지 않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대안 마련의 필요성조차 일선에서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나마 성적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활동들을 펼쳐온 성적소수자 운동 단체들로 접수되는 사례들과 성적소수자들의 커뮤니티에서 나뉘지는 경험담들을 통해 구체적인 차별 사례들을 접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성적소수자의 존재는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성적소수자들이 겪는 일상 속의 차별과 폭력의 경험 역시도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까지는 성적소수자들이 당했던 차별들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없었지만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그러한 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 더 이상은 형사 절차상의 성적소수자 차별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국가 기관 종사자들이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차별 사례

(1) 접근성 원천 봉쇄의 문제

사례 1. 신고하기가 두렵다.

거의 사실혼에 가까운 생활을 해 온 레즈비언 커플(A,B)이 있었다. 이 둘의 관계는 초반부터 A가 B를 뒷바라지 하는 형태로 시작되었고 그러한 패턴은 그들이 같이 생활을 하는 수년 내내 지속되었다. 그 사이에 금전적인 면이나 관계적인 면에서 B가

크고 작은 말썽들을 지속적으로 일으켰는데 그 뒷감당 역시 A가 해 내야만 했다. B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당연히 수입이 없었다. A가 돈을 벌어오면 B는 그 돈을 멋대로 써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런 상황을 견디다 못한 A는 어느 날 B를 붙잡고 같이 힘을 합쳐 음식 장사를 해 보자고 이야기했다. 가게를 구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자신이 도맡아 해 주니 초반에는 필요한 집기들을 구입해 나르고 가게를 열고 난 뒤에는 홀 서빙 정도의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B에게 한 것이다. 내내 놀기만 했던 B는 A의 제안을 수락했고 그들은 같이 개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A는 가게를 얻기 위해 큰 빚을 졌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 날은 A가 B에게 A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물품을 구입해 오라고 내 보냈던 날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B는 돌아오지 않았다. A는 온갖 수소문을 다 해서 B를 찾았으나 B는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해진 마음에 카드 조회를 해 보았을 때는 이미 엄청난 액수가 사용되고 난 이후였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 바로 카드 사용을 정지시켰지만 이미 몇백만원이 날아간 상태였다. 며칠 뒤 B는 다른 여자와 함께 A의 앞에 나타났다. 알고 보니 그 둘이서 A의 카드를 마구 사용했던 것이었다. B는 함부로 나오기 시작했다. 자기는 같이 온 그 여자와 살겠다고 했다. 돈도 값을 생각 없다고 했다. 막나가는 인생 자기는 상관없으니 신고 하려면 신고 하라고 했다.

A는 기가 막혔다. 정성을 다해 보살펴 왔던 사람이고 고통스럽지만 쉽 없이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인데 B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 절망스러웠다. 그리고 A는 혼자서 감당해야 할 카드 값이 끔찍했다. 경찰에 신고를 할까 하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카드를 맡기고 그래요?'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정말 할 말이 없을 것 같았다. 온 동네에 나는 레즈비언이라고 소문내는 꼴밖에 더 되겠느냐는 생각만이 들어서 A는 선부르게 경찰서로 갈 수가 없었다.

- 케이, 형사사법절차와 성소수자의 인권 (2004년 5월 6일 반차별 포럼 2-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자료집 中)

사례 2. 경찰을 믿을 수가 없다.

C와 D는 같은 직장의 선후배 사이였다. C는 레즈비언이었고 입사 당시 교체하는 사람이 있는 상태였는데 직속 남자 선배인 D가 C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D는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C의 뒤를 쫓아 다녔고 그러던 중 C의 성정체성까지 알게 되었다. D는 C가 레즈비언인 것도 알고 C에게 교체하는 상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깨끗이 마음을 접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C를 더 괴롭혔다.

D는 C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성정체성을 폭로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리고 C가 거절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하면 C를 강간했다. 이런 일은 몇 년동안 계속 반복이 되었다. C는 지속적인 강간 피해와 D의 협박으로 심신이 망가질대로 망가졌다. 그러나 C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D는 자신이 C에게 저지른 짓 역시도 C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만나 주지 않으면 아웃팅을 시켜버리겠다던 것에서 자신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발설하면 아웃팅을 시켜버리겠다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었다.

일이 일어난 배경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에 몰릴 것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을 말할 수 없었던 C가 경찰에 자신의 피해를 신고할 수 있을지 만무했다. C가 아무리 D를강간범으로 신고한다해도 D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C의 성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었다. D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C는경찰이건 누구건 한명이라도 더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두려웠다. 그걸 비밀로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찰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 케이, 형사사법절차와 성소수자의 인권 (2004년 5월 6일 반차별 포럼 2-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자료집 中)

사례 3. 내가 레즈비언인 것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어떡하지.

E와 F는 몇 개월 정도 동거 생활을 한 커플이었다. 그런데 이들 관계에 트러블이 발생해 같이 살던 집에서 F가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며칠 사이, E가 F의 소지품을 모두 뒤져서, 돈이며 카드 등을 모조리 빼내어서 감추었다. F가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다. E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난 F는 E가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 하게 하려고, 자기가 짐을 들고 나가려는 길목을 가로막고 선 E에게 겁을 주면 좀 그칠까 싶어 기물을 파손하기 시작했다. 주변에 있는 물건을 보이는데로 집어던지고 깨뜨렸다.

E와 F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서로 다른 명목으로 상대방을 고소했다. 기물파손죄와 절도죄가 각각의 명목이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맞고소를 건 상태였음에도 이들은 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경과를 설명하다보면 자신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로의 가족들이 이들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동거하고 있었던 것인데, 만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소송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확률이 높다고 했을 때, 이제까지 비밀로 유지해 왔던 관계가 들통나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 케이, 형사사법절차와 성소수자의 인권 (2004년 5월 6일 반차별 포럼 2-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자료집 中)

(2) 성적소수자 차별적 언행

사례 1. 피해의 고통을 부차화 하는 경찰.

한 레즈비언이 이성으로부터 극심한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었음. 이 사건으로 경찰서에 간 피해자는 수사 과정상 레즈비언임이 드러남. (경찰은 피해자의 핸드폰 추적 과정에서 피해자가 레즈비언임을 알게 됨.) 이후 경찰은 피해자에게 “미친년”, “정신병자” 등의 폭언을 가함.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피해, 즉, 스토킹의 경위와 범죄 수위에 대한 고려는 물론 피해자의 고통을 부차화 했음.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수집 사례

사례 2. 함부로 대하는 경찰.

레스보스(성인여성성소수자 전용 바) 초기, 미성년자 손님을 받지 못하도록 하느라 경찰들이 수시로 레스보스에 드나듦. 경찰들은 미성년자로 보이는 손님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네가 남자 역할 하나?”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일상적으로 저질렀음.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수집 사례

사례 3. 편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경찰.

레스보스에서 레즈비언 손님들 간에 격심한 폭력 사태가 벌어 짐. 이를 누군가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폭력에 연루된 레즈비언들이 집단으로 경찰서로 연행됨. 연행된 레즈비언들에게 경찰들은 비웃음을 던지면서 “누가 남자 역할을 하느냐?” 등 모욕적인 언사를 멈추지 않음.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수집 사례

(3) 성폭력 적 환경 조성

사례 1: 조사 환경의 성폭력 적 분위기

트랜스젠더 여성이 한 남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질시킨 채 가해자 남성과 끊임없이 나누며 “하고 많은 멀쩡한 여자 다 놔두고 저런 걸 해 먹었냐?” 는 류의 이야기를 계속 하였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여성에게는 “당신이 이 남자 꼬신 거 아니냐?” 고 다그쳤다. 피해를 입은 트랜스젠더 여성은 경찰이 자신의 피해에는 무관심 하면서 오히려 자신

에게 더욱 수치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상담 사례

사례 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A씨는 20대 중반의 트랜스젠더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 평범한 여성이다. 2003년 어느날, 이미 헤어진 남자애인이 술에 취해 집으로 찾아왔고, 실랑이를 벌이다 혼자 사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사건을 조사하는 형사들은 그 사건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 먼저, 피해자의 신분을 보호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트랜스젠더가 성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 왔다고 소문이 퍼져 다른 층에 있는 다른 과의 형사들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를 구경하기 위해 우르르 몰려들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가해자와 대질과정에서도 피해자인 A씨의 증언을 듣기보다는 가해자인 남자의 말을 더 신뢰할 뿐 아니라 A씨를 바로 앞에 두고도 가해자인 남성과 히히덕거리며 "어디 먹을 게 없어서 트랜스를 먹냐" 라든지 "그래, 해보니 보통 여자랑 다르냐? 어때?" 등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A씨가 병원에서 '성폭행에 의한 질 파손'이라는 진단서까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자료로 쓰이지 않았고 이 성폭행 사건은 A씨가 전혀 합의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재판도 없이 벌금을 물고 풀려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A씨가 트랜스젠더란 것을 알게 된 주거지 관할 경찰들이 순찰 도중 A씨를 보게되면 큰소리로 아는 체를 하는 등의 행동도 서슴치않아 결국 A씨는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상담 사례 중에서.

(4) 성(별)정체성을 매개로 한 수사 과정상의 불이익

사례 1.

한 취객이 길거리에서 트랜스젠더 여성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시비는 취객이 먼저 걸었고 주먹도 그 취객이 먼저 날렸다. 그런데 경찰은 마치 트랜스젠더가 그 폭행 사건의 책임을 다 져야하는 것처럼 수사를 진행시켰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트랜스젠더를 아래위로 훑어보고 느물거리며 그녀에게 불리한 방향의 진술을 유도하는 등,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려 하지 않았다. 취객으로부터 "저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쓸어다 죽여야지. 재수가 없어서 윈." 하는 폭언을 듣고 취객이 건들거리며 자신을 먼저 쳐서 방어하기 위해 그를 밀쳐내고 할 수밖에 없었던 트랜스젠더는 경찰로부터 "사람이 취해 있으니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하는 식의 질

문을 받고 어이가 없었다.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상담 사례

사례 2.

"2000년 5월 부산에 사는 모씨는 술자리에서 남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마 20바늘, 콧등 8바늘 등을 꿰매는 등의 치료를 받고 의사로부터 2차 수술을 해도 얼굴에 상처가 남을 것이라는 소견을 듣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형사들 45명이 '여자가 아닌데?'라며 훑어보고, 모씨와 그의 친구가 '맞다'고 하는데도 '아니구만 뭐..'하며 서로 깔깔대며 웃어 심한 굴욕감을 느꼈다. 모씨는 형사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합의금이 너무 많다'며 가해자 친구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냐고 묻는 등 가해자 쪽에 서서 자신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다고 진술했다."

- 여성신문, 2000년 5월 21일, "폭행사건 수사경찰 피해자 인격모독"

(5) 구금 시의 문제

동성애자임이 알려진 재소자에 대한 간수 및 다른 재소자의 폭언, 폭행, 성폭력이 비일비재하다. 구체적으로 수집된 사례는 없으나 경험담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이 무수하다.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수감 중 당하는 폭력도 폭력이거니와, F to M 트랜스젠더와 M to F 트랜스젠더를 각각 여성 시설에 수용해야 하느냐 남성 시설에 수용해야 하느냐의 문제 또한 무척이나 중요하다. 우선적으로는, 본인의 의사가 먼저 중시될 필요가 있다. 트랜스젠더들은 그 부분에 있어 현재로써는 전혀 선택권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이점은 당사자들에게 실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설 안의 생활 속에서 인권 침해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수 및 재소자들의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교육 과정에는 성적소수자 인권 교육도 꼭 포함되어야 한다.

(6) 케이에 대한 함정 수사

사례 1: 민중의 지팡이, 이반의 몽둥이

수년전 일이다. 시골에 계신 형이 부쳐주는 돈으로 서울대 근처 고시촌을 얻어 지내는 대학생 김모씨(당시 22세). 3류 성인잡지를 통해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이 이반들

의 이지트(?)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다가 중간고사가 끝난 후 부딪혀 보기로 했다.

서너 곳의 화장실을 기웃거리다가 6번째로 들어간 화장실에서 중년의 남자가 잔뜩 발기한 물건을 내놓고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빨개진 얼굴로 멍뭉뭉하며 그를 훑쳐보는 한동안 응시하던 중년의 남자가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면서 대변용 화장실 문으로 들어갔다. 문은 반쯤 열린상태였고 김씨가 그 틈으로 그를 보자 그도 이 쪽을 바라보고 있는게 아닌가. 용기를 낸 김씨가 그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자 마자 중년의 남자가 허리춤을 괴더니 그의 손을 들켜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호모새끼. 너 같은 놈들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라며 다자고짜 김씨를 끌고 지하철 범죄 수사대로 끌고 갔다. 무안해 얼굴을 들지 못하는 김씨에게 경찰은 책상에 쌓인 서류뭉치를 내보이며 "이게 다 너같은 놈들이야. 경찰서 가지 않으려면 벌금 30만원을 내"라고 다그치지 않는가. 하지만 돈이 있을리 만무한 김씨는 잘못했으니(?) 봐달라고 빌 수밖에 없었지만, 매정한 경찰은 집 전화번호를 물어 결국 형이 지방에서 그곳까지 오도록 만들었다. 형을 앓혀 놓고 그런 짓은 지금까지 몇번 했느냐, 마약이나 본드는 안 하느냐며 마치 탈선자 취급할 때는 머리카락이 쭈뼛하기도 했다.

'고생시켜 대학까지 보냈는데...' 망연자실한 형을 따라 나오면서 김씨는 얼굴을 들 수 없었고, 형은 형대로 아무 말도 않고 그 날 밤차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기자는 김씨의 경험을 일러주는 취재원에게 죄목이 무엇이라고 했는지를 물었다. "몰라요. 그런건 있지도 않은 거죠. 그냥 경찰이 용돈이나 벌려고 한 짓이지요"라며 얼버무리는 취재원. 그는 김씨와 함께 아는 분을 통해 신문사에 고발도 해봤지만 신문사에서 김씨가 우려하는 예의 그 질문을 던져왔다고 한다. "피해자를 직접 인터뷰하고, 피해 과정을 낱알이 공개해야만 기사가 가능하며, 그래야만 그 경찰을 응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김씨는 포기했다. 그 댓가로 김씨는 아직도 가장 사랑하는 형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다.

기자는 고속버철 터미널 지하철 범죄 수사대에 전화를 해 공중 화장실에서의 동성애 행위도 단속의 대상이 되냐고 물었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다. "지금은 없지만 곧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니 안심하시라"는 거였다.

- 버디 6호, 1998년 6월, '밀착취재 - 이반은 일반의 밥인가' 중

(7)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라니?

사례 1.

"형사과장이란 사람들이 부하직원을 대동하고 갑자기 여관에 들이닥쳤다. 알고보니 집에서 잡아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우린 성인인 데다가 무슨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는데 경찰이 무슨 권리로 우릴 검거한 것일까. 지금도 젊은 이반애들 보면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경찰에 잡혀갈 수 있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

- 이반바(bar)를 운영하고 있는 모씨 인터뷰 - 조이여울, 「'뒤틀린 존재'라는 낙인-한국사회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에서 재인용, 『제주인권학술회의 발표문 모음집』, 2002

3) 정책 대안

(1)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

① 인권 침해 사안으로써의 문제화

서두의 차별 현황에서 언급했듯, 형사 절차상의 성적소수자 차별 문제는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의 문제이다. 자신의 존재 조건만으로 국가 기구가 집행하는 절차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엄연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관련 기관들은 형사 절차를 이용함에 있어 성적소수자들이 겪는 각종 차별의 문제를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담당자들 한 명 한 명이 앞장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존 관행에 내재돼 있던 호모포비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② 실태 조사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별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태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대안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이 그간 형사절차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이나 불쾌함 등에 대해 알아 보고 실제 발생했던 차별 사례들을 폭넓게 수집해서 이후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실태 조사의 초기 단계에서 오랜 시간 자료를 수집해 온 유관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도 또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대 여성 범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성적소수자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③ 공정한 수사의 지평 확장에 대한 목적의식

형사절차 상에서 발생하는 성적소수자 차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공정한 수사의 지평을 확장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누구도 법제도적 절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 자신의 존재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때 국민의 한 사람이자 시민권을 지닌 한 사람인 성적소수자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관련 국가 기관은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2) 구체적 대안

① ‘검찰청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적용 폭 확대

관계자 인권 교육 시 성적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한다. 그 내용을 마련하는데 있어 전문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래의 항목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적소수자 인권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

제 1장 총칙 중 제 2조 [검사의 기본적 책무]의 2항 (개정안)

검사는 이 훈령이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지휘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인권 교육과 필요한 교양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성적소수자 관련 범죄를 수사할 때는 수사 대상이 되는 성적소수자들의 성정체성을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해 외부로 유포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는 아웃팅으로써, 그 자체로 성적소수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와 같이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준칙의 항목에 성적소수자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명시해 주면 좋을 것이다.

제 1장 총칙 중 제 6조 [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전 항목 (개정안)

1항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2항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 사실은 물론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 일시, 귀가 시간 및 구속영장 집행 시간 등 수사 상황을 기소 전에 공개할 수 없다.

3항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 관련

서류나 증거물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항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피의사실과 무관한 수사 상황만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각급 청의 공보담당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아래는 피의자 인권 보호에 필수적인 항목이라 할 수 있겠으나, 피의자가 성적소수자이고 범죄 사실이 그/녀의 성정체성과 관련이 있을 때는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항목이 될 수도 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성정체성의 폭로는 그 자체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이다. 이럴 때는 최소한의 범죄 사실 개요 정도만을 통지하되, 성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들을 기재하는 데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 2장 수사준칙 중 제 12조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가족 등에게 죄명, 체포하거나 구속한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 통지가 늦어질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체포·구속한 기관과 담당 공무원을 알려주도록 한다.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로 통지한다.

②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의 적용 폭 확대

수사 과정에서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담당자들이 성적소수자들을 편견 없이 대하는 것이다. 그에 더해 앞서도 언급했듯 성적소수자들의 성정체성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제2조(수사의 기본)

2항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의 보안)

수사를 할 때에는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청문 감사관’ 제도의 내실화

청문 감사관 제도를 대국민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자신이 형사 절차를 이용할 때 받았던 각종 차별이나 불이익을 호소할 대상을 알지 못

해 혼자서 끙끙 앓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는 성적소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 그것도 경찰청의 임무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청문 감사관 관련자들은 성적소수자 관련 인권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성적소수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점을 호소했을 때 성적소수자 인권에 무지한 담당자가 성적소수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청문 감사관 제도란?

- 경찰업무관련 국민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청취,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업무수행과정에 편파처리등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더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청문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청문 감사관을 찾으세요.

- 경찰관의 부정·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 고소·고발, 형사사건, 교통사고 조사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상담을 원하는 경우
- 경찰관의 비리·불친절을 경험하였거나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
- 각종 조사장소나 유치장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 기타 궁금한 사항 및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 경찰관의 도움으로 일이 잘 해결되었거나 친절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칭찬 및 격려해 주고 싶은 경우 등

서울동대문경찰서

<http://ddm.smpa.go.kr/soge/chung-soge.asp>

④ 대검찰청 산하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의 역할

2004년 7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산하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생겼다. 위원회가 다루는 내용에 아직까지 형사절차 상에서 성적소수자들이 정체성을 매개로 당하는 차별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성적소수자들의 형사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사 과정 중에 성적소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위원회가 성적소수자 인권 문제를 위원회가 다룰 내용으로 포함시키도록 강력하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가 성적소수자 인권 단체 활동가들의 자문을 구하도록 촉구하는 것도 필수적인 일일 것이다.

⑤ 인권 교육¹⁶⁾

일선 담당자들부터 고위직 관계자까지, 성적소수자들의 인권에 관한 기초적인 교육부터 전문적인 교육까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성적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에 걸 맞는 적절한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은 자체 인권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면서 그 안에 성적소수자 관련 교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⑥ 인권 침해적 환경에 대한 감사 강화

정부 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친 성적소수자적 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간에는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성적소수자의 차별 실태에 대한 무관심으로 관련 감사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체계적인 감사 제도를 통해 성적소수자 차별 행위를 저지르는 관련 담당자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선례들을 만드는 것을 통해 형사 절차를 집행하는 기관의 모든 이들이 성적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4. 상담기관 및 의료기관의 차별

1) 상담기관의 차별실태

최근 성교육 강사들과 성 상담가들 사이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동성애 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다가 실제로 성정체성에 대해 문의를 해오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6) 박상철 통신원 = 캐나다 토론토 경찰이 업무 수행 시 동성애자 대하기 훈련을 받게 됐다고 토론토 스타가 18일 보도했다. 토론토 경찰위원회는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동성애자 7명이 제기한 차별철폐 소송에 합의해 해당 경찰관이 사과하고 같은 사건을 방지하는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말썽은 경찰이 지난 2000년 5월 수백 명의 레즈비언들이 파티를 즐기는 장소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여자 경찰관도 참여해 술 면허를 조사하는 통상적인 수색이었다고 했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나체상태로 있던 장소를 남자 경찰관 5명이 90분간 수색과정에서 여성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경찰위원회로부터 35만 달러의 배상을 받는다.

- 연합뉴스, 2004년 12월 19일, '토론토 경찰에 '동성애자 대하기' 훈련'

그런데 성정체성에 관한 상담기관의 상담과 의료기관의 상담은 상담자 자체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천만하다. 상담가 혹은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담가와 의료진 양성과정에서 성적소수자와 성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적소수자에 대한 상담내용들은 상담가 마음 대로인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질까봐 우려하는 자세를 가진 상담가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는 청소년에게 좋은 상담을 해줄 수 없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주어야 하는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내담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이성애를 강요하는 등의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기관들의 동성애 관련 상담내용을 모니터링 한 금오해령의 연구 결과에서 발췌한 상담사례들¹⁷⁾이다.

(1) 동성애를 부정하는 상담 예

- “동성애와 관련된 질문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에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상담기관 A)
- “정상적인 이성간 사랑의 결합방식과는 달리 변태적인 성행위로 알려져 있는 비정상적인 성생활이 아마도 이들이 비도덕적,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기관 B)
- “그 여자친구에게 성충동을 느낀다는 것은 그 여자친구에게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 받고 싶어하는 강렬한 내 마음, 내 욕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특히 가족 안에서 외롭고 허전함을 많이 느낀다면 더욱 동성의 친구에게 매달릴 수도 있겠지요.”(기관 C)
- “이런 증상은 이성과 사귄만한 기회를 갖지 못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관 D)
- “**님이 혹시 어떤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의식중에 갖고 있는 콤플렉스로 인해 동성에게 관심을 느끼면서 '혹 내가 동성애를 느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기관 E)

(2) 내담자에게 왜곡된 정보 전달

17)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3년 6월 9일자, 15일자에 각각 “동성애 상담 '약'보다 '독'”, “동성애 별 것 아니에요!?” 제하의 기사로 요약, 실렸다.

- “이러한 성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성병의 전염이 이러한 동성간의 성행위에 의해 빠르게 전파되고 또한 가장 무서운 성병인 AIDS가 결국 동성간의 성행위에 의해 많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관 F)
- “예를 들면, 동성애의 경우 무분별한 여러 사람과의 항문성교 등으로 에이즈 균의 보균자나 감염자와의 접촉을 하는 경우, 처음의 작은 호기심이 엄청난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지요.” (기관 G)

(3) 이성애가 ‘정상’이자 ‘순리’라고 설파

- “그러나 차차 시간이 지나서 이성친구를 알게 되면 자신이 여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면서 이성간의 사랑을 하게 되지요.”(기관 I)
- “다른 남자가 **님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면 들어올 수 있게 마음의 문을 열어두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관 J)
- “지금은 그 친구가 멋져 보이고 좋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곧 그 감정은 줄어들 거예요. 그 친구가 다시 평범해 보일 겁니다.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맘에 드는 이성을 만나 교체하게 되면 더 말끔히 감정을 정리하게 될 거예요.” (기관 E)
- “만일 **님이 아직 젊은 나이이고 성격함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고민은 금새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님이 느끼는 성욕이란 것이 **님의 모든 사고체계와 가치관, 이성을 다 점령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 젊으므로 그러한 감정 상태에 빠진지 오래 되지 않았을 테니 곧 고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기관 K)

2) 의료기관의 차별실태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며 사람의 성적지향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비판하거나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의학과 심리학계의 중론이다.

1973년 미국 정신과의사협회는 모든 정신적 감정적 장애들을 목록화 한 공식 매뉴얼(DSM)에서 동성애를 제외했고 1975년 미국 심리학회연합은 이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두 협회는 모든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 동성애를 정신적 질병으로 낙인찍는 일을 없애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1990년 미국심리학회는 전환치료(동성애를 이성애로 바꾸려는 시도)가 이익이 되기보다 오히려 해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부모에 의해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동성애자들의 사례가 인권

단체들에 접수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병원에서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라는 진단을 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성애자 만들기’를 목표로 진행되는 영터리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동성애 잡지 <버디> 9호에는 정신과 의사가 □□치료하면 나올 수 있다□□며 동성애자 남성에게 치료를 권한 예가 실리기도 했다.

정신과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는 위 상담기관의 예에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차별 시정

(1) 상담원 양성과정에 성정체성 교육 필수 포함

성교육 담당자, 상담원들은 성정체성과 성적소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전국 모든 기관(정부기관, 청소년단체, 여성단체, 인권단체, 각 상담소와 쉼터)의 상담자들은 성정체성과 성적소수자 이해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때에만 상담원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상담기관의 상담자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정보나 지식만이 아니라 성적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억압과 차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반드시 상담자 자신이 성적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¹⁸⁾

(2) 의료기관에 차별시정요구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신경질환계통 병원과 의과대학에 기본적인 인권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소아학회, 미국정신상담협회, 미국정신학회, 미국심리학회, 교육자협의회 등 미국의 10개 교육 및 상담, 심리학회에서 공동으로 작업해 발표한 “Just the facts about Sexual Orientation & Youth”(성적 지향과 청소년의 실제 : 교직원과 교육자, 교장들을 위한 입문서)는 동성애를 일종의 정신적 혼란으로 보려는 일부 의학계와 상담계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1993)

18) 금오해령의 ‘청소년 동성애 상담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인용. 미국 성상담소 ‘긍정적인 성을 위한연합(coalition for positive sexuality) www.positive.org, 영국 성소수자 청소년 지원센터 ‘유스(Youth)’: www.youth.org 참조해서 작성함.

미국소아과학회(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성적 체성에 관한 혼란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며, 성적체성을 바꾸려는 치료법은 금해야 한다¹⁹⁾고 지적했다. 미국정신상담협회(The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는 동성애자의 성적체성에 대한 무지하고 근거 없는 편견을 없애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결의문²⁰⁾을 채택했다.(1998)

2-5. 매체 심의 규정상의 차별

1) 심의 기준상의 차별 현황

(1) <해피투게더> 의 사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또는 음란한 표현물을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동성애 자체가 여러 매체의 심의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때로는 명시적인 심의기준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명시적인 심의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성애에 대한 사회 일반의 편견과 무지 속에서 구체적인 심의결과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한다. 1997년 공연윤리위원회가 ‘동성애가 주제로서 우리 정서에 반함’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입불가 판정을 하는 헤프닝을 연출하기도 한 왕가위 감독의 영화 <부에노스아이레스 해피투게더>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불합격 사유에 대해 “심의 규정상 동성애를 허용할 수 없다. 특히 영화는 동성애를 소재가 아닌 주제로 삼고 있어 부분적인 자진삭제를 통해서도 상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²¹⁾ 동성애를 주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관람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심의결과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관련 심의규정인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15호 (“근친상간·윤간·동성연애·수간·집단적 성행위, 기타 변태적인 성행위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묘사한 것”)는 2000년 삭제되어 현재의 영화진흥법에는 더 이상 위와 같은 심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19) Policy Statement: Homosexuality and Adolescenc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993.

20) Resolution adopted by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Governing Council, March 1998.

21) “왕자웨이 ‘부에노스...’ 수입금지 논란”, 한겨레 1997년 7월 18일 참조

(2)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규정의 삭제와 청소년 유해성 및 음란성 판단과 관련한 기타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규정의 존재

①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표시제(엑스존 사건)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에서 “동성애” 규정 삭제

매체에 대한 심의기준으로 동성애를 규정하고 있던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 기준이 있었으며, 이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된 인터넷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표시제는 “엑스존 사건”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엑스존(<http://www.exzone.com>)은 1997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설된 동성애자 인터넷 사이트로서,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게시판과 검색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엑스존은 2000년 8월 실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표시제에 의해 ‘음란’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2001년 11월 청소년유해물 표시를 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러한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진폐쇄를 결정했다.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과 엑스존은 2001년 12월 29일,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철회할 것과 네티즌의 동성애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유 및 청소년의 알권리를 제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청소년보호법 관련 규정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행정소송과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로 대변되는 강제적인 내용등급제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²²⁾

그러나 이러한 소송의 계속 중에 동성애자인권연대가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2003. 4. 2.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개별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2004. 4.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논란은 일단락 된 바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이 변경됨으로 인

22) 현재 엑스존 사건의 행정소송은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객관적으로 엑스존에 음란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혹은 일부 음란성 정보가 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라고 하여 엑스존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가 위법한 처분일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한 바 있다.

해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원용하고 있는 관계 규정들이 함께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법통신의 금지, 제53조의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규정, 출판및인쇄진흥법 제12조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제19조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규정 등이 그것이다.

② 청소년 유해성 및 음란성 판단과 관련한 매체별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규정의 존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가 개정되어 동성애 자체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도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별법과 관련 기준들에서는 음란성 판단과 관련하여 “동성애” 자체를 심의기준으로 하는 조항들이 존재한다.

<심의 기관 및 대상 매체>

심의기관	대상 매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정기간행물, 만화, 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간행물에 수록게재된 광고물
영상물등급위원회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영화, 공연물 및 이와 관련된 광고물
방송위원회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 영상정보, 문자정보 및 통신상의 광고
청소년보호위원회	- 전문 심의기관이 없는 매체물 - 각 심의기관의 심의요청이 있는 매체물 -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

각 매체별 심의기관은 위 표와 같다. 이 중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기준 중 동성애 관련 조항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재는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현재 동성애와 관련된 심의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의무납본 대상으로서의 “청소년 유해 및 사회윤리 침해기준”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및 등급분류 보류기준”이 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및인쇄진흥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심의기관이다. 매체의 유해성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을 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유해성 심의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동성애 관련 심의기준 및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

(1) 동성애 관련 심의기준에 대한 평가

동성애 자체가 사회에 유해한 것이 아니라면, 동성애에 대한 표현물 역시 그 자체로서 유해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동성애 자체가 음란한 것이 아니라면 그 표현물 역시 동성애를 다루었다는 이유만으로 음란한 표현물로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또는 음란한 것으로 보는 편견이 우리의 인식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동성애”라는 용어를 “동성간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언어 습관 속에서 드러나며, 이러한 언어습관은 아래의 현행 동성애 관련 심의기준의 규정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성애”라는 용어는 또 하나의 “성적 지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르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습관 속의 편견과 무지를 걷어내는 인식의 전환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동성애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차용하는 광고들은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자체를 심의기준으로 하고 있는 규정들이 아직도 명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소비하고, 차별하는 양면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동성애에 대한 상업적 이미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동성애자 개인들의 삶의 문제를 드러내는 작품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성애 자체를 심의기준으로 하는 명시적인 규정들을 삭제하여야 하며, 음란성 여부 또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는 “동성애” 그 자체가 아니라 이성애에서와 마찬가지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구체적인 방식, 묘사의 노골성, 동기의 상업성, 전체 표현물에서 차지하는 묘사의 비중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일반적인 원칙 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의무납본 대상²³⁾

23)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지적은 이 보고서의 1-1-1. 성소수자 관련 차별법령 부분에서 서술하

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청소년 유해 및 사회윤리 침해기준”이 동성애를 이성애와 구분하여 동성간 성행위로 대상화하고, 변태성행위의 하나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은 이 보고서의 성적소수자 차별법령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청소년 유해기준에서 동성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정 이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사소한 자구상의 차이만 있을 뿐 규정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청소년보호법과는 별도로 청소년유해기준을 규정할 현실적 필요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청소년유해기준과 사회윤리침해 기준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을 원용하는 방식을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통일적으로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과 같은 이유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어야 한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기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 법 제18조, 제20조에 의하여 등급분류 및 등급분류 보류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2005. 2. 23. 현재 공시된 분야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 관련 등급분류 보류기준은 다음과 같다.²⁴⁾

영상물

제8조(음란묘사) 성·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건전한 가정생활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변태적 성행위, 동성애, 혼음, 매춘, 강간, 윤간, 근친상간, 시간, 수간 등의 성행위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게임물(PC, 온라인)

고 있음.

24) http://www.kmrb.or.kr/law/law_05_03.asp

제9조(성묘사) 음란·퇴폐 행위가 과도하게 묘사된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은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3. 수간, 동성애, 성도착 및 혼음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거나 근친상간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게임물(아케이드)

제10조(성묘사) 음란·퇴폐 행위가 과도하게 묘사된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은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2. 수간, 동성애, 성폭행 및 혼음 등의 성묘사와 성범죄 행위의 내용

① 등급분류 보류제도 및 음란성 판단

영화 등급분류 보류제도는 2001. 8. 30.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보류제도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계속 중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대법원의 정의에 의하면 “음란성”이란 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고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매체의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매체물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성에 관한 매체의 음란성 표현이 매체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관련성, 매체물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 학문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매체물을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등의 여러 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한다(1995. 6. 29. 선고 94누2558판결, 1995. 6. 16. 선고 94도2413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대적 음란성’론에 기초한 법원의 음란성 판단에 대하여는 표현물의 예술성, 사상성이 단지 하나의 판단 요소로 고려될 뿐이며, 그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헌법재판소는 “음란이라 함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운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고

려한 보다 엄격한 '음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 결정)

위 헌법재판소 판결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에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 음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동성애를 묘사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묘사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인 성표현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인지가 위에서 제시한 기준들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규정 삭제

등급분류보류제도 자체가 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는 방식으로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음란성은 규범적 개념이므로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분야별 심의기준이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동성애를 이성애와 구별하여 동성간 성행위로 대상화하고, 또한 동성간 성행위를 변태적 성행위로 유형화하여 사회통념상 어긋나는 성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편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 자체가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 아님은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 과정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과정에서 법적인 평가와 일정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 음란한 성 표현물을 규제하려는 목적은 동성애를 수간, 혼음 등의 행위와 병렬적으로 예시하여 변태성행위로 규정하는 식으로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기반 위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와 이성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표현물의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에 대한 음란성 판단을 통해서 성을 도구화하는 표현들이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라는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2-6. 언론과 방송에서의 차별

1)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실태

홍석천 씨의 커밍아웃과 하리수 씨의 등장 이후 방송과 언론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관심은 확연히 커졌다. 그러나 방송의 ‘관심’이 곧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 혹은 성적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적소수자의 존재에 아예 무

관심하던 때에 비하면 진실보한 면이 없지 않지만, 방송과 언론이 성적소수자와 관련한 내용들을 담는 것을 보면 다분히 '선정적'인 이슈로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미디 프로나 시트콤 등에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노골적으로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증) 발언을 하는 모습들이 재현되고 있다. 특히 방송이 묘사하는 성적소수자의 모습은 기존 '편견'들을 따르고 있다. 드라마에서 간간이 등장하는 동성애자의 모습은 '여성성 혹은 남성성'이 결여된 이미지다. 또한 여성동성애자의 경우 성폭력 후유증으로 동성애자가 되거나, 남성동성애자의 경우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 등으로 인해 동성애자가 되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원인설'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태도는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킨다.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논하는 시사 프로그램에서조차 성적소수자들을 소외시킨다. '전문가를 부른답시고 모두 이성애자 패널들을 불러 토론을 진행시키는가 하면, 동성애에 대한 '찬/반'을 묻는 모습 등은 아이러니다. 한편 성적소수자의 현실을 반영하겠다면 카메라를 들이대 '아웃팅'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심지어 고의적인 '아웃팅'²⁵⁾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방송과 언론이 성적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나 이해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사례

(1) 허위 기사 작성

언론은 성적소수자의 존재를 '신기한 것'으로 취급하며 선정적으로 다뤘다. 1996년 레즈비언 바를 '잠입 취재' 형식으로 다루면서, 거짓 사례를 만들어 음침한 성관계를 즐기는 곳으로 보도한 <연예영화신문>에 대해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는 '허위 기사, 왜곡 보도, 초상권 침해'의 이유를 들어 언론중재위원회에 고소했다. <연예영화신문>은 1997년 2월 지면을 통해 정정 보도문을 게재했다.²⁶⁾

25) 2000년 9월 일간스포츠는 "충격고백 난 호모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텔런트 홍석천씨를 '아웃팅'시켰다. 당시 홍석천씨는 사회적인 '커밍아웃'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일간스포츠 측이 홍씨를 '아웃팅'시키는 바람에 몹시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수많은 취재진들이 홍석천씨에게 진위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고, 홍씨는 자신이 게이임을 시인했다.

26) 끼리끼리, <한국레즈비언인권운동10년사>, <<진보평론>>, 2004. 참고.

(2) 왜곡된 정보 전달

국민일보는 2003년 4월 2일자 “[키워드] 동성애란” 기사에서, 동성애를 “의학적으로는 사람의 본능적 행동과 신진대사를 제어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상하부의 이상 등 두뇌 구조나 유전인자 같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2년 2월 8일 KBS2에서 방영된 드라마 <부부 클리닉-사랑과 전쟁> “아내의 여자 애인” 편에서는 동성애를 ‘자아적 동성애’와 ‘자아이질적 동성애’로 나누고, ‘자아적 동성애’는 동성과의 성행위에 ‘죄의식’이 없는 경우로 규정했다. 또 ‘자아이질적 동성애’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2003년 7월 1일자 “<의학> 여성 동성애, 난소기능 장애와 연관설”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미국 런던에 있는 한 메디컬 센터의 박사의 연구결과다. 동성애와 의학, 과학을 연관시키는 많은 시도가 이미 오랜 역사에 걸쳐 계속되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으며, 이 같은 시도 자체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해외의 믿지 못할 소식들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신뢰할 만한 자료’일 것이라는 위험한 믿음을 갖게 만들고 있다.

(3) 성적소수자 아웃팅

2000년 9월 일간스포츠는 “충격고백 난 호모다”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탤런트 홍석천씨를 ‘아웃팅’시켰다. 이어 2002년 1월 굿데이는 “나, 레즈비언-여자프로농구 용병 4명 충격” 제하의 기사를 통해 미국 여자프로농구 소속 선수들을 ‘아웃팅’시켰다.

고의적인 ‘아웃팅’은 아니지만 2002년 10월 25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역시 “10대 동성애의 두 얼굴” 제하의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레즈비언들을 아웃팅시켰고, 레즈비언 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켜 해당 업소와 끼리끼리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제작진은 다음 회 프로그램 후미에 자막을 띄워 사과했다.

(4) 성적소수자의 존재 희화화

KBS 2TV 개그 콘서트는 2003년 6월 22일 ‘갈갈이 삼형제’란 코너에서 일명 ‘느끼남’

으로 불리는 개그맨을 “호모”라고 칭하며 웃음의 소재로 삼았다. ‘호모’라는 단어 자체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용어인데 공영방송에서 이런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동성애자=남자답지 못한 남자’라는 편견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에서도 차별적이다. 그 외에도 드라마와 영화 등의 장르에서 동성애자, 혹은 트랜스젠더를 희화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5) 동성애의 유해성에 대해 찬반 논쟁

2004년 2월 8일 KBS <100인 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동성애, 청소년에게 유해한가’에 대한 찬반 논쟁을 벌이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부분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표결을 붙였다.

<100인 토론>은 커밍아웃 한 동성애자 홍석천 씨를 섭외하기도 했지만, 패널들 중에는 동성애자가 한 명도 없었다.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수결’은 가장 피해야 할 방식이다. 또한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한가라는 이슈는 결국 동성애자들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반에 붙일 성질의 이슈가 결코 아니다.²⁷⁾

(6) 성적소수자 인권에 대한 무관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방송 3사의 시사교양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한 결과, “6개월 간 방송3사가 방송 한 사회적 소수자 관련 시사교양프로그램의 방송 횟수는 14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성적소수자 문제는 방송3사 시사교양프로그램이 가장 도외시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²⁸⁾

(7) 차별을 정당화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

언론이 대놓고 성적소수자에 대한 호모포비아를 드러내고, 차별을 정당화시키는데 앞장서기도 한다. 이런 행태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일보는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한 이후, 2000년 10월 18일자 신문에 “동성애 확산 우려... 교회 치유 나서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어있어

27) 일다, 2004년 2월 15일, “찬반 부칠 문제가 따로 있지-KBS ‘100인 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용

28) 연합뉴스, 2004년 9월 19일, “방송3사 시사교양프로, 사회적 소수자에 무관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지의 기사다.²⁹⁾ 또 2002년 1월 16일자 굿데이 신문은 “청소년들이 동성애 개념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교사의 의견을 실었다.³⁰⁾

3) 차별 시정

(1) 언론 및 방송에 대한 성적소수자 인권 침해 관련 모니터링

언론과 방송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차별 시정에 시급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다. 먼저 언론과 방송에서 성적소수자의 인권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실태부터 파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적인 언론, 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뿐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해야 한다.

(2) 언론사, 방송사 측에 차별시정권고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언론과 방송의 성적소수자 차별실태를 공표하고, 각 언론과 방송에 차별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이러한 작업은 해당 언론사 및 방송사뿐 아니라 모든 언론과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3) 성적소수자 관련 언론보도 지침서 제작, 배포

언론과 방송이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수 있다. 성적소수자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이해시키고, 보도의 내용과 보도하는 방식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등을 지침서에 포함해 배포한다.

(4)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언론인 교육 실시

언론과 방송도 성적소수자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성적소수자를 왜곡된 모습으로 그리거나, 선정적인 이슈로 부각시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29) 국민일보, 2000년 10월 18일, “동성애 확산 우려...교회 치유 나서야”

30) 굿데이, 2002년 1월 16일, “꽃미남 스타 사이버 수난...찍히면 언어 성폭행까지”

언론과 방송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만큼 언론인에 대한 인권 교육, 특히 '성적 소수자의 이해'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다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것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언론과 방송에 대한 '차별 모니터링'과 시정권고 정도의 소극적 수준에서 대응책이 그쳐선 안 된다. 언론교육은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가족구성권

1) 현황 및 차별 실태

(1) 현황

현행 국내법엔 동성간 커플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인정해주는 조항은 전무하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금지하는 분명한 조항 역시 없다. 이는 법이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지하지 않은 탓이기도 하지만, 법이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이 드러나는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유교와 기독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탓에 동성애(자)에 대해 공적 논의를 꺼내는 것조차 싫어하는 경향도 없진 않으나, 한국이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에 대해 계속 침묵을 유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무시하기에는 이미 동성간의 결혼(이하 동성혼)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유명 연예인의 커밍아웃과 10주년을 넘긴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성애자가 존재함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사랑과 신뢰로 두 사람이 동반자 관계를 맺어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거나 직장과 사회에서 부부로 인정받으며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이자 욕구이다. 그러므로 동성애자에게도 이성애자와 같은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동안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거의 없었지만 근래 서구 국가들의 빠른 변화에 자극받아 법학자들³¹⁾과 언론, 그리고 인권운동 진영에서 관심이 기울이기 시작했다. 동성혼 합법

31) 동성혼을 연구한 법학자의 발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김민중, 「독일의 새로운 가족법상의 제도로서의 동성 사이의 생활동반자관계」, 『가족법연구』 제 15권 2호 (2001)

김태한, 「동성혼인 문제의 법률적 고찰」, 『가족법 연구』 제 13호

김민중, 「동성혼 -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입법례」, 『법조』 통권 553호 (2002)

이경희,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본 동성혼인의 법리」, 『아세아여성법학』 창간호 (1998년)

김민중, 「동성혼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비교사법』 제 9권 2호

이경희, 「동성혼인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제 3회 한국법률가대회 발표 논문 (2002)

강달천, 「동성애자 기본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2000)

이석태,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과 대책」, 『성적소수자의 인권』

조재현,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제 8권 3호

장복희, 「동성애(Same-Sex Partnerships)에 관한 국제인권법 및 비교법적 고찰」, 『성적소수자의 인권』

화는 국민정서라는 말에 기대어 시기상조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문제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

사랑으로 맺어진 동성애자 커플은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공유관계를 오랫동안 맺고 살아도 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겪는 불편함은 매우 크다. 파트너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더라도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으며, 파트너가 사망을 해도 유가족이 되지 못하며 당연히 유산상속을 비롯하여 재산분할 등도 불가하다.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세금면제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직장에서는 가족수당, 경조사로 인한 휴가 등도 없다. 또한, 입양권과 인공수정을 할 권리가 없으므로 양육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다. 한 집에서 살아온 이로서의 국민연금, 생명보험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아래에 열거된 사례들은 모두 이런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인권침해는 동성혼이 이성혼(이성간의 결혼)과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동성애자는 비정상적이고 이성애에 비해 열등하고 저급한 것이라는 편견을 조장하고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이런 까닭으로,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 인정은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평등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사례 1. 부부관계를 인정받지 못해서 받는 경제적 차별

우리는 남성 동성애자 커플로 2000년 6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까지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결혼 직후 2000년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걸어 A씨가 직장에서 불입하는 국민연금의 상속이 파트너에게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공단 측은 법적으로는 A씨가 솔로이므로 사망 후 연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였다.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으로서 파트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땀 흘려 벌은 돈으로 부어온 연금을 파트너에게 주지 못하고 국가에 몰수당해야 한다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또한, 직장에선 매달 3만원씩 배우자수당이 다른 이성애자 부부들은 수당을 받아가는데 비해 우리는 받지 못하는 것 역시 사회적 차별이다.

- 여기동, '동성애자 커플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4 토론회 발표집, 2004년

사례 2. 혼인신고 불가의 법적 차별

저희는 지난 3월 7일 동성애자들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서울 종로구 낙원동 한 카페에서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남자끼리 공개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선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남자끼리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해놓은 규정이 없다”며 찢찢매더군요. 사실 해매기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우리 둘 중 누구를 신랑으로 적고 누구를 신부로 적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궁리 끝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동사무소는 여섯 시간이나 검토한 끝에 “선량한 미풍양속에 어긋나므로 접수 불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국어사전에 나온 뜻 그대로 ‘국민이 의무적으로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보고하는 일’이지 ‘허가’가 아니므로, 저희는 나라에 ‘결혼했음’을 알린 ‘정식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권단체, 동성애단체 등의 도움을 얻어 동성혼인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등에 정식으로 제기할 계획입니다

- 세계일보, 2004년5월20일, [마이너리티 리포트] "사랑도 결혼도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어요"

사례 3. 사실혼 관계 인정을 못 받는 차별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42세의 레즈비언으로, 상대 여성과 20여 년간 여느 이성애자 부부와 다를 바 없이 함께 생활해 왔고 재산을 함께 모으고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대가 휘두르는 폭력으로 인해 관계 해소를 원했으며, 이에 따라 파트너 여성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이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인의 상황과 구체적인 요구들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며, 동성간의 동거관계는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했을 뿐이다. 재판부는 그들의 이성애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를 방치하는 결과마저 낳은 것이다.

- 일다, 2004년8월2일자, ‘법원이 동성애자 차별과 폭력 조장하나’

사례 4. 위급시 의료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차별

20대 중반의 레즈비언 커플인 A씨는 늦은 밤에 파트너 B씨가 갑작스런 출혈을 일으

켜 급히 응급실로 갔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이 보호자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해 가족들은 모두 지방에 살아 지금 올 수 없다고 하자, 병원에서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보호자가 되려면 100만원의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가난한 살림이었던 탓에 밤중에 100만원을 구할 수 없었던 A 씨는 하는 수없이 멀리 사는 B씨의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A씨는 다행히 B씨의 병이 크지 않아서 친언니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지만, 만약 상태가 위중하기라도 했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견디기 힘들었을 거라고 말했다. 돈이 아주 많거나 친가족 가까이에 항상 붙어살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거냐고 하소연했다.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상담 자료 중, 2003년 12월

사례 5. 비자 발급 및 해외 거주자로서의 차별

5년째 동성 연인과 함께 동거중인 레즈비언 P씨(30대 초반)는 2003년에 미국지사로 발령을 받았다. 파트너 M씨는 떨어져 지내지 않기 위해 한국에서의 직장까지 정리하고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이성애자 부부와는 달리 법적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고 취업은 불법이라 할 수 없었다. 미국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학교를 다녀 학생 자격을 유지해야 해 한국에서는 필요 없는 학비 지출까지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결국 1년 뒤 M씨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상담 자료 중 2005년 2월

사례 6. 경조사 휴가신청을 할 수 없는 차별

나는 레즈비언이다. 그녀와 동거를 시작한 지 3년이 넘었다. 그런데 어제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함께 내려가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장지까지 따라 가고 싶지만, 회사에 경조사 특별휴가를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이성애자라면 사실혼 관계에도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녀를 친구라고밖에 소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전국인권활동가대회 <반차별 포럼-노동과 차별> 자료집, 2004년 8월

2) 쟁점 정리

(1) 현행 법리상의 쟁점

① 헌법 - 제 36조 1항의 해석 여부

혼인과 가족에 대해 헌법 제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법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양성(兩性)의 평등’이란 부분이다.

헌법이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다는 쪽에서는 ‘양성’은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며 이는 혼인이란 이성간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간의 결합이라고 기술하지는 않았다고 하나 이는 명확히 이성간의 결합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1997년에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판례가 그 근거가 된다.³²⁾

하지만, 헌법이 동성혼을 원칙적으로 배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쪽에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라고 서술한 전체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³⁾ 만약 그렇지 않다면,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란 규정과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에 위배된다고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³⁴⁾

이러한 헌법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외국에서도 있어왔다. 예를 들어, 지난 2000년 11월에 동성애자에게도 이성간 결혼과 유사한 법적 권리를 인정한 독일의 경우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보장한 기본법(Grundgesetz: 독일의 헌법) 제 2조 1항에 의거해 법을 만들었다.³⁵⁾ 동성애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미

32) 조재현,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제 8권 제 3호.

33) 이은우 변호사는 2004년 6월 25일에 열린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4 토론회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가능한가’란 자리에서 성적소수자의 결혼은 현행법상으로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동성혼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34) 박선영 법학박사는 『시민과변호사』에 게재한 「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가족형성의 원리」라는 글에서 헌법 36조 1항이 남녀간의 결합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곧 동성 커플의 친밀함이 법적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즉, 헌법 제 10조의 개인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되는 자기결정권으로부터 성적자기결정권과 동성애자의 가족형성의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성애자 커플의 법률혼만을 인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의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의 마가렛 마샬 대법관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본 오랜 정의는 개인들에게서 법률적·개인적·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습인 결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박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³⁶⁾ 그러므로, 헌법 36조 1항의 해석 역시 ‘양성’이 곧 ‘남성과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헌법이 목적하는 보다 근본적인 존엄성 존중과 기본권 보장 정신에 맞추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② 민법 - 혼인과 가족의 정의

민법은 혼인과 관련하여 제807조에서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혼인의 효과를 기술함에 있어서 여러 곳에서 부부(夫婦)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민법 역시 ‘남녀간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동성혼은 불가하다고 주장과 민법은 헌법의 하위규범이므로 헌법의 해석원리에 맞게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부부라는 표현 때문에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³⁷⁾

또한, 민법 제 812조에 의해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호적법이 정한 혼인신고 조항 상으로만 볼 때는 ‘당사자’란 표현만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동성애자가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지 못할 사유는 없다³⁸⁾고 볼 수

35) 조재현,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제 8권 제 3호에서 재인용
이 논문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동성혼을 반대하는 이들과 동성애자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에 의한 보호는 받아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한다.

36) 주간한국, ‘男 + 女 = 결혼’ 관념 깨지다’ 2003년 11월 25일자 기사 중에서

37) 이은우, 「동성애자의 결혼과 가정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나?」,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가능한가』,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4 토론회 자료집

38) 호적법 제 76조의 혼인신고 기재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적법 제76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①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0·12·31, 98·6·3]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4. 처가에 입적할 혼인인 때에는 그 사실
5. 당사자가 초혼 아닌 때에는 직전의 혼인이 해소된 연월일

있다. 여기에 대해 동성애 관계는 민법 제103조³⁹⁾에 명시된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동성끼리 공동생활을 꾸리기로 약속한 것을 선량한 풍속을 해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어도 사실혼 관계와 유사한 법적 보호를 동성애 관계에 하더라도 민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⁴⁰⁾

이외 민법 제 7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인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는 조항 역시 문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동성애자 커플은 아무리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가족으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민법 제779조가 호주만을 중심으로 가족을 정의하며 혼인에 의한 배우자만을 인정하는 점 등은 가족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현재 779조를 삭제한 민법개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③ 입양법 - 양친이 될 자격

민법 제 866조에 의하면 성년자이면 누구나 양친이 될 자격이 있다. 또한 민법 874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으로만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아 배우자가 없어도 입양이 가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타인을 부양할 능력을 갖춘 동성애자가 입양하는 것은 법률적 조항만으로 보았을 때는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 2조 3호에 '혼인중일 것'이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동성혼이 인정된다면 입양도 가능해지겠지만 만약 이성혼과 유사한 권리를 주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해결책을 쓰게 된다면

6. 당사자가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닌 때에는 그 사실

7. 여호주가 폐가하고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②제19조의2제1항의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외에 신분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당사자의 일방이 혼가로부터 다시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친가의 호주의 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본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39) 민법 총칙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0) 이와 같은 입장은 다음의 두 논문에서 볼 수 있다.

이경희, 「동성혼인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세계화시대의 법·법률가, 한국법학교수회 2002.10, 490면 주 112 / 김민중, 「동성애관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시론적 검토」, 『인권과 정의』 2004년 5월

입양의 허용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로 남을 것이다.

(2) 동성혼 합법화 찬반 쟁점

동성간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성개방, 혼인의 개념 변화, 개혁이냐 전통 고수냐는 점 등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변화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인권 존중을 가장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전통적 혼인의 파괴됨에 따라 사회적 혼란과 성적 타락이 가중될 것이라고 염려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즉,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의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가 아니면 사회의 무게 중심을 잡는 버팀목인가라는 양측의 격렬한 논쟁은 피하기 어려운 숙제다. 이 자리에선 서구에서 진행된 찬반 주장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앞으로 한국에서 일게 될 논쟁을 미리 살펴보겠다.

① 합법화 반대론자들의 주장

첫째, 결혼은 전통적으로 남녀간의 결합을 의미하며 신의 뜻에 따라 가족을 이루는 신성한 제도다. 동성 결혼을 허용하면 이런 가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둘째, 동성애자들에게만 국한되는 특별법을 만들면 법의 보편성에 어긋난다.

셋째, 남녀의 결합만이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므로 동성 결혼 허용은 결혼과 생식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넷째, 동성 결혼을 인정하면 입양, 인공수정, 친족관계까지 인정해야 하므로 안 되며, 동성애자에게 양육되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안 된다.

다섯째, 동성애자는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국가는 이런 차원에서 이들이 비합리적일만큼의 차별을 당하지 않는 차원에서의 사회적 배려를 해야지 비정상적인 삶을 합법화시켜서는 안 된다.

② 합법화 찬성론자들의 주장

첫째, 사회적 기본 단위로서의 가족과 결혼의 중요성을 내세우는 것으로는 현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가족과 관계의 질서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중의 하나가 동성 결혼 합법화이다.

둘째,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므로 만민에게 평등해야 하는 법의 보편성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다.

셋째, 어차피 모든 남녀도 오로지 생식을 목적으로 결혼하지 않는데 유독 동성애자에게만 생식을 이유로 안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의 중요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넷째, 이미 많은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으며 양육 환경에서 동성 커플 부모와 이성 커플 부모 간에 차이가 없음이 밝혀져 있다.⁴¹⁾

다섯째, 동성애를 비정상, 범죄 또는 정신적 심리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편견이다. 오히려 동성 결혼 합법화를 통해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편견과 무지, 차별 등을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찬반 쟁점 비교 분석

서양에서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동양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이 동성간 결혼을 반대하는 가장 흔한 이유로 등장하곤 한다. 하지만, 종교적 가치관이 사회적 제도나 법의 형평성 여부까지 관여해서는 안 된다. 가령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볼 때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 기독교외의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는 것은 차별과 억압 이상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은 정당한 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동성애가 비도덕적이고 동성애자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므로 이들의 권리 문제를 소수집단의 인권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별한 법적 장치를 통해 법적 권리나 지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⁴²⁾ 그러나, 동성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자체가 이미 편견에 기초한 차별적 행위이므로 당장은 이러한 입장이 우세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결

41) 2002년 5월 28일, 미국정신분석협회(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 APsaA)는 동성애자 입양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APsaA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91회 연례회의에서 임신과 아이의 양육, 입양·보호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부모의 성적지향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최선의 관심이라는 사실에 동의했다. APsaA의 회장인 의학박사 뉴웰 피셔(Newell Fisher)는 동성애자 부모들의 아이에 대한 보호권과 성적성향을 이유로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가 부정되는 사례를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APsaA는 이런 차별에 개탄하며, 특히 심리학적 연구결과들이 왜곡되고, 잘못 해석되며, 노골적으로 무시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1911년에 설립된 APsaA는 정신분석학자들의 단체 중 미국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 APsaA는 지난해 동성애자의 입양 제한 철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1998년에는 동성 커플의 혼인 합법화를 촉구한 바 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토픽뉴스 2002년 5월 31일자)

42) 박영주, 「동성애에 대한 법적 태도」

국은 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오랫동안 결혼은 정의상 남녀의 결합이었으므로 이제 와 바꿀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이 역시 명백한 오류이다. 오히려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 이성간 결합과 동등한 동성간 결합의 예가 존재해 왔다. 또한, 남녀의 결합만이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혼을 동성애자에게 개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빈약한 논리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생식은 결혼의 전제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남녀가 생식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정부가 생식능력을 기혼자가 될 자격으로 삼아 법으로 제한하지도 않는다. 이성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동성애자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다.

결혼을 동성 커플에게까지 확대하면 결혼의 의미가 근간부터 흔들리게 된다는 우려도 높지만 이 역시 한낱 기우일 뿐이다.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합법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 인종간 결혼을 반대하던 이들이 내세우던 주장이 바로 ‘인종간 결혼을 인정하면 결혼 제도가 몰락한다’였다. 하지만, 이제와 그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렬한 인종차별 주의자를 빼놓고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⁴³⁾

역사적으로 볼 때도 신분과 계급, 국적 그리고 동성동본 등 사회적 금기를 뛰어넘으며 결혼제도는 개인의 인격 존중, 행복 추구, 사회 공동체 형성을 쫓아 변화되어 왔다. 동성애자의 결혼도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 즉, 동성애자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기존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동성애자 상호간의 부양과 책임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공동체 형성을 보장하는 것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혼인/가족제도의 기초에도 아무런 변경은 없다는 것이다.⁴⁴⁾ 실제로 스페인 정부는 지난 2004년 12월 30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결혼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권리다. 이는 특권으로 간주될 수 없다. 동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이 근절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⁴⁵⁾

입양의 경우에도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싱글 또는 커플로서) 동성애자의 입양을 허용

43) 1905년 이래로 캘리포니아에는 백인이 다른 인종과 피를 섞는 ‘인종혼합’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고, 버지니아 주는 1967년까지 흑인과 백인사이의 결혼을 금지했으며, 캐롤라이나 남부 주에서는 1895년에 만들어진 ‘백인과 흑인, 혹은, 백인과 혼혈인종, 백인과 흑인의 피가 8분의 1 이상이 흐르는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이 1998년에 마침내 삭제되었다. 이런 법들은 당시로선 진지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웃음거리일 뿐이다.

44) 조현재, 「동성애에 대한 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제8권 3호에서 재인용

45) 연합뉴스, 2004년 12월 31일, ‘스페인 정부,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승인’

하고 있다. 2003년에 미국의 국가입양센터(NAC)가 뽑은 '올해의 가족'으로 동성애자 남성이 3명의 남자 아이를 입양해 꾸린 가정이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2002년 9월 게이·레즈비언 커플에게도 자녀 입양을 허용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같은 성별을 가진 부부도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아이들을 통한 안정감과 부양의 즐거움, 사랑을 느낄 권리가 있다"고 입양 허용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동성애자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으며 동성애자 부모를 둔 아이는 성역할이나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것이란 건 편견에 불과하다. 46)

3) 외국의 동향과 동성 결혼 인정의 법률적 태도 분석

(1) 가족구성권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근래 동성애자 부부에게 법적인 권리를 인정하지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 2000년 3월 15일, 유럽연합(EU)의회는 동성 부부에게도 이성 부부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도록 15개 회원국에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⁴⁷⁾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결혼 가정이나 미혼 부부, 동성애 부부에게 세제와 재산상의 권리, 사회적 권리 등에서 전통적인 부부나 가정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은 아래 자세한 내용을 실은 7개 국가를 제외하고도 벨기에, 포르투갈, 헝가리,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등 다수의 국가가 동성애자 커플의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있어, 머지않아 유럽 전반에 걸쳐 네덜란드와 같이 동성애자 커플간의 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가장 진보적이라는 유럽 지역 외에도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 주뿐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 역시 2003년 7월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률을 발

46) 미국 내 5만5천여 명의 소아과 의사들을 대변하는 미국소아과학회(AAP)는 2002년 2월 4일 게이 또는 레즈비언 부부 쌍방에 대해 입양된 아이의 부모로서 법적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을 지지할 것을 회원들에게 권고했다. AAP는 성명을 통해 게이나 레즈비언 부부 가운데 한명에게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아이는 "법적으로 인정된 두 사람의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AAP는 "모든 어린이와 가족들이 법적으로 인정된 양 부모를 갖게 됨으로써 비롯되는 재정적, 심리적, 법적 안전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소아과 의사들이 지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권고는 동성부부의 아이들이 이성 부부의 아이들에 비해 발육상 뒤지지 않는다는 풍부한 증거에 따른 것이라고 AAP는 설명했다. AAP는 또 이성 부부의 권리를 동성 부부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린이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2년 2월 5일, '미 소아학회 동성부부 입양권 부여 촉구)

47) 이 결의안의 원본과 번역본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다.

표하였다. 또한 2003년 11월엔 아시아 국가로선 처음 대만 정부가 동성애자의 결합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기본법 초안⁴⁸⁾을 발표했으며, 2004년 3월 4일엔 브라질의 리우그란데두술주 주법원이 동성 커플간 결합을 합법화시키라고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 뉴질랜드와 스페인은 정부가 주도하여 현재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이며 칠레에서도 의회가 법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국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동성혼이 인정되기까지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네덜란드

1998년 1월부터 ‘동반자 등록법 National Registered Partnership’⁴⁹⁾에 따라 동성애자 커플도 법적 지위와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이 법은 2인의 이성도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상원의회는 인종이나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결혼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동등함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현을 위해 마침내 2000년 12월 혼인제도개방법(Act Opening the Institute of Marriage)을 승인하였다. 2001년 4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2명의 여성이나 2명의 남성끼리의 결혼을 전통적 의미의 결혼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으로, 동성애자들은 시청에서 혼인식을 할 수 있으며 자국 내에서 아이를 입양할 수 있고 또한 법적으로 이혼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동반자’ 관계로 등록된 커플들은 그것을 ‘혼인’으로 변경시킬 수도 있다.

네덜란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1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6개월 동안 1,902쌍(레즈비언 커플 849쌍, 게이 커플 1,053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했으며 이는 전체 결혼의 3.6%에 해당한다고 한다.

② 독일

2001년 8월 1일자로 동성간 ‘동반자 등록법 The Registered Partnership’이 효력을 받

48) 대만의 인권보장법 제24조(동성애자권의 보장)에는 ‘ 국가는 동성애자의 권익을 존중하여야 한다. 동성애자는 법에 의해서 가정을 구성하고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또 법 규정 제안에 대한 설명에서 세계 각국에서 동성애자 관념이 승인되고 있으며,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49) 이 글에서는 ‘Partnership’을 모두 동반자로 번역하였다. 현재 외국의 동성애자의 결혼에 관해 서술하는 논문이나 기사마다 번역이 제각기 다른 형편인데, 파트너십 또는 동반자 또는 결혼이란 단어가 혼용되고 있다.

생해 동성애자의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되었다. 제한된 형태의 혼인을 승인하는 이 법은 이성간 부부와 마찬가지로 공동의 성 사용권, 상호간의 부양 의무, 상속권, 파트너에게 불리한 증언거부권을 비롯하여 거주 혜택과 의료보험, 양육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외국인 동성 파트너에게 독일 영주권이 부여되며 이들 사이에서 양육되는 아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호권이 주어진다. 또한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에 대한 '등기'의 말소도 가능하다.⁵⁰⁾ 하지만, 이성 간에는 등기소에서 결혼 신고를 하지만 동성간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는 점에서 차이가 나며 또한 교회에서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⁵¹⁾ 또한, 실업 상태의 파트너를 부양할 의무와 상속세 등의 세금감면, 공무원법상에 명기된 기혼자의 권리와 입양권 등은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차별은 남아있다. 그나마 이마저도 보수적 성향의 일부 주 정부에 의해 위헌 소송에 휘말렸는데 2002년 7월 17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동성 간에도 결혼할 권리를 주는 것이 헌법상의 혼인과 가정에 대한 특별보호 조항에 위배되

50) 조재현 법학박사의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이란 논문에 독일의 이 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그 글에 언급된 조항을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단, 원문에는 '동성애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자칫 오해의 여지가 생길수도 있어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파트너십 관계'로 바꾸어 정리하였다.

1. 같은 성을 가진 두 사람은 관할관청에 상호간에 평생 파트너로서 생활관계를 위한 신고를 함으로써 파트너십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기혼자, 이미 다른 사람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 자, 상호간에 친척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는 신고할 수 없다.
2.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자는 한쪽의 성을 공동의 이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상호간에 부양의 의무를 가진다. 부양의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파트너십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상호간에 정할 수 있으며, 재산관계를 상호평등하게 할 것을 합의하거나 또는 계약에 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 한 사람이 자녀에 대하여 부양이나 보호의무가 있는 경우 그의 파트너는 그와 일치하여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한 공동결정의 권한을 가진다.
5.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상속권이 있다.
6. 별거를 할 경우 수익이나 재산상태에 따라 적절한 부양을 청구하거나, 가재도구의 분할, 주거의 사용이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다.
7. 1인이나 두 사람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계가 해소된다. 해소 후에 그들 중 1인이 연령, 질병 또는 기타 장애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게 된 경우 그 동안의 생활관계에 따라서 적절한 부양을 청구할 수 있다.
8. 공동의 생활을 위하여 두 사람이 함께 혹은 단독으로 맺은 임대계약은 1인의 사망 후에도 임대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51) 이것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더라도 교회에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③ 덴마크

세계 최초로 동성 커플의 법적 관계를 인정하는 ‘동반자 등록법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을 제정하였다. 1989년 6월 7일에 의회를 통과하여 그 해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법률 조항은 기존 혼인법률과 거의 유사하게 짜여져 있으나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교회에서의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점과 최근 2년 동안 덴마크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는 점, 그리고 혼인증명서(marriage license)가 아닌 파트너십증명서(partnership certificate)가 발급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2000년도에 다른 국가와의 마찰이 생길 수 있는 해외 입양만을 제외하고 동성애자 부부에게도 아동양육권을 허용해 이성간 결혼과 거의 유사한 단계까지 접근하였다.

④ 미국

1993년 하와이에서 3쌍의 게이 부부가 낸 결혼권 인정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후 하와이 주는 1997년에 ‘가정적 동반자 등록법 (Domestic Partnership Registration)’를 도입, 동성 커플을 비롯하여 성인 두 사람은 누구나 상호우호관계를 등록하여 권리와 의무를 나눌 수 있는 호혜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 법은 사업장이나 지방정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같은 하와이 주 내에서라도 다니는 직장이나 거주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다, 2000년 4월에 이르러 버몬트 주 의회가 시민연대법(The Act to Civil Union)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결혼(Marriage)이란 단어만을 쓰지 않을 뿐 이성간의 혼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로지 동성애자 커플에게만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어 캘리포니아 주와 매사추세츠 주에서 시민연대법과 유사한 내용의 동성애자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법을 만들었으며, 급기야 2004년 2월 4일엔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이 이성애자 커플과 똑같이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결혼(marriage)을 허용해야만 헌법의 정신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것이라며 동성애자에게도 이성애자 커플과 똑같은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는 일대 사건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미국은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동성간 동반자 등록법'을 만든 국가로 흔히 일컬어지지만, 비록 혼인에 버금가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동성애자의 공동생활'을 인정하는 법률은 이미 1987년에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1973년엔 국회에 설치된 민사법 심의 위원회에서 동성애 관계는 사회적으로 수용해야 할 하나의 공동생활형태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진보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⁵²⁾ 1994년 6월 23일 '동반자 등록법'이 제정되어 9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또한, 2002년 6월에는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되어 2003년부터 시행중이다. 이 법에 따라 스웨덴의 동성애자들은 국내외 입양이 가능하고 병원에서 인공수정도 받을 수 있다.

⑥ 스위스

취리히 주가 가장 먼저 동성간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2002년 9월 전통적인 기혼자들(남녀 커플)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동성 커플에게도 확장하는 사안이 주민투표에 붙여졌고 압도적 찬성으로 권리안이 승인되었다. 찬성이 63% 반대가 37%였으며, 투표의 결과에 따라 취리히 주의 동성 커플은 동반자 등록을 통해 이성 커플과 동등한 세제혜택을 비롯해 상속과 사회보장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독일 법안을 모델로 삼았는데 외국인 파트너의 체류권, 건강, 질병 등을 이유로 한 방문권, 상속권, 증언거부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동성 커플이 취리히 주에 거주해야 하는 것과 6개월 이상 가정을 꾸리고 살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고 입양권은 없다.⁵³⁾

스위스에서는 취리히와 제네바 주 두 군데에서만 시행되다가 지난 2004년 6월 10일에 스위스 연방의회가 동성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채택함으로써 스위스 전역의 동성 커플들도 이성 커플과 동일하게 연금이나 유산의 상속, 세제상의 우대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⑦ 영국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영국은 동성혼에 대한 인정이 느린 편이다. 2001년에야 처음

52) 김민중, 「동성혼 - 스칸디나비아국가의 입법례」, 『법조』 2002년 10월

53) Zurich voters approve gay marriage rights

<http://www.planetout.com/pno/news/article.html?date=2002/09/23/4>

으로 런던시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적 차원에서 동성 커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결혼식과 유사한 의식을 치를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겨우 시행했다. 일명 '런던 동반자 등록(London Partnerships Register)'란 이름의 이 법은 동성 커플이 일정 수수료(85 파운드)를 내면 수요일과 토요일에 GLA 본청(Greater London Authority; 런던 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고,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근래 유럽 각국의 변화에 고무 받은 영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법을 제정하는데 나서, 2004년 3월 31일 동성애 커플에게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Civil Partnership Bill'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성 커플은 거주지 관할 관공서에 '동반자'로 등록을 함으로써 자녀양육, 재산상속, 의료 및 연금 혜택 등에서 이성 부부에 준하는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 등록을 위해서는 2명의 증인과 함께 관공서에 나와 등록담당 관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 서약서와 유사한 '동반자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혼을 할 때에도 보통 부부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중재를 거친 뒤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녀 양육비, 위자료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보수 세력의 반발을 우려, 결혼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헌신적인 관계를 갖기로 계약한 모든 커플은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한을 누린다"고 규정했다.⁵⁴⁾

⑧ 캐나다

캐나다 역시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외에 다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평생 동안의 자발적 결합이다." 라는 법 조항을 가진 나라였다. 하지만, 2003년 6월 10일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에서 혼인을 이성간의 결합으로 한정된 현재의 연방정부 규정은 위헌이며 이를 근거로 온타리오 주 지방자치단체는 동성간의 혼인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즉시 동성간 혼인신고를 접수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곧 연방정부에서 그 판결을 받아들여 각료회의에서 연방법을 수정하기로 2003년 7월 결의했고, 2004년 12월엔 대법원이 정부의 의결을 승인해 이제 2005년 2월 의회의 최종 의결만 통과하면 네덜란드, 벨기에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동성애자의 결혼을 이성애자와 동등하게 합법화한 나라가 될 예정이다.

캐나다는 이미 2년 이상 동거 관계의 동성 커플에 대해서는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을 주고, 상대가 외국인일 경우 이민이 가능한 동성간 파트너십 보호 법률이 있었으나, 연방정부는 혼인의 규정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부분

54) 연합뉴스, 2004년3월31일, '英 정부,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

을 '두 사람'으로 고쳐 두 남자 혹은 두 여자 사이의 혼인까지도 합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혼인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연방정부 소관이지만 혼인신고의 접수, 증명서 발급 등은 주정부가 주관한다. 따라서 주마다 약간의 절차상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당사자 두 사람이 판사 앞에서 서약하고, 두 사람과 판사가 서약서에 각각 서명한 뒤 이를 시청 등에 제출하는 것으로 혼인신고가 끝난다. 어느 주에도 신고인의 거주지(국적) 제한은 없다.

⑨ 프랑스

동성 결혼 합법화란 다소 골치 아픈 문제를 풀기위해 프랑스가 선택한 것은 '민간결합계약' 55) *Pacte Civil de Solidarite*, (이하 PACS)'이다. 1999년에 제정된 이 법의 특징은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 커플(단, 기혼자이거나 근친간은 안됨)에게 기혼자와 동등한 재정적, 사회적 권리를 상당 부분 주는 것이다. PACS는 거주지 관할 법원서기에 등록을 하면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임대차 권리 상속, 사회보장과 파트너의 경조사 등에 의한 유급 휴가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PACS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그동안 PACS가 결혼한 남녀 중심으로만 묶였던 가족의 경계를 확대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해석이다. 왜냐하면, PACS 커플에게는 입양권과 인공수정을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성애자에겐 결혼과 PACS 두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지만 동성애자는 여전히 결혼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PACS는 결혼을 할 수 없는 동성애자와 결혼은 하기 싫은 이성애자 커플들을 위한 법인 것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원래 법 제정 취지와는 달리 이성애자들이 훨씬 더 많이 이 법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률적 태도 분석

제3회 한국법률가대회(2002년)에서 연세대학교 이경희 법학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성혼인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 실현과 차별 철폐라는 점에서 국가가 동성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는 차

55) *Pacte Civil de Solidarite* 에 대한 번역 역시 시민연대협약, 민간유대협약, 민간결합계약 등 다양한 표현이 쓰이고 있다. 통상 '시민연대협약' 이라는 표현이 언론에서는 더 흔히 쓰이고 있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의미가 보다 분명히 드러나는 '민간결합계약'을 선택하였다.

원도 있지만, 한국이 변화하지 않으려 해도 서구를 중심으로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언젠가는 외국에서 결혼한 동성애자 부부가 우리나라로 들어와 관계의 효력을 주장할 때 그것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⁵⁶⁾ 그러므로, 동성혼에 대해 어떤 법적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부터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성애자 커플의 파트너십이 합법화되는 계기로 나누어보면 스페인이나 영국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 독일처럼 의회가 법안을 상정하는 경우,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처럼 법원이 동성혼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법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외, 합법화하는 범위와 수준에 따라 (i) 동성애적 생활관계가 관련되는 개별적인 법률에 동성애자를 고려한 입법을 하는 경우, (ii)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근거하여 채권법적으로 동반자(파트너) 계약을 통하여 규율하는 경우, (iii) 독자적인 효력을 가진 등록된 동성애적 생활관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iv) 혼인에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등록된 동성애적 생활관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v) 동성애적 부부에 대하여도 혼인 제도를 개방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⁵⁷⁾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를 살펴보는 차원에서 이미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시행중인 법안들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첫째는 개별적으로 배우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방식의 '가정적 동반자 관계'(Domestic Partnership), 둘째는 동성간에만 혼인과 유사한 권리를 주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의 미국 버몬트 주의 민간결합법(Civil Union), 셋째는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모든 커플에게 적용되는 방식의 프랑스의 민간결합계약법(PACS), 넷째로는 네덜란드와 같이 동성간도 혼인이 가능하다고 아예 민법을 수정하는 혼인제도 개방이다.

① '가정적 동반자 Domestic Partnership'과의 비교

동성 커플간의 파트너십을 인정해주는 법의 제정은 1993년 미국 하와이 주 최고재판소가 동성혼의 금지는 하와이 주 헌법의 평등보호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에서 시작한다. 이 판결로 인해 미국 내에 동성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었고 이 탓에 오히려 1996년 9월 21일, 소위 혼인보호법(Federal Defence of Marriage

56) 이경희, 「同性婚姻(Same-Sex Marriage)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제3회 한국법률가대회 발표논문, 2002년 11월

57) 김민중, 「동성애관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이론적 검토」, 『인권과정의』 5월호

Act)⁵⁸⁾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하와이 주는 최고재판소의 판결 정신을 살리기 위해 1997년 7월에 호혜법(Reciprocal Beneficiaries Act)을 제정하였다. 이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캘리포니아 주, 워싱턴 주, 위스콘신 주, 코네티컷 주, 오레곤주, 뉴멕시코 주, 뉴욕 주, 메인 주, 매사추세츠 주, 로드아일랜드 주, 뉴저지 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⁵⁹⁾

'가정적 동반자 관계 Domestic Partnership'란 결혼(Marriage)이나 민간결합법(Civil Union)등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함께 기거하며 일상적 가정생활을 함께 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결혼과 유사한 관계를 맺으며 오랜 기간 동거(최소한 6개월 이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결혼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의료보험이나 병가 등과 관련한 혜택을 준다. 반드시 동성 간에만 적용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성 간에도 파트너 등록이 가능하나 명백히 동성애자 커플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적 동반자 관계 Domestic Partnership'을 인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미혼)의 파트너에게 기혼자에게 주는 것과 같은 특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과 시 당국에 등록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자신이 어느 직장에 다니고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차이 날 수 있다. 가령 '가정적 동반자 Domestic Partnership'을 인정하는 10개의 기업이 있다고 해도 각각의 기업마다 직원에게 보장하는 혜택의 가짓수가 다를 수 있다.⁶⁰⁾

'가정적 동반자 관계 Domestic Partnership'은 이성간과 동성간 모두에게 적용되며 법

58) Marriage는 오로지 남녀 사이에만 성립하며, 어떤 한 주에서 설사 동성 커플을 부부로 인정한다고 해도 다른 주에서는 그 인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연방정부의 사회보장이나 소득세 공제 혜택 등은 받을 수 없음을 정한 법이다.

59)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법률상으로는 Domestic Partnership의 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나, 1992년 7월 주지사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州 교도소나 병원에 방문이나 조문출장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오레곤주, 워싱턴 주, 뉴요크주, 코네티컷주에서는 주정부의 고용인들에게 domestic partner로서의 혜택은 부여하고 있으나 등록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이경희, 동성혼인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재인용)

60) 한 동성애자가 파트너십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 -예를 들어 IBM- 에 다닐 경우, 그 동성애자의 배우자는 IBM이 이성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를 다닐 때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결국 혜택이란 각각의 사업체나 지방정부가 동성간 파트너십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극단적인 경우,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A병원에서는 면회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B병원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적 보호와 혜택, 강제력 등이 약하다는 면에서 민간결합법(Civil Union)과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동성 커플에게도 법적 권리와 혜택을 줘야 한다는 평등 개념을 뿌리내리게 한 촉매제였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1999년 10월 2일 '가정적 동반자 관계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법 역시 동성커플로 등록을 하더라도 이들 사이의 재산관계 등의 내부적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성커플에게 혼인에 준한 권리나 혜택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을 유효한 것으로 보거나 승인한다는 규정을 가족법에 추가한다'는 주민발의안이 찬성 59.3%로 가결되면서 주정부는 다시 2001년 10월에 버몬트 주의 민간결합법(Civil Union)을 본 따 결혼과 거의 유사한 권리를 주는 가족보호법(The California Family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자녀의 감호 및 방문권 보장, 실업보험과 건강보험 등을 동성커플에게도 부여한다.

② 민간결합법(Civil Union)과의 비교

민간결합법⁶¹⁾(Civil Union)은 모든 영역에서 남녀간의 결혼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법이다. 이것은 버몬트 주에 사는 3쌍의 동성애자 커플이 혼인증명서 발급을 요구했다 거부당한 사건⁶²⁾을 계기로 소송이 벌어지자, 1999년 버몬트 주의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이에 주 의회에서

61) CIVIL UNION 역시 시민연대법, 시민결합법, 민간연대법, 민간결합법, 시민유대법 등 많은 번역어가 혼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중 민간결합법으로 표기하였다.

62) 정유선, 「Cohabitation에 관한 법리와 Same Sex Couple에 대한 법적 문제점의 고찰」이란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본문을 부분 발췌해 옮기면 다음과 같다.

'4년에서 25년에 걸치는 기간동안 동거를 했으며 아이까지 함께 기르며 살아 온 3쌍의 남성 동성애자 커플이 혼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거주지의 관청을 방문해 접수를 했으나 모두 주의 혼인법 요건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환되었다. 이들은 각각 Vermont주와 town of Milton과 town of Shelburne, South Burlington 시 등을 상대로 하여 혼인 허가의 거부하는 주의 혼인법과 버몬트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Vermont주와 town of Shelburne, South Burlington시는 원고가 구체 수단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의 각하를 주장하였지만, town of Milton은 원고의 소장에 답변한 후 차후 법원의 판결을 구하였다. 원심은 혼인법을 동성 커플의 혼인허가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혼인법은 출산과 양육의 결합을 촉진시키려는 주의 이익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헌법에도 부합한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다시 항소하였고 대법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얻었다.

적절한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2000년도에 민간결합법(The Act to Civil Union)을 제정하게 되었다.⁶³⁾

법안의 내용은 18세 이상⁶⁴⁾, 의사능력이 있으며 혈육 관계가 아닌 동성애자라면 해당 행정 사무원에게 결합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나 성직자 등의 증명을 얻어 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법률이 정한 이성간의 결혼과 거의 유사한 권리와 보호, 그리고 의무를 지게 되는데 '가족'이나 '직계가족' '혈족' 등에 부여되는 모든 법적 권리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⁶⁵⁾ 이 법은 일반 사기업에도 적용되므로 기업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버몬트 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버몬트 주를 방문해 '결합'을 할 수는 있으나 버몬트 주에서 인정받은 지위를 다른 주에서도 보장해 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⁶⁶⁾

동성결혼의 합법화란 주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온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이성간 결혼과 동등하게 '동성결혼'을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동성커플에게 새로운 법적 관계를 허락할 것인가에 있다. 네덜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결혼과 유사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상으론 결혼에 비해선 열등한 제도를 신설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⁶⁷⁾ 동성애자도 결혼할 수 있다고 간단히 법조항 하나를 조

63) 2000년 4월 26일에 제정되었고 그해 7월 1일을 기해 법적 효력을 발생하였다.

64) 결혼은 16세부터 가능하다.

65) 정유선, 「Cohabitation에 관한 법리와 Same Sex Couple에 대한 법적 문제점의 고찰」 재인용.

1. 배우자가 의사무능력이 되었을 때 보호자로 되며 그를 위한 의료상의 결정권한을 지니며 배우자가 아픈 경우, 휴직할 수 있고 병원을 방문할 수 있다. 2.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면 자동적으로 가족 의료 보험 정책의 수혜자와 상속인의 권리를 지닌다. 3.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4. 친권을 보유할 수 있고 이혼할 수 있는 권리와 이혼 시 재산의 분배와子の 양육과 부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66) 뉴욕 주의 경우 다른 주가 인정하는 동성 커플 관계는 뉴욕 주도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특별히 인정에 대한 입장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주 경계선을 넘어서면서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쉽게 말해, 버몬트 주에서 결혼한 이성 커플은 유타 주를 가든 조지아 주를 가든 여전히 부부지만 버몬트 주에서 결합한 동성 커플은 유타 주에 가면 남남 관계가 된다. 그러므로 만약 여행 중에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거나 질환에 걸린다해도 동성 커플은 가족으로서 보호자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67) 제정 국가와 제정 연도는 다음과 같다. 덴마크(1989년), 노르웨이(1993년), 스웨덴(1994년), 아이슬란드(1996년), 핀란드(2000년), 버몬트(2000년), 독일(2001년), 포르투갈(2001년), 스위스의 취리히(2002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2003년) 오스트레일리아의 타스마니아 (2004년)

금 뜯어고치는 작업을 굳이 외면하고 수고롭게도 굳이 법을 따로 만드는 것은 왜일까? 이는 나라마다 결코 동성애자에게는 허용하고 싶지 않은 입양, 인공수정, 양육권, 친족관계 성립, 세금 공제 등의 부분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동성혼을 법적 혼인으로 통합하는 과도적 단계이며,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동성애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변화로 평가할 만 하지만, '결혼'을 오로지 이성애자만 독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란 점에서 여전히 차별적이다.⁶⁸⁾

② 민간결합계약(PACS)와의 비교

동성 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해결하는 방식으로 유럽 국가들 중에서 유독 프랑스만 민간결합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e, PACS)이란 독특한 해법을 선택한 것은 프랑스 특유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이 얽힌 결과이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사실혼'관계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법의 밖에 둔다는 일반적인 합의가 있었다.⁶⁹⁾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동거 커플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점차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점차 신장되어가는 동성애자 인권운동과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점차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이 압력으로 작용하였고, 정치권에서는 동성 결혼 합법화 반대를 어느 정도 무마하면서도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해주는 방편으로 이 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민간결합계약법은 성이나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모든 성인 동거 커플에게 기혼자와 동등한 재정적, 사회적 권리를 주는 것으로 그간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던 기혼 이성 중심의 가족제도⁷⁰⁾를 허물고 다양한 인간관계 구축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68) 버몬트 주의 시민연대법은 오로지 동성애자만 등록할 수 있으며 이성애자 커플은 법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조건에 대해 동성애자들이 '결혼(marriage)'을 할 수 없는 대신 이성애자들도 '결합(union)'을 할 수 없으므로 평등하다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치밀한 술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69) 이경희. 「동성 혼인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한국법학교수회,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한국법학원이 주최한 '세계화 시대의 법·법률가' 제 3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2002. 10. 24에서 재인용.

70) 기혼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대략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원 시 의료행위와 관련한 권리: 한 개인이 질병으로 입원했을 경우, 그의 배우자는 면회권은 물론이고 그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련한 결정권을 갖는다.
2. 자녀양육과 관련, 이혼 후에도 아이에 대한 면회권이나 양육권을 가질 기회를 갖는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성간의 경우 결혼을 선택하거나 PACS를 선택하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가질 수 있지만 동성간의 경우엔 결혼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차별이 남아 있다. 또한, 입양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싱글인 동성애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굳이 밝히지만 않는다면 입양을 할 수 있으나 오히려 동성애자 커플은 입양을 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외에도 동성애자의 결혼은 이성애자의 동거 수준에 해당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동성커플이 법적 권리를 얻어가는 이 과정을 평가절하 시킬 까닭은 없을 것이다.

근래 한국도 호주제폐지 운동과 더불어 다양한 가족상, 열린 가족상의 존중과 보호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PACS와 같은 해결, 즉 기존 가족제도에서 소외당하고 있던 권리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동성 결혼을 이야기할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쳐볼 수 있다.

또한, PACS가 입안되기 전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의 활동이 활발했고, 프랑스 국민의 55%가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여론 조사가 있었으며, 부르디외, 데리다 등 지식인들이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서명 운동을 주도하는 등의 측면 지원이 있었다는 점들을 상기해 볼 때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 사회에서 향후 몇 년 내 조성되리라 낙관할 수 있으나, 오히려 문제는 이제 겨우 주목을 받기 시작한 '동거(그나마 혼전동거로 거론되는)', '국내 입양', '공동체 가족' 등을 둘러싼 논의와 권리 찾기가 얼마나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와 비록 똑같이 '정상 가족'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나있다고 해도 이성애자 동거 커플과 동성애자

3. 한 개인의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이 병을 얻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그 개인은 고용주에게 간병이나 문상을 위한 휴가를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4. 납세 등 경제문제 관련: 결혼한 두 사람은 납세시 결혼한 자가 받는 특혜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결혼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정부가 기혼자에게 부여하는 사회연금 등의 각종 혜택은 물론, 각종 보험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한 편, 한 개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언장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상속권을 갖는다.

5. 이민과 관련: 배우자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이민과 관련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6. 배우자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상대방 사망시 그 사람의 시신이나 장례절차와 관련한 권리를 갖는다.

7. 기타 배우자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주택임대법 등 각종의 법률이 기혼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에 비해 정조 의무와 부양 의무(물질적 차원의 부양의무는 있다)가 없다는 점, 외국인 파트너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 파트너의 가족들과의 친족관계나 부양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결혼과 차이가 난다.

동거 커플간의 연대가 가능할 것인가 등이 숙제로 남는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출생률 하락과 이혼율 증가에 자극받아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은 퇴행적인 법안을 내놓는 움직임 등에 대한 대응전략도 필요하다.

③ 결혼 개방과의 비교

세계 최초로 동성애자의 결혼을 완전히 합법화한 네덜란드 민법 30조 제 1호는 "혼인은 동성이나 이성의 2인에 의하여 체결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캐나다의 경우도 혼인의 규정을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두 사람'으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혼인 제도의 개방이 가장 이상적인 법적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민간결합법이나 민간결합계약법이 아무리 많은 권리를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준다 하더라도 그 법이 적용되는 주나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면 소용이 없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동성애자 커플은 여행할 때조차 "유고시 이 사람을 본인의 법적 상속인으로 하며, 본인과 관련한 모든 의료적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갖고……."하는 등의 법률문서를 반드시 지참하곤 한다. 여행 중에 있을지도 모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지만 이런 문서가 얼마만큼의 법적 효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외국으로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다. 가령 버몬트 주에서 20년간 부부로 인정받고 지낸 동성애자 커플이 한국으로 이민을 오려 한다면 아마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 각각 개인자격으로 이민수속을 밟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상대국의 동성간 '결합'을 자국의 '결합'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즉, 아이슬란드에서 결합한 커플은 덴마크로 이주하거나 여행을 가더라도 덴마크가 규정한 바의 '결합'과 동일한 권리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만약 '결혼'의 관계라면 이런 복잡한 절차와 장치가 없어도 세계 어디를 가든 인정받을 수 있다. 결혼은 모든 나라가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동성애자의 권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서 특별법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단 완전한 결혼합법화로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결혼이 법적 강제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교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완전한 평등을 위해선 결혼이 쟁취되어야 하며, 어차피 어떤 법적 형태든 사회가 동성애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건 같으므로 힘을 모아 투쟁을 할 때 한번에 끝까지 바로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대법원이 동성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당장 동성애자에게도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라고 명령하자 보수주의자들에 의

해 동성혼을 명시적으로 금하는 헌법 개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되었다. 헌법의 개정 여부는 2006년에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만약 동성혼을 금지하는 쪽으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매사추세츠 주가 매우 급진적으로 시행한 이러한 혼인제도개방은 실패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찬반논쟁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개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막상 2006년의 투표시점이 되면 사람들의 동성혼에 대한 지지가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일찍이 동성혼을 허용한 북유럽 국가의 경우, 동성혼 허용 후 동성혼에 대한 지지도가 현저히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혼인제도 개방은 어떠할까? 가깝게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와 호주제 폐지 운동의 지난함을 보아도 한국 사회가 이성애주의로 고착화된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통적 믿음과 신화를 깨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길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민법 제809조 ‘동성동본 혈족사이는 결혼하지 못한다’ 는 조항을 없애기 위해 95년 5월, 8쌍의 동성동본 동거자들이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내고 2년 뒤 97년 마침내 위헌결정을 받아 그 효력이 정지된 전례가 있다. 그러나 많은 진통의 과정을 겪었는데 당시 현재의 한 연구관이 “논리적으로 보면 물론 위헌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주류였으나 심정적으로 위헌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고⁷¹⁾ 밝혔으며, 90년 초에도 위헌소송을 시도했으나 동성동본 커플이 앞에 나서기를 꺼려 무산되었다⁷²⁾는 등의 이야기는 마치 지금 동성애자들의 모습을 보는 듯

71)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정리된 유림의 세 가지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제도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선대를 통한 관습으로서 현재까지 내려온 제도로서, 지금도 우리 국민의 정서에 완전 부합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그 제도의 존치를 바라고 있다. 이 제도는 그 생성·발전되어온 역사적 배경, 사회적 수용성, 입법목적, 사회질서에 대한 규율능력, 특히 핵가족화 하여 갈수록 황폐하여지는 우리의 도덕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며 우리 헌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원래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및 혼인의 자유 등은 무제한, 무조건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은 부득이한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호주(戶主)제도와 더불어 아직도 우리 가족법의 양대 지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가 어느 정도 침해받는다 하여 곧바로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

셋째, 또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은 유전학적으로도 좋지 않다

72) NEWS+, 1997년 7월 31일자, ‘현재는 ‘현살’을 택했다’

하다. 그리고 동성혼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 1993년 하와이 주 대법원이 동성혼 금지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오히려 전통적 의미의 가족과 결혼을 지켜야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어 '결혼보호법'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2003년 5월 초 USA투데이가 CNN, 갤럽과 공동으로 실시한 동성애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60%까지 올라갔다. 반대는 35%에 그쳤지만, 동성 결혼에 대한 토론과 TV 오락프로그램 등에 동성애자들의 등장이 두드러졌던 2003년 7월말 조사에선 찬성 49%, 반대 48%로 격차가 좁혀졌다.⁷³⁾ 즉, '동성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화될수록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반대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에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다.

4) 정책적 대안

(1)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

현행법에서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등이 명시된 법령은 약 270여건이 있으며, 540여개가 넘는 개별조항이 있다.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개수만큼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전북대 법대 김민중 교수의 주장처럼 최소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각종 연금법, 보험법 등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애)자'의 권리를 보호하듯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동성결혼도 합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기본 원칙을 제안한다.

① 가족구성권 확대의 필요성 인식

2004년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의 정책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며, 오히려 현실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가정마저 비정상가정으로 만들어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악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듯 독신, 동거, 한부모 가정, 동성간 동거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점점 더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봐도, 장애인들에게 결혼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가족을 구성하고 살 권리는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생존권과도 직결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가족정책은 국민들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노동

73) 동아일보. 2003.8.4. 권순택 워싱턴 특파원 기고글

당이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내건 여성정책 10대 정책 38대 공약에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 및 처벌조항을 마련, 성적소수자에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 찾아주기 동성애자의 결혼권 인정, 이외는 별도로 입양권을 포함한 동거제도 도입이 포함되어 있었다.

외국에 비해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남녀 부부 그리고 혈연 관계의 자녀'만이 정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 여전히 입양과 이혼, 미혼모 등에 대한 비하가 횡행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 합법화의 문제는 동성애자의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양한 가족의 인정 확대의 절실함을 담은 의식적 변화와 함께 시작할 필요가 있다.

② 차별 해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의지

미국 캘리포니아의 데이비스 주지사는 2001년 10월 14일 이성애자 부부에게 한정되었던 12가지 권리를 16,000 쌍이 넘는 캘리포니아 주 내 등록된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안은 책임과 존중에 대한 것이며 무엇보다 가족을 위한 것이다. 이제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스페인의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는 2004년 3월 당선이 되자 바로 동성 커플에게도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의 절대다수가 보수적인 가톨릭교도인 라틴계 국가인 탓에 영향력 있는 가톨릭교회가 사회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격이라며 강력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사회당 정부는 약속대로 2004년 12월 30일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⁷⁴⁾을 승인했고 의회 승인만을 기다리는 중이다. 특히 마리아 테레사 페르난데스 드 라 베가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결혼권은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권리다. 이는 특권으로 간주될 수 없다. 동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이 근절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동성애자의 결혼 합법화를 밝힌 대만 역시 국가가 제정하는 인권법에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조항을 넣은 것이다. 필연적으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찬반 논쟁에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분명한 입장 견지가 필요하다.

③ 장, 단기적 안목의 친성적소수자적 정책 확산

74) 법안의 내용은 동성애 커플들도 이성 결혼 커플들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 권리를 계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까지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0년간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꾸준히 발달시켜 왔다. 1972년 까지만 하더라도 명백한 보호법은 거의 없었으나 현재는 약 297개의 법역에서 성적 경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채용되었으며, 이 법률들은 동성애자들이 고용, 주택공급, 교육 및 공공시설 등에 관련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⁷⁵⁾ 부시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이 보수화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역사를 결코 되돌이킬 수는 없는 것은 이러한 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친성적소수자적 사회 분위기 확산 노력은 동성혼을 입정하는 법률 마련 못지않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설사 동성 파트너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의료보험 증만 봐도 동성애자임을 주위에서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 파트너의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증명서를 내야하는데, 이런 경우 대도시가 아닌 곳의 거주자들은 거주지역 국민공단에 친척이라도 있을 경우 이용이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국가 정책에는 장·단기적 안목으로 법의 체계적인 실행과 그 제반 여건 마련 등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허울은 좋지만 죽은 평등이 될 수 있다.

(2) 구체적 대안

① 성적소수자인권실태조사위원회 설치

덴마크는 1984년에 동성애자의 현황을 검토하고 차별 철폐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1988년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의거해 그 다음해인 1989년에 세계 최초로 동성간 결합을 인정하는 국가가 되었다.⁷⁶⁾ 아이슬란드 역시 1994년 정부 차원의 동성애자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동성애자의 결혼, 동성애자에 대한 범죄, 학교에서의 동성애자의 교육 등을 그 안에 포함시킨 바 있다.⁷⁷⁾ 스웨덴 정부는 1978년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시정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동성애에 대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87년에 '동성애적 공동생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1991년에는 '동

75) 이경희, 「동성 혼인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한국법학교수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한국법학원이 주최한 '세계화 시대의 법·법률가' 제 3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2002. 10. 24에서 재인용.

76) 박선영, 「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가족형성의 원리」, 『시민과 변호사』 2002년 1월호

77) 전현희, 「동성애자의 법적 고찰」, 『시민과 변호사』 2000년 12월호

성혼 심의회⁷⁸⁾라는 특별위원회를 따로 설치해 법 제정에 대한 심의를 맡겼으며, 또한 2002년엔 동성애자 커플과 이성애자 커플의 양육능력이 동일하다는 의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거해 동성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입안하기도 했다. 외국의 예가 이러하듯, 정부는 국민정서 운운하며 시기상조만을 외치는 여론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그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호주제폐지, 사실혼 인정, 동거 커플 보호, 생활공동체의 법적 혜택 부여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가족구성권 확대 필요성을 점검하는 것을 매우 긴요한 일이다. 가까운 예만 살펴봐도, 지난 2004년 2월에 차별연구회는 “소득세법의 종합소득공제는 혼인여부, 가족상황, 혼인상태 및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 요소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차별연구회는 “현 소득세법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해 있으며,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이 법률혼 관계만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혼, 동성혼 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자들을 배제하고 있어 혼인상태 및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야기한다”는 문제 제기도 하였다.⁷⁸⁾

②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서구에서 특히 미국에서 동성혼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까지 불거지면서 국내에서도 동성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앞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현실에서는 동성혼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동성혼이 우리나라 동성애자 대중에게 아직 절체절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서구에서 동성혼이 이슈가 된 것은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아이를 입양하는 등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동성혼은 단순한 상징적 의미가 아닌 현실적 필요의 성격을 갖게 되었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둘째는, 취업평등 등의 이슈가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인식의 기반을 넓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결혼보다는 취업 등에서 받는 불이익을 제기하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보다 용이하다고 보거나, 커밍아웃해도 생존권에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이 와야 보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 이유는 결혼이나 결합이 사실상 "공문서로 커밍아웃하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취업 등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된 동성혼은 유명무실해지기 쉽다

78) 일다, 2004년 2월 15일자, '소득세법, 변화하는 가족 상황 반영해야'

는 우려 때문이다. 만약 주민등록등본에 동성배우자가 있음이 드러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설령 제도상으로는 결혼할 수 있더라도 실제로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⁷⁹⁾ 그러므로,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평등과 인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③ 기본 법률 내의 배우자의 권리를 개별 법 조항에서 확대 해석

동성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사전 단계로서 정부나 법원의 적극적인 유권 해석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1999년까지만 해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동성애자의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아무런 법률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영국의 대법원격인 상원 재판부는 1999년 10월 28일에 한 남성 동성애자에게 사망한 배우자의 명의로 임대된 국가 보조 아파트에 계속 살 수 있다는 상속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으며 사는 남녀에 대해 임대차 보호법이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유사한 관계에 있는 두 남자들이나 두 여자들에 대해서도 이 같은 결론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⁸⁰⁾ 또한 2002년엔 하원 의회에서 기혼 부부 또는 독신자에게만 입양을 허용하던 기존 법률을 바꾸어 동성애자 커플과 미혼 커플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④ 정서적, 경제적 동거 커플을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

한국적 현실을 감안할 때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추진이 가능할 듯 하다.

1단계: 상징적 차원의 ‘파트너십’ 등록제도 실시

런던시청이 2001년도에 실시한 런던 파트너십 레지스터(London Partnerships Register)를 예로 들 수 있다. 런던 시청이 등록과 증명서 발급을 통해 동성 커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결혼식과 유사한 의식을 치를 수 있게 한 것으로 법률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적인 차원에서 동성애자의 결혼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연금이나 임대차, 이민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재판이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 효력

79) 이 글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의 송신상훈 연구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특히 이 부분은 송신상훈, ‘미 대선이 한국 동성애자에게 주는 교훈’, 레인보우 칼럼, 2004년 11월 5일에서 인용하였다.

80) 문화일보, 1999년 10월 29일자, ‘英대법원, 게이배우자 상속권 인정’

을 발휘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⁸¹⁾

이와 유사하게 사랑과 신뢰로 맺어져 서로를 생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한 공간에서 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 관계를 공식기관을 통해 증명 받는 것이다. 이 경우, 등록된 개인이 누구인지 쉽게 유출되지 않도록 등록 절차와 열람,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에 철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이 등록제도는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다를 바 없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뿐 아니라, 정부가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상징적인 의사표현도 되므로 이것 자체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동성애자 커플이 살아가면서 비상시에 재산 분할, 유산 상속, 위급시 의료결정권 등에 있어 효력 있는 증거자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즉, 최소한 현행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별 법률에 의한 권리 인정 사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승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유족보상금),근로기준법(평균1일임금의1,000일 분의 유족보상금)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 유도되어야 한다.

2단계: 공공기관 및 기업, 시행규칙 등에서 파트너십 인정

81) 영국의 <데일리 텔리그래프 The Daily Telegraph>지는 남성 동성애자 커플과 여성 동성애자 커플이 지난 6월 발표된 런던 파트너십 레지스터(London Partnerships Register)에 따라 결혼식을 올려 최초의 공인 받은 동성애자 부부가 되었다는 소식을 지난 6일 보도했다. 남성 동성애자 커플은 잉글랜드세익스피어극단의 전 단원인 68세의 이언 버퍼드(Ian Burford)와 간호관리자로 일하다 지금은 은퇴한 62세의 알렉산더 캔넬(Alexander Cannell)로 이들은 영국에서 동성애가 불법이었던 38년 전에 만나 지금까지 함께 해왔다. 결혼식은 그레이터런던당국(Greater London Authority) 본청에서 치러졌는데, 약 10분을 넘기지 않았다. 버퍼드는 현 런던 시장 켄 리빙스톤(Ken Livingstone)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기 전에 "이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파트너십의 가치를 존중해 준 의식이었다. 나는 지난 38년 동안 알렉스로부터 사랑과 우정을 받았고 그는 나의 버팀목이 되어왔다. 우리 앞에 어떤 삶이 남아있던 간에 그 역시 내 사랑과 우정, 그리고 내가 그의 버팀목이 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의 결혼식에 이어 16년 동안 관계를 맺어온 레즈비언 커플인 49세의 린다 윌킨슨(Linda Wilkinson)과 48세의 캐롤 버드(Carol Budd)도 함께 손을 잡고 파트너십 레지스터에 등록을 마쳤다. 정보산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버드는 "사랑, 믿음, 약속. 이것이 우리가 파트너십 레지스터 등록을 한 이유다."고 말하며 "우리는 이성애자 커플의 결혼식을 흉내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결혼식을 한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타고난 본래의 권리를 부정하려는 것과 우리를 조국의 2등 시민으로 만들려는 것을 이 의식을 통해 줄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1단계가 안정적으로 시행된다면 2단계에서는 파트너십 등록 제도를 바탕으로 법적 혜택이 보다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약하므로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서 그것을 지방단체나 대기업 등에서 따라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개정 절차가 보다 간편한 법률들부터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되는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내규, 지침 등에서는 파트너십이 고려되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는 기업 등에 세금감면이나 시와 용역계약을 맺을 자격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점차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82)

실제 1997년 샌프란시스코 시는 혼인 상의 지위나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을 시행하는 회사와는 용역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조례를 만들었다. 당연히 회사들의 반대 소송이 있었으나 캘리포니아 북부법원은 샌프란시스코의 이러한 조치는 시와 사업을 하는 당사자는 성적 지향이나 혼인 상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오랜 약속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행하려는 것뿐이라며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조례와 판결은 'Domestic Partnership'을 거부하고 있던 많은 기업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단계: 파트너십 관계의 법적권리 확대

캘리포니아 주가 좋은 보기에 속한다. 낮은 수준의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법을 먼저 제정하고 그 다음 점차 높아지는 동성애자 인권지지의 흐름을 쫓아 바로 주 정부 차원에서 이성애자의 결혼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주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동성애자간의 부부 관계가 이성애자간의 부부 관계와 다를 것은 없다. 유언 없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는 권리, 배우자의 사고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노동자의 유족보상수급권, 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생명보험, 장애보험, 산재보험 등의 급부, 재산의 공유의 추정, 배우자의 부양을 받는 권리와 부양의무, 별거,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등은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보호조치이므로 이런 모든 권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확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82) 미국 매사추세츠 주는 2001년 8월에 주 정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동성 동반자에게도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혜택은 이미 사회부문 직원들에게는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2년 동안의 재계약을 통해 주 정부의 70,000명 직원들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 복지 혜택에는 병이 든 배우자 간호나 사망에 따른 휴직과 배우자와 관련된 법정출두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4년 6월 24일 PlanetOut은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1/3이 동성 커플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15%의 기업이 퇴직연금 혜택을 늘려나갈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⑤ 결혼 제도의 완전 개방

앞서 '법리상의 쟁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 36조 1항의 해석에 따라 한국은 아주 간단하고도 빠르게 네덜란드와 같은 수준의 동성혼 합법화 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에 이어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결혼 제도 개방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다. 또한 미국 역시 매사추세츠 주와 샌프란시스코⁸³⁾가 보이는 적극적 혼인개방정책으로 향후 몇 년 내 결혼제도를 개방하게 될 것이다. 결혼 제도의 개방은 법적 절차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므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평등존중의 지평을 넓혀가고 인권 감수성을 키워나가며 사회적 소수자들을 보호하려 하는가에 따라 당장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실현가능해 질 수 있다. 다만, 결혼 제도의 개방으로 가더라도 이것이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관계 맺기를 불법으로 만들고 가족을 독점하는 '결혼'이 아니라 다양한 삶과 다양한 가족 형태의 울타리를 넓히는 계기로서 그 역할을 가져야 할 것이다.

83) 샌프란시스코의 개빈 뉴섬 시장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방침이 동성결혼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정면으로 맞서 2004년 2월 12일부터 전격적으로 동성애자 커플들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시 청사 주변에는 보수 단체들과 기독교·이슬람 등 각 종교 단체들도 몰려들어 연일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앞으로도 결혼증명서를 계속 발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였다.

4. 성적소수자 대상 범죄와 인권침해

4-1. 혐오 범죄

1) 정의 및 실태

(1) 혐오 범죄의 정의

‘중오 범죄’, 라고도 하고 영문 표기를 그대로 읽어 ‘헤이트 크라임’ 이라고 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용어가 체계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다.

혐오 범죄는 말 그대로, 대상에 대한 혐오로부터 비롯된 범죄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때의 혐오는 보통 유색인종, 이주민, 여성, 장애인, 성적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유 없는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것을 말한다. 다양한 사람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 채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불쾌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바로 혐오 범죄hate crime인 것이다. 타인의 존재 조건을 그 자체로 문제시하고 혐오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인 이러한 혐오 범죄hate crime는 보편적인 인간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혐오 범죄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국가들(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이 혐오 범죄hate crime에 대해 내리고 있는 법적 정의는 다양하다. 그러나 혐오 범죄를 문제화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곳이라면 대체로 개인이나 집단, 또는 사유재산에 대해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들(폭언, 폭행, 기물 파손, 혐오적인 내용을 담은 유인물 배포, 혐오적인 내용을 담은 상징적인 표식 게시, 경멸에 찬 시선, 농담, 등의 행위들)이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상관없이 범죄 행위자가 갖고 있는 인종, 종교, 민족, 출신국가, 성별, 나이, 장애, 성적 지향 등과 관련된 편견으로부터 기인하였다고 판단될 때, 그러한 폭력 행위를 혐오 범죄hate crime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적인 공통점을 갖는다⁸⁴⁾.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특정한 범죄 사건에 있어 ‘혐오 범죄’ 유무를 가린 뒤 그 범죄가 ‘혐오 범죄’ 라고 규정되면, 그 범죄 자체에 대한 기존의 처벌의 양보다 가중된 처벌을 범죄 행위자에게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혐오 범죄’ 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혐오 범죄’ 의 인권 침해적 성격에 대한 처벌 의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84) Nancy Turner, "Responding to Hate Crimes: A Police Officer's Guide to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차이를 매개로 한 다양한 차별 행위들과 상대에 대한 극렬한 혐오로부터 비롯된 강도 높은 폭력 행위들이 사실은 하나의 맥락 위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 모든 것이 인권 침해적인 것으로써 금지되어야 하고 또 처벌되어야 하는 행위인 것이다. 사실 강력 범죄만을 연상시키기 십상인 것이 ‘혐오 범죄’라는 용어이긴 하지만, 혐오 범죄에 대한 금지법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일상적인 차별 행위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인권 침해적 차별 행위 및 강력 범죄 등을 결국 뿌리뽑을 수 있려면 말이다. 국내에서 혐오 범죄에 관련된 법을 제정할 때에도, 이 점이 참고가 되길 바란다. ‘혐오 범죄’를 지칭하는 용어 자체도 한국적 맥락에 걸맞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는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주의, 자민족 중심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회인만큼 최근 여성 혐오범죄,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에 대한 혐오범죄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혐오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때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를 반드시 포함시켜 다루어야 할 것이다.

(2) 대 성적소수자 혐오 범죄 실태

혐오 범죄의 대상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일 때 이를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행위 및 혐오 범죄는 주로 호모포비아(homophobia)(동성애혐오증/동성애공포증)로부터 비롯된다. 호모포비아는 누군가가 동성애나 동성애자에 대해 갖는 이유 없는 공포나 혐오를 말하는데, 이러한 공포나 혐오는 이 사회에 뿌리 깊은 이성애 중심주의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성애 중심주의가 만연한 사회는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성애로 간주하고 동성애자를 비정상인으로 몰아붙인다. 이성애 중심주의의 사회는 동성애자들에게 근거 없이 변태 성욕자, 성도착자, 정신병자, 에이즈의 주범, 건강한 가족 질서를 파괴하는 불순분자 등의 낙인을 찍어 왔다. 그리고 모든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제도적 틀 내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러한 낙인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협박, 따돌림, 구타, 폭언, 등의 행위로 이어질 때 이러한 행위들이 바로 대 동성애자 혐오 범죄다. 이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권 침해 행위이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 범죄의 경우 정확히 그 원인이 동성애 혐오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한국의 경우는 대체적인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를 거의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동성애자라면 당연히 트랜스젠더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트랜스젠더라면 당연히 동성애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여전히 강하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 범죄의 뿌리 역시 호모포비아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외모만으로는 이성애자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동성애자와는 달리 트랜스젠더의 경우 외모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소위 '어딘가 이상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적소수자에 대한 국내의 혐오 범죄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동성애자는 본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경우 충분히 숨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하기에 이제까지 대대적으로 커밍아웃을 하고 살아온 동성애자는 그리 많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즉,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는 내내 비가시화된 존재였던 것이다. 하지만 트랜스젠더의 경우 앞서도 언급했듯이 외모상의 이유만으로도 자신의 정체성이 노출될 확률이 동성애자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었기에 혐오 범죄의 타겟이 되기에 보다 쉬웠던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보다 훨씬 더 동성애자들이 많이 가시화되어있어 동성애자들이 쉽게 혐오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왔던 서구의 몇몇 국가들과는 다소 다른 한국적 맥락을 보여준다. 동성애자들이 가시화 되어 있는 만큼 혐오 범죄에 쉽게 노출되었고 그렇게 저질러지는 혐오 범죄의 건수가 엄청났기에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이 일찌감치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 그러한 국가들의 상황이라면 동성애자들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최근인 것이 한국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도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자행되어 왔을 터이지만 그런 범죄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이다.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선정적인 가십거리로만 다뤄졌을 사건들이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문제로 다시금 인식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이다.

성적 지향을 매개로 한 차이(성정체성sexual identity 또는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의 차이)가 차별의 매개로 작동하고 그것이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로 이어지는 것, 이는 명백히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인권 침해이며 분명 시급히 근절해야 할 일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현행법 중 유일하게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인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혐오 범죄를 저지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능할뿐더러 구체적인 차별 행위들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리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성적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각종 침해 및 대 성적소수자 혐오 범죄는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적 행위로서 그 인권 침해적인 성격만큼 가중 처벌되어야 하며, 이러

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2) 사례

(1)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

① 언어 폭력, 환경적 폭력, 물리적 폭력 등

사례 1. 종교를 빌미로 한 호모포비아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이하 <변날>)>는 국내 대학의 성적 소수자 모임 중 유일한 레즈비언 독자 운동모임이다. 미션 스쿨인 이화여대에서 어렵게 자치 단위로써의 위상을 획득한 뒤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변날>의 활동이 쉽지만은 않다. 학내의 보수 기독교 동아리로 추측되는 세력이 <변날>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변날>이 배포하는 자료집을 몽땅 가져다가 폐기처분하며 <변날>이 걸어둔 플래카드를 가위질해 놓고 <변날> 방에 성유(聖油)를 뿌려놓고 달아난다.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 <변날>이 개최하는 학내 레즈비언 문화제에 대해 '레즈비언 문화제를 반대하는' 학내 모임을 결성해 호모포비아적인 활동을 펼친다. <변날>의 활동가들은 학교 생활을 하는 내내 신변의 위협을 절실히 느낀다고 한다. 소속된 과에서 자신의 <변날> 활동에 대해 알게 될까봐, 자신이 <변날> 방을 들락날락하는 것을 다른 동아리 사람들이 볼까봐, 해코지를 당할까봐, 너무 너무 무섭다고 한다. 공동체 제작한 물품을 통째로 도난당하는 게 그냥 도난당한 것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더 큰 위협이 있을 것에 대한 경고로 느껴진다고 한다. 무서워서 살겠냐고, 이들은 이야기한다.

<변날>의 활동을 악의 소산이라고 간주한 신촌 일대의 여러 큰 교회들은, 이대에서 악의 기운을 몰아내기 위한 예배를 거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 <변날> 활동가들의 경험담

사례 2. 거대 종교 집단⁸⁵⁾이 유포하는 호모포비아

85) (위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스웨덴에서는 한 목사가 동성애자들을 심하게 깎아내리는 내용의 설교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계기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스웨덴 오순절교회파 아케 그렌 목사는 지난 2003년 설교에서 정부의 동성결혼 합법화 방침을 비난하면서 동성애를 "사회 전체에 뿌리박힌 암 종양" "성적으로 왜곡된 사람들은 수간을 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가 '증오 표현(hate speech)' 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1개

지난 2일 □□동성애 사이트는 유해 매체가 아니다□□고 밝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결정과 관련,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가 기독교 도덕 윤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기총은 4일 □□동성애 사이트가 유해 매체가 아니다라는 결정에 관한 철회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정보위·위원장 이승희)에 보낸 공문에서 □□책임있는 국가기관이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해 이와 관련된 동성애 사이트 접근을 청소년에게 허용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한기총 공문은 □□동성애는 인간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기독교 윤리 도덕에 명백히 위반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문은 이어 □□소수의 행복 추구를 위해 다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라며 이번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위반

월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 지난주 항소심 첫 심리가 열렸다. 워싱턴 포스트는 29일 스톡홀름 발 기사에서 이에 따른 논란을 전하면서 이에 따른 미국 내의 과장도 소개했다. 이 신문은 미국에서도 개인에 대한 증오의 표현은 법으로 규제되지만, 특정 개인이 아닌 그룹에 대한 의사표현은 일반적으로 허용돼 백인우월주의 단체 KKK 지도자거나 네오나치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미국보다 엄한 유럽 각국의 각종 증오표현 금지법의 연원을 나치즘의 악몽에서 찾았다. 프랑스의 예를 보면, 얼마 전 극우파 정치인 장-마리 르 펜이 나치 독일의 프랑스 점령에 대해 "특별히 비인간적이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을 놓고 프랑스 법무부가 르 펜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조사에 착수할 정도다. 유럽연합(EU)은 25개 회원국은 영국의 해리 왕자가 한 파티에 나치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다가 논란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나치 상징물을 금지하는 방안을 일제히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 2002년 증오표현 금지 대상을 동성애로 확대했다. 그렌 목사 설교를 둘러싼 논란에서 그렌 목사를 변호하는 측은 "우리는 동성애가 최악이라고 믿고 있고 그 믿음을 표현한 것일 뿐인데, 그 반대 신념의 표현이 허용된다면 우리는 왜 안되느냐"고 반문하고 "설교 내용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때문에 감옥에 간다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오표현 금지법을 찬성하는 측은 "그렌 목사가 종교를 빙자해 동성애자에 대한 불관용을 나타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설교 가운데 '동성애자'라는 말 대신 '유대인'을 넣으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유대인에 대해선 그렇게 하면 안되고 동성애자에 대해선 그래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박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05년 1월 30일, '스웨덴서 동성애자에 대한 '증오표현' 논란'

사항임을 강조했다.

- 국민일보, 2003년 4월 6일, '한기총, 동성애 사이트 허용 유감'

사례 3. 게이에 대한 혈연 가족의 폭력

저는 22세쯤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그저 지나가는 소리고 큰 형수님께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새벽 1시쯤 큰 형님이 오셔서 물어 보더군요. 정말 그러냐고. 전 얼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답을 못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 하셨는지, 그때 머리가 조금 길었는데 가위로 머리를 죄다 깎아 버리고 입고 있던 옷은 찢어 버리고 굵은 몽둥이로 정신이 없어 쓰러질 정도로 때렸어요. 그것만으로 만족을 못했는지 옷장 속에 있던 옷가지들 몽땅 꺼내어 뒷마당에 놓아두고 팬티와 양말까지도 가져다 석유를 붓고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나를 끌고 뒷방에 집어넣더니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에 판자를 대고 못을 받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는 가셨어요. 밥도 주지 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는 (형님은 저에게 기대심이 컸었거든요. 실망했을 거예요) 그 겨울에 아무도 자지 않던 방이라 장판만 깔려 있을 뿐 정말이지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하루 반나절을 보냈거든요. 그 밤에 그 방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밑에만 손을 가린 채 친구가 자취하는 방으로 찾아가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옷 빌려 입고 10만원 정도 빌려 가지고 무작정 서울로 갔어요. 지금은 가지 않는 종묘 공원에 웅크리고 자다가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후회도 했어요. 새벽이 되었을까 어떤 사람이 다가 오더군요. 30대 후반쯤 보였어요. 나중에야 42세란 걸 알았지만 방을 하나 얻어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때까지 나는 여자만이 유부남과 몰래 동거하는 줄로 알았거든요. 일단은 편했지만 엄마가 너무 보고 싶더라구요. 몰래 집 근처 까지 찾아왔다가 돌아간 적도 있었어요. 3년정도 그 곳에 있다가 아저씨가 가족과 이민갈 때 난 너무나 슬펐어요. 다시는 못 볼 것을 생각하니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살면서 일주일에 두 번 만나고 밤을 같이 보냈거든요. 아저씨가 미국으로 가고 난 후 나는 내가 작은 부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내 앞으로 되었던 그 전세방이 돈 천이 가까이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방이였더라구요. 그리고 떠나시면서 내 이름으로 된 통장도 하나 주었지요. 금액은 말하지 않을래요. 금으로 된 목걸이와 반지, 시계도 있었지요. 지금 그것들이 다 내게 있는지 알고 싶겠죠. 하나도 없어요. 다 써버렸거든요.

3년 만에 집으로 갔더니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백화점에 취직했어요. 6개월 동안 방세를 내야 했거든요. 집에서 부모님과 살고 싶으면 방세를 내래요. 5만원씩. 월급 받아 방세 내고 그 돈으로 부모님 모시고 살았어요. 6개월 후부터는 월급으로 생활비를 썼지요. 월급은 35만원, 내가 집으로 들어가고부터 그 어느 누구도

집안에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았어요. 큰 형님도 모른 척 하구요. 집에 들어간지 일년이 되었을까 아버지가 갑자기 노환으로 쓰러지더군요. 약값이 엄청났어요. 어머니가 힘들어 하셔서 기저귀도 일회용으로 바꾸었거든요. 제 월급 가지고는 힘들어서 아저씨가 남기고 가신 그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큰 형님은 월급가지고 안될 거라 생각하고 내가 찾아오길 기다렸대요. 연락이 없어서 와보니 버티고 있는 상황을 보고 그 돈에 출처를 대라며 다그치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부터예요. 나를 동생취급도 하지 못해 인간 취급도 하지 않더라고요. 인간 이하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 과정은 적지 않겠습니다. 지금 울고 있거든요.

- <버디> 15호, 1999년 5월, 우리들의 이야기 코너에 실린 글 중

사례 4. 이유 없는 폭행과 협박

남산 인근에서 32세의 남성 C씨가 정체 모를 사람 2명에 의해 각목으로 구타당한 사건임.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노숙자로 밝히고, "우리들이 호모들을 잡아서 경찰에게 많이 넘겼다. 집이 어디냐, 나이가 몇이냐, 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 동성연애 계속 할거냐 라는 폭언으로 내담자를 협박했음.

- 『2004 첫 번째 상담사례 연구분석 '열린 성소수자 상담, 어떻게 시작할까?』.동성애자인권연대, 2004.

② 성폭력

사례 1. '레즈비언'을 타겟으로 저질러진 성폭력 범죄

인터넷상의 레즈비언 친목 모임에 잠입하여 레즈비언 행사를 해 온 남성이 레즈비언을 번개 등을 통해 만난 후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건.

-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을위한여성연대> 수집 사례

사례 2. 레즈비언에게 섹스 행위를 요구

한 레즈비언이 오랜 시간 알고 지내던 남자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했다. 그런데 그녀의 커밍아웃 이후 그 남자 친구는□□그러면, 집단 섹스는 물론 나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는 식의 말을 하며 그녀에게 자신과 여관에 함께 가 성관계를 갖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을위한여성연대> 수집 사례

사례 3. 게이에 대한 또래 집단의 성폭력

정 모 씨는 열일곱 살 때 불과 한 학기 정도 고등학교를 다니고서 자퇴서를 내고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급우들의 폭력을 감당해 내기가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정 모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은 다른 남자아이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전혀 '남자답지' 못한 자신을 부모님도 항상 걱정해 왔다고 한다. 또래 친구들의 화제가 여자 연예인이나 학교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여자 아이일 때 정 모 씨는 혼자서 속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들을 떠올려 보곤 했다고 한다. 그리고 정 모 씨는 한창 성장 중인 여느 사춘기 남자 아이들과는 사뭇 구별될 만큼 유독 고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 정 모 씨는 이미 중학교 때도 '기집애 같은 새끼' 니 '변태 새끼' 니 하는 욕들을 들으며 학교 생활을 했었지만 중학교 때는 친구들의 그런 말들이 그저 참을 만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니 급우들이 정 모 씨에게 가하는 폭력의 강도가 더욱 심해졌다. 각종 비하적인 욕설을 해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급우들은 심지어 정 모 씨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성추행했다.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말하면 죽여 버린다는 식으로 정 모 씨를 협박했고, 돈을 일정한 액수만큼 만들어 오지 않으면 더 두들겨 패겠다고 으박지르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했다. 그리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정 모 씨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쏟아놓지 못한 채 몸의 허약함을 이유로 자퇴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른 것이었다. 정 모 씨는 그 때의 충격이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 악몽 속에서 항상 그 때의 경험이 되살아난다고 한다.

- 모 커뮤니티 회원들의 이야기

사례 4. 레즈비언에 대한 또래 집단의 성폭력

여고에 다니는 영주(가명)는 같은 학교의 한 학년 후배인 희정(가명)이와 교제를 시작 한지, 일 년이 다 되어 갔었다. 희정이는 영주의 방송반 동아리 후배이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친한 언니 동생으로 지내다가 서로에 대해 언니 동생 이상의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두 사람이 사귄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유서 깊은 동아리인 방송반 부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에게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기에 이 두 사람은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둘은 어느 토요일 방과 후 학교 뒷산의 양지바른 곳에서 서로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낮잠을 자다가 그 뒷산으로 야영을 가는 다른 동아리의 부원들에게 그 모습을 들키고 말았다. 부산한 인기척에 이 둘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다른 동아리의 모든 동

아리 원들이 두 사람이 나란히 자는 모습을 본 뒤였다. 두 사람이 무어라고 설명할 기회도 없이 다른 친구들은 산 위로 올라가 버렸다. 그들이 수군거리는 게 다 들리는 것 같았다. 그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어 영주가 학교에 가니, 학급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다. 사이좋게 지내던 친구들이 모두 영주를 외면했고, 급식 시간에는 더더욱 영주를 더럽다는 듯이 줄에서 밀쳐냈다. 그 다음날부터는 따돌림이 더 심해졌다. 영주의 자리에는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버려져서 영주 혼자 그것을 다 치워야 했으며, 책이며 가방을 도난당하기 일쑤였고, 영주의 소문을 들은 방송반 3학년 선배 언니들이 방송반에 먹칠을 했다며 영주를 집단 구타했다. 게다가 영주네 학교 옆의 남고 일진 중 영주를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영주와 희정이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어느 날 영주를 끌고 가 구타를 하고 성폭력을 저질렀다. 영주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물리적인 상처로 대인공포증을 갖게 되었다. 선망의 대상이었던 방송부 아나운서 영주는 하루아침에 후배를 꼬드긴 '더러운 레즈 년' 이 되어버렸다. 희정이는 그 날 영주와 함께 있는 것을 들킨 이후, 영주와 인사조차 하지 않으려 했고 곧바로 남자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 영주는, 몹시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영주는 무력하다.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상담 사례

③ 언론이 유포하는 호모포비아

사례 1. 생물학적 결함이 있는 자로 동성애자를 묘사하다.

동성애란 같은 성을 사랑하는 성적 정체성, 즉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거나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의학적으로는 사람의 본능적 행동과 신진대사를 제어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상하부의 이상 등 두뇌구조나 유전인자 같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정신의학협회는 1973년,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제외했다.

- 국민일보, 2003년 4월 2일, [키워드] 동성애란...두뇌 구조이상 유전인자가 요인'

사례 2. 인터뷰 대상 선정의 편파성-호모포비아적 기사 방향에 걸 맞는 대상만 고르다.

동성애는 세상과 인간의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의 성에 대한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남과 여의 1대1 결합을 통한 건강한 가족제도를 보여주고 있다. 성경에서 □□동성애□□와 □□남색□□은 분명히 죄로 명시한다. 동성애의 습성은 고대 근동과 바울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창 19:4,5,삿 19:22,롬 1:27,고전 6:9) 성경은 이런 자들을 정죄하고 있다(레 18:22,20:13).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추행으로(레 18:22,20:13) 간주하며 바울은 이런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기독교문화 사역자들은 최근 물밑에 숨어 있던 동성애 문화가 드러나는 이유는 인터넷과 영화,만화 등 대중매체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한다. 청소년들이 유해한 인터넷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회의 대책이 시급하다.

청소년문화사역단체 낮은다리 신상언 대표는 동성애 사이트 허용 결정에 대해 □□ 동성애자들의 인권 존중과 자유를 허가하는 국가가 일부 있지만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무방비 상태로 빠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나라는 없다□□며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으로 인도하는 교회 차원의 치유와 선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고신대 변영인 교수는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은 신의 영역에 속한 절대적 가치들이 오늘날 개인 취향의 문제로 전락함에 따라 급속하게 상대화, 다원화되는 등 인본주의에서 비롯된다□□며 □□동성애 트랜스 젠더 등의 문제는 결혼제도 자녀출산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역리(逆理)□□라고 강조했다.

- 국민일보, 2004년 4월 2일, [성경으로 본 동성애] 창조질서 거스르는 행위

사례 3. 호모포비아적 기사 작성이 목표인 것 같은 인터뷰 내용들만으로 이루어진 기사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다룬 만화나 영화, 뮤직비디오, 인터넷 등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3일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동성애' 항목을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삭제키로 해 청소년들이 더욱 성(性)정체성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는 이날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 행위, 매춘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청소년보호위는 또 시행령 개정에 앞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위원회 등 4개 심의기관에 인권위의 권고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종교계와 학부모 모임들은 청소년보호위의 결정이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문화에 접근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우려는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에 그대로 투영돼 있다. 동성애를 다룬 한국 영화 '로드무비'와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번지점프를 하다'는 흥행에는 크게 성

공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비디오 가게에서 청소년 대여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레즈비언으로 알려진 러시아 가수 '타투'의 뮤직비디오는 지난 2월 한 포털사이트에 올려진 뒤 이틀 동안 조회건수만 100만건에 이르렀다.

서울 종로의 한 만화가게에도 동성애 내용의 20권짜리 일본 만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만화가게 직원 이모씨(21)는 "여중·고생들이 주로 동성애 만화를 찾는다"며 "5권짜리 일본 만화 'Z~', 3권짜리 한국 만화 'LET ~' 등이 인기로 2~3일에 한 번꼴로 대여된다"고 말했다.

모 여고 3학년생인 이모양(18)은 "친구들 사이에 동성애를 다룬 CD 한장쯤은 누구나 갖고 있다"며 "어른들은 동성애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봐선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고진광 대표는 "맞벌이 부모들이 집에 없을 때 동성애를 다룬 비디오를 보고 흉내내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동성애를 더욱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동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국민윤리학과 정인영 교수는 "음란성과 선정성을 구별하는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음란의 바다'로 내모는 꼴"이라며 "청소년보호위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단계적 허용방안이나 대처방안 등을 마련하는 노력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인 전병금 목사도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성인도 아닌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사이트를 개방하는 것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김봉년 교수는 "사춘기 시기는 이성애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동성애에 대한 환상도 가질 수 있는 시기로 통계적으로는 3명중 1명꼴로 동성애에 관심을 보인다"며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일보, 2003년 4월 3일, '청소년보호위도 '동성애 유해' 삭제...영상물 빚장 풀어'

사례 4. 동성애가 그릇된 성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기사.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성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그릇된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이동흡)는 22일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 운영자 김모씨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행정처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려면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형식상 이유로 패소 판결하면서도 시행령 7조 규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엑스존을 청소년 유해물로 볼 경우 헌법상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행령 규정에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행정처분 무효사유로 보긴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그러나 이번 판결은 청소년들에게 성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고,그릇된 성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997년 6월부터 엑스존을 운영해 왔으나 2000년 8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9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자 소송을 냈다.

- 국민일보, 2003년 12월 22일, “동성애·위헌소지□□ 판결…그릇된 性문화 조장 우려”

(2)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

① 언어 폭력, 환경적 폭력, 물리적 폭력 등

사례 1. 트랜스젠더에 대한 폭행

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인 김 모 씨는 어느 날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동료 트랜스젠더 언니(박 모 씨)와 함께 자취방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김 모 씨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값싼 집들이 밀집한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자취방으로 가는 길은 그런 동네의 좁은 골목길이라서, 두 사람이 함께 가다가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 애써 비껴가야만 하는 지경이었다. 그런데 그 날 두 사람은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각에 귀가를 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남녀 취객 두 사람과 부딪치고 말았다. 취객들은 술김에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하다가, 그냥 피해서 지나가려는 이 두 사람을 쉽사리 보내주지 않더니 계속 이 두 사람을 아래위로 훑어보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퍼붓고 폭행을 했다. ‘알고 보니 이것들 변태새끼들 아냐 정도의 욕이 그 중에서도 그나마 참고 들어줄 만한 욕일 정도로 혐오적인 욕설의 강도가 심각했으며 김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거둬 밭길질을 하고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막대기 같은 것을 들어 구타를 했다. 김 모 씨와 박 모 씨는 맞고만 있을 수 없어 결국 함께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다. 이런 소란함에 박을 내다본 이웃 주민에 의해 이 네 사람은 경찰서로 가게 되었는데, 경찰에서도 김 모 씨와 박 모 씨의 진술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김 모 씨와 박 모 씨가 자신들에게 먼저 추잡한 짓을 했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 폭력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취객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경찰 역시 김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취객들이 퍼부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경멸적인 언사들을 서슴지 않았다. 방어하기 위해 싸우다가 폭력을 쓰게 되었을 뿐인 트랜스젠더 김 모 씨와 박 모 씨는 피해자인 자신들이 오히려 그 취객들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고 억울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트랜스젠더만 아니었어도 그 취객들이 자신들에게 그토록 심한 짓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에 자신들의 처지가 절망스러웠다.

- 2004년도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상담 사례

② 성폭력

사례 1. 세 명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지만, 성폭력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던 경우.
1995년 서울 하얏트 호텔 부근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A는 승용차에 납치돼 세 명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렇지만 성전환 수술을 한 A는 형법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한정된 부녀라는 객체에 포함되지 않아 강제 추행죄가 문제될 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형법의 부녀라는 것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여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판례를 보면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여성에의 성 귀속감을 느껴왔고 성전환 수술로 인해 남성으로서의 내,외부 성기의 특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서의 성격도 대부분 상실하여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개인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 요소인 성염색체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성기의 구조, 정상적인 남자로서 생활기간, 성전환 수술 경위와 시기 및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 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세 명의 남자가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채 차례로 성기를 A의 음부내에 삽입했지만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과 제 6조 1항 형법 297조 에 대한 위반죄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과 제 6조 2항 형법 298조 위반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어찌됐든 결국 강간죄가 성립되는 경우와 법정형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법률상으로는 보호를 받게 됐지만 강간죄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는 소리이다. 만약에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 외과적 수술로 인위적으로 만든 성기를 강제로 여성의 음부에 삽입하는 사건이 생긴다면 이 사건에서 강간죄의 성립여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박작가의 취재 일지, “트랜스젠더를 만나다”,
<http://www.medtv21.net/ch4/tgender/chijae4.htm>

(3) 외국의 혐오 범죄 사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맞는 이들의 이야기가 전세계로부터 무수히 많이 전해져 온다. 아래와 같은 사례들은 한국에서도 분명히 일어났을 법한, 그러나 ‘성정 체성’ 이 그 죽음의 원인이었다는 점은 결코 알려지지 않았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일 것이다.

사례 1. 매튜 셰퍼드

매튜 셰퍼드(Matthew Shepard) (1976년 12월 1일 ~ 1998년 10월 12일)

무참하게 살해된 동성애 혐오 범죄의 희생자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구타당하여 살해된 매튜 셰퍼드(21)군의 장례식이 1998년 10월 16일에 거행되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세례를 받았던 와이오밍주의 캐스퍼시의 교회에 모였습니다.

매튜는 98년 10월 7일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에 캠퍼스 안에 위치한 바에서 자신들도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두 남자(러셀 헨더슨, 애론 매키니)에 의해서 짐으로 태워다 주겠다는 말에 그들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라라미(Laramie)의 동부에 있는 서면 힐근처의 외진 곳으로 끌려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갈라진 통나무 울타리에 묶여서 그가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동안 그들은 그를 구타하고 권총으로 그를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영하로 내려 가는 기온에서 죽도록 내버려졌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한 사람이 오후 6:22분에 그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공격을 받은 후 약 18시간이 지난 후 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은 매튜를 허수아비로 오인하였습니다. 그는 무의식상태였으며 몸은 차가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있었고, 단

지 그가 흘린 눈물자국이 그 피빛을 흐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매튜는 1998년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12:53분에 콜로라도의 포트 콜린스(Fort Collins)에 있는 Poudre Valley 병원에서 그의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매튜의 뒤통수부터 오른쪽 귀의 앞부분까지 그의 뼈는 깨어져 있었고, 그의 혈류와 심장, 그리고 체온과 다른 신체부위에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뇌손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의 머리와 얼굴, 그리고 목 부분에 12군데 정도의 찢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심하게 공격으로 인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수술을 할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발견당시부터 결코 다시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서 남아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매튜의 죽음은 한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깨어진 약한 육체가 이 세상 모든 동성애자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 이런 잔학행위를 하도록 증오를 가질수 있습니까? 왜 한 사람의 성정체성이 다른 사람이 간섭할 이유가 될까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대답의 일부분은 최소한 동성애자를 조롱하고 인간성을 없애는 문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가치는 덜 중요한 듯이 보이게 합니다. 그것은 학교내와 주변의 언어폭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 정체성때문에 그들을 박해합니다. 또한 살인을 할수 있도록 부추기는 사회의 분위기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오범죄 였습니다. 그리고 매튜는 단지 그가 그 자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폭행당했고 그의 삶을 정지하도록 내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편견과 편협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학교내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증오와 불관용을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또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야 함을 배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별, 피부색, 육체적인 능력, 성정체성, 종교, 국가, 민족, 혹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른 누군가를 동성애자가 되도록 가르칠수는 없습니다. - 그것은 개인이 자의식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하지만 우리는 관용과 이해를 가르칠수는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말할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거야? 이 일은 나와 상관없어. 내 아들은 동성애자가 아니야."

하지만 진실은 만일 사회에서 이런 폭력적인 공격을 허가하도록 내버려 둘때에는 귀하의 자식이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해도 폭력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될수도 있는 가능

성을 항상 남겨 놓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 주변의 누군가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실은 미국과 전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속의 영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매튜는 여러분의 자식일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용과 이해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부모로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례 2. 데이트를 거절했다고 죽인 사례

한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가 그 여자가 '나는 레즈비언이고 남자한테 관심 없다' 고 말하자 격분하여 그 자리에서 그 여자를 잔인하게 죽여버렸던 미국의 사례.

3) 정책 대안

(1)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

① 정책 수립의 필요성

국가는 성적소수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를 반드시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성애중심주의와 동성애혐오가 뿌리깊고 아주 작은 차이를 쉽게 차별의 매개로 만드는 우리 사회에서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조치 없이는 성적소수자들이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주법에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최근 통과된 성적소수자 차별 금지 법안을 통해 혐오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다.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은 이렇듯 인권 정책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국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한국에서도 성적소수자들의 존재는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고 이들의 존재가 가시화 되는 만큼 성적소수자에 대한 각종 범죄들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제까지 성적소수자들의 존재 자체가 비가시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솔하게 저질러졌을 범죄들마저 아무도 모르게 묻혀져 왔다면 국가는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야만 한다.

② 인권 침해 범죄로써의 문제화

어떤 범죄가 정확히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성적소수자를 타겟으로 저질러졌을 때 그 범죄는 결코 피해 당사자의 성적체성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 성적소수자들이 입은 피해는 그러한 피해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결코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레즈비언이 아무런 다른 까닭 없이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만으로 맞거나 금품을 갈취 당하거나 강간을 당했다면 이 사람은 정확히 자신의 성적체성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만일 이 사람이 레즈비언이 아니었다면 그런 피해를 당할 리가 없었을 거라는 점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레즈비언이라서 그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맥락을 반드시 살펴야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충분한 강도로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성적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주의가 끊임없이 재생산해 내는 소위 '정상 이데올로기' 와 호모포비아라는 맥락 위에서 발생한다. 누누이 강조했듯, 바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성적소수자에 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 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 가 기본적으로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성적소수자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된 혐오를 방치하고 조장해 온 국가는 이제 성적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③ 인권 침해 실태 파악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 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이들이 먼저 성적소수자의 전반적인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낱낱이 알아야 한다. 그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성적소수자들이 직면해 있는 차별적인 현실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 가 발생하는 인권 침해적인 배경을 좀 더 섬세하게 살피고 그러한 배경에 걸맞는 처벌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 성적소수자 혐오 범죄에 대한 정책 담당 부처와 성적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들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물론 독립된 정책 담당부처의 신설이 우선 시급하다.

(2) 외국 사례

① 프랑스 - 혐오 범죄 불법화 사례

혐오 범죄를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자 하는 시도에는 인권 침해적인 행위에는 법적 제재를 가하여서라도 차별 환경을 시정하겠다는 해당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프랑스 의회가 2004년도에 통과시키고 2005년도부터 시행중인 동성애 혐오 불법화 방안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아래는 관련 기사들이다.

사례1. 혐오행위 불법화 법안 제정

프랑스 정부가 자크 시라크 대통령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어 동성애 혐오 불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성이나 성적 성향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차별, 증오, 폭력 등을 선동했을 때 1년 이하 징역이나 6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동성애 혐오를 인종 차별이나 유대인 박해와 유사한 범죄로 간주했습니다. 동성애 혐오 불법화 법안은 다음달 의회에 보내져 심의에 부쳐지며 여야 반대가 별로 없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올해 초 동성애자였던 세바스티앙 누세가 피습돼 참혹하게 숨진 뒤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 ytn, 2004년 6월 24일, '프랑스정부, 동성애혐오 불법화승인'

프랑스에서 앞으로 동성애 혐오 표현이나 성차별주의 발언을 하는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 형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프랑스 하원은 8일 동성애자에 대한 취업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성차별을 불법화하는 내용의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이달 중 상원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만담가들의 여성 비하나 익살 표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안에 따르면 성차별주의와 여성 증오심을 고취하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표현이나 글을 쓸 경우 1년 이상의 형이나 최하 3만1000유로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EU) 내에서 가장 강력한 성차별주의와 동성애 혐오 금지 법안이 될 이 법안은 그동안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주도해온 작품이다. (후략) 프랑크푸르트=남정호 특파원

- 세계일보, 2004년 12월 11일, '佛 "동성애 차별" 처벌 논란'

② 미국 하와이주 : 혐오 범죄 가중처벌법 제정 사례

혐오 범죄에 대한 처벌량을 일반 범죄에 대한 처벌량보다 크게 하는 것 역시 불법화 방안과 마찬가지로 혐오 범죄의 인권 침해적 성격을 명확히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아래의 기사들에도 나타나듯 미국은 3개 주만을 제외한 모든 주에서 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을 두고 있다.

사례1. 혐오범죄 가중처벌

혐오범죄(hate crimes)를 저지른 흉악범들은 앞으로 기존형량의 최고 두 배를 선고받을 지도 모른다.

혐오범죄란 인종, 종교, 성적 성향(동성애자), 장애, 나이에 대한 적대감으로 일어난 범죄를 말한다. 27일 주상원 입법위원회 공청회에서 수십 명의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혐오범죄에 관한 가중처벌 입법의 필요성을 증언했다. 하와이는 미 전역에서 혐오범죄 특별가중처벌이 없는 4개 주 가운데 하나다.

FBI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미 전국적으로 발생한 혐오범죄는 7,876건. 이 가운데 인종혐오 범죄가 4,000여건으로 가장 많으며, 종교와 동성애자에 대한 범죄가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하와이주는 혐오범죄에 대한 별도의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5년형에서 20년형을 받을 수 있는 흉악범만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혐오범죄와 일반 살인 사건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거나 "혐오범죄 가중처벌은 불공평한 처벌"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혐오범죄 가중 처벌안은 입법위원회에서 5대1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 중앙일보 미국판, 2001년 3월 1일, "혐오범죄자에 중형을" 주민들 요구

메이지 히로노 하와이 주 부지사가 벤 카에타노 주지사를 대행해 13일 '혐오범죄 가중처벌법'에 서명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이 법의 13일부터 발효됐다.

이 법안은 하와이 주 상원에서 법안 951호로 입안, 통과됐는데, "특정 인종, 종교, 신체장애, 피부색깔, 국적, 또는 성적지향"을 극단적으로 싫어해 이들을 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혐오범죄 가중처벌법'은 입안 당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됐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의 상대가 누구든 범죄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처럼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해서 가중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즉 동성연애자나 소수 민족 계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처벌은 가중되고 다른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범죄자의 처벌은 현행법대로 묶어놓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거해 "A급 중범죄는 최고 20년 형, B급 중범죄는 최고 10년 형, 그리고 C급 중범죄는 최고 5년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효된 '혐오범죄 가중처벌법'에 의거하면, "A급은 최고 종신형, B급은 최고 20년 형, 그리고 C급은 최고

10년 형"으로 형량이 2배로 늘어나거나 가중된다. 그러나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의 범행이 보통범죄인지 혐오범죄인지를 가려내는 것도 쉽지 않다"며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처벌규정을 똑같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와이 주는 이 법안의 발효로 '혐오범죄 가중처벌법'이 입안되지 않은 4개 주에서 벗어나게 됐다.

- 중앙일보 미국판, 2001년 6월 15일, '혐오범죄 가중처벌법 13일부터 발효'

③ 캐나다 토론토 : 형사절차 상의 성적소수자 인권 보호 조치 사례

경찰이나 검찰 등이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 성적소수자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적소수자 당사자에게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불이익을 줄 확률이 높다. 사건 해결과 관련된 불이익뿐만이 아니라 성적소수자에 대한 검·경의 폭언, 폭행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본 보고서의 '형사 절차상의 차별' 파트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아래는 캐나다에서 추진했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사이다.

사례1. 캐나다 토론토 경찰 동성애자 대하기 훈련 실시

박상철 통신원 = 캐나다 토론토 경찰이 업무 수행 시 동성애자 대하기 훈련을 받게 됐다고 토론토 스타가 18일 보도했다. 토론토 경찰위원회는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동성애자 7명이 제기한 차별철폐 소송에 합의해 해당 경찰관이 사과하고 같은 사건을 방지하는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말썽은 경찰이 지난 2000년 5월 수백 명의 레즈비언들이 파티를 즐기는 장소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여자 경찰관도 참여해 술 면허를 조사하는 통상적인 수색이었다고 했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나체상태로 있던 장소를 남자 경찰관 5명이 90분간 수색과정에서 여성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경찰위원회로부터 35만 달러의 배상을 받는다.

- 연합뉴스, 2004년 12월 19일, '토론토 경찰에 '동성애자 대하기' 훈련'

④ 미국 : 혐오 범죄 통계 작성을 통한 예방 강화 조치 사례

사례1. 미국 연방수사국 혐오범죄 집계 시작

미국의 연방수사국인 FBI는 1995년도부터 성적지향을 매개로 한 혐오 범죄의 미국 내 통계를 내 발표하기 시작했다. 성적지향을 매개로 한 혐오 범죄 통계의 소분류도 개이에 대한 범죄, 레즈비언에 대한 범죄, 양성애자에 대한 범죄, 등으로 다각화 되어

있다. 차별과 혐오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혐오 범죄 중 세 번째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성적지향을 매개로 한 혐오범죄의 순위를 매기고 있다. FBI는 또한, 통계 작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고 있으며 통계의 항목에는 사건별, 공격 유형별, 피해자별, 가해자별 구분을 두고 있다.⁸⁶⁾

(3) 구체적 대안

① 현행법에 대한 접근성 강화

그간 대다수의 성적소수자들은 현행법을 이용하여 해결 가능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기를 기피해왔다. 이는 경찰 신고나 고소 이후 당면하게 될 상황들에서 자신의 성적체성이 드러날 것에 대한 공포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문이나 시사 프로그램 등의 언론 매체에서 심심치 않게 아주 선정적으로 다루곤 하는 성적소수자 관련 사건 등에서 비취지는 수사 관행들이 결코 성적소수자에게 친화적이지 않으므로, 많은 성적소수자들이 아무리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수사 과정 중에서 오히려 자신이 성적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큰 불이익을 입게 될까 두려워 그러한 절차에 접근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것이다. 법 자체가 아무리 사건 해결 가능한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용할 엄두가 안 난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 이를 통해 여실히 증명된다.

그렇다면 우선 수사 과정상의 인권 보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수칙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준칙이나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 등이 좀 더 성적소수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정되고 그에 따른 수사의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랬을 때라야만 성적소수자들이 현행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경로가 보다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 165조 (증인의 범정의 신문)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수사 및 재판 절차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제22조 (심리의 비공개) 등의 조항들을 성적소수자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점차 만들어 나간다면,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친 성적소수자들의 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는 아웃팅 역시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명예훼손, 개인정보공개, 협박, 등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해결이 가

86) <http://www.fbi.gov/ucr/ucr.htm#hate>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혐오 범죄 관련 통계가 있는 웹페이지)

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인 것도, 현행법을 융통성 있게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간 간과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안목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검·경찰 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성적소수자 인권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권 교육의 커리큘럼을 개발할 때, 현실에 좀 더 근접한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척박한 한국의 토양에서 십여 년 간 성적소수자 인권 운동을 해 온 관련 전문 단체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② 가중 처벌

혐오 범죄로 간주할 수 있는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법이 내리고 있는 처벌의 양에 가중해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혐오 범죄의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다만 자신의 존재 조건만으로 범죄의 타겟이 된다. 그러므로 혐오 범죄 피해자의 피해는 폭행이면 폭행 강간이면 강간 등 저질러진 범죄 그 자체에도 있지만 분명 자신의 존재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라는 부분에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혐오 범죄의 그러한 인권 침해적인 성격을 고려한다면 후자에 대한 처벌의 측면에서 기존 형량에 추가 형량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려면 우선, 무엇을 혐오 범죄로 볼 것인가가 규정되어야 한다. 범죄 사건의 구성 요건 중 그 범죄가 혐오 범죄임을 알 수 있는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나름의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 역시 지난 십여년간 국내에서 성적소수자 인권 운동을 해 온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정밀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1년 현재 하와이 주를 포함해 42개 주와 수도 워싱턴 디씨에서 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법을 두고 있는 미국⁸⁷⁾의 경우 (그러나 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법이 있는 주라고 해서 성적지향을 매개로 한 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까지를 모두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현재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을 매개로 한 혐오 범죄를 언급하고 있는 주는 수도 워싱턴 디씨 및 그 외 스물아홉개 주이며,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을 매개로 한 혐오 범죄를 언급하고 있는 주는 그 중 일곱개 주와 수도 워싱턴 디씨 뿐이다.) 및 캐나다, 프랑스 등의 예도 참고하면 좋을 것이

87)

<http://www.thetaskforce.org/theissues/issue.cfm?issueID>

(미국 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의 혐오 범죄 관련 페이지)

다.

③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의 입법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안은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을 학습시키고 재생산하는 사회 제도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일 터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주의를 단번에 없애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하나하나 철폐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사회·문화·법·제도적으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에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그러한 차별을 금지하며 나아가 차별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 하는 것은 성적소수자 차별 철폐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4.2. 아웃팅 관련 범죄

1) 아웃팅의 정의 및 현황⁸⁸⁾

아웃팅이란 성적소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 의해 성적체성을 폭로 당하는 것을 말한다. 성적소수자 개인의 자율성이 배제되는 아웃팅은 성적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적체성을 드러내는 커밍아웃(coming-out)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한다. 악의적인 아웃팅은 물론이고 별 생각 없이 의도하지 않고 저지른 아웃팅이라 할지라도 성적소수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삶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웃팅은 그 자체로 매우 위협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성애 중심주의가 전사회적으로 침투해 있는 이 사회에서, 아웃팅을 당한 성적소수자는 이제까지 자신이 쌓아온 인생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듯한 느낌에 절망하게 되며 나아가 자신의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위협에까지 시달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팅은, 아웃팅을 저지른 사람의 성적체성/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중대한 잘못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누가 그 아웃팅을 저질렀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아웃팅을 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기본적 인권을 뿌리부터 침해한 행위로 여겨져야 한다. 성적소수자들이 이루는 여러 친목 커뮤니티의 안팎에서도 서로 아웃팅을 시키고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이 역시 성적소수자가 아닌 자가 성

88)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홈페이지, <끼리끼리 상담 사례집>,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 자료집, 2004년도 2회反차별 포럼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자료집, 등 참고.

적소수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아웃팅과 그 효과의 측면에서만 봐서는 결코 다르지 않은 위험성을 가진다. 아웃팅이 발생하는 맥락만을 보았을 때는 그 근거와 이유에서 차이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말이다.

이처럼 아웃팅은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 그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광의의 혐오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고의적 아웃팅은 성적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을 악용할 목적을 갖고 자행된 범죄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한층 더 나쁘다고 하겠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아웃팅을 당한 성적소수자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통받는다. 이들은 집에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며 두들겨 맞고, 쫓겨난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성정체성만으로도 당장에 집안 꼴 우습게 만든 놈/년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슬슬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분위기를 견딜 수 없어 일에 대한 의지와 관계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 같이 입사한 동료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도 회사 이미지 상 동성애자가 높은 직위에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승진이 좌절된다. 청소년기의 성적소수자들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집단적인 따돌림 및 구타 등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린다. 이들은 가혹한 이지메의 경험으로 그러한 상황을 벗어난 이후에도 오래도록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

재차 강조하지만 성적소수자에 대한 아웃팅은 실로 폭력이자 범죄에 다름 아니다. 아웃팅은, 성적소수자인 한 사람의 생존권에 대한 총체적인 침해 행위이다. 아웃팅은 성적소수자 당사자의 삶을 뿌리에서부터 흔들어 놓는다.

성적소수자에 대한 범죄 중 여러 건이 아웃팅 협박을 매개로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성적소수자 단체들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피해자들은, 구타당하고, 금품을 갈취 당하고,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가해자에 의해 자신의 성정체성이 폭로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린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통을 그저 마음에 묻으며 폭력에 노출된 하루하루를 속수무책 무방비로 죽지 못해 살아간다. 그런데 최근에는 심지어 이렇게 아웃팅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성적소수자들의 현실적인 조건을 오히려 악용하여 범죄를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범죄 대상이 될 성적소수자들을 빼도 박도 못하게 옴아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아웃팅을 시켜버리겠다’ 는 협박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관해 피해자가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매개임을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아웃팅을 그 자체로 예방,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물론이거니와 아웃팅을 매개로 한 범죄의 경우 성적소수자가 처한 상황적 맥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인권 침해적인 성격을 분명히 해서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 절차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적소수자 당사자의 아웃팅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 역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는 '차별환경시정'의 '검·경' 파트에서 자세히 후술될 것이다.⁸⁹⁾

89) 아웃팅 위협에 대처방법 전무

이런 상황에서 아웃팅 협박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해자와의 공간을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뿐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결국 피해갈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르면 끼리끼리와 같은 단체나 상담소를 찾는다. 그러나 끼리끼리 측은 □□일단 피해자가 아웃팅을 당하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위협이 닥친다. 그러나 아웃팅 협박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구제책 역시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아웃팅 협박 피해자가 타인이나 타 기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웃팅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보장책도 없거니와,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재차 아웃팅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해자를 고소하려 했던 아웃팅 협박 피해자들 중 경찰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이 계속 노출되는 상황을 겪고, 결국 고소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 아웃팅 협박 피해자들은 상담과정에서 타인이나 기관이 자신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그것으로 상담은 종료되고 말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이는 범죄

성소수자가 주로 상담을 기관에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대부분 피해상황이 극한에 다다랐을 경우다. 이러한 현실로 미루어볼 때 우리 사회에서 아웃팅 피해를 입는 성소수자들의 인구가 적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의 절대적 부재와 구제책이 전무한 현실은 성소수자들을 절망하게 하고, 더욱 범죄대상자로 몰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끼리끼리는 아웃팅을 전제로 하는 성소수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과 □□아웃팅□□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둘째,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 조직에 성소수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셋째,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네트워크 조직이 필요하고 넷째, 성소수자 대상 범죄와 관련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다, 박김수진, 2003년 8월 6일, '성소수자 아웃팅, 대책이 없다' 중

2) 관련 범죄 실태 및 사례

(1) 아웃팅 피해 사례

사례 1. 또래 집단 안에서의 아웃팅

한동안 속으로 끄끙 앓고 있다가 제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친구 두 명에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굳게 다짐했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저를 다 이해한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반이란 사실이 온 학교에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커밍아웃한 두 친구도 절 피하기 시작했지요. 전교생이 다 저를 보고 대놓고 욕하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새 학년으로 진급을 해도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까지 저를 짐승보듯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이유없이 맞기 일쑤입니다. 한마디로 왕따가 되어 버린 겁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레즈년' 이라고 소리 지르고 제 입속에 쓰레기를 처쳐 넣고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곤 합니다. 너무나 괴로워 죽으려고도 많이 해 봤습니다. 저는 중학생입니다. 많이 어리죠? 앞으로 대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눈물만 납니다.

- <끼리끼리>로 접수된 아웃팅 피해 사례

사례 2.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

여고에 다녔어요. 그런데 사귀고 있던 두 아이가 다른 아이들로부터 지독한 욕을 먹기 시작했죠. 따돌림과 폭력의 정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내심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반 아이들이 갑자기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요. 어디서 새어나간 것일까요. 누가 말했을까요. 저는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에게 밖에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학교 다니는 것을 고통스러워했던 그 커플 아이들 같이 힘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아이들이 내 정체성을 알게 되길 바라지 않았는데.....

- N 씨의 경험담

사례 3. 언론에 의한 아웃팅

1월 9일자 모 스포츠신문 표지기사로 실린 □□나, 레즈비언 - 여자프로농구 용병 4명 충격□□기사는 □□한국 농구코트에 레즈비언이 상륙했다□□는 문구를 시작으로 2002 겨울리그에서 뛰고 있는 미국 여자프로농구 소속 선수 중 4명을 이니셜을 사용하여 거론했다.

미국 WNBA에선 아직까지 미디어를 통해 선수를 아웃팅한 바 없고 커밍아웃한 선수도 없다. 뉴욕 리버티의 단장 캐롤 블레이자우스키가 커밍아웃한 것이 유일한데 그도 선수로 뛰던 시절에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자농구 관계자는 □□선수들을 통해 미국사회에서도 동성애자가 커밍아웃하고 활동하기엔 한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선수들도 □□레즈비언□□ 얘기가 도는 것에 대해 불쾌해하는 분위기 □□라고 전했다.

기사 내용 중 □□한빛은행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선수 선발시 모씨를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나 미국 에이전트를 통해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아예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국내 구단은 홍보상 선수들의 동성애를 금지하다시피 하고 있다 □□는 부분에 대해 한국여자농구연맹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동성애자인지 여부를 자격기준에 포함하지 않듯이 한국에서도 그런 규정은 없으리라고 본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기사는 □□본인의 허락 없이 추측보도를 통해 강제 아웃팅을 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녀는 왼팔에 큼직한 문신으로 자신의 터프함을 한껏 부각하고 있다□□“남성 못지 않은 힘을 가진 신체 특성상 일부 스포츠우먼, 특히 단체종목 선수들에게서 동성애 성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낭설로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여성신문 661호, 2002년 1월 17일, □□레즈비언 용병 충격

사례 4. 연예인에 대한 아웃팅

2000년 9월 일간스포츠 지는 “충격고백 난 호모다”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텔런트 홍석천 씨를 대사회적으로 ‘아웃팅’시킴. 이후 홍석천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커밍아웃을 했지만, 일간스포츠 지의 폭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고 이후 홍석천 씨에게 각종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함.

(2) 아웃팅 관련 범죄 사례

① 아웃팅을 매개로 한 협박

사례 1. 경찰관을 사칭해 금품 갈취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30일 경찰관을 사칭하고 동성연애자인 것을 가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김모(2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9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동성연애자인 것처럼 속이고 만난 이모(22.대학생)씨에게 경찰관이라고 사칭하고 "동성연애자인 것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현금 26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 연합뉴스, 2004년 10월 30일, '경찰관 사칭해 '동성연애 폭로' 협박'

사례 2. 아웃팅을 빌미로 삼천만원 요구

[ytn] 서울 중랑경찰서는 동성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24살 민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씨는 지난해 10월 동성애자 전용 화상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42살 이씨의 동성애 장면을 CD에 담아 가족에 알리겠다고 30여 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민씨는 신용카드 빚 천만 원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ytn, 2004년 6월 4일, "동성애 사실 알리겠다" 3천만 원 요구'

사례 3. 사우나에서 접근 후, 공갈·협박

남자 동성애자들이 자주 모이는 사우나에서 남자들이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유인한 뒤 강제추행 당했다고 허위신고하고 돈을 뜯어낸 '남성 꽃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모(26)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한 사우나에서 잠을 자는 척 하다 오모(17)군이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박씨는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도중 오군에게서 강제추행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경찰서에서 오군의 누나에게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말해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냈다. 박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주후 같은 수법으로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데 눈을 떠보니 몸을 만지고 있었다'며 설모(57)씨를 고소했다. 이후 설씨에게 강제 추행죄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박씨는 '민사소송으로 자식들에게서도 돈을 받아낼 수 있다'며 설씨의 아들을 협박, 합의금 310만원을 받아냈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유승남 판사는 26일 공갈 및 무고죄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 문화일보, 2003년 8월 26일, '동성애자 등친 '남자꽃뱀''

사례 4. 아웃팅을 빌미로 금품 갈취

SBS 뉴스추적 프로그램에서 이반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이 여과없이 방영된 지 이틀 후인 6월12일 새벽 02시 탑골 공원 근처. 종로 바를 나오던 박모씨(29세. 회사원)는 2인조 절도범과 맞닥뜨렸다. 두사람 모두 복면도 없고 칼도 없었지만 후미진 구석으로 박모씨를 끌고가 두세차례 복부를 가격한 다음 '가진 것 모두'를 요구했다. 현금 6만원과 금반지, 예물 시계를 건네 줬지만 그들은 굳이 빈 지갑까지도 들고 갔다. 정씨에게 그들의 주먹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이 호모 새끼, 너 호모 바에서 나왔지, 다 알고 있어. 신고만하면 인생 끝인 줄 알아"라는 협박이었다. 지갑 안에 든 주민등록증과 명함이 오버랩되더라는 것이다.

정씨는 그들이 갈취해간 금품보다도 혹 그들이 회사로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며 <버디>에 전화를 해왔다.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것이다.

- <BUDDY> 5호, 1998년 6월, '밀착취재- 이반은 일반의 밥인가' 중

사례 5. 게이를 사칭한 자의 협박, 금품 갈취

PC통신 동성애자 모임 8개월째인 이모씨(학생. 24)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이반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했다. 한참 술자리가 익을 무렵 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붉은산(가대화명)이라는 대화명 기억하시죠? 아까 대화방에서 오늘 모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합석해도 될까요?"라는 것이다.

익숙한 대화명인데다 평소 기회가 닿으면 만나기로 약속했던 터라 흔쾌히 "그럼요"라고 대답했고 "저말고 통신 잘 안들어 오는 노란산(가대화명)이라는 친구가 같이 있는데 괜찮겠죠?"라는 되물음에도 "네"라는 반가운 목소리가 건너갔다.

두 사람이 합석해 6명이 된 술자리가 무르익는 가운데 이모씨는 붉은산과 동행한 초면의 노란산씨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술자리가 파한 후에는 그와 단둘이만 남게 되었다. 둘은 또 한차례의 술자리를 가졌고 노란산씨는 집이 멀고 시간도 늦었으니 가까운 데 숙소를 정하자고 제의했다. 초면이라 망설임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이씨는 노란산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워 근처 여관으로 들어갔다. 이씨가 먼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노란산의 태도가 돌변해 있었다. 이씨의 학생증과 주민등록증을 한 손에 거머쥔 노란산이 음흉한 웃음을 흘리면서 "이거 니꺼 맞지. 이 호모야"라고 했을 때 이씨는 자신이 뭔가 큰 피임에 넘어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씨는 이날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뺏기고도 돈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다음날 다

시 10만원을 더 건네주고 학생증과 주민등록증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나가 녀석을 잡아 혼내 줄 생각은 못했느냐구 기자가 묻자 "죽이지 않는 한 학교와 집에 무슨 짓을 할 지 몰라 이것으로 끝나기만 바랬다"며 고개를 떨궜다.

한달 후 노란산과 동행했던 붉은산을 통신에서 만나 다그쳤지만 붉은산도 노란산을 그날 처음 만났을 뿐이며, 이후 한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믿지 않은 이씨는 그날 만났던 3명을 제외하고 PC통신에서 안면이 있는 거의 모든 이들에게 노란산을 만나 본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한결같이 "대화명은 몇번 봤지만 실제 만난 적은 없는 인물"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두사람이 공범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 <BUDDY> 5호, 1998년 6월, '밀착취재- 이반은 일반의 밥인가' 중

사례 6. 게이를 사칭한 자의 협박

진모씨(31세, 회사원)는 P극장을 전전하며 욕구를 해소해 왔지만 현재는 바만 이용한다. 물론 아직 PC통신은 있다는 것만 알뿐 한번도 접속해 보지 못했다. 진씨가 극장에서 게이 바로 무대(?)를 옮긴 것은 1년전에 당한 사건 때문. 한달 한번 꼴로 88을 찾았던 진씨는 낯익은 얼굴도 거의 없는 데다, 정장 차림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것이 '빱'들의 '표적'이 됐다.

어느 날 공연장에는 그날 따라 사람이 적었고, 진씨를 뒤따라온 건장한 남자가 진씨의 옆자리에 앉았다. 진씨의 허벅지를 만지던 그 남자의 손이 일순 멈추는가 싶더니 꺾속말로 함께 나가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가 들어 왔다.

진씨가 커피숍으로 갈 것을 권하자, 그가 차라리 맥주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경양식집이 어떻겠냐며 잘 아는 데가 있다고 했다. 초면에 커피숍과 경양식집을 놓고 다툼일도 없겠다 싶었던 진씨는 그의 제의를 받아 들었다. 그가 안다는 경양식집은 간판도 작고 골목 안에 위치한 데여서 눈에 잘 띄지 않는 허름한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이 먼저 인사를 건네면서 안쪽 자리를 권했다. 함께 앉아 이야기꽃이 피는 동안 맥주를 나르는 주인이 간혹 진씨에게 들릴 듯 말 듯 "이사람 참 좋은 분입니다"라며 건장남을 추켜 세웠다. 20여분이 흐르고 건장남이 "무슨 일하시는 지 좀 알면 어떻겠습니까?"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고, 진씨도 무슨 답례라도 하듯 "네 전 00기업 과장입니다"며 명함을 건넸다.

그 뒤 1분도 채 안돼 건장남이 화장실을 다녀 오겠다고 나갔고, 돌아오면서 카운터에 들려 주인과 간단한 이야기를 주고 받는 듯했다. 맥주를 더 시키려는 것이겠거니 했던 진씨에게 돌아온 건장남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앉아 있는 진씨를 내려보면서 "야, 카드 있지?"하며 반말을 던져댔다. 어처구니가 없어진 진씨. "왜 그러세요?"라고 반문해보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상태였다. "야, 니네 회사 아가씨는 야근하

는데 너는 호모짓이나 하러 다녀?"라며 아까 준 명함으로 확인전화를 마쳤음을 암시했다.

진씨는 카운터에 가서 맥주 3병 값으로 40만원씩 두 번에 걸쳐 80만원을 카드 결제하고 씩씩하게 싸인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자신이 보는 데서 명함을 찢어 보여주며 "다시는 이런 짓 하지마"라며 마치 충고하듯 하며 순수하게 내보내준 것이다. 진씨는 경양식 집을 나오며 '복수'라는 글자를 떠올려 봤지만, 주먹질을 주고받으며 호모가 어찌니 하는 원색어 안에 놓여질 자신을 생각하니 한심한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라고 한다. 이미 잃어버린 돈보다는 또 다른 충돌이 없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 앞에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 <BUDDY> 5호, 1998년 6월, '밀착취재- 이반은 일반의 밥인가' 중

사례 7. 아웃팅 및 협박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28일 동거녀가 동성애를 이유로 변심하자 직장 등에 대자보를 붙여 동성애 사실을 폭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45.부산 해운대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 동거해오던 이모(29.여.회사원)씨가 직장 여성동료와의 동성애를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씨의 직장 정문 등에 '이씨는 같은 여자끼리 연애를 하는 사람이다'는 등의 대자보를 붙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이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돌아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상습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2004년 4월 28일, '동성애 이유 변심 동거녀 상습 협박'

사례 8. I 지역 아웃팅 협박 사건

2004년 여름 I 지역의 한 기간제 남자 교사 김 모(가명) 씨가 청소년 여성 이반 여러명을 대상으로 아웃팅 협박을 한 일이 있었다. 김 모 씨의 수법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우선, 스스로 여성 이반임을 가장해서 청소년 여성 이반들이 많이 드나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드나들며 그들과 채팅을 시도하고, 사귀을 전제로 채팅을 진행시켜 청소년 여성 이반인 상대의 개인정보들을 빼내고, 이후에는 자신이 가공해 낸 여성 이반의 지인임을 가장해 상대 청소년 여성 이반에게 오프라인 상에서 연락을 취해 접근해 만남을 종용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상대방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개학 이후 학교로 찾아가겠다. 그러면 네 정체성 다 까발려질텐데, 너 두고 보자.', '너 어디 사는지 아니까 집앞에 가서 기다리겠다. 부모가 알면 너 참 좋겠다.' 는 식으로 협

박을 했으며 만날 약속 장소로 모텔을 제안하기도 했다. 협박을 받은 청소년 여성 이반 피해자들은 언제 어디서 해코지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모든 등교와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학교나 가정에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질 것이 무서워 한시도 마음편할 날이 없었다. 그리고 이렇듯 김 모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은 I 지역 청소년 여성 이반 몇 명이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로 도움을 청해왔으며 <끼리끼리> 측은 I 지역 경찰과 연계해 피해자 몇 인의 진술서를 토대로 김 모 씨를 잡아들였으나, 그 이후에는 김 모 씨 측 가족의 합의 요구나 운신의 폭이 넓지 못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조건적 한계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접수-담당 사례

② 아웃팅을 매개로 한 폭력 및 성폭력

사례 1. 부모님의 폭력

저와 애인의 교제 사실을 저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애인의 집에 찾아가서 협박을 하고, 그 집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애인을 심하게 때린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헤어지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신지 마침내 제게 유학을 가라고 종용하십니다. 어찌면 좋을까요?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끼리끼리 상담 사례집' 중 page 65

사례 2. 경남 지역 연쇄 강간 사건

2004년 여름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는 아웃팅 협박을 받으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의 한 레즈비언으로부터 사건 신고를 받았다. 그리고 곧, 해당 지역의 단체인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로 사건을 넘겼으며 그리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은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의 담당하에 진행되고 있다. 여성 이반들을 연쇄적으로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P 모(가명) 씨에게는 현재 10년 수배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P 모 씨의 범죄 수법은 다음과 같았다. 첫번째 피해자가 어떻게 P 모 씨에게 걸려들었는지는 밝혀진 바 없으나 그 이후의 범죄는 이미 P 모 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이반이 미끼로 이용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P 모 씨는 기존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여성 이반을 피어 내게 하고 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음 여성 이반을 피어 내게 하는 수법으로 끊임없이 피해자를 양산해 냈다. P 모 씨는 교묘한 전략을 구사하여 이전 피해자와 다음 피해자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게 하는 등 지능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최초로 사건이 신고된 것은 2004년도

이지만 몇몇 피해자들의 진술로 미루어보아 P 모 씨는 이미 경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위와 같은 수법으로 여성 이반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해를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 모 씨는 피해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그들에게 만일 자신이 저지른 짓을 폭로할 경우, 피해자들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유포하거나, 피해자들의 성정체성을 폭로하겠다고 - 즉, 아웃팅시켜버리겠다고 - 협박을 해서 피해자들의 입을 막아 왔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이 알려질 것이 너무나 두려워 자신이 입은 성폭력 피해조차 아무곳에도 호소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다.

-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접수-담당 사례

사례 3. 아웃팅을 빌미로 한 강간

저는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스스로 레즈비언이라고 정체화한 지는 4년쯤 되었습니다. 현재 사귀는 애인이 있습니다. 애인은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1년 전, 애인이 저희 학교에 자주 놀러오고 제가 재학 중인 같은 과 친구들이나 선배들하고도 인사도 나누고 잘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제가 레즈비언이라거나 제 애인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저와 애인의 관계를 의심하던 같은 학과 남자 선배가 저희들의 관계를 캐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선배는 어느 날 학생수첩을 제게 내밀면서 "이 수첩에 나와 있는 너희 집 전화로 네가 동성애자인 사실을 알리겠다" 면서 협박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강간했습니다. 저는 현재 1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남자 선배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강간을 당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선배가 시킬 아웃팅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끼리끼리 상담 사례집' 중 page 98

3) 정책 대안

(1)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

① 인권 침해 범죄로써의 문제화

호모포비아가 심한 사회에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아웃팅은 당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앞서도 언급했듯, 아웃팅이라는 행위는 호모포비아적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 성적소수자들을 궁지로 몰고 간다.

최근 발생했던 레즈비언 대상 연쇄 강간 사건 같은 경우는 범죄자가 심지어 성적소수자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을 심분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범행 대상을 레즈비언으로 하여 아웃팅 협박을 하면 자신의 범죄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웃팅 관련 범죄는 범죄 그 자체의 심각성에 대한 처벌량에 더해 ‘아웃팅 협박’ 내지는 ‘아웃팅 행위’를 이용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적소수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점에 대한 가중 처벌량을 포함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성적소수자 본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타인에 의한 정체성 폭로인 아웃팅은, 성적소수자 당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② 아웃팅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

아웃팅의 위험성은 사회의 호모포비아 지수와 맞닿아 있다. 각종 법제도 및 사회 문화적 환경 등이 결코 성적소수자 친화적이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일 때, 성적소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한 아웃팅은 그 성적소수자 당사자에게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공포가 된다. 어떤 피해들을 입게 될지는 지난 선례들을 통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면 아직 타인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낼 만큼의 준비는 안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책 입안자나 수사 담당자 등은, 성적소수자 인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호모포비아 지수를 진단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아웃팅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실태에 걸맞는 각종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2) 구체적 대안

① 현행법에 대한 접근성 강화

현행법에 대한 접근성 강화 문제는, 앞의 ‘혐오 범죄’ 파트에서 이미 서술하였다. 다시한 번 강조하자면, 행법상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는 아웃팅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명예훼손, 개인정보공개, 협박, 등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인 것도, 현행법을 융통성있게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간 간과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안

목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검·경찰 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성적소수자 인권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권 교육의 커리큘럼을 개발할 때, 현실에 좀 더 근접한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척박한 한국의 토양에서 십여 년 간 성적소수자 인권 운동을 해 온 관련 전문 단체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② 가중 처벌

역시 ‘혐오 범죄’ 파트에서 이미 서술하였다. ‘아웃팅’이라는 행위가 범죄의 죄질을 더 나쁘게 하는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는 점만 강조하면 될 것 같다. 아웃팅 관련 범죄를 인권 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적절하게 가중된 처벌량을 부과해야 한다.

③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의 입법

이 역시 ‘혐오 범죄’ 파트에서 서술한 것과 다르지 않다.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안은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을 학습시키고 재생산하는 사회 제도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일 터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주의를 단번에 없애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하나하나 철폐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사회·문화·법·제도적으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에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그러한 차별을 금지하며 나아가 차별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성적소수자 차별 철폐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5. 교육

5-1. 제도교육

우리 사회는 ‘이성에 중심주의’가 근간에 깔려있어서, 사람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없이 성장하게 된다. 문제는 사람의 ‘성정체성’이란 자동적으로 결정되고, 인식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정규교육과정, 특히 그나마도 미흡한 성교육 과정에서조차 성적소수자의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다.⁹⁰⁾ 즉, 사람이 태어나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민하고 찾아볼 기회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

성적소수자들의 경우,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트랜스젠더인지를 스스로 고민하게 되는 시기는 각기 다른데, 이와 관련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심각하다. 고통과 방황의 시기를 거쳐 우울증을 앓거나, 인생을 자포자기하거나, 가출을 하거나⁹¹⁾, 자살시도를 하는 등 눈에 띄는 사례들⁹²⁾도 수두룩하다. 성정

90) “지난달 3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다 자살한 고 육우당(六友堂)의 추모식이 열렸다. (중략) 동성애인권연대 정을 대표는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10대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주었는가”라고 묻고 “사회는 이런 배려 없이 질타와 비판만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2003년 6월 15일, “[10대가뛰어든세상]청소년 동성애는 비행이라고?”)

91) “18살 동성애자 영식(가명)이는 고1 때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했다. 따지고 보면 ‘아우탕’인 셈이다. 집에 동성애 관련 프린트물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허락도 없이 뒤져보고 나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보통 남학생들 같지 않으니 그럴 것 같았다고 수궁했지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아니니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넌 미쳤어”라거나 하리수 될 거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가출해서는 친구 집이나 PC방, 찜질방을 전전했다. 집에 돌아오니 한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에게 “여자친구를 사귀어봐라”고 얘기했다. “그냥 황당해서 할 말도 없고 무시했어요. 전 부모님들이 동성애자 아이를 뒀을 땐 그 아이의 말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니까 저처럼 가출하고 그러죠.” 그 뒤로도 2번이나 가출을 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그는 가출을 통해 학교에 다니면서 못했던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여차하면 ‘아주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귀띔한다. (한겨레21, 2003년 11월 5일, “[가출] 돌아가면... 달라지나요?”)

92)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 자살 중 30%가 동성애 등 성적 정체성 비판으로 인한 것이다. 지난 4월 공성욱 정신과 전문의가 발표한 논문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 비교>에서도 동성애자들의 높은 자살 시도 비율이 확인된다. 남성 동성애자 129명과 남성 이성애자 114명의 설문조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성애자의 14.8%가 자살 시도 경험을 가진 반면 동성애자의 25.0%가 자살 시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한겨레21,

체성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다가 중년, 노년에 가서야 자신의 성적체성을 깨닫게 되어 갈등하는 경우도 많다.

성적체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비단 성적소수자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적소수자를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없는 존재', '이상한 존재', '바뀌어야 할 존재'로 간주하게 되는, 즉 '차별'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성적소수자의 존재가 인식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곧 우리의 교육이 차별을 생산하고 부추기는 것이란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5-1-1. 교과서

1) 실태 및 문제점

(1) '왜곡된 성'으로 간주⁹³⁾

1998년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는 동성애를 "동성연애"로 표기하면서, "198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의 성 도덕이 크게 문란해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성을 매개로 한 향락 산업이 번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인신 매매범이나 가정 파괴범이 늘어나고 있다. 에이즈, 동성연애, 매춘, 성폭행, 마약, 음란 비디오, 저질 만화 등이 늘어나면서 성 도덕의 문란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치관의 혼란과 성을 상품화하려는 상업주의에서 기인하며, 개인적으로는 성에 대한 무지와 그릇된 성 윤리관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105-106pp)라고 적시했다.

2004년 개편된 <고등학교 시민 윤리>에는 "정보 사회에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고 있어서 단일한 문화적 정체성만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어렵다. 성 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전통적인 성 도덕의 금기 사항이 무너지고, 동성애, 혼전 성교, 포르노그래피, 성 매매 등 다양한 성 문화가 범람하고 있어서 성 윤리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103-104pp)고 언급하고 있다.

(2) 성적소수자의 존재 찾아볼 수 없어

2003년 5월 9일, "어느10대 동성애자의 자살")

93) 케이,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 <반차별 포럼-교육과 차별> 자료집에서 인용, 2004년 4월 1일

교과서에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 이외에도, 아예 정체성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성적소수자의 존재를 만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성적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이성애자만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차별'이다. 교과서에서 그려지는 수많은 인간관계와 가족관계 속에 성적소수자의 존재는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2003년 9월 27일 끼리끼리가 주최한 '청소년 동성애자와 인권' 토론회에서 10대 레즈비언들은 학교교육에 대해 "지금까지 학교에서 단 한번도 동성애에 관한 올바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학교는 동성애자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며, "어떻게 동성애자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 가르쳐줘야 한다고 말했다.⁹⁴⁾

(3) 이성애적 가족질서를 기본으로 함

'2차 성장'에 대해 '이성에 눈을 뜨는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는 성적소수자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성애만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1998년 <고등학교 윤리>는 인간의 성을 "생식이라는 생명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사랑하는 과정에서 남녀의 생물학적, 사회적 차이는 명백하다"(107pp)고 언급하며 '사랑'을 '남녀간의 '성차'에 기반한 과정으로 소개했다. 이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전 교과과정에서 남녀 간 '결혼'을 통한 이성애적 가족 이미지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어, 성적소수자들의 존재는 "비정상"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 교과서는 '인권'을 교육하기 역부족일 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2) 대안

(1) 현행 교과서의 '간접차별' 시정 개편

교과서에 성적소수자를 차별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규 교과서에 성적소수자의 존재 자체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적소수자들을 '비정상', '일탈' 범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간접차별이다. 초,중,고 정규 교과서에 성적소수자의 존재가 등장해야 한다. 사회에서 성적소수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반드시 필요한

94) 일다, 2003년 10월 1일, "동성애는 별점"에서 인용.

일이다. 또한 성교육교과서는 물론 국어, 사회, 도덕, 윤리 교과서 등에서 성정체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규교과 과정에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2) 성교육 교과서 개편 및 성교육 실시

성교육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실용적인 교육이자, 가치관 교육이며, 인권교육이다. 그러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성윤리가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 제도교육 안에 성교육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교육 내에서도 성정체성에 대한 교육, 성적소수자의 존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교과목 중에서도 특히 성교육 교과가 성정체성과 성별정체성, 성적소수자의 삶에 대해 조명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점에서, 성교육 교과서에 집중적으로 성적소수자의 이해 부분을 담아야 한다. 또한 성교육이 제도교육 내에서 확실하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3) 교사지침서 개편 및 교사교육

‘교육’과 ‘상담’을 담당하는 사람이 성정체성과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다는 것이 커다란 결핍들이다. 교사와 상담가가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가 학생들과 내담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기본적인 인권교육을 수료 받아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⁹⁵⁾

95) “한국청소년상담원은 10월 16일 ‘청소년의 고민:내가 동성애자인가요?’라는 주제로 제24회 특수상담사례발표회를 개최했다. 전국 중고등학교 청소년 2,2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게 동성애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 본 청소년은 응답자 중 11.0%로 나타났다. 성별비율은 여학생(16.3%)이 남학생(6.5%)보다 2.5배 정도 높게 나왔다. (중략)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동성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34.7%)’고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고,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징그럽다, 변태 등)이 72%로 긍정적인 느낌(21.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피한다(11.8%)’, ‘따돌린다(2.3%)’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엔 ‘인정한다(14.0%)’, ‘격려한다(8.9%)’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승희 상담교수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네 가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성정체성 문제를 고민하는 청소년은 존재한다는 것, 성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 성정체성 고민을 하는 청소년을 위해 상담자, 학부모, 교사의 편견 없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 나라 여학생들이 향유하는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성적소수자의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배려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지침서 및 교사교육 과정에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며, 성적소수자의 현실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4) 인권 교과서 및 교과 신설

우리 사회의 제도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살면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영어나 수학 등의 과목에 가려지고 결과적으로 인성교육은 뒷전이 되어버린다. 앞으로 제도교육의 지향이나 교과개설 및 개편 방향은 인권교육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결코 한 교과, 특정 시간대의 배움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닌란 점을 전제로 하고, 다만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제도교육 내에서의 실효성을 위해 인권 교과서가 신설될 필요가 있다. 인권교과서의 내용에는 성적소수자와 같이 보다 열악한 현실에 있는 소수자의 인권을 중점적으로 담아야 한다.

5-1-2. 교육환경

1) 실태 및 문제점

(1) 성적소수자를 괴롭히는 학교

7~8살부터 십대 시절에는 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삶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성적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 또는 동성애자임이 발각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⁹⁶⁾를 겪고 고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일다, 2003년 10월 20일, “청소년 동성애 고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96) “아일랜드 동성애자 청소년 3명 중에 1명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고 지난 14일 영국의 Gay.com이 보도했다. 아일랜드 교육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 청소년 응답자의 29%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50%가 넘는 응답자가 자신의 성적성향을 이유로 주위로부터 놀림과 괴롭힘을 받은 적이 있다, 26%의 동성애자 청소년은 이러한 주위의 압력 때문에 자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중

통을 받는다. 교과과정 내, 수업시간 내 차별보다도 어찌 보면 학교의 성적소수자 차별적 환경이 이들 청소년들에게 더 견디기 어려운 차별이다.

사례1. 동성과 사귀는 학생을 죄인 취급하는 교사

고등학생 E씨는 다른 반 친구와 '애인' 사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학교생활이 어려워졌다. 담임교사는 E씨에게 어머니를 학교에 모시고 오라고 했고, E씨는 자신이 잘못된 일도 없는데 선생님 앞에서 어머니가 죄인처럼 얼굴도 못 들고 있었던 것이 마음 아팠다고 말했다.

- E씨와의 인터뷰

사례2. 교사와 동급생들의 동성애혐오 발언

“중학교 때였어. 옆 반 내 친구가 재밌는 얘기랍시고 쉬는 시간에 내게 달려와 해 주는데, 정말이지 기가 막혔어. (중략) 자기네 반 선생님이 무슨 얘기 중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대. ‘여러분, 호모들이 왜 에이즈에 걸리는 줄 알아요?’ 하고. 애들이야 시끌벅적 ‘아니요~’ 했던 거지. 그랬더니 이 선생이란 사람이 ‘그건 말이죠, 똥독이 올라서 그래요~’ 라고 했다는 거야. 반 전체가 그 얘기에 와르르 웃고.”

- 케이,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의 <반차별 포럼-교육과 차별> 자료집, 2004년 4월 1일

사례3. 미션스쿨의 호모포비아

기독교 계열 미션스쿨은 특히 학교의 분위기와 교육내용이 노골적인 호모포비아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다. 교사가 “사회가 음란해져서 신이 분노하신다”며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지 않고, 같은 성끼리 동침하고, 지금이 꼭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며 성적소수자를 세상 멸망을 가져올 존재로 묘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다.

(2) 상담창구의 부재

략) 영국 청소년지원단체인 Youthnet은 이 조사결과에 고립된 (동성애자) 청소년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에 북부 아일랜드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는 10명 중 8명의 동성애자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언어적, 신체적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아일랜드 전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5세 이하 360명의 남성, 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포함되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04년 1월 18일, “아일랜드, 동성애자 청소년 3명 중 1명은 자살시도 경험 있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기에 성적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은 교육내용이나 학교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고민을 나누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지지를 해줄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 고통 받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선 마땅히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고, 알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정보를 알려줄 만한 이도 없다.

2) 대안

(1) 학교의 인권침해실태 조사 실시 및 시정조치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성적소수자 인권침해 실태가 체계적으로 조사, 밝혀져야 한다.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위원회 등의 기구가 만들어져, 학교 내 성적소수자 인권 현황이 어떠한지 조사하고 공표해서 각 학교에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학교마다 성적소수자 인권교육을 의무화

교육의 장에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했듯이, 교육기관에서 성적소수자 차별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정책을 써야 한다.

※ th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는 2000년 9월 26일에 각 유럽 정부들에 첫째,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할 것과 둘째, 학교와 의료기관, 군대와 경찰 등의 동성애혐오적인 태도들을 없애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 그리고 동성 커플의 관계를 합법화하는 법률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3) 미션스쿨에서의 성적소수자 차별금지

기독교 계열 미션스쿨에서 성서나 신의 이름을 들어 성적소수자의 존재를 차별하지 않도록, 성적소수자 인권지침 등이 필요하다. 특히 성서 해석의 방식과 관련해 성적소수자에게 차별적이지 않은 성서읽기 등 기독교적 방법론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4) 성적체성 관련 상담창구 마련

학교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고민에 열려있어야 하며, 특히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성적소수자들의 존재를 지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⁹⁷⁾ 학교에는 성정체성을 비롯한 많은 고민들을 상담하고 지지해 줄 상담창구가 마련되어야 하고, 담당교사는 반드시 성적소수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며 인권현실을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어야 한다.

(5) 대안교육의 장 마련

미국 뉴욕에선 동성애자 청소년을 위한 공립학교를 개교하기로 했다.⁹⁸⁾ 이는 동성애

97) “‘학교현장에서 바라본 동성애 현황’을 발표한 한세전산고등학교 정연희 양호교사는 “순리대로 살라던 아버지가 ‘네가 어떻든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셔서 너무 고맙다”는 한 청소년의 말을 인용하면서 “청소년 동성애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또한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가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희 교사는 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할 테지만, 학교에서만이라도 성적소수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회는 상담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실태조사와 사례발표를 통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청소년 동성애자의 인권을 고민하고,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기법 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담현장과 교육현장에 있는 상담가와 교사에게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최선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일다, 2003년 10월 20일, “청소년 동성애 고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98) “지난 28일 AP통신은 미국 최초로 동성애자 청소년을 위한 공립학교를 올 가을 개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략) 지난 2002년 뉴욕 시 교육위원회는 32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했고, 오는 9월 약 100여 명의 학생이 입학할 예정이다(정원은 170명이다). 동성애자 청소년을 위한 인권 단체인 헤트릭-마틴 재단(Hetrick-Martin Institute)도 학교 운영과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략) 뉴욕 시 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는 “동성애자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학교에서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의 개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이라고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HMHS는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를 위한 교육 네트워크(Gay, Lesbian and Straight Education Network|GLSEN)의 대변인은 블룸버그 시장의 견해에 동의를 밝히며 “불행하게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여전히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 걸쳐 1/3의 동성애자 청소년들은 이러한 괴롭힘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40%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히며 “HMHS의 개교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지만, 앞

자 청소년들이 주위 환경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안 학교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우리의 경우, 성적소수자 청소년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미국과 비교해서 현저히 적다는 점에서 공립학교를 개설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소규모 대안교육의 장이 마련될 필요는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도 동성애자 청소년의 '가출'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교육의 장이 수용해주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안교육의 장에서 수용해주어야 한다.

5-2. 인권교육

1) 인권교육의 필요성

(1) 차별을 예방하는 방법

차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상당 부분 '무지'에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인권을 보장하려면 무엇보다 '교육'을 통한 '앎'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제도교육 외에도 인권교육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인권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⁹⁹⁾

(2) 성적소수자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제공

성적소수자는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깨닫는 과정부터 막혀있다. 따라서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선 특히 인권교육이 절실하다. 일례로 결혼 후 20년이 지나서야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깨닫게 된 40대 중반의 여성 K씨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성애와 결혼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으로 장기적으로는 학교에서 육체적/언어 폭력에 시달리는 동성애자 청소년을 위한 국가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성애자 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는 궁극적인 해답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중략) 샌프란시스코와 델러스도 동성애자 청소년을 위한 유사한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03년 7월 29일, "미국 뉴욕, 동성애자 청소년을 위한 공립학교 개교")

99) 조이여울, <뒤틀린 존재>라는 낙인-한국사회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 <<제주인권학술회의 발표문 모음집>>, 2002. 참고

간주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적엔 ‘동성애’란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K씨는 자신이 이성애자라는 것을 의심해본 적이 없었다.

K씨는 남들이 그렇듯이 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았지만, 40대 중반이 되어서 한 여성과 사랑에 빠지면서 그것이 이전에 그냥 스쳐온 ‘동성애’에 대한 친밀감 정도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결 깨닫게 되었다. K씨는 한동안 혼자 고민하고 방황하다 동성애자 커뮤니티와 단체들을 찾게 됐고, 이를 통해 정보를 얻게 됐으며 비로소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게 될 기회를 잡게 됐다. K씨와 같은 사례는 동성애자 인권단체,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다.

(3)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교육 필요

성적소수자 차별을 예방하려면 학교 뿐 아니라 상담기관, 언론매체, 정부 및 지자체, 검경, 법원, 직장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과 사회 각 분야에서 성적체성, 성적소수자의 이해와 관련한 교육이 고민되고 추진돼야 한다.

2) 대안 및 방식

(1) 정부와 지자체의 차별예방 캠페인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고, 차별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방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공익광고를 통해 성적소수자가 다양한 사회구성원 중 하나이며, 성적소수자들의 삶이 인정되고 지지 받아야 하며, 인권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성적소수자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인식변환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의 이러한 역할이 그 무엇보다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2) 공직자 및 공무원 교육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공익성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의 테두리로 공직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공직자 및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타 기관 및 기업에서의 인권교육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하다.

(3) 법조인과 검경 교육

성적소수자들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단지 성적소수자라는 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성적소수자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수사관이 성적소수자의 성정체성을 수사과정에서 ‘아웃팅’시키는 경우나, 동성애자란 이유로 혹은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공정하지 않은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성적소수자를 ‘이상한’ 존재로 낙인찍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정해야 할 법의 집행과 판단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결과를 낳기 쉽다. 따라서 경찰교육, 검찰교육, 사법연수원 내 교육과정 등을 통해 성정체성과 성적소수자 인권교육¹⁰⁰⁾을 실시해야 한다.

(4) 대중교육 자료집 발간, 시민강좌 개설 등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시민교육, 평생교육, 사회교육 과정에 성정체성과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¹⁰¹⁾이 확장되어야 한다. 대중교육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자료집을 작성해 배포하고, 지역사회가 추진하는 시민교육으로 성적소수자 인권교육이 권장되어야 하며,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관련 강좌를 개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100) 2004년 12월 18일, 캐나다 토론토 경찰은 업무 수행 시 ‘동성애자 대하기 훈련’을 받게 됐다고 토론토 언론이 보도했다. 토론토 경찰위원회는 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동성애자 7명이 제기한 차별철폐 소송에 합의해 해당 경찰관이 사과하고 같은 사건을 방지하는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101) “한국동성애자연합은 시민.사회단체와 학교 등 교육시설, 언론, 청소년상담실 등을 대상으로 ‘동성애 바로알기 강좌’를 실시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동성애자연합은 여성 성적소수자 모임인 ‘끼리끼리’가 해온 강좌를 확대, 실시하는 이 사업을 통해 성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직면한 현실문제와 인권의 시각에서 소수자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연 내용은 동성애 관련 용어의 정의,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사회구성론적 접근방식, 매스미디어에 나타난 동성애의 이미지,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역사 등이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여성학과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등 20여개 단체가 이 강좌를 들었다.” (연합뉴스, 2003년 2월 3일, “동성애 바로알기 강좌 실시”)

6. 노동

성적소수자들은 성정체성, 성적지향성을 이유로 노동권을 박탈당한다. 이는 생존의 문제이며, 성적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감추고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차별 기제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안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¹⁰²⁾

6-1.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1) 실태

동성애자의 경우 외관상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모집, 채용 시 차별사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직장에서 동성애 자임이 밝혀졌을 때 즉각 '해고'를 당한다는 사실로 비추어보아, 커밍아웃한 성적소수자가 채용 시 어떤 차별을 겪게 될 것인지를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외관상 자신의 타고난 신체적 특징과 실제 성별정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수가 신체를 다르게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로 인해 남성/여성 이분법에 익숙한 사회는 트랜스젠더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채용 과정에서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직장은 노골적으로 이들을 차별한다.

일례로 트랜스젠더 모임 '아니마'의 운영자 다운(43세, MtoF)씨는 "트랜스젠더들이 하리수씨처럼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거나, 겉으로 여성 혹은 남성으로 완벽히 전환(타고난 몸과)된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경고한다. 트랜스젠더들은 외모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분간하기 어렵거나, 여러 차례의 수술과 호르몬 투여로 외형상에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을 주는 것도 고통이지만, 직장을 얻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린다. 식당에서 일하는 것조차 거절 당한다. 다운씨는 "트랜스젠더들이 달리 갈 곳(직장) 없어서, 그나마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은 업소(접대부)로 빠지지만 그것이 트랜스젠더에게 권할만한 직업은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¹⁰³⁾

102) 조이여울, <뒤틀린 존재'라는 낙인-한국사회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 <<제주인권학술회의 발표문 모음집>>, 2002. 참고

103) 2001년 8월, 다운씨 인터뷰

2) 대안

(1) 모집, 채용 단계에서의 차별실태 조사 및 시정조치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위원회, 혹은 노동부 산하 고용평등위원회 등을 설치해 모집, 채용 단계에서 성적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또 이를 공표하여 사회적으로 성적소수자들의 노동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함을 알리고,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당사자를 구제해야 한다.

(2) 성적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적용

성적소수자 노동권 침해 행위는 성적소수자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심각한 차별행위다. 직장 내 차별금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성적소수자 차별금지법에서 이를 중요한 내용으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3) 혐오범죄로 가중처벌

고용주가 성적소수자들에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심각한 차별행위에 대해선 법적으로 가중처벌을 함으로써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4) 회사의 고용정책에서 성적소수자 차별예방 기준 마련

고용차별 행위는 다양하지만,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무엇이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인지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회사의 고용정책에서 성적소수자 차별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6-2. 직장 내 차별적 문화

1) 직장 내 차별실태

성적소수자들이 커밍아웃이나 아웃팅을 이유로 직장에서 자신의 성적체성이 밝혀졌

을 때 노동권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처럼 ‘드러나는’ 인권침해만을 직장 내 성적소수자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성적소수자들이 직장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힐 수 없게 만드는 문화 역시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¹⁰⁴⁾이다.

(1) 이성애적 질서 강요

성적소수자들은 회사에서 강고한 이성애적 질서를 강요받는다. 동료, 상사들로부터 수도 없이 “언제 결혼하나” 혹은 “왜 결혼을 하지 않았나”는 말을 듣게 되고, 여가 시간에도 “(이성)애인과 데이트를 하는가”, “(이성을) 소개시켜 주겠다” 등의 제안을 받게 된다.

(2) 동성애 비하 발언

직장에서 동료들 간 우스개로 나누는 대화 속에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들이 많다. “호모새끼” 등의 비하발언, 동성애자의 존재를 괴물처럼 묘사하거나 성적농담의 주제로 삼는 것 등 다양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적소수자들은 늘 숨을 죽이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호모포비아적인 발언을 하는 동료, 상사들과 직장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는 환경은 성적소수자들에게 적절한 노동환경이 아니다.

(3) 아웃팅과 따돌림

직장 내 구성원이 성적소수자의 성정체성 혹은 성별정체성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의도적으로 타 구성원들에게 ‘아웃팅’시켜 당사자의 삶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104) “1999년, 동성애자란 이유로 군대에서 쫓겨난 3명의 남성 동성애자(던칸 러스틱 프린, 존 베케트, 그랜 그레이디)와 1명의 여성 동성애자(지넷 스미스)가 유럽인권법정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다. 당시 유럽인권법정은 “개인의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할 것을 규정한 유럽인권협약 제8조를 영국정부가 위반”했음을 지적하며,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구성원을 해고한다는 것은 사생활을 누릴 권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일”이라고 판결하였다.

즉, “케이, 레즈비언의 커밍아웃할 권리는 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만큼이나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협약 제9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제10조(표현의 자유), 제11조(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적용해 선언하기도 했다.” (여성신문, 2000년 10월 10일, “영국 동성애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들”)

일례로 끼리끼리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한 시민운동단체에서 오랜 기간 상근을 해왔던 L씨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이 알려지면서 단체 내에서 쌓아왔던 신뢰관계를 완전히 잃게 됐다.

L씨는 본인이 커밍아웃을 한 게 아니었지만, L씨의 연애관계에 대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몇몇이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L씨를 아웃팅시킨 것이다. 해당 단체 사람들은 L씨가 동성애자이고, 이 단체에서 발을 붙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모아 결국 L씨를 단체에서 퇴출시켰다. 시민운동단체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질 정도면 일반 직장에서도 성적소수자가 아웃팅을 당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예측해 볼 수 있다.

2) 대안

(1) 직장 내 성적소수자 차별문화 실태 조사 및 시정조치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위원회, 혹은 노동부 산하 고용평등위원회 등을 설치해 직장 내 성적소수자에게 차별적인 문화에 대한 사례를 모으고,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실태조사는 성적소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실태조사 자체가 직장 내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사된 직장 내 성적소수자 차별실태를 사회적으로 공표하여 성적소수자들의 노동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함을 알리고,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적절한 대응을 통해 구제해야 한다.

(2) 직장 내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인권교육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예방 교육도 제도적으로 규정, 실시될 필요가 있다. 직장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언행이 난무하다는 것을 생각해보았을 때, 차별예방교육은 성적소수자인 노동자가 노동권을 확보해나갈 수 있는 초석이라 할 수 있다.

(3) 성적소수자 차별금지 사규제정

직장 내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직장 내 명문화된 규정¹⁰⁵⁾

을 통해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정부는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기업 내 성적소수자 차별예방을 위한 사규제정을 권고해야 하며, 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의 보다 적극적인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6-3.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폭행

1) 실태 및 문제점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성 간 성희롱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그러나 동성 간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트랜스젠더의 경우 더욱 복잡한 법 해석이 끼어들 여지가 있다.

동성 간 직장 내 성희롱 역시 남녀 간과 마찬가지로 고용차별의 문제로 봐야 한다. 또한 이 때의 성희롱이 (이성에게든 동성에게든)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형태로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성적소수자 차별금지법 등의 제정을 통해 가중처벌하고, 손해배상액을 늘려 실질적인 고용평등을 이루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2) 대안

105)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직원 및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 기업들의 노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룩한 것으로 25일 공개된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500대 기업과 포브스가 선정한 200대 기업 중 250개 기업을 상대로 미국의 동성애자 인권단체 ‘인권캠페인’이 실시한 ‘기업평등지수’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에 비해 2배나 많은 21개 기업이 성적 성향에 따른 차별철폐를 위한 노력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인권캠페인의 킴 밀스 교육부장은 "간단히 말하면 성공하는 기업일수록 평등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크다는 것"이라고 설문 결과를 평가했다. 조사대상 기업중 95%는 성적 성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명문 사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난 해 93%) 나타났고 동성애 동거 파트너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기업도 70% (지난 해 67%)로 늘어났다. 100점 만점을 기록한 유명 기업으로는 아메리칸 항공과 에트나 보험, 이스트맨 코닥, 리바이 스트로스 등이 꼽히며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은 지난 해 0점이었다가 올해 71%로 수직상승한 모범사례로 제시됐다.” (연합뉴스, 2003년 8월 15일, “美기업 동성애자 권리 강화노력 진전”)

(1) 남녀고용평등법 및 남녀차별금지법의 확대적용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이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이 법을 '성정체성'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동성 간 성희롱 포함

의무규정으로 되어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에 동성 간 성희롱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성정체성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그 부당성을 알리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3) 성적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적용
위 6-1.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과 동일

(4) 혐오범죄로 가중처벌
위 6-1.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과 동일

6.4. 승진차별 및 해고

1) 실태 및 사례

언론에 아웃팅 된 이후 각종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해고된 연예인 홍석천씨를 비롯해, 레즈비언임이 알려지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교회 반주자 자리에서 쫓겨난 레즈비언 인권운동가 등의 사례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성적소수자가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엿볼 수 있다.¹⁰⁶⁾

2000년 9월, 탤런트 홍석천씨는 한 언론에 의해 아웃팅된 이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다. 그리고 MBC '뽀뽀뽀' 프로그램에서 퇴출됐다. 홍석천씨는 자신이 해당 프로그램에서 보조 참여자로서는 가장 오래 출연을 한 사람이었으며, 제작진을 연장 출연을 결정할 때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성애자임이 밝혀지자마자 홍씨는 제작진에게 출연 정지를 통보받았다.

106) 조이여울, <뒤틀린 존재>라는 낙인-한국사회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 <<제주인권학술회의 발표문 모음집>>, 2002. 참고

같은 날 홍석천씨는 출연이 확정돼 시범 방송까지 녹음했던 MBC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제외됐다. 방송국 관계자들은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다만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윗 사람으로부터 “왜 그랬냐(동성애자임을 시인했냐)”는 말을 들었다. 한편 1996년 한국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활동가를 비롯해 수 명의 레즈비언들이 SBS <송지나의 취재파일>에 출연해 커밍아웃했다. 이들 중 한 사람인 G씨는 국적이 미국이었는데, 가족들은 미국 한인사회에 거주하고 있었고 본인은 한국에 와 레즈비언 인권운동을 하고 있었다. G씨는 가족들과 공간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언론에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 가족들에 대한 부담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미국 한인사회에 비디오로 유통되면서, G씨의 어머니는 교회 반주자 자리에서 퇴출됐다.

비슷한 시기 언론에 커밍아웃을 한 레즈비언 S씨는 며칠 뒤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수 년 간 일해 온 전문직 사원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선 S씨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S씨에 따르면 회사에선 “근무 불성실”이란 이유를 대면서 나가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에 S씨가 “근무 불성실”이란 걸 입증할 자료는 어떤 것도 없었고, 오히려 성과가 좋은 직원으로 평가 받고 있었다. S씨는 “왜 나가라고 하는지는 뻔한 일이었고, 그 사유를 더 캐서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한다. S씨는 그냥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2) 대안

(1) 성적소수자 고용평등을 위한 기구 필요

성차별뿐 아니라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고용평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기존 제도와 법을 개선하는 방안과, 새로운 제도와 법 마련 방안을 비교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성적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고용차별을 막기 위해 고용평등전담 기구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고용평등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상 성차별을 소수자에 대한 차별 전체로 확장시켜야 한다. 그러나 두 법을 개정하는 방식보다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고용차별 규제를 별도로 ‘성적소수자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방법이 더 적합할 듯 하다. 차별시정을 위해선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역부족이다. 소수자 차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3) 피해자 입증책임의 완화

차별을 당한 사람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모두 지었을 때, 차별행위를 입증하기 무척 어렵다. 미국의 경우, 차별 금지 소송에서 차별금지 입법이 이루어진 영역에 대해선 입증 책임을 사실상 회사 측에 지움으로써 차별 피해자들이 보다 손쉽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¹⁰⁷⁾ 회사에서 '성정체성'을 이유로 해고된 성적소수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적이 없거나, 대응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현실이란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차별행위에 대해선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거나 가해자 측에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미국은 차별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승소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구제함과 동시에 가해자 측으로 하여금 재정적인 손실을 감안해서라도 더 이상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¹⁰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악의로 차별행위를 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처벌적 의미를 지닌 손해배상금까지 인정하는 제도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보적 손해배상(손해가 난 액수만큼 배상하게 하는 것)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손해배상인 것이다.

107) 김두식, <헌법의 풍경> 인용

108)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12일 사내에서 성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현직 여직원과의 소송에서 5400만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 소송은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2001년 채권 판매 담당 전 간부 앨리슨 시펠린 등 전현직 여직원 300여명을 대리해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모건 스탠리는 공개재판이 시작되기 전 EEOC와 합의함에 따라 법정에서 사내 여직원 성희롱이나 차별과 관련한 치부가 공개되는 상황은 면하게 됐다. 필립 퍼셀 회장은 합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남녀 고용 평등을 위해 EEOC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EOC 소송대리인인 주디 키닌 변호사는 "이번 합의로 다른 업체들에도 사내 성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략)

모건 스탠리가 합의한 5400만달러 중 1200만달러는 승진 차별에 항의하다 해고된 시펠린에게 지급된다. 또 4000만달러는 전현직 여직원의 차별 주장을 접수,심의하는 펀드에 제공되며 200만달러는 성차별 방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사용된다." (국민일보, 2004년 7월 13일, "성차별 합의금 5400만弗 모건스탠리 소송합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입은 손실을 피해자에게 단지 전보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시범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¹⁰⁹⁾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윤과 관련이 있으므로, 차별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한국에도 이 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¹¹⁰⁾

(5) 차별 예방교육 제도화, 가이드라인 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성적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고용차별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 '교육'은 처벌보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현명한 대안이다. 다양한 방식의 차별방지 교육이 필요하다. 위에 열거한 제도적 대안이 마련된다면, 회사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차별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¹¹¹⁾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109) 김두식, <헌법의 풍경>에서 재인용, 윤정환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17호 참조

110) "지난 8월 31일, 유럽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성차별 소송이 재개됐다. 문제의 주인공은 메릴린치(Merrill Lynch&Co.)의 유럽 개인고객 부문 관리자였던 스테파 니 빌라르바(42). 하버드 출신에다 실무능력도 뛰어나다고 믿었던 그녀가 2003년 해고당했는데, 원인은 실적부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그녀는 자신이 상사에게 성차별 당했고 같은 일을 하는 남자동료에 비해 보수도 형편없었다며 1350만달러짜리 소송을 제기했다." (매경이코노미, 2004년 9월 9일, "[글로벌 비즈니스] 유럽 성차별 소송 급증")

111) "미국에서는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방 정책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사용자를 면책시켜주지 않는 것이다. 예방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정책을 마련하고, 공표하고, 이행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1986년 연방대법원이 성희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인 메리터저축은행 대 빈슨(Meritor Saving Bank v. Vinson) 판례는 빈슨이 은행에서 근무하던 4년여 동안 직속상사인 테일러(Taylor)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적 요구를 당했고 실제로 대략 40~50번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중략)

연방대법원은 "은행의 반차별 정책은 성희롱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 성희롱이 사용자가 금지하는 차별 유형이라는 것을 피고용인들에게 경계시키지 못했다. 게다가 은행의 고충제기절차는 그 1단계로 자신의 상사에게 알릴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바로 테일러인 것이다"라며 은행 측 주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EEOC(고용기회평등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의 가이드라인은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은 성희롱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하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인 상사에게 먼저 고충을 제기할 것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일다, 2003년 12월 3일, "미

성적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인권가이드 라인을 제작, 배포해 회사들이 지침서로 삼게 해야 한다.

국,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 인정안해")

7. 트랜스젠더(Transgender)

1) 트랜스젠더의 현황 및 차별실태

(1) 현황

외국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발생율은 남자의 경우 인구 30,000명당 1명, 여자의 경우 100,000명당 1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발생율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약 1,000명 내외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¹¹²⁾ 한편 대한의사협회의 및 여성부 발표에 의하면 국내의 트랜스젠더의 수는 4,500명 정도이며, 그 중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시행된 성전환 수술은 300-400건 정도라는 통계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통계일 뿐이며, 광범위하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성전환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트랜스젠더들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이 외부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로 파악할 수 없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추산에 따른 산정 및 통계 외에도 상당수의 트랜스젠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역시 다른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사회적 무지와 편견에 기초하고 있다. 차별은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서, 특히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성별을 기입해야 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즉시 작동한다. 이러한 이유로 트랜스젠더들은 공적 생활의 영역에서 추방당해 왔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실제적으로 생활영역 전반에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절차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제도적인 방식의 문제제기가 극히 미미하거나 전무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권보장 수준과 차별의 실태가 공적인 문제제기가 어려울 정도로 억압적인 상황에 있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또한 차별은 사적인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형사절차상 수사기관의 편견으로 인한 차별과 같이 공적인 영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아래 사례 1. 의 경우는 MtoF 트랜스젠더의 고용기회상의 차별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트랜스젠더들의 경우 사실상 고등교육, 전문교육 기회가 박탈됨으

112) 송영길, 성전환자의 인권과 호적정정, 2001년 송영길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1, 4면

로써, 유흥업이나 성산업에 유입되는 전형적인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례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표현된 성과 실제의 성이 다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의 대부분은 채용의 단계에서부터 차별을 받게 되며, 또한 직장에 근무하면서 성전환수술을 받는 경우는 해고에 대한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

사례 2. 의 경우처럼 많은 성전환자들이 자신의 성전환수술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고액의 수술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위협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례 3. 은 트랜스젠더들 역시 다른 성적소수자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법집행자의 편견과 무지로 인한 차별과 성적체성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형사절차상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수사지침에 성적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례 4. 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사적인 재화, 용역의 공급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례 1. 고용기회상의 차별

“신청인은 장래 미용사와 같은 여성을 상대로 하는 직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미용학원에서의 멸시와 따가운 눈총을 견딜 수 없어 제대로 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신분 확인 때마다 당하는 인간적인 모멸감과 이로 인한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한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신청인은 서울에 있는 게이클럽(gay club)에서 가수 또는 무용수로 일하다가 그도 여의치 아니하여 정상적인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나라를 피하여 1992년에서 1996년까지 일본의 밤무대에서 신청인의 표현을 빌리면 ‘죽기보다 싫은 공연’을 하면서 여성으로 힘들게 살다가 다시 귀국하여 유사한 업소에서 일하여 왔다.”

-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2001 호파 997, 998
호적정정 및 개명 사건에 대한 판결문 중 인정사실 부분

사례 2. 입법의 공백상태에서 무면허수술에 의한 피해

최근 성전환수술자들의 여성호적변경 허가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무자격 성전환수술사와 불법으로 여성호적을 만들어 주는 브로커들이 날

뛰고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임윤희검사는 2일 국내에 3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화 남성(속칭 게이보이)을 상대로 돌팔이 수술을 해 부작용을 빚게 한 김모씨(42·가명) 등 2명을 수배하는 등 무면허 성전환수술사들의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여성호적 취득이 불가능했던 점을 이용,△사망신고를 한 다음 여성호적으로 일가창립을 하거나 △여자라는 의사의 가짜 확인서 등을 만들어 호적정정 신청을 내는 수법으로 여성호적을 만들어 준 브로커들이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면허 의사인 김씨는 신분상의 문제로 서울 이태원 등지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여성화 남성」들에게 성전환수술을 해주었으며 이중 5~6명에게 부작용을 빚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김씨는 서울과 부산은 물론 일본까지 드나들며 이같은 무면허 수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현재 이태원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화 남성」 박모씨(23)는 3백만원의 수술비를 마련, 김씨를 찾아 일본에까지 건너가 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으로 앓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여성화 남성」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의 무면허의사들은 3단계의 성전환수술중 1단계인 「남성」을 자르는 수술을 주로 하고 있으며 한번 수술에 3백만~5백만원의 수술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일보, 1990-07-03

사례 3.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A씨는 20대 중반의 트랜스젠더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 평범한 여성이다. 2003년 어느날, 이미 헤어진 남자 애인이 술에 취해 집으로 찾아왔고, 실랑이를 벌이다 혼자 사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사건을 조사하는 형사들은 그 사건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 먼저, 피해자의 신분을 보호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트랜스젠더가 성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 왔다고 소문이 퍼져 다른 층에 있는 다른 과의 형사들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를 구경하기 위해 우르르 몰려들 정도였다고 한다. 가해자와 대질과정에서도 피해자인 A씨의 증언을 듣기 보다는 가해자인 남자의 말을 더 신뢰할 뿐 아니라 A씨를 바로 앞에 두고도 가해자인 남성과 히히덕거리며 "어디 먹을 게 없어서 트랜스를 먹냐" 라든지 "그래, 해보니 보통 여자랑 다르냐? 어때?"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A씨가 병원에서 '성폭행에 의한 질 파손'이라는 진단서까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자료로 쓰여지지 않았고 이 성폭행 사건은 A씨가 전혀 합의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재판도 없이 벌금을 물고 풀려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A씨가 트랜스젠

더란 것을 알게 된 주거지 관할 경찰들이 순찰 도중 A씨를 만나게 되면 큰소리로 아는 체를 하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아 결국 A씨는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상담 사례 중에서.

사례 4. 재화, 용역이용 거부

동성애자인권연대는 1999년 군복무 중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군병원에 입원해 의사들로부터 '호모'라는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강제로 에이즈검사를 받은 정모씨(24)와 2000년 7월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다며 국내항공사로부터 탑승이 거부된 트랜스젠더 김모씨(45) 등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에 동성애 관련 진정 2건을 접수시킨 바 있다.

- 동아일보 2002. 3. 24. "동성애자 인권운동 팔 걷었다 - 국가인권위진정"

2)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호법리와 특례법(안) 검토

(1) 현행 법률에 의한 보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은 현행 법률 중 트랜스젠더 차별 규제에 대한 규정으로는 (또는 그러한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는) 유일한 것이다.

(2) 헌법상의 보호원리

2002. 11. 4. 김홍신위원이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이하 법안)은 제안이유를 "현행법에 의하면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출생시 신체적 성과 반대의 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호적상의 성별의 변경을 할 수 없고, 그 결과 결혼 및 가족의 형성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제반 사회활동에서도 불편함을 겪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소수자보호의 원리에도 배치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전환자들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성별의 변경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성전환자에 대하여도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별정정 및 개명허가 사건에 대한 2002. 7. 3.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판결은 "법률

조항의 흠결을 들어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성전환증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헌법 제10조)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헌법 제34조 제1항),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지닌 소수자로서 헌법 이념에 따라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헌법 제37조)는 헌법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우선 이 점에서 용인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¹¹³⁾

위 법안과 판결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적소수자의 기본권은 헌법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 소수자 보호의 법리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이후 입법의 지도 원리로서 법률해석의 지침으로 작용되어야 한다.

(3)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검토

이 법안은 2002. 11. 4.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되었으나, 본 회의의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위 법안은 전체적으로는 국내 트랜스젠더의 인권 현실에 분기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법안이 임기만으로 폐기되었고, 현재 호주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고 그 결과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이후 입법 방향은 당시의 특례법(안)과는 상당한 내용상의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제도 도입을 위한 진전된 논의를 위해서 법안의 몇 가지 개선점만을 간략히 검토한다.

① 성전환자 및 성전환수술의 정의¹¹⁴⁾

법안에서의 “성전환자”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는 의학상의 성전환증에 대한 정의에

113) 한인섭, 양현아, 『성적소수자의 인권』, 2002, 225면

1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전환자”라 함은 출생시 확인된 신체의 성이 자신의 진정한 성이 아니라고 확신하면서, 적어도 2년 이상 다른 성의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외부성기로 표현된 신체의 성을 혐오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 성정을 얻으려는 강한 심리적 상태에 놓여있는 자를 말한다.
2. “성전환수술”이라 함은 성전환자가 지닌 고통의 경감을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정한 의사가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 등을 제거·변형하여 반대되는 성으로 전환할 의도로 외과적 침습을 가하는 의학상의 조치를 말한다.

해당하는 것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를 성전환자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성전환적 성향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전환증”이라는 용어를 법률에서 사용하여 사회적 편견을 법이 다시 확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법안에서의 정의 방식이 타당하다.

“성전환수술”의 정의 중 의료법 제2조¹¹⁵⁾에 정한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에 대한 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에 대하여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별 변경의 요건

법안의 제3조 성별의 변경¹¹⁶⁾에서는 법원에 성별 변경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1. 성전환자, 2. 성전환수술, 3. 재전환 가능성이 없을 것, 4. 성년자이고 행위능력자일 것, 5.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등의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은 법안 작성 과정에서 병역의무 이행 요건 등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기는 하나, 행위능력자임을 요구하고 있는 점 및 성년자라는 요건은 이후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성년자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상당 기간 기존의 법적인 성에 따라 생활해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및 인권침해 문제가 예상되고, 성전환수술과 법적인 성별 정정이 조기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트랜스젠더의 사회적응과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18세로 요건을 정하고 있는 독일의 입법례 등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전환수술의 단계에서 수술의 허용여부 및 호적변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115) 의료법 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116) 제3조(성별의 변경)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인은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별변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전환자일 것
2. 성전환수술을 통하여 성적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명백히 변경되었을 것
3. 장래 성 인식의 재 전환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
4. 성년자로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닐 것
5.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을 받게 하여, 무분별한 수술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의 차이로 수술 이후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 신청이 불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¹¹⁷⁾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성전환수술이 반드시 법적인 성별 변경과 논리 필연적인 관계에는 있지 아니하며, 수술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외과적 수술의 단계에서부터 법원이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방향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③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법안 제5조 (신청 및 재판 등의 절차)에서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성별변경이 가지는 포괄적 효과를 중시하여 별도의 “성별확인소송”과 같은 제도를 설정하여 정식재판절차에 의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다.

판단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절차에 의한 진행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도 비송사건절차로 진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심문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¹¹⁸⁾하여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성별변경제도를 규정함에 있어 성별변경제도 자체 뿐 아니라 성별 변경 후 성별 변경 사실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차별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하다.

3) 성전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성전환에 관한 외국의 동향

각국은 판례나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여 트랜스젠더의 법적인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인권조약에 근거하여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특히 영국, 프랑스의 법률이 유럽인권조약

117) 공청회 과정에서 특례법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측 뿐 아니라, 성별 변경에 적극 찬성하는 측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118)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 (심문의 비공개)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에 반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유럽인권법원의 판결 이후 판례를 변경하여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판결은 스위스 법원의 1945. 7. 2. 결정으로,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법은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있어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부여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전통적인 도덕과 종교에 의하여 결론이 내려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최선의 이익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개인의 심리학적 성의 선택이 의학적으로 건전하고, 일시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이 행해진 경우에 사회는 그 성전환자가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의 법률적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무엇이 성전환증 환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¹¹⁹⁾

(2) 독일

독일은 성전환 문제를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해 오다가 1980년부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름의 변경 및 성의 확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1993년 법률 제정 당시의 25세라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18세로 개정하였으며, 신청인의 동의 없이 변경 이전의 이름을 개시하거나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및 당사자가 신청한 성별 재전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징이 있다.

(3) 스웨덴, 네델란드

성전환에 관한 입법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스웨덴의 “성의 전환에 관한 1972년 4월 21일 법률”이다. 우리의 법률안과는 달리 간성(間性 : intersexual)의 경우에도 법적 성별을 정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네델란드는 1985년 성전환을 법제화하였으며, 성전환수술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미국

미국의 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초기의 판결 이후, 성염색체에 만 근거한 성별결정기준을 배척하고 “성전환이 법률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고 할 수

119) 최정학, 『성전환의 법적 문제점』, 민주법학 제14호, 1988

없다”고 하여 태도를 변경한 바 있다. 현재 미국에서의 성별 기재 변경 허용 여부는 각 주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각 주는 출생증명서 상의 성별 변경을 법률 제정 또는 특별한 정책의 수립을 통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2002년 현재 2개 주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에서 성전환자의 수술 후의 성에 따른 법적 지위를 승인해 주고 있다.¹²⁰⁾

(5) 영국

2004년 영국 상원은 Gender Recognition Bill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찬성 155표, 반대 57표로 통과된 이번 법률이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2005년부터 영국의 트랜스젠더들은 현재의 성(gender)에 맞는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 의하여 새로운 성에 대한 출생증명서를 발급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타고난 성과는 반대의 성에 속한다고 믿는 젠더혼란(gender dysphoria)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데, 출생증명서의 발급은 트랜스젠더의 이성과의 결혼 역시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의 트랜스젠더들은 이번 법률 통과를 큰 인권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¹²¹⁾.

4) 정책 대안

(1)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 제정

위 법안은 2002년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001년 한국갤럽이 1,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1%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찬성하고, 53%가 성전환수술을 한 성전환자의 성별은 변화된 성으로 인식해야하며, 58.6%가 성전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질문에 답한 것으로 드러나 국내의 여론은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법적으로 인정해야한다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¹²²⁾

위 4.항 및 5.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특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제출된 입법안의 내용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① 독일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름의 변경 및 성의 확인에 대한 법률”¹²³⁾의

120) 박동찬,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법제현안 통권 제140호, 2002, 20면

121) <http://planetout.com/news/article.html> 2004/02/12/4 참조

122) 위 송영길, 39-43면 참조

경우와 같이 공표 및 추적 금지 조항을 통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이후 사생활의 비밀보장과 예상되는 차별적 처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의 제도 모색.

② 신청 및 판단을 일반 정식재판청구 절차에 의할 경우 소송과정을 비공개 심리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청절차에서의 사생활의 비밀 보장 및 신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의 규정.

(2) 성전환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 금지 법제화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성적 지향”의 의미가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트랜스젠더임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 및 차별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법령의 규정 및 해석만으로는 고용상의 차별을 예방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미흡하다.

따라서 현재 국가인권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으로 또는 별도의 “성적소수자 차별금지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특별법” 형식의 특별 입법으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직장에서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구제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1991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성전환자임을 알릴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1996년 유럽법원은 성전환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유럽법원은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의 적용 범위는 성의 전환에 기인하는 차별로까지 확대”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성적소수자에 대한 직장에서의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연방차원의 Employment Non-Discrimination Act(ENDA)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¹²⁴⁾이다. 미국에서의 ENDA에 관한 논의는 현행 연방법에 의할 경우 성별, 인종, 국적, 장

123) 제5조 (개시의 금지) ① 신청인의 이름을 변경한다는 취지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재판 때까지 사용되고 있던 이름에 대하여 개시 또는 조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있어 특히 필요한 때 또는 법적 이익이 소멸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4)

http://www.hrc.org/Template.cfm?Section=Employment_Non-Discrimination_Act&Template=/TaggedPage/TaggedPageDisplay.cfm&TPLID=23&ContentID=13319 참조

애 등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은 금지되어 있으나,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나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여 차별 발생시 제도적인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적소수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성전환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성전환수술 비용은 성기전환수술만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달하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유방성형, 목젓수술 등의 미용성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 그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수술 전후 장기간의 호르몬 치료와 우울증 등에 대한 정신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근거 성전환수술 및 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유럽인권법원은 성전환수술 및 치료를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으며, 영국, 프랑스의 경우는 이 판결에 기초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은 성전환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성적 선호의 문제도 아니라고 하면서 성전환증을 가지고 있는 교도소 내 수형자에 대해서도 의료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¹²⁵⁾

200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의 감독위원회는 시 직원의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Sex-Change Benefits)을 규정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정으로 샌프란시스코는 성전환 직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첫 번째 도시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의료혜택에 포함되지 않았던 호르몬 치료, 자궁 적출술, 유방절제술과 낙소 적출술에 대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는 "이번 결정으로 적어도 샌프란시스코에서 트랜스젠더는 우리와 같은 보통사람이 된 것"이라며 트랜스젠더를 일반 시민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동안의 차별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¹²⁶⁾

성전환수술은 외모에 대한 성형수술과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존재의 근원적 결정이며, 국가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125) 김태명, 「성전환을 둘러싼 법적 문제점」, 저스티스 통권 제71호, 2003 참조
126)

<http://www.planetout.com/pno/news/article.html>

?2001/05/01/1

(4)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경우 형법 제297조의 “부녀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된 바 있다. 이 판결의 이유에서 대법원은 형법상의 부녀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발생학적인 성염색의 구성 뿐 아니라, 신체의 외관, 심리적·정신적인 성, 사회생활 과정에서의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 수행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성별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음에 비추어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영국, 미국의 경우는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강간죄의 객체 및 성교를 사람간의 질성교 및 구강 또는 항문성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비하였고, 독일의 경우도 형법개정법률로써 강간죄에 유사 성교행위를 포함하고, 범죄의 객체도 남성 및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¹²⁷⁾ 이상과 같은 강간죄 규정의 내용 변화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전제로 강간죄를 규정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중성적 입장에서 강간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법적 인식 변화와 함께 진행된 것이다.

국내의 경우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유사성교행위를 규정하고 있다.¹²⁸⁾ 형법의 강간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127) 위 김태명, 참조

1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하는 것이라면 법적인 의미에서의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구분하여 성교행위만을 강간죄의 행위수단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사성교행위 까지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5) 전문 의료기관의 지정 운영

트랜스젠더들은 그 특성상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난소암과 같은 여성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여성으로 살아가지만 남성 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외모 상의 이유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며, 일부 의료인의 경우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증(transphobic)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성전환수술의 여부, 호적상 성별 정정의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트랜스젠더가 의료기관의 이용을 회피하거나, 의사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지 않아 신체적 조건이 정확히 설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는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진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대 교육 과정 또는 의사 재교육 과정에 트랜스젠더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8. HIV/AIDS 감염인의 인권

1) HIV/AIDS 감염인의 현황과 차별실태 인권

(1) 감염인 현황

2005년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가 밝힌 '2004년 12월말 현재 에이즈(HIV/AIDS) 현황'에 따르면 국내 감염인 3153명 중 631명이 사망했고 현재 2522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채 살아가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2835명(89.9%), 여성이 318명(10.1%)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9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감염경로가 보고된 에이즈 감염인 중 98%가 성접촉에 의한 감염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4년 내국인 신규 HIV/AIDS 감염인수는 614명으로 하루 평균 1.7명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2003년(534명) 대비 15% 증가했다. 연령은 30~39세가 204명(33.2%)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경로가 밝혀진 434명은 모두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외국인 에이즈 누적감염인은 459명(연도별 외국인 감염인 보고수 : 2002년 59명, 2003년 59명, 2004년 154명)이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률은 성인 인구 1만명당 2.03명(2001년 말)으로 일본·필리핀과 함께 현재까지는 감염수준이 '매우 낮은 단계'로 분류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HIV/AIDS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 차별 실태

HIV/AIDS에 사회적 편견과 낙인은 감염인들의 생활 기회를 박탈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HIV/AIDS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에 관한 최근까지의 연구들은 일반 국민들이 막연한 공포와 도덕적 편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염인들이 사회 일반의 차별 뿐 아니라 의료계 종사자, 가족들로부터의 차별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 1. 감염여부 판정 번복으로 인한 피해

보건소에서 나에 대한 에이즈 감염을 판정할 때, 여런 번 양성, 음성 여부가 뒤바뀐 것을 알게되었고 95년도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했다. 1심에서 1억, 2

심에서 1천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에서는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중략... 감염사실을 안 후 15년간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나는 정부는 물론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믿지 않는다. 나말고도 검사가 뒤바뀐 경우가 여럿 있다.

- "AIDS 감염인의 인권"¹²⁹⁾ 사례 중에서

사례 2. 프라이버시권 침해

#1. 의료비 지급을 받으려고 국가 관리대상이 되지만 본의 아니게 감염사실이 알려져서 난처했다. 그런 마당에 보험일수까지 제한하다니 실망스럽다... 여행시 입국금지 조치를 받았고 거주지 제한 때문에 항상 감시당하는 쑥쑥한 느낌이 든다... 방송국이 인터뷰를 하고 화상보호를 해줄 것을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모두 알게 되었다...

#2. 병원에서 감염이 된 사람에게는 아이플러스 스티커를 붙이므로 감염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

- "HIV/AIDS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별에 관한 연구"¹³⁰⁾ 사례 중에서

사례 3. 진료거부에 의한 인권 침해

지난해 말 항문 주위에 뭔가 만져지는 것이 생겨 평소 진료를 받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진찰 결과 항문 주위에 사마귀 같은 것이 돋는 침규콘딜롬(곤지름)이라는 병이었다. 감염내과에서 소개해준 외과의사는 수술 환자가 많이 밀렸다면 몇 달 뒤로 수술 날짜를 잡았다. 그러나 그 의사는 지난 3월 수술 직전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진료카드를 넘겨받은 같은과 다른 의사는 수술이 필요 없다며 피부과로 보냈다. 피부과 의사는 연고 처방만 해주고 끝냈다. 그 사이 증상은 더욱 악화돼갔다. 에이즈 환자로서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그는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 도움을 청했다. 연맹 소개로 지난 10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사가 운영하는 s의원을 찾아간 바로 그날로 수술을 받았다.

- 한겨레 2003. 11. 30.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차별"에서

사례 4. 교도소에서의 인권 침해

129) 양지용, 「AIDS 감염인의 인권」, 사회비평 통권 33호, 2002,

130) 권광우, 이경무, 변진욱, 「HIV/AIDS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별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제12집, 2002

처음에 수감된 성동구치소에서 나는 단지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징벌방에 있어야 했다.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지만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그 곳에 45일이나 있어야 했다. 운동은 물론 세수도 못하고, 재판받을 때를 빼고는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간수, 재소자들은 모두 내 감염사실을 알고 내 앞을 지나갈 때면 침을 뱉고 욕을 했다. 간수들은 재소자들이 말썽을 피우면 에이즈 환자 있는 방에다 넣겠다고 재소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 “AIDS 감염인의 인권” 사례 중에서

(3) 인권의 문제

AIDS는 질병이며 이에 대한 일차적인 접근은 의학 분야에서 시작되어야 하지만, AIDS로 고통받는 주체는 인간이며, 감염인들이 편견과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인권과 사회정의의 문제이다. 20세기 AIDS의 출현과 이 질병으로 인한 감염인의 고통, 그리고 추가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정부 및 사회로부터의 제한과 차별은 새로운 유형의 인권문제이다.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편견은 감염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정보와 치료에 대한 접근을 포기하고 문제를 은폐하도록 만든다. 인권침해로 인해 이들은 ‘생물학적 죽음’ 이전에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

인권에 기반한 HIV/AIDS 치료 및 확산 저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감염과 동시에 일어나는 인권유린이 감염을 확산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UNAIDS도 HIV/AIDS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대책 마련을 저해하고, 확산을 부추키는 주요 요인으로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지적하고 있다.¹³¹⁾ HIV/AIDS 문제는 ‘질병의 위기’가 아니라 ‘인권의 위기’이며, 인권의 시각 없이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HIV/AIDS 확산 초기에 이루어진 각국의 공중보건정책은 격리, 강제검사, 검역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러한 정책이 HIV/AIDS 감염인들에게 차별을 초래하며 결국 예방활동의 실효성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이 HIV/AIDS 확산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권과 HIV/AIDS 기타 공중보건문제의 사이의 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되었고, 그러한 점이 각종의 기본적인 행동지침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서 병력(病歷)에 의한 차별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서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31) UNAIDS & WHO. UNAIDS 2003 Report, 2003

것¹³²⁾은 이러한 점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 HIV/AIDS와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기준

(1) HIV/AIDS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Guidelines

1980년 말 이래 유엔인권위원회는 HIV/AIDS와 관련한 인권침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각국 정부에 HIV/AIDS 감염인을 보호할 충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1996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OHCHR)과 UNAIDS에 의하여 소집된 HIV/AIDS와 인권에 관한 제2차 세계전문가회의에서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이 제안되었으며, 가이드라인은 1997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는 법과 정책혁신을 통하여 HIV/AIDS와 관련된 공중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³³⁾

1. 국가는 HIV/AIDS에 대응하기 위해 효과적인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 전략

132)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②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133)

http://www.unaids.org/EN/in+focus/hiv_aids_human_rights/international_guidelines.asp

참조

은 통합적, 참여적이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각국 정부기관의 HIV/AIDS 정책과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국가는 HIV/AIDS 정책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이행, 평가하는 모든 단계에서 지역사회가 자문할 수 있도록, 또한 지역사회단체가 윤리, 법, 인권의 영역을 포함하여 그들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3. 국가는 공공 건강에 관한 법을 검토하고 개혁해야 한다. 그 법은 HIV/AIDS를 통해 드러나는 공공건강 이슈를 적절하게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전염성질환에 적용되는 조항이 HIV/AIDS에 대해 부적절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국제인권규범에 합치되어야 한다.

4. 국가는 형법과 교정체계를 재검토하고 개혁해야 한다. 형법과 교정체계는 국제인권규범에 합치되어야 하며 HIV/AIDS와 관련된 정황에 오용되거나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5. 국가는 차별금지법과 기타 보호입법을 제정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그 법은 공적, 사적 영역에서 차별 받고 있는 취약계층과 HIV/AIDS 감염인,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하며 프라이버시와 비밀, 인간을 포함한 연구에서의 윤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 화해를 강조해야 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적, 시민적 구제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6. 국가는 HIV 관련 재화와 서비스, 정보의 조정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 법은 질 높은 예방기제와 서비스, HIV 예방과 치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 적절한 가격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국가는 법률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행해야 한다. 법률지원서비스는 HIV/AIDS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관하여 교육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HIV와 관련된 법적 이슈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구제기구-법원, 법무부, ombudsman, 건강제소단위, 국가인권위원회 등-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8. 국가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편견과 불평등에 시달리는 여성, 아동, 기타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것은 지역사회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사회서비스와 건강서비스, 지역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토론되어야 한다.

9. 국가는 창조적인 교육, 훈련, 언론 프로그램의 폭넓고 지속적인 분배를 촉진해야 한다. 그것은 HIV/AIDS와 관련된 낙인과 차별의 태도를 이해와 수용으로 바꾸는 것을 명백하게 의도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10. 국가는 정부와 사적영역이 HIV/AIDS와 관련된 행동 규범을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 규범은 인권의 원칙들을 전문직의 책임과 실천의 규범으로 바꾼 것이어야 하며 이 규범들을 강화하고 이행하기 위한 제도와 병행되어야 한다.

11. 국가는 HIV/AIDS에 감염된 사람과 그 가족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HIV/AIDS 관련 인권보호를 위한 감시와 이행기관을 보장해야 한다.

12. 국가는 모든 관련 프로그램과 UNAIDS를 포함한 UN 기관들을 통해 HIV/AIDS에 관한 인권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협력해야 하며 HIV/AIDS 관련 규정을 통해 국제적 기준으로 인권문제를 보호하고 효과적인 기관들을 보장해야 한다.

(2) Recommendations on integrating human rights into HIV/AIDS respon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2004년 아시아-태평양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은 국가별 자문과 전문가회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HIV/AIDS 인권권고안(Recommendations on integrating human rights into HIV/AIDS responses in the Asia-Pacific region)을 발표¹³⁴했다. 권고안은 건강과 인권의 상호의존성, 공동체참여의 중요성, 국가의 책임성이라는 원칙 아래 각국 정부가 감염인과 여성, 수감자, 성적소수자, 이주노동자, 마약 사용자 등 고위험 집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의 시각에서 법률적 준비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검사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검사를 금지할 것, 감염인

32)

http://www.un.or.th/ohchr/issues/hivaids/ExperMeeting_2004/recommendations.pdf

이주노동자를 강제 출국시키는 것을 금지할 것, 비자 신청시 검사의무조항을 삭제할 것, 성 산업 종사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그들의 직업을 존중해줄 것, 감염인과 고위험 집단들이 HIV/AIDS와 관련된 정책 수립, 집행,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등을 국가에게 촉구하고 있다.

3)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문제점

(1) 차별과 편견을 강화하는 법

HIV/AIDS 감염인의 차별과 편견을 강화하는 것은 “무지와 무관심”이다. 이 법은 이러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법 자체가 일반인의 차별과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 법은 HIV/AIDS 예방을 위한 감시와 관리, 강력한 형사적 제재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개개인의 책임의식과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정책과 결합될 수 없는 것이다. 처벌 위주의 규정으로 인해 HIV/AIDS 감염인들이 감시와 관리, 형사소추의 망을 벗어나 자신의 질병을 은폐하고 잠적할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법은 HIV/AIDS에 대한 강력한 예방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통제위주의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은 HIV/AIDS에 대한 국제적 대응 경험 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법 시행 이후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여 치료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전제로 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용적으로는 강제검진 규정을 삭제하고 자발적인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방조치 없는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실명신고 의무, 취업제한 조치 등의 인권 침해적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2) 강제검진

법 제8조 (검진) ①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 (검진대상자) ①법 제8조제1항에서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2항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염자의 배우자 및 동거가족
2. 삭제<1993·7·21>
3. 기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검진의 대상자는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의해 다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고 있으며 관련 보건복지부령인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 별표 1.에 의하면 다방의 여자 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여자 종업원, 특수업태부가 결국 법 제1항의 강제검진 대상자에 해당한다. 또한 법 제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는 감염인의 배우자 및 동거가족과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도 강제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강제검진 조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강제검진의 대상자를 법률이 아닌 하위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범위가 쉽게 확대될 수 있고, 제도의 남용 위험성이 있다.

둘째, 실효성 없는 강제검진 규정을 통하여 검사의 익명성이 위협받을 수 있고, 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고위험 집단'에 대한 의료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UNAIDS의 권고에 의하면 수혈 혹은 장기기증시를 제외한 강제검진은 국제인권법상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다.¹³⁵⁾ 또한 남성이 훨씬 많은 감염인 현황에 비추어 위 규정이 여성에 대한 강제검진을 규정하여 나열한 것은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오히려 피감염인이 되기 쉬운 계층을 예비범죄자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처럼,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신원 및 비밀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감염이 되면 국가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강제검진조항은 '고위험군'이라 여겨지는 계

135) 김창엽, 에이즈 대응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2003

증을 오히려 공중보건체계로부터 소외시킬 뿐이다.¹³⁶⁾ UNAIDS/WHO는 개인에 대한 HIV 검사는 '3Cs' 원칙(Confidential, Counselling, Consent) 즉,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검사에 있어서는 상담이 수반되어야 하며, 수검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¹³⁷⁾ HIV검사도 다른 검사와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검사의 근거가 있고, 피검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¹³⁸⁾¹³⁹⁾

(3) 취업제한

제18조 (취업의 제한) ①감염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②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자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규정으로 인해 감염인들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정기검진 업소에 취업할 수 없다.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감염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방, 안마시술소 등에 일률적으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조치일 뿐 아니라 성매매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통해서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현실과도 거리가 있다.

HIV/AIDS 감염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지만 수급자로 지정되어 지급되는 생계비의 수준은 매우 낮은 형편이고, 또한 신분이 노출되어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 수급자 신청에도 소극적이다¹⁴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136) 미류, 에이즈예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에이즈 관리정책의 인권침해, 2004

137) UNAIDS/WHO, UNAIDS/WHO Policy Statement on HIV Testing, 2004

138) 정현미, 『AIDS와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와 예방대책』, 형사정책연구원, 1999

139) 1998년 국회인권포럼과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주최한 "AIDS 감염인의 인권과 정책방향"이라는 정책심포지움에서 전북대 김민중 교수가 지정토론문을 통해 강제검사는 "AIDS 감염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모욕감을 주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다.

140) 감사원이 2002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의하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인등 사회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에게는 사회에 적응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일반인과 동일한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인의 경우 총 1,319명 중 166명(13%)만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고, 나머지 1,153명(87%)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초과, 부양의무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보호를

국가가 적절한 직업재활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제조치 없이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취업을 봉쇄하는 것은 감염인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넣고 생존의 기반을 발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전파매개행위의 처벌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자는 다음 각호의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이 정하는 감염의 예방조치 없이 행하는 성행위
2.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혈액·수입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자

시행령 제23조 (감염의 예방조치) 법 제1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의 예방조치"라 함은 콘돔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전파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9조는 헌혈이나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감염인에게 부과하고 콘돔의 사용 없이 행한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하기 위해 특별법상 별도의 형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사정책적 관점 및 처벌의 실효성,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정책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성행위로 인한 상대방의 감염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행 형법 내에서 상해, 과실치상 등의 규정을 통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시행 이후 이 규정으로 처벌된 예가 없으며 이는 사적 영역에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를 추적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추상적 위험을 형벌로 규정함으로써 감염인에게 심리사회적 위축감을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우선 처벌규정을 통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입법방식의 전형적인 사례로써 국민이 감염인을 예비범죄자처럼 여기게끔 하는 편견을 조장할 뿐이다. 최근 국제 에이즈 총회에서 보고된 내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가족관계가 단절된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고 한다.

용에 의하면 성관계, 헌혈 혹은 마약 주사바늘 공유를 통해 HIV를 감염시키는 사람들에게 실행을 선고하는 법 규정들이 HIV/AIDS의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콘돔사용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하고 혈액검사시 양성반응 여부를 조기에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도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위 규정으로 인한 차별과 편견의 강화라는 부작용과 처벌의 현실적 실효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특별법상의 처벌규정은 삭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감염이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현행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¹⁴¹⁾

(5) 실명신고체계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①감염자를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감염자, 그 동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감염인 명부의 작성·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감염자에 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의료진, 보건소장,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의 과정을 거쳐 감염인에 대한 진단 등의 사실이 보고되는 과정에서 위 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인 “감염자관리명부”에서 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감염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뿐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의 성명, 직업 등도 보고되는 등 감염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

운영상에서 감염인과 가장 실제적 접촉을 하게 되는 보건소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고,

141) 전파매개행위의 처벌에 대하여는 위 정현미, 김민중, 김성수 등 예방법을 검토한 학자, 연구자들 필자 모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검진통지서 등의 송달시 대상자 부재중일 경우 불시방문 등으로 감염사실이 알려지는 등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 기준 및 규제가 없는 것도 비밀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한문제이다.¹⁴²⁾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보건소를 통한 무료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결과 양성판정이 나오면 곧바로 실명의 보고가 이루어지고 이후 의무와 제재 부과되기 때문에 실명보고 체계는 익명검사가 사실상 무의미하다. 통계에 따르면 익명검사의 경우 감염 양성 판정율이 약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익명검사제도가 확립되어야 하고, 헌혈을 감염여부 확인의 방편으로 삼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도 익명검사를 보장할 수 있는 익명보고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HIV/AIDS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중한 단계에 접어들지 않는 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최근 콕테일 치료법의 발달로 만성병화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감염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정상적인 직장생활 및 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보건당국은 감염인 신고를 통하여 신분을 확인하여 감시의 단서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감염 사실에 대한 신고를 익명으로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미국, 일본, 태국의 경우 실명을 신고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실명보고체계가 예방 기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경험적 반성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임상외사는 지역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지역 방역당국은 주 보건국으로, 다시 보건국은 미국 질병관리센터로 보고하는데 주 보건국에서 질병관리센터로 보고하는 내용에서 개인 신상 자료는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 태국에서는 HIV 감염초기에 실명신고를 의무화하였다가 HIV전파방지에 있어 실효가 없자 익명보고를 하게하고 있다.¹⁴³⁾ 실명보고체계가 국민들의 차별과 편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태국의 감시체계는 전염병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수준으로 한정되었다. 일본 역시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을 통해 감염인이 진단되었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장을 경유하여 도도부현지사(지사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내용을 후생노동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령, 성별 등을 신고할 뿐, 성명은 신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HIV/AIDS와 관련한 국내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감염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파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인신상정보의 과도한 노출이 감염인이나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이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요구하는

142) 미류, 에이즈예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에이즈 관리정책의 인권침해, 2004

143) 김창엽, 에이즈 대응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pp.50-51,

데에 장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 제7조에서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HIV/AIDS 관리지침에 의하면 '에이즈 전파 예방 및 감염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장이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 포함), 결혼할 상대자,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감염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업무수행상 정당한 사유'¹⁴⁴⁾에 해당하여 감염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감염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질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감염사실에 대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통지는 본인의 책임감에 기초한 선택에 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감염사실의 통지는 감염인 인권 침해의 시작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감염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감염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비밀누설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¹⁴⁵⁾

(6)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추방정책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연도별 외국인 에이즈 감염인 보고수'를 보면, 2000년(25명), 2001년(57명), 2002년(59명), 2003년(59명), 2004년 상반기(82명)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수치는 합법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검진 결과여서,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전체 실태는 이보다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현재 HIV/AIDS에 감염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강제퇴거되고 있다.¹⁴⁶⁾ 이처럼 아무런 치료 없이 바로 추방하는 것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역의 HIV/AIDS 인권권고안 등 국제기준에 비추어 부당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외

144) 질병관리본부, 2004년 HIV/AIDS 관리지침 pp.57

145) 이 부분의 주요 내용은 위 미류의 글 참조

146)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

2.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국민 감염인들을 불법체류자가 되게하거나 치료와 통제의 사각지대로 숨게 만들어 예방의 차원에서도 부적절하다. 발견 즉시 추방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한 이후에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여야 한다.

4) 정책적 대안

(1) HIV/AIDS 예방 뿐 아니라 인권보장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

HIV/AIDS에 대한 국가정책은 국민을 HIV/AIDS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과 AIDS 감염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입법방향으로는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의 입법방향은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및감염인보호에관한법률” 등의 방식으로 HIV/AIDS 예방과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동시에 규정하는 형태의 법을 제정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의 입법방향은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폐지하고 HIV/AIDS 예방은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별도의 차별금지법에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어떠한 입법방향에 의할지라도 법에서 다음과 같은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율하여야 한다.

- 직장에서 수검자의 동의 없는 AIDS 검진 금지
- 감염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금지
- 진료협조 의무 규정

(2) 직장에서 수검자의 동의 없는 AIDS 검진 금지 및 감염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금지

직장에서의 건강진단시 HIV검사항목을 노동자의 동의 없이 포함시키는 것은 개별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에 가능한 것이며, 검진결과도 의료기관과 노동자 이외 타인에게 정보가 유출되어서는 안된다. 직장에서의 검진을 통해 에이즈 양성 반응을 받게 되는 경우 해고로 이어지거나, 감염인이라는 사실이 주위에 밝혀져 편견과 차별 속에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현행법 근로기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해석상 이러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확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부당한 사태가 사전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인 감염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직장에서의 동의 없는 검진을 금지하고, 감염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ADA)은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의 범위를 '실제로는 장애를 갖고 있지 않지만, 사회에서 장애인 처럼 취급받음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제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 추가된 장애인 범주에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HIV/AIDS 감염인,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우리 법에도 최근 일부 수용된 얼굴 화상 입은 사람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법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장애에 대한 편견'인 이상, 그 보호대상도 '현재 장애를 가진 사람'뿐 아니라 모든 '편견 때문에 차별받고 있는 사람'으로도 확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의 기준 정립에서 의학 또는 재활의 관점을 넘어 '차별'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도입한 이런 이론을 '인권 모델'이라 부른다. 이에 따라 의제 장애인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한 기업들은 그 이유가 질병 또는 장애 때문이 아님을 따로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만 신체검사 서류를 제출하므로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도 거의 없다¹⁴⁷⁾.

1998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공동회의를 개최하고 "에이즈와 직장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으며 "에이즈와 직장 에이즈에 대하여 알아둘 일"을 제작하였다. 이 팸플릿에 의하면 직장에서의 집단검사(Screening)는 금지되며, HIV/AIDS 감염이 해고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¹⁴⁸⁾

(3) 진료협조 의무규정

현재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신고 및 보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진료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감염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6조¹⁴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

147) 김두식, "간염 공포와 차별", 한겨레 2003. 11. 25.

148) 김성수, AIDS 관련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비평 통권 33호, 2002.

149) 의료법 제16조 (진료의 거부금지등)

①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

정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료법상의 의무위반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HIV/AIDS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의료인에게도 심각하여 감염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대한공중보건 의사협회 등이 공중보건 의사 480명에 대해 진행한 “에이즈 감염인 인권에 관한 공중보건의 인식조사”라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HIV/AIDS 감염인이 감기, 설사 등 가벼운 질환으로 진료받기를 원할 때, 진료를 하겠다는 응답은 691.1%이고 나머지 약30%가 진료를 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¹⁵⁰⁾ 또한 HIV/AIDS 감염인 본인들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거절을 당하거나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처음부터 수술이나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⁵¹⁾. 따라서 HIV/AIDS 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에서 명시적으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진료 협조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전문 의료기관의 지정 및 체계 정비

AIDS에 대한 편견으로 치질이나 맹장염과 같은 가벼운 질환도 제대로 치료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감염인으로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거나 임종을 편안하게 준비할 의료시설조차 없다. 국내에서 감염인이 입원하여 실질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서울에 소재한 3개 대학병원에 불과하다¹⁵²⁾. 특히,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감염인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비극적인 상황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¹⁵³⁾ 전문 의료시설은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지정·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시도에 전문 진료 기관이 있다는 것을 에이즈 환자 센터나 민간단체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 HIV/AIDS 감염인들이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국가차원에서 AIDS 전문 진료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¹⁵⁴⁾ 감염인들을 위한 의료시설이 있다는 것은 감염

하여야 한다.

150) 대한공중보건 의사협회 등,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에 대한 공중보건 의사 인식 조사, 2004
151) 위 권광우, 이경무, 변진욱

152)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HIV/AIDS 정부관리정책과 감염인의 인권. HIV/AIDS 정부관리정책과 감염인의 인권 공개 토론회 자료집. 2004

153) 대한공중보건 의사협회 등,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에 대한 공중보건 의사 인식 조사, 2004

154) 2003년 대선시 <버디>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가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질문지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답변 중에서

인에 대한 의료지원 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 적극 실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감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 만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는 교육과 홍보가 최우선의 과제이다. 대국민 홍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을 비롯해 사회 지도층을 상대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인권 관점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6) 감염자 보호 및 복지 지원확대

정부가 감염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염자가 정부를 찾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HIV/AIDS 감염인들이 보건당국의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무의탁 감염인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쉼터(휴식공간)와 전문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7) 동성애자 검진의 활성화를 위한 drop in center의 확대 설치 및 성적소수자 단체와의 협력, 지원

국내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남성 동성애자의 감염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위해서 동성애자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 문화공간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검사실을 마련하여 검진을 활성화하고 상시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 정보의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정보 교환 등의 목적과 함께 검사를 받고 갈 수 있도록 하여 검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울에 이와 같은 성격의 검진센터 설치가 추진 중이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요 대도시에는 설치되어야 하며, 센터의 운영은 동성애자 단체가 주체가 되고,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형태로 동성애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민·관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동성애자의 효과적인 AIDS 예방을 위해서는 동성애자 단체가 당사자로서 주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9. 시민사회 활성화

1)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의 실태

(1) 인력부족

성적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자신의 활동이 인정을 받거나 사회적 경력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아웃팅' 위협 속에 놓이기 때문에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나가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 성적소수자들은 '사회적 매장', '노동권 박탈'이라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사가 10년을 넘어서도록 꾸준한 활동을 통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활동가들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성적소수자 인권운동단체는 활동가의 잦은 교체로 활동의 연속성이 끊기는 경우가 많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상근인력을 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트랜스젠더 인권이슈에 대해선 현재 운동단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2) 재정난

국내 성적소수자 인권운동단체들이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 역시 다른 인권운동, 시민사회운동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성적소수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생존권을 위협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적소수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이를 지원해주는 집단 역시 미약하기 짝이 없다. 10년 역사를 가졌다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성적소수자 인권운동단체는 손가락에 꼽는 정도이며, 전국에 한 개의 법인체도 없다는 사실이 그 열악함을 증명해준다.

(3) 아웃팅 위협과 활동의 제약

성적소수자 인권활동가들 중에 대사회적 커밍아웃을 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많은 경우 성적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아웃팅 위협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이 많다. 특히 언론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 '사진촬영 금지' 등이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데, 한국의 언론문화에서 성적소수자 인권이슈를 적극적으로 알려내기엔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

회원단체의 경우, 회원들과의 소통도 아웃팅 위협 때문에 쉽지 않다. 단체에서 발송하는 소식지조차 마음 놓고 집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성적소수자인 단체 회원들의 현실인 것이다.

2) 문제점

(1) 단체설립 요건, 정부의 지원 요건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의 역사가 10년이라지만, 타 시민단체들과 같은 기준으로 바라볼 수 없다. 정부가 NGO를 지원할 때나 함께 일할 때의 자격요건은 성적소수자들의 기준으로 보면 턱없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국에 단 한 개의 성적소수자 운동관련 사단법인체도 없는 현실에서 법인체를 요구한다거나, 현재 단체에서 가장 오래 일해오고 있는 활동가의 경력이 3~4년인데 6~7년의 경력을 요구한다거나, 단체들 대부분 상근인력 1~2명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규모조건을 두거나, 성적소수자 관련 연구논문 몇 개 없는 현실에서 학력을 요구하는 것 등은 그 자체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 할 수 있다.

(2) 전문가의 기준

다른 여타의 영역에서도 그렇지만, 성적소수자의 인권과 관련해 발언하고, 연구하고, 목소리를 전달하는 일을 수행할 사람은 당사자들이다. 즉, 성적소수자에 관한 한 '전문가'는 학자가 아닌 성적소수자이며, 특히 인권운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실명 요구 등의 관례

성적소수자들이 아웃팅을 당하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어려움을 겪는다. 많은 경우 성적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단체를 등록하거나 활동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실명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까지 기입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관례'도 시정되어야 한다.

3) 대안

(1)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지원 및 양성

① 정부 각 부처에서 성적소수자 인권계획 수립

정부와 지자체에서 성적소수자 인권 관련한 정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었다.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정부의 인권계획 수립을 통해 밝혀야 한다.

② 성적소수자 인권과 복지 관련 예산책정

성적소수자 인권운동가 혹은 인권단체가 활동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 예산 신청을 하려 했을 때, 아예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필두로 여성부, 복지부, 행자부 등 정부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성적소수자들을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며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③ 각 인권 및 복지재단에 성적소수자 분야 편성 권고

정부뿐 아니라 인권과 복지활동을 지원하는 재단 등에서도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인권교육을 권하는 한편, 예산 지원의 분류에 성적소수자 이슈를 포함시키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993년에 "Lesbian Visibility" and "Homosexuality: A European Community Issue"이란 연구와 출판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공식 후원했으며, 국제청소년동성애자 컨퍼런스도 매년 후원하고 있다. 특히 ILGA-Europe의 경우는 2000년 이후로 계속 후원을 해주고 있다.

(2) 상담소 및 쉼터 지원

① 성적소수자 전문상담소 필요

성적소수자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10년사는 '상담의 역사'와 함께 했다. 성적소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고,

지지해주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에는 성적소수자를 위한 상담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 성적소수자 인권운동단체에서 소화를 해왔을 뿐이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는 성정체성과 관련된 물음들에 답하고,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적소수자들이 겪는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또는 법적 고발이나 소송까지 지원해주는 전문상담소는 전국 단위로 개소되어야 한다. 상담소의 활동가 양성을 필수적인 우선 과제로 삼고, 성적소수자 전문상담소를 키워나가야 한다. 이 때, 상담소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 유형별로 별도의 상담소가 개소되어야 한다.

② 성적소수자 청소년 쉼터 필요

현재 가출한 청소년 성적소수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본적인 논의조차 되어있지 못하다.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다. 언론은 단지 가십으로 이들을 치부해버리고 있으며, 몇몇 통계만이 “청소년 동성애자의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아닌, 별도의 가출한 성적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은 가정으로부터, 학교로부터, 편견 가득한 주위환경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어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매우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있다. 청소년 성적소수자들은 이성애자 청소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출하게 된 동기에 있어서나 삶의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과 치유, 지원방식에 있어서 다른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가출청소년 쉼터와 다른, 별도의 청소년 성적소수자 쉼터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운영방식도 철저히 아웃팅을 막고, (가출을 했든 아니든) 청소년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랬을 때에만 실효성이 있다. 쉼터에선 청소년들에게 성정체성을 고민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전문가 및 단체 자격요건 바뀌어야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진영의 현실을 이해한다면 기존에 정부 및 지자체가 단체들에 요구하는 조건들이 도저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원요건에 담당자들의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언제나 요구하는 관행, 그리고 NGO의 규모를 기준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등의 현실은 반드시

시 개선되어야 한다.

④인권활동가 및 전문상담원 양성

사회 곳곳에 성적소수자 인권을 위한 '교육'과 활동이 많이 필요한 반면, 이를 담당할 활동가는 턱없이 부족하다.¹⁵⁵⁾ 정부에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성적소수자 인권을 위해선 관련 활동가와 전문상담원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성적소수자 단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인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또한 성적소수자 상담원 양성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인력뱅크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155) “영국의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들은 일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조직적으로 싸워 왔다. 공사영역과 커뮤니티 등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 이 컨소시엄 안에서 거의 200개 단체가 활동 중이다. 컨소시엄 창설멤버의 하나인 □□레즈비언과 게이의 고용권리□□(LAGER)는 고용에서 성차별당하는 동성애자들을 돕는 대표적인 자발조직이다.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활동은 노동조합원들을 위한 게이·레즈비언 이슈들을 고안하는 일이다. 영국 최대의 노동조합연합인 □□노동조합회의□□(TUC)는 노동조합들이 동성애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개입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 많은 노동조합이 이 정책에 따르고 있다.” (여성신문, 2000년 10월 13일, “영국 동성애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들”)

III. 결론

보고서에서는 사회 각 영역에서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기초적으로 점검해보았다. 성적소수자들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혐오범죄, 아웃팅범죄의 피해에 노출이 되어도 이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보호 규정은 수사, 상담, 보호, 재판의 단계 어디에도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 또는 일반의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의무 교육 과정 내에 성적소수자의 존재는 전무하며, 미디어는 ‘이성교제’에 대한 고정된 관념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면서 성적소수자를 희화화하고 있고, 일부 매체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심의기준을 통하여 동성애자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일반인과 격리시키고 있다. 이성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가족의 기본 형태라 여기는 사회의 통념은 제도 각 부문에도 침투하여 성적소수자들로 하여금 일상 의 차별과 불편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 동성애자로서 승진이 좌절되는 경우, 트랜스젠더로서 입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혼 동료들은 모두 받는 사내 혜택을 동성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자신이 성적 지향이 일반적으로 공개될 것이 두려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도 못하는 경우 등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목록만으로도 성적소수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드러난다. 특히 군대에서는 특수사회임을 이유로 명시적으로 성적소수자를 차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당한 시민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트랜스젠더들의 경우에는 동성애자와 또 다른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 및 고용의 기회가 봉쇄되고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규정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강요받고 있다. HIV/AIDS 감염인의 경우에는 사회와 제도가 새긴 주홍글씨를 통해 격리되고 통제된 채 치료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크게는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성적소수자 차별금지법의 제정, 둘째, 동성간 동반자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의 모색, 셋째,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전제로서 성적소수자의 특수성에 입각한 인권실태조사의 실시가 그것이다.

이 보고서가 이러한 정책대안들을 구체적,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면 그 것은 능력부족과 시간부족, 자료부족으로 힘겨워한 보고서 작성자들의 땀이다. 복지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학문적인 연구 결과가 되기에는 데이터의 제시 및 외국자료의 소개 등에서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성적소수자 문제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로 아직도 우리 사회의 벽장 속 어두운 곳에 갇혀있다. 이 보고서가 이러한 문제들을 커밍아웃하게 하는 작은 계기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조사

가 있기를 기대한다.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1945년 스위스 법원의 트랜스젠더에 관한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의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법은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있어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법률적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 사회는 그 성전환자가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의 법률적인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무엇이 그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판결 내용이지만 그 취지는 성적소수자 일반의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성적소수자의 인권과 차별, 그리고 그 해결책을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성적소수자들이 근거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혐오범죄에 노출되는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성간 동반자 관계의 인정 및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법제화라는 다소간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은 그러한 논의가 단지 성적소수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관용과 인권의 척도를 점검하고 확장하는 최선의 이익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논의의 구체적인 시작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 90년대 레즈비언 담론의 분석과
국가인권위원회, 『국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2004.
권광우·이경무·변진욱, 「HIV/AIDS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별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제12집』, 2002.
김두식, 『헌법의 풍경』, 교양인, 2004.
김민중, 「동성애관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시론적 검토」, 『인권과정의』, 2004.
김민중, 「동성혼-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입법례」, 『법조 통권 553호』.
김민중, 「동성혼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비교사법 제9권 2호』.
김성수, 「AIDS 관련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비평 통권 33호』, 나남, 2002.
김엘림,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0.
김태명, 「성전환을 둘러싼 법적 문제점」, 『저스티스 통권 제71호』, 2003.
김태한, 「동성혼인 문제의 법률적 고찰」, 『가족법연구 제13호』.
김현선,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김홍신, 송영길,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공청회」, 2002
나누리+ 『HIV/AIDS 감염인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2004
남효순, 「프랑스민법상의 동거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國際地域院 2000년 국제지역연구과제 논문, 2000.
대한공중보건협의회 등,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에 대한 공중보건 의사 인식 조사』, 2004.
동성애자인권캠프, 『동성애자 인권캠프 자료집』, 2003.
미국 10개 교육·상담·심리학회 공동작업, 『Just the facts about Sexual Orientation & Youth』.
미류, 「에이즈예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에이즈 관리정책의 인권침해 가능성」, 2004
민가영, 「성매매화된 사회 속의 소녀들」, 『당대비평 21호』, 생각의 나무, 2002.
박김수진, 「한국 레즈비언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NGO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박동찬,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법제현안 통권 제140호』, 2002, (20).
박민선, 「한국 레즈비언 담론의 분석과 전망 : ‘끼리끼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계

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반성폭력네트워크, 『성폭력 이제 그만 2』, 2004.

버디, 「밀착취재-이반은 일반의 밥인가」, 『BUDDY 6호』, 도서출판 해울, 1998.

버디, 「한국 동성애자의 다섯가지 딜레마」, 『BUDDY 19호』, 도서출판 해울, 2002.

송영길, 「성전환자의 인권과 호적정정」, 『2001년 송영길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1.

양지용, 「AIDS 감염인의 인권」, 『사회비평 통권 33호』, 나남, 2002.

에릭 마커스, 『커밍아웃』, 박영출판사, 2000.

여기동, 「동성애자 커플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가능한가』,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4 토론회, 2004.

여성주의 저널 일다(www.ildaro.com), '성소수자' 기사들, 2003년 4월~2004년 12월.

윤가현, 『동성애의 심리학』, 학지사, 1997.

윤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17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은상준, 「HIV/AIDS에 대한 낙인과 차별」

이경희, 「同性婚姻(Same-Sex Marriage)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제3회 한국법률가대회 발표논문, 2002.

이경희,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본 동성혼인의 법리」, 『아세아여성법학 창간호』.

이예숙, 「HIV/AIDS환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1

이은우, 「동성애자의 결혼과 가정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나?」,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가능한가』,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4 토론회, 2004.

이해술, 「한국 레즈비언 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 1999.

이화여대 여성학과, 『가족에 대한 정의(definition)는 필요한가』, 2004.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회, 『동성애자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2004.

임태훈, 「바람직한 AIDS 정책」, 『사회비평』 통권 33호, 2002

정현미, 『AIDS와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와 예방대책』, 형사정책연구원, 1999.

조이여울, 「'뒤틀린 존재'라는 낙인-한국사회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 『제주인권학술회의 발표문 모음집』, 제주인권학술회의, 2002.

조재현,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제 8권 제 3호』.

질병관리본부, 『2004년 HIV/AIDS 관리지침』, 2004, (57).

최안드레아, 『터부에서 상식으로의 전환』, 아미, 1997.

최정학, 「성전환의 법적 문제점」, 민주법학 제14호, 1998
 케빈 제닝스, 『역사 속의 성적소수자』, 이연문화, 1999.
 케이, 「4.성소수자와 차별」, 『반차별 포럼-교육과 차별 자료집』, 전국인권활동가대회준비모임, 2004.
 케이, 「이성에 중심적 가족주의 안에서 레즈비언 살아남기」, 『3.8 여성무지개 포럼 "소수자와 가족』, 다름으로담은여성연대, 2004.
 케이, 「형사사법절차와 성소수자의 인권」, 『반차별 포럼-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자료집』, 전국인권활동가대회준비모임, 2004.
 클로디아 카드, 『레즈비언 선택』, 인간사랑, 2004.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한국레즈비언인권운동10년사」, 『진보평론 여름호』, 현장에서미래를, 2004.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끼리끼리 상담 사례집』, 2004.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 2003.
 한인섭·양현아, 『성적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2.
 한채윤, 「외국의 동성 결혼 현황」,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가능한가』,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4 토론회, 2004.
 현소혜, 「성전환자의 민사상 법적 지위」, 가족법연구 제16권 2호, 2003
 홍춘의, 「성전환자의 성별판단에 대한 법적 접근」, 『성적 소수자의 인권』, 2002
 Nancy Turner, 『Responding to Hate Crimes: A Police Officer's Guide to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OHCHR,UNAIDS, 『HIV/AIDS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Guidelines』, 1998
 OHCHR,UNAIDS, 『 Recommendations on integrating human rights into HIV/AIDS respon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2004

<http://ddm.smpa.go.kr/soge/chung-soge.asp>

<http://www.assemblee-nationale.fr>

<http://www.fbi.gov/ucr/ucr.htm#hate>

<http://www.thetaskforce.org/theissues/issue.cfm>

<http://www.thetaskforce.org/theissues/issue.cfm?issued=31>

※ 관련 용어 정리

성적소수자(性的少數者, Sexual-Minority)

이성애주의 사회에서 성적인 특질로 구별되어 차별 받는 집단

‘성적소수자’의 사전적 정의는 인종적, 문화적, 육체적, 심리적 특질로 인해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집단을 소수자 집단(Minority)이라 부르는 일반적 정의에서 한발 나아간 ‘성적인 특질로 구별되어 차별 받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원들은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논리 하에서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편견과 차별, 억압에 대상화된 모든 이들을 성적소수자로 일컫는다는 시각을 견지하면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HIV/AIDS 감염인의 경우는 성적소수자로 포함시키기에 약간 무리가 따르지만 동성애자와 연관되어 깊은 사회적 차별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 함께 다루었다.

성정체성(sexual identity)

정서적, 심리적, 성적 및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을 동성애자, 이성애자 혹은 양성애자로 지각하는 것.

성정체성이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자신이 사랑과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사람이 동성인지, 이성인지 혹은 양성인지를 자각하고 ‘나는 동성애자이다, 이성애자이다, 혹은 양성애자이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성정체성과 성적 행동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동성과 섹스를 했다는 행위 자체가 그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거나 결정짓거나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정체성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흔히 청소년 시기에 많은 갈등과 방황, 고민을 거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고 말한다. 이때 ‘섹슈얼 아이덴티티’도 함께 확립이 되는데 지금의 사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성애적 성정체성’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성적 정체성에 대해 학교에서 따로 가르치거나 지도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성애적 성 정체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를 뿐이다. 아무리 동성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으로 본다.

성정체성의 자각이 중요한 이유는 이성애 중심사회에서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을 당

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늘 주눅 들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숨어 지내는 고통 속에 빠져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비로소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지속적인 정서적, 사회적, 성적, 감정적인 끌림을 뜻하는 단어.

성적 지향성이라고도 한다. 이성애자/양성애자/동성애자 성적 지향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흔히 □□성적 선호□□ 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다. “선호□□라는 것은 마치 담배를 선호한다는 것처럼 단지 현재 그것을 좀 더 좋아한다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동성애 또한 선호의 결과로 노력을 하면 바꿀 수 있는 문제로 보는 결과를 빚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성적 지향이 한 개인의 임의적 선택이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상호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자신의 성적 지향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자신의 성별에 관한 근본적인 감정, 즉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

성별 정체성은 성역할과 다르다. 성역할(gender role)은 소위 남성성 혹은 여성성과 연관되는 행동, 태도, 특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성별 정체성이 결정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인 요소라고 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가 특정 성에 대한 내적인 결정인지, 외적인 표현인지에 대한 측정과 개념적 정의는 불분명하다.

또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역시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예를 들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후 남성과의 교제관계를 가질 경우, 이 사람은 이성애적 성적 지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전환 전 이 개인이 남성과 교제했을 경우 이 사람이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졌다고 말하기 쉬운데, 그의 생물학적 성이 비록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젠더 정체성이 여성이기에 이 사람은 성전환 전 예나 후에나 이성애적 성적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가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끌린다면 그 사람의 성적지향은 이성애가 아니라 동성애이다.

아웃팅(outing)

성적소수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성(별)정체성을 폭로당하는 일

성적소수자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기 쉬운 현실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기와 원하는 상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타인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성 정체성이 알려지면 당사자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아웃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본문의 '아웃팅' 편을 참고바람.)

커밍아웃(comingout)

성적소수자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는 것

coming out, coming-out 또는 한단어로 comingout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말은 "벽장에서 나오다"(come out of closet)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동성애자(혹은 양성애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커밍아웃은 1차적으로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을 말하지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커밍아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반 (異般)

동성애자를 나타내는 말. 한자로는 '異般' 또는 '二般'이라고 한다.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부르는 말로 이성애자들을 '일반(一般)'으로 일컫는 것과 구별해서 '이반(二般)'이라고 한 것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에 형성된 게이 커뮤니티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기원은 불분명하다. 초창기 2류나 첫 번째가 아니라는 의미의 자조적인 뜻을 담고 있던 '二般'은 이성애자들과 다른[異]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異般'으로 확대되어 사용되면서 이성애제도에서 벗어난 성적소수자 전반을 폭넓게 포괄하는 의미로 정착되었다. 현재는 많은 수의 동성애자 관련 사이트나 모임, 클럽들이 '이반-'이 들어간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게이(gay)

남성동성애자를 나타내는 말.

미국에서는 '남성 동성애자' 혹은 '남성, 여성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남성동성애자'만을 뜻하는 단어로 많이 쓴다.

게이는 1960년대 후반 미국 동성애자 사회에서 만들어져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로 영어 사전적 의미로는 '즐거운, 기쁜'이란 뜻을 담고 있다. 즉,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 내포된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단어인 셈이다. 에릭 마커스의 <커밍아웃>(박영률출판사, 2002)에 따르면 미국 동성애자 사회에서는 1920년대부터 동성애자 사회에서 호모섹슈얼을 대신하는 은어로 공공연하게 사용해왔다고 한다.

레즈비언(lesbian)

여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말.

사전적 의미로는 '레스보스 섬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성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인다. 레스보스(Lesbos)는 에게 해 북동쪽에 자리잡은 커다란 섬으로 기원전 7세기 무렵 그리스 시대 4대 서정시인이자, 역사 기록상 최초의 레즈비언(시간적으로 가장 최초라는 의미는 아니며, 그만큼 가장 유명한 레즈비언)이라고도 불리는 사포(Sappho)가 살았던 섬이다. 레즈비언은 '레스보스 섬의 사포와 같은 여자들'이란 뜻에서 유래되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 동성애자를 '사포주의자'라고 하기도 하며, 여성 동성애를 '사피즘(sapphis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호모(homo)

동성애자를 비하하여 이르는 말.

호모는 사전적 의미로만 따진다면 '호모섹슈얼(homosexual)'의 준말 정도가 되겠지만, 일상 생활 속에서 호모라는 말은 동성애자들에게는 욕설과 같다. 이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한국인(강꼬구징)'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센징'이라고 불렀을 때 '조선놈 새끼'와 같은 비하어가 되는 것처럼 '이 호모새끼, 동성끼리 붙어먹는 놈'이란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기 때문이다.

동성연애 (同性戀愛/homosexuality)

동성애의 다른 말. 비하어.

동성연애와 동성애의 차이는 말 그대로 한 글자 차이일 뿐이지만 동성애자들이 받아들이는 체감 의미는 아주 다르다. '동성연애자'나 '동성연애에 빠져'라는 말은 동성애

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며, 동성애자에게 이런 말을 쓴다면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는 사랑이란 단어에 비해, 연애에는 진지한 사랑의 감정보다는 육체적 탐닉, 철없는 감정놀이란 의미가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며, 더구나 이성연애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는 것에 비해 동성연애라는 말이 널리 쓰이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까닭에 동성애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를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에서는 방송이나 신문 기사에 '동성연애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성애자(heterosexual)

정신적, 육체적 끌림을 자신과 다른 성을 가진 사람에게 느끼는 사람. 다른 말로 스트레이트(straight)라고도 부른다.

양성애자(bisexual)

이성과 동성 모두에게 정서적, 감정적, 성적 및 사회적 끌림을 느끼는 사람.

양성애적 성 정체성을 가졌다고 표현할 수 있다. 동성애자는 동성에게만, 이성애자는 이성에게만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다면 양성애자는 동성, 이성 구별하지 않고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점 때문에 양성애자는 이성과 동성에게 늘 양다리를 걸치는 바람둥이 정도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양성 모두에게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양 성 모두를 동시에 사귄다는 것은 다른 일이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

성전환자,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과 같은 말/ 타고난 육체적 성(SEX)과 정신적 성(GENDER)이 일치하는 않는 사람

육체적 성별은 남성에 속하지만 정신 혹은 영혼은 여성인 경우를 'M TO F 트랜스젠더'(Male to Female transgender)라고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F TO M 트랜스젠더'(Female to Male transgender)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성전환자 라는 말을 많이 썼으며, 예전에는 정신이상자라고 흔히 생각했고 동성애자와 구별하지 못했었다.

왜 육체적 성 지향과 정신적 성 지향이 일치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학적 원인 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해서 트랜스젠더를 '비정상인'

이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다. 이것은 이성애자가 왜 이성만을 좋아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과 같으며, 실제로 트랜스젠더들은 사회인의 한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많은 트랜스섹슈얼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몰이해와 차별 때문이다.

또,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를 같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동성애나, 이성애나 하는 것은 성적 지향성(성적 매력과 정서적 호감)이 누구를 향하느냐의 문제이며, 트랜스섹슈얼의 문제는 자신의 육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 자각이 일치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이므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러므로 트랜스젠더 중에서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양성애자가 있을 수 있다.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섹슈얼은 보통 특별한 구별 없이 같은 말로 쓰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구분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이는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는 트랜스섹슈얼,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엔 트랜스젠더라고 불러야 한다는 이도 있고, 트랜스섹슈얼은 지나치게 성적인 면에만 국한시킨 단어이므로 트랜스젠더로 부르는 것이 더 존중하는 말이라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성전환자'라는 말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성전환이란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트랜스젠더는 임의로 성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본래의 자기 성을 찾는 사람이므로, 성전환자라는 말이 트랜스젠더를 정신이상자로 보는 시각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염려한다.

이성애주의(異性愛主義/ heterosexism)

오로지 이성애만이 옳다고 여기는 태도.

이성애주의는 사회의 전반적인 관습과 제도 내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으며, 이는 비가시성과 폭력, 즉 "드러내지 말아야 하거나, 드러내면 폭력을 당하는" 이중 작용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이성애주의는 이성애적이지 않은 행동이나 정체성/교제/ 커뮤니티 등을 부정하며 모욕하고 낙인찍는 이데올로기적인 구조를 가진다.

특히, 이성애주의는 오로지 이성간의 교제만이 옳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이성 (혹은 동성)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남성우월중심의 태도 및 전통적인 성역할의 강화도 포함한다. 다른 차이를 부정하는 차별적인 기제와 같이, 우리는 사회-문화와의 상호작용 내에서 이성애주의를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애자뿐만 아니라 동,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도 그 이데올로기에 묶일 수 있다.

이성애주의는 일부러 그 예를 찾을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흥

석천씨가 커밍아웃 이후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쫓겨난 것이나, 사랑은 당연히 남녀간에만 해야 한다는 듯 동성애자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법률, 그리고 소위 “결혼 적령기”의 미혼자나 노처녀, 노총각 혹은 이혼자들에 대한 결혼 압력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성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성애 관계만이 옳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을 반대하며 차별하고 보호하지 않는다.

유사개념인 호모포비아와 이성애주의를 비교하자면, 호모포비아가 개인 차원의 반동성애적인 태도 혹은 행위와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는 반면 이성애주의는 사회적 차원의 이데올로기나 비이성애자를 억압하는 기제를 논하는 데 주로 쓰이는 차이가 있다.

호모포비아(homophobia)

동성애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과 비합리적인 혐오감.

‘동성애혐오증’이라고도 한다. <아메리칸 헤르티지 사전 American Heritage Dictionary>(1992)에는 ‘동성애자 또는 그들의 생활양식 또는 동성애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런 거부감에 기초한 행위 또는 행동 양식’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동성애자라고 말만 들어도 왠지 소름이 끼치고 역겹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감정이나 행동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이런 동성애 혐오증은 더 나아가 동성애자들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하고, 자신이 그들을 응징해도 상관없다는 혐오범죄로 표현되기도 한다.

HIV 감염인

HIV란 Human(인간) Immunodeficiency(면역결핍) Virus(바이러스)의 준말이며, HIV가 체내에 들어온 사람을 HIV 감염인 이라고 한다. HIV는 특이하게도 체내로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중의 핵심이라고 하는 T세포에 기생하는 특성이 있다. T세포에 기생해 있다가 갑자기 증식하면서 T세포를 파괴시키면 인체를 침입자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면역시스템이 망가지게 되어 결국 작은 병균의 침입에도 방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HIV에 감염만 된 상태는 비감염인과 비교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AIDS 환자

AIDS 환이란 HIV 감염인이 질병에 걸려 몸이 아픈 상황을 말한다. 즉, 면역 체계의 약화로 기회감염(폐렴, 뇌염, 피부암 등)의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거나 면역수치(CD4)가 200 이하로 떨어지면 AIDS 환자라고 부른다. AIDS란 이름도 풀어보면 Acquired

(후천성) Immune(면역) Deficiency(결핍) Syndrome(증후군)이란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AIDS(에이즈)라는 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HIV에 의해 다른 병에 걸린 상태를 지칭할 뿐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에이즈에 걸리면 다 죽는다는 식의 오해를 막고, HIV 감염인은 비감염인과 다를 바가 없으며, 몸이 불편한 환자로서 치료받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일 뿐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다.

부록 1 - 정책 제안

1.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 실시

1-1. 성적소수자 인권실태 조사

○ 필요성

성적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성적소수자의 인권실태부터 파악해야 함. 우리 사회에선 성적소수자가 겪는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음.

○ 추진전략

1-1-1.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위원회 설치

1-1-2. 성적소수자 유형별 차별실태조사 실시

1-1-3. 성적소수자 인권법안 및 정책을 만들기 위한 사전조사 실시

1-1-4.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1-1-5. 보고서를 토대로 성적소수자 인권법안 제정 및 정책에 반영

○ 근거 및 외국사례

- 덴마크는 1984년 동성애자 현황을 검토하고 차별 철폐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988년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의거, 다음 해인 1989년 세계 최초로 동성간 결합을 인정함.

- 아이슬란드도 1994년 정부차원의 동성애자인권위원회를 설치해 동성애자의 결혼, 동성애자에 대한 범죄, 학교에서의 동성애자 교육 등에 대한 정책에 반영함.

- 스웨덴 정부는 1978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시정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동성애자에 대한 입법적 조치와 방법을 검토함. 이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87년 '동성애적 공동생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1991년 '동성혼 심의회'라는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법 제정에 대한 심의를 맡김. 2002년엔 동성애자 커플과 이성애자 커플의 양육능력이 동일하다는 의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거해 동성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입안함.

○ 관련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부

1.2. 성적소수자 차별에 대한 전문 모니터링

○ 필요성

성적소수자 뿐 아니라 국민들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또한 성적소수자의 차별실태연구는 성적소수자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나 면접만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도 병행되어야 함.

○ 추진전략

1-2-1. 성적소수자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1-2-2. 성적소수자 인권 관련 전문가 집단 구성

1-2-3. 각 영역에서 성적소수자 차별 모니터링

※ 언론, 수사과정, 판결, 직장, 상담기관, 학교, 교회 등

1-2-4. 모니터링 결과 공개 및 차별시정 조치

1-2-5. 차별예방 정책에 활용

○ 근거 및 사례

- EC(유럽공동체: 유럽연합의 전신)협약 제 13조는 성, 인종, 종교, 신념, 장애, 나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음.

- 노동부의 고용차별실태조사 및 관리감독, 여성부가 실시한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시민단체가 조사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실태, 성차별적 판례조사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관련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부

2.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2.1. 성적소수자 관련 차별법령 개선

○ 필요성

성적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은 전무한 반면, 동성애를 심신장애로 보거나, 동성간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AIDS 감염 원인으로 연결시키고,

동성간 성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는 등 편견에 기초한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 기구 내에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명시적인 사례들로서 시급한 개정이 요구됨.

○추진전략

- 2-1-1. 동성애를 심신장애로 보는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 및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2 개정
- 2-1-2. 동성간 성행위를 AIDS등 수혈전파성 감염질환과 관련시키는 군혈액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혈액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 2-1-3.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개정
- 2-1-4. 동성애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로 규율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청소년유해 및 사회윤리침해 기준” 개정

○근거 및 외국사례

- 동성애를 심신장애로 보는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 및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2 개정
-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에 대한 통계편람인 DSM,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하는 국제질병분류 ICD-10,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분류, 교육인적자원부 발행의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 등에서 동성애를 더 이상 질환으로 분류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음.
- 2003년 1월 유럽인권법정은 영국 공군의 장교 채용 거부에 대하여 동성애자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판결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영국 공군은 동성애자의 장교 임용을 허용하고 있고, 2002년 대만의 경우 동성애자의 헌병대(Military Police Command) 임용을 막아온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전역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군인사법시행규칙 및 별표1. 규정’은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

2-1-2. 동성애를 AIDS등 수혈전파성 감염질환과 관련시키는 군혈액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혈액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 동성애자인권연대가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2004년 8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규정의 관련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인정한 바 있음.

2-1-3.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개정

- 계간(鷄姦)이라는 용어의 사용 자체가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입법자의 차별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 또한 계간이라고 하여 남성 군인간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 까지를 “추행”과 같이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강제에 의한 성폭행과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같은 기준에서 처벌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남성 군인과 여군, 여군 사이의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반하여 남성 군인 사이의 성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1-4. 동성애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로 규율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청소년유해 및 사회윤리침해 기준” 개정

- 위 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 4. 2.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2004. 4.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음.

○관련기관: 국방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2.2. 간접차별에 대한 개선

○필요성

법규상으로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명시적인 직접 차별 조항은 위와 같은 몇 개의 조항에 불과하나, 이는 우리 법·제도가 기본적으로 성적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태도에서 비롯됨. 민법상 “가족”의 정의와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적소수자의 복지 현실, 직장을 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성산업에 유입되는 등의 트랜스젠더의 고용현실 등 성적소수자 차별의 많은 경우가 직접적 차별의 개념으로는 규제하기 곤란한 결과적 불평등으로서의 간접차별에 해당할 것임. 차별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필요한 것은 성적소수자에게 단지 기회의 평등을 부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 중심적 사회구조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바꾸어 제도적, 결과적인 평등을 이루어내는 것임.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간접차별의 개념을 도입하고 간접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검토되어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잠정적으로 성적소수자를 우대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

○추진전략

2-2-1. 차별환경 개선 및 간접차별 규제를 위한 성적소수자인권실태조사위원회 설치

2-2-2. 성적소수자 차별금지법에서 간접차별을 차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위한 근거 마련

○근거 및 외국사례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관련기관 : 여성부,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2.3. 제도개선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2-3-0. 전문 상담소, 보호시설 설치 및 상담원 양성과 수사기관에 대한 인권 교육의 필요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성적소수자 사건의 특수성이 존재하며, 특히 피해자들은 성정체성의 노출(outing)과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조력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 장기적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분야별 전문 상담시설이 설치되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성적소수자 지원센터”의 형태로 종합적인 상담과 지원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분야별 전문 상담원을 양성하고, 현재 존재하는 각 전문 상담시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함. 또한 기초적으로는 현재 성적소수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NGO들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하여 지원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시급함.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

2-3-1. 성폭력

○필요성

성폭력특별법 및 성폭력에 대한 수사기관 또는 사회의 인식은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

자 구도를 전형으로 하고 있으며, 동성간 성폭력의 경우 강간죄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동성애자들이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어도 아웃팅,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 등 2차 피해를 두려워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지 못한 실정임.

○추진전략

2-3-1-1. 강간죄의 구성요건 수정

2-3-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에 동성간 성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규정 추가

2-3-1-3. 전문 상담소, 보호시설 설치 및 상담원 양성

2-3-1-4.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회의 인식 변화를 교육 및 홍보

○근거 및 외국사례

- 영국, 미국의 경우는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강간죄의 객체 및 구성요건적 행위를 사람간의 질성고 및 구강 또는 항문성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비하였고, 독일의 경우도 형법개정법률로써 강간죄에 유사 성교행위를 포함하고, 범죄의 객체도 남성 및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개정.

- 국내의 경우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유사성교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관련기관 : 법무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2-3-2. 가정폭력

○필요성

성적소수자에 대한 가정폭력은 혈연 가족 관계와 동성간 동반자관계 내에서 드러나고 있음. 혈연 가족 관계 내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부모 등 가해 가족 구성원에게 동성애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상담 시스템이 전무함. 또한 동성간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사실혼 관계마저 부정당하고 있지만, 동성간 가정(동반자) 관계 및 가정폭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 이유는 이성애자 가족의 경우와 다르지 않음. 가정폭력은 이성애자 가정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문제라는 수사기관, 상담기관을 포함한 사회 일반의 인식은 성적소수자 가정 폭력의 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로 만들고 있으며, 따라서 그 피해의 심각성은 이성애자 가정의

경우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단기간 내에 동성간 동반자 관계를 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피해 영역에서부터 “가정”의 개념을 확대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함.

○추진전략

2-3-2-1. 가정폭력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정폭력의 범위 확장

- 법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검찰청의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 등의 개정을 통하여 적극적인 피해 대처에 나서는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

2-3-2-2. 수사기관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권 교육 실시

2-3-2-3. 전문 상담소, 보호시설 설치 및 상담원 양성

○근거 및 외국사례

-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법(Domestic violence laws)의 개정을 통해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성적소수자 파트너 가정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레즈비언 커플의 22% 내지 46% 정도가, 게이 커플의 경우 약 25% 정도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관련기관 : 법무부, 여성부

2-3-3. 성매매

○필요성

성적소수자 성매매의 경우 소위 집창촌이라는 성매매 집결지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양상을 보임. 트랜스젠더, 가출 청소년 이반 등 성적소수자 성매매와 이로 인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 및 문제 해결 노력이 진행된 바 없음. 성적소수자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추진전략

2-3-3-1. 성적소수자 성매매 실태조사 실시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4호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2.4. 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규정 삭제

○필요성

성적소수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동성애자 개인들의 삶의 문제를 드러내는 정보와 작품들을 대중이 많이 접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자체를 심의기준으로 하고 있는 개별 규정들로 인해 이러한 기회와 접근 가능성이 차단되고 있음. 또한 법이나 심의기준에 존재하는 그러한 규정들이 오히려 편견을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음.

○추진전략

2-3-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분야별 등급분류 및 보류 기준에서 동성애 규정 삭제

2-3-2. 납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청소년유해 및 사회윤리침해 기준” 개정

○근거

- 2003. 4. 2.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개별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2004. 4.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음.

- 영화 등급분류 보류제도는 2001. 8. 30.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보류제도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계속 중임.

○관련기관 : 문화관광부

3. 성적소수자 차별 금지를 위한 포괄적인 법안의 마련

3-1. 성적소수자 차별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마련

○필요성

그간 사회의 무지로 인해 차별로도 간주되지 못해 왔던 성적소수자 차별 행위는 성적소수자 당사자에게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안겨준다는 측면에서 차별 행위자가 차별을 당한 피해자에게 반드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기업, 정부 기관 등이 손해 배상을 위한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적소수자 차별 행위를 지양하고자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가 될 것이다. 이는 고용 및 재화·용역 시설에의 접근, 교육 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성적소수자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성적소수자 차별 금지를 위한 기본적인 적극적 조치 중 하나라는 것이다.

○추진 전략

3-1-1. 성정체성을 매개로 한 차별 행위를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규정하는 틀을 마련한다.

3-1-2. 성정체성을 매개로 한 구체적인 차별 행위들을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고 유형화한다.

3-1-3. 인권 침해적 행위에 대한 적극적 시정 조치로써 손해배상 제도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한다.

3-1-4. 강력한 시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손해 배상액의 하한을 높게 책정한다.

○근거 및 외국 사례

- 미국 뉴욕 주 '성적 지향을 매개로 한 차별 금지법(SONDA)'

○관련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법무부, 국회 등

3-2. 성적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 제정

○필요성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유 없는 공포와 혐오로부터 비롯되는 대 성적소수자 혐오 범죄는 성정체성을 매개로 한 인권 침해 행위라는 점을 그 기본 성격으로 갖는다. 이러한 때, 범죄 그 자체에 대한 현행법상의 처벌량에 더해 혐오 범죄의 인권 침해적 측면에

대한 처벌량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이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는 데 필수적인 일이다.

○추진 전략

3-2-1. 혐오 범죄의 구성 요건을 정밀하게 설정한다.

3-2-2. 혐오 범죄의 통계 작성을 통해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3-2-3. 혐오 범죄의 인권 침해적 범죄로써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

3-2-4. 가중 처벌량의 하한을 높게 설정한다.

3-2-5. 성정체성, 국적, 인종, 장애, 성별, 종교, 나이 등을 매개로 한 혐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한다.

○근거 및 외국 사례

- 프랑스 혐오 범죄 불법화 사례

- 미국 혐오 범죄 가중처벌법 제정 사례

○관련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경찰, 국회 등

3.3. 성적소수자에 대한 아웃팅 매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 제정

○필요성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아웃팅을 매개로 저질러지는 범죄는 다분히 인권 침해적이라 할 수 있다. 아웃팅을 통해 성적소수자의 성정체성이 드러났을 경우 그 당사자는 무수한 차별과 폭력을 겪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적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적 여건의 특수성을 악용하여 저질러지는 아웃팅 관련 범죄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적 성격을 지닌 범죄로써 가중처벌 되어야 한다.

○추진 전략

3-3-1. 인권 침해적 범죄로써의 아웃팅 관련 범죄 성격을 분명히 한다.

3-3-2. 아웃팅 관련 범죄의 통계 작성을 통해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3-3-3. 가중 처벌량의 하한을 높게 설정한다.

○근거

- 당사자의 불리한 조건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등

○관련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경찰, 국회 등

3.4. 형사절차 상의 성적소수자 인권 보장

○필요성

성적소수자의 현행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형사절차 상의 성적소수자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절차 상의 성적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수사 관계자, 재판 관계자, 수감 시설 관계자 등에 대한 인권 교육부터 차별 행위에 대한 감사 제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추진 전략

3.4.1. 형사절차 상의 성적소수자 차별 실태를 조사한다.

3.4.2. 관계자 인권 교육 커리큘럼에 성적소수자 파트를 반드시 포함시켜 다루도록 한다.

3.4.3. 성적소수자 차별 행위에 대한 관련 기관 자체 감사를 강화한다.

3.4.4.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과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성적소수자 인권 보장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시킨다.

○근거 및 외국 사례

- 캐나다의 경찰 인권 교육 사례
- 미국 연방수사국의 인권 관련 수사 지침

○관련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경찰, 국회 등

3.5. 성적소수자 차별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3.1부터 3.4까지의 내용을 포괄하되 복지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성적소수자 차별

행위를 시정하고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성적소수자 차별 금지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특별법'은 법안에 포함될 포괄적 차별 금지의 구체적인 내용들과 그 법안의 존재 자체가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라는 사회적 효과의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법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특별법'은 다른 여러 법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실효성의 측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추진 전략

- 3-5-1. 성적소수자 인권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전사회적인 의견 수렴을 한다.
- 3-5-2. 전문가 집단(성적소수자 인권 운동가, 관련 연구자, 법조인 등)과 국가가 공동으로 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체를 구성한다.
- 3-5-3. 해외의 관련 법안 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적절히 이용할 방법을 모색한다.
- 3-5-4. 한국 현실에 맞는 법안의 구체적인 항목을 생산한다.
- 3-5-5. 적극적인 대사회적 홍보를 진행한다.

○근거 및 외국 사례

- 1997년 6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암스텔담 조약을 체결하며 성적 지향을 토대로 차별하는 법이 없어야 함을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는 의무조항도 포함시켰다.
- EC(유럽공동체: 유럽연합의 전신)협약 제 13조는 성, 인종, 종교, 신념, 장애, 나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 th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는 2000년 9월 26일에 각 유럽 정부들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1)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하고 2) 학교와 의료기관, 군대와 경찰 등의 동성애 혐오적인 태도들을 없애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3) 동성 커플의 관계를 합법화하는 법률을 만들어라.
- 미국 뉴욕 주 '성적 지향을 매개로 한 차별 금지법(SONDA)'

○관련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회 등

4. 가족구성권 및 성적소수자 복지 보장

4.1. 가족구성권 개념의 확대

○ 필요성

- 정부의 가족정책은 국민들의 삶의 현신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음. 한부모, 자녀 없는 부부, 독신모, 독신자, 입양 가족, 동성 커플, 공동체 가족 등 실제 우리 주 위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음. 그러나 법과 제도는 이를 지지해 주지 못하는 현실이므로 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가 바뀔 필요가 절 실함.

○ 추진전략

4.1-1. 폐쇄적인 혼인과 가족의 법적 정의로 인한 실제적 피해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법 제정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실태조사 실시.

4.1-2. '건강가정기본법'내의 가족을 정의내린 조항을 비롯하여 차별적 조항 개정.

4.1-3. 기존의 핵가족 중심의 가족 정의를 벗어나 가족의 정의를 확대시켜 한부모 가정, 독신 가정, 입양 가정, 동성 커플 가정, 공동체 가정 등도 보호하는 법률 제정.

4.1-4. 법률혼의 밖에 있는 동거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률 제정.

○ 근거 및 외국 사례

- 호주제폐지, 사실혼 인정, 동거 커플 보호, 생활공동체의 법적 혜택 부여 등의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음.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2005년 3월에 확정되 는 등 변화의 물꼬가 터졌음.

- 1999년 10월 계약동거를 허용하는 법안(PACS)이 통과됨에 따라 프랑스의 '모든 형 태의 동거부부'는 각종 법률이 정하는 사회복지나 세제상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관련기관 : 국가인권위, 법무부

4.2. 동성간 공동생활관계 합법화

4.2-1. 기본 법률 내의 배우자의 권리를 개별 법 조항에서 확대 해석

○ 필요성

- 동성애자가 현실에서 겪는 차별과 인권 침해는 심각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 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키는데는 시간이 걸림. 빠른 시일 내에 조금씩이라도

차별을 줄여나가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변호를 도모해야 함.

- 동성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인정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로서 정부나 법원의 적극적인 유권 해석만으로도 구제 가능.
- 배우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파트너의 사망 후 유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 혜택 및 보험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없음. 이런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구제받지 못함.
- 부양 의무에 근거한 연금 및 보험의 취지를 따져볼 때 실제 오랜 기간 부양하며 살아온 이에겐 혜택을 주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

○ 추진전략

4-2-1-1. 오랜 기간 동거한 사실의 입증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성간의 '사실혼'에 준하는 권리 인정.

4-2-1-2. 연금 및 의료 보험 제도 개선

※ 주택임대차보호법, 연금법(공무원연금,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보험법(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개별적인 법률의 각 유권해석 내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한 동성애자 커플에게 혼인상의 부부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인정.

○ 근거 및 외국 사례

- 법적 절차를 밟은 '법률혼'은 아니지만 사회보장의 정신에 따라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해온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적 배우자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음. 이런 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적 취지를 생각할 때 '부부와 다름없는 공동생활'을 해온 동성 커플에게도 유사한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 2항의 본문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차별은 평등권 침해라고 규정되어 있음.
- 영국의 경우,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은 없었지만 1999년 10월 28일 대법원(상원재판부)은 어느 남성 동성애자에게 사망한 파트너의 명의로 임대된 국가 보조 아파트에 계속 살 수 있다는 상속권을 인정함. 당시 재판부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으며 사는 남녀에 대해 임대차 보호법이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유사한 관계에 있는 두 남자들이나 두 여자들에 대해서도 이 같은 결론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힘.
- 1992년 7월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주 교도소나 병원 방문

이나 조문 출장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성 간에도 동반자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이외 미국의 오레곤 주, 워싱턴 주, 뉴욕 주, 코네티컷 주에서는 주 정부 직원에게 동성간 커플에게도 배우자의 권리를 부여함.

○ 관련기관 : 행정자치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

4-2-2. 동반자관계 등록제도 마련

○ 필요성

- 정부가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상징적인 의사표현도 되므로 이것 자체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됨.

- 동성애자 커플이 함께 살면서 생길 수 있는 위급시 의료결정권, 재산 분할, 유산 상속 등에 있어 사실상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효력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함.

- 동성애자 커플에게 법률혼과 유사한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피하면서도 동성애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음.

○ 추진전략

4-2-2-1. 법적 혼인은 하지 않았지만 공동생활관계를 맺고 있음을 관할 관청에 등록할 수 있는 법 제정.

4-2-2-2. 법률혼에 따른 부부뿐 아니라 이와 같은 공동생활관계에 있는 커플도 인정하는 내규를 둔 기업 등에 세금 감면이나 시와 용역계약을 맺을 자격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점차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4-2-2-3. 개정 절차가 보다 간편한 법률들부터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되는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내규, 지침 등에 등록된 커플의 권리가 인정되도록 명시함.

○ 근거 및 외국 사례

- 2001년도에 런던시청은 런던 파트너십 레지스터(London Partnerships Register)를 실시함. 이는 런던 시청이 등록과 증명서 발급을 통해 동성 커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결혼식과 유사한 의식을 치를 수 있게 한 것으로 법률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적인 차원에서 동성애자의 결혼을 인정하는 것임.

- 1997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시는 혼인 상의 지위나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을 시행하는 회사와는 용역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조례를 만들.

○ 관련기관 : 법무부

4-2-3. 동성간 동반자관계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

○ 필요성

-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 실현과 차별 철폐라는 점에서 국가가 동성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어차피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음.
- 이미 외국에서는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되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외국인 동성애자 부부의 법적 권리를 한국에서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둘러싼 외교문제가 발생할 것임. 세계적 추세는 동성혼 인정으로 가고 있음.

○ 추진전략

4-2-3-1. 성적소수자차별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동성간 혼인 불법화로 인한 차별과 인권 침해 현실을 조사.

4-2-3-2. 외국의 동성혼 인정 사례를 연구하면서 한국의 현실에 맞는 동성간 동반자관계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

○ 근거 및 외국 사례

- 2000년 3월 15일, 유럽연합(EU)의회는 동성 부부에게도 이성 부부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도록 15개 회원국에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 벨기에, 포르투갈, 헝가리,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대만, 뉴질랜드, 스페인, 칠레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거나 법 제정을 준비중임.
- 대만의 인권보장법 제24조(동성애자권익 보장)에는 ‘ 국가는 동성애자의 권익을 존중하여야 한다. 동성애자는 법에 의해서 가정을 구성하고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또 법 규정 제안에 대한 설명에서 세계 각국에서 동성애자 관념이 승인되고 있으며,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관련기관 : 법무부

4-2-4. 혼인제도 완전 개방

○ 필요성

- 현행 법률 주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등이 명시된 법령은 약 270여건이 있으며, 개별조항으로도 540여개가 넘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개별 법률로 모두 차별을 해결하기 어려움.
- 사회 전반적으로 '남녀 부부 그리고 혈연 관계의 자녀'만이 정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 여전히 입양과 이혼, 미혼모 등에 대한 비하가 횡행하므로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양한 가족의 인정 확대의 절실함을 담은 의식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함.

○ 추진전략

4-2-4-1. 혼인이 '성별에 관계없이 두 사람의 결합'임을 명시하는 민법 개정

○ 근거 및 외국 사례

- 동성애자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와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위배됨.
- 네덜란드는 민법 30조 제 1호를 "혼인은 동성이나 이성의 2인에 의하여 체결될 수 있다."로 개정함. 캐나다 역시 현재 혼인의 규정을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두 사람'으로 개정 작업 중임. 이외 벨기에와 폴란드도 혼인제도 개방 국가임.
-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대법원은 2003년 11월 18일, 동성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도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라고 명령을 내림.

○ 관련기관 : 법무부

4-3.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

○ 필요성

- 외국과는 달리 한국은 오로지 기혼자에게만 입양을 허용하는 법을 가지고 있음. 이것은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이

성 커플 등 모두에게 차별적임.

-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동성애자들이 입양을 통해 '자식과 부모'로서의 관계를 맺고 안정감과 부양의 즐거움,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간절히 원하고 있음.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인권침해 법률임.

- 한국은 세계 1위의 '유아수출국'으로 오명이 높음. 국내입양을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도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으로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따지는 법 개정이 필요함.

○ 추진전략

4.3-1.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서 '혼인중일 것' 이란 조항 삭제.

4.3-2. 국내 각 입양기관이 '성정체성'을 이유로 입양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권고안 마련

○ 근거 및 외국 사례

- 민법 제 866조에 의하면 성년자이면 누구나 양친이 될 자격이 있으며 제 874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으로만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아 원칙적으로 기혼자가 아니더라도 입양이 가능함을 드러내고 있음.

- 영국은 2002년도에 기혼 부부 또는 독신자에게만 입양을 허용하던 기존 입양 관련 법을 동성애자 커플과 미혼 커플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미국정신분석협회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 APsaA) 는 2002년 5월 28일, 동성애자의 입양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표명을 발표하였음. APsaA는 임신과 아이의 양육, 입양, 보호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성적지향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관심이라고 강조함.

- 2003년 미국의 국가입양센터(NAC)가 뽑은 '올해의 가족'으로 동성애자 남성이 3명의 남자 아이를 입양해 꾸린 가정이 선정됨.

○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4.4. 성적소수자종합지원센터 설립

○ 필요성

- 한국 사회에 다양하고 다채로운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측면과 다층적인 구조로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는 성적소수자들에게 삶의 지지대가 되어준다는 측면 모

두를 살리는 대안이 필요.

- 성적소수자의 문제는 성적소수자가 주체가 되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최대의 효과가 발휘된다는 점에 주목. 상담, 쉼터, 교육, 학술적 조사와 연구, 단체 지원, 모니터링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주체가 필요함.
- 가령, 성정체성으로 인해 가족간의 불화가 생겼을 때나 학교, 직장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하기 힘든 경우도 많음. 이럴 때 센터에서 상담과 문제의 원인 파악, 해결책 제시, 법적 조언 등을 할 수 있음.

○ 추진전략

4-4-1. 성적소수자종합지원센터 설립

○ 근거 및 외국 사례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993년에 "Lesbian Visibility" and "Homosexuality: A European Community Issue"이란 연구와 출판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공식 후원하며, 국제청소년동성애자 컨퍼런스도 매년 후원하고 있음. 특히 ILGA-Europe의 경우는 2000년 이후로 계속 후원.

-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여성발전센터 등 지원이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건립의 예가 있음.

○ 관련기관 : 문화관광부, 국가인권위

4.5. 성적소수자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필요성

- 현재 입양이나 인공수정 등을 위한 자녀 양육 등이 불가능하므로 성적소수자는 고령이 되어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돌봐줄 가족이 없을 수 있음.
- 이성애중심적인 주류적인 노인 대상 공적, 사적 서비스들은 성적소수자 노인들을 소외시키고 있음.
- 그동안 성적소수자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독거노인이나 무의탁노인 등의 문제에 포함되어왔고 특히 이성애자의 경우와 달리 파트너와의 사별 후의 경제적 어려움, 고독감등은 동성애혐오적인 사회에서 더욱 깊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혀 다루어지지 못했음.

○ 추진전략

4-5-1. 동성애자들을 위한 노후 주거 및 문화 시설 마련

4-5-2. 성적체성에 따른 노후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하여 대책 마련

○ 근거 및 외국 사례

- 현재 독일 베를린은 공적 기금으로 마련된 예산으로 동성애자 노인들을 위한 아파트를 건립중임. (2006년 완공 예정)

- 한국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노인권과 사회보장제도, 개인적 차원의 노후 계획 등이 중요해졌음. 이에 노인의 복지와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함에 있어 성적 지향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함.

○ 관련기관 : 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 여성부

5. 차별적 교육환경 시정 및 인권교육 실시

5-1. 교과서 개편

○ 필요성

정규교육과정의 교과서 안에서 성적소수자의 존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음. 이는 사람이 태어나 자신의 성적체성을 고민하고 찾아볼 기회가 전혀 제공되지 않음을 의미함. 간혹 성적소수자 이야기를 신는 경우, 상당히 혐오적인 이미지로 다룸. 이는 성적소수자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추진전략

5-1-1. 교과서, 성교육교과서, 교사지침서의 이성애 중심적이고 동성애 차별적인 부분 개편

5-1-2. 성교육시, 성적체성에 대한 정보 제공

5-1-3. 인권 교과서 및 교과 신설 후, 인권 교과에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 근거 및 외국사례

지난 6차 교육과정 중, 동성애 혐오적인 문구가 들어있던 고등학교 윤리교과서를 개편함.

○관련기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5.2. 동성애 차별적인 제도교육 환경 시정

○필요성

성정체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의 경우, 정규교육과정에서조차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자신을 긍정하지 못한 채 가출, 자퇴, 성적부진, 우울증, 자살 시도 등의 고통을 겪게 됨.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화를 거치는 청소년 시기에 성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적소수자를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함. 교육과정에서 성적소수자의 존재가 인식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곧 우리의 교육이 차별을 생산하고 부추기는 것이란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큼.

○추진전략

5-2-1. 학교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실시 및 시정조치

5-2-2. 교사 대상 인권 교육 실시 및 교사 연수 시 성적소수자 바로 알기 강좌 포함

5-2-3. 정규교과 과정에 성정체성 및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 강화

5-2-4. 성정체성 관련 상담창구 마련

5-2-5. 청소년 성적소수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대안교육의 장 마련

○근거 및 외국사례

청소년 성적소수자가 학교 환경에서 여러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감안, 미국 뉴욕에서는 청소년 성적소수자를 위한 공립학교를 개교하기로 함.

미국소아과학회(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가 동성애와 청소년 현실에 관해 제시한 정책 내용(1993년)을 보면, 성정체성에 관한 혼란은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전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며 정신상담은 성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해를 도울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관련기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5.3. 정부와 지자체에서 동성애 차별 방지 캠페인 실시

○필요성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함. 이를 시정하는 데 있어서 성적소수자 바로 알기 교육, 성적소수자 차별 방지 캠페인은 굉장히 효과적임. 성적소수자 인권단체는 인력난과 재정난, 그리고 아웃팅의 위협으로 인하여 전 사회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전 사회적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추진전략

- 5-3-1. 동성애 바로 알기 소책자 제작, 배포
- 5-3-2. TV, 신문, 포스터, 버스 배너 광고 등의 형식으로 공익광고 실시
- 5-3-3. 인권 버스 등을 통한 국토 순례
- 5-3-4. 시민인권강좌 개설 후 성적소수자 바로 알기 강좌 포함
- 5-3-5. 성적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자긍심 갖기 프로그램 개발
- 5-3-6. 성적소수자 전문 상담기관 마련
- 5-3-7. 성적소수자 가족 및 이웃 전문 상담 기관 마련

○근거 및 외국사례

미국 앨라배마주의 버밍햄에서 경찰과 시민단체가 함께 버스 배너 광고 등을 통하여 동성애 혐오범죄 예방 및 신고촉구 캠페인을 실시함.

국립사회사업가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의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문제에 대한 정책 제시(1996년)에서는, 성적소수자를 차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정책만이 공공과 개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문화의 이해를 위한 권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국립사회사업가협회는 사회사업가가 성정체성 전환 치료법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받은 데이터가 없으며, 성정체성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설명해야할 책임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음.

○관련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및 지자체

5.4. 사회 각 영역에서의 인권 교육 실시

○필요성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상당 부분 '무지'에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즉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인권을 보장하려면 무엇보다 교육을 통한 앎이 절실히 필요함. 인권교육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인권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알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한 후에 뒤늦게 성적체성을 깨닫고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음. 이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함.

성적소수자 본인조차도 사회에 만연한 이성애 중심주의와 동성애 혐오를 받아들여 괴로운 경우가 많음. 성적소수자의 내재적 동성애 혐오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사회 전반적인 인권교육은 반드시 필요함.

○추진전략

54-1. 공직자 및 공무원 인권 교육

54-2. 법조인과 검경 인권 교육

54-3. 언론인 인권 교육

54-4. 직장에서의 인권 교육 실시 및 성희롱 예방 교육에 성적소수자 인권 교육 포함

54-5. 상담원 양성과정에 성적체성 교육 포함

54-6. 성적소수자 전문 상담원 양성과정 마련

○근거 및 사례

캐나다 토론토 경찰은 업무 수행 시 동성애자 대하기 훈련을 받아야 함.

○관련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자치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6. 노동권

6-1.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실시

○ 필요성

- 직장에서 성적소수자가 자신의 성적체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성적소수자의 노동권 침해문제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커밍아웃한 직장인의 경우 해고당하고도 마땅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직장에서 직접적으로 고용차별을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장의 문화가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호모포비아적인 분위기로 조성되어 있어서 노동자가 자신의 성적체성을 드러낼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차별임.

○ 추진전략

- 6-1-1. 성적소수자 고용평등을 위한 기구 설치
- 6-1-2. 모집, 채용, 승진차별, 해고 등 차별실태 조사
- 6-1-3. 직장 내 성적소수자 차별적 문화 실태조사
- 6-1-4.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6-1-5. 시정조치 및 정책에 반영

○ 근거 및 외국사례

- 1999년, 동성애자란 이유로 군대에서 쫓겨난 4명의 남녀 동성애자가 유럽인권법정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유럽인권법정은 “개인의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할 것을 규정한 유럽인권협약 제8조를 영국정부가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성적 지향성 이유로 구성원을 해고한다는 것은 사생활을 누릴 권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일”이라고 판결했다. “게이, 레즈비언의 커밍아웃할 권리는 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만큼이나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협약 제9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제10조(표현의 자유), 제11조(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적용해 선언하기도 했다.

○ 관련기관 :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6.2. 노동권 침해사건 처벌 및 피해자 구제

○ 필요성

-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만연해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에 대해선 더욱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함. 특히 성적소수자란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측의 차별에 대해선 금전적인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차후 유사한 행위를 막아야 함. 또한 직장 내 성적소수자 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사측의 책임을 물어야 함.

○ 추진전략

- 6-2-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 6-2-2. 고용평등기구에서 소송대리 및 중재
- 6-2-3.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 6-2-4. 직장 내 혐오범죄 가중처벌

○ 근거 및 외국사례

- 2004년 7월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사내에서 성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현직 여직원과의 소송에서 5400만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 소송은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2001년 채권 판매 담당 전 간부 엘리슨 시펠린 등 전현직 여직원 300여명을 대리해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 관련기관 :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등

6.3. 성적소수자 차별예방 노동정책 실시

○ 필요성

- 성적소수자가 직장에서 커밍아웃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려면, 무엇보다 차별예방 교육을 통해 편견을 시정해나가고, 성적소수자에게 차별적인 문화를 자성할 수 있게 해야 함. 직장 내 성적소수자 차별예방 지침을 만들고, 성적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직장의 평등지수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추진전략

6-3-1. 성적소수자 차별 예방교육 의무화

6-3-2. 성적소수자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6-3-3. 성적소수자 차별금지 사규제정

6-3-4. 회사 고용정책에서 성적소수자 차별예방 기준 마련

6-3-5. 직장 평등지수 평가 및 보조금 지급

○ 근거 및 외국사례

- 2003년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500대 기업과 포브스가 선정한 200대 기업 중 250개 기업을 상대로 미국의 동성애자 인권단체 '인권캠페인'이 실시한 '기업평등지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중 95%는 성적 성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명문 사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성애 동거 파트너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기업도 70%였다. 인권캠페인의 킴 밀스 교육부장은 "간단히 말하면 성공하는 기업일수록 평등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크다는 것"이라고 설문결과를 평가했다.

○ 관련기관 :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7. 트랜스젠더의 인권보장

7-1.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 제정

○필요성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역시 일차적으로는 사회적 무지와 편견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서, 특히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성별을 기입해야하는 문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에 차별은 즉시 발생. 이러한 이유로 트랜스젠더들은 공적 생활의 영역에서 추방당해 왔음.

○추진전략

법안의 내용으로는

- 7-1-1. 성전환수술의 요건 중 연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 7-1-2.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및 결과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하며,
- 7-1-3.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함.

○근거 및 외국사례

- 2001년 한국갤럽이 1,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1%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찬성하고, 53%가 성전환수술을 한 성전환자의 성별은 변화된 성으로 인식해야하며, 58.6%가 성전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질문에 답한 것으로 드러나 국내의 여론은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법적으로 인정해야한다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인권조약에 근거하여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영국, 프랑스의 법률이 유럽인권조약 제12조에 반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 프랑스의 경우는 유럽인권법원의 판결 이후 판례를 변경하여 성별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1972년 “성의 전환에 관한 1972년 4월 21일 법률”을, 독일은 1980년부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름의 변경 및 성의 확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네덜란드는 1985년부터 성별 정정을 법제화하였음. 미국에서의 성별 기재 변경 허용 여부는 각 주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2002년 현재 2개 주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에서 성전환자의 수술 후의 성에 따른 법적 지위를 승인해 주고 있고, 2004년 영국 상원은 재의 성(gender)에 맞는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Gender Recognition Bill을 통과시킨 바 있음.

○관련기관 : 법무부, 국회

7-2. 성전환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금지 법제화

○필요성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뿐 아니라 외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복합적인 원인의 차별을 받고 있으며, 사실상 고등교육, 전문교육 기회가 박탈됨으로써, 유흥업이나 성산업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주민등록번호로 표현된 성과 실제의 성이 다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의 대부분은 채용의 단계에서부터 차별을 받게 되며, 또한 직장에 근무하면서 성전환수술을 받는 경우는 해고에 대한 위협을 감수해야 함.

○추진전략

7-2-1. “성적소수자 차별금지법” 또는 “(사회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하여 내용을 규정하거나

7-2-2.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의 형태로 성별 변경 요건과 차별금지의 내용을 동시에 규율하거나, 또는

7-2-3. “남녀고용차별금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 뿐 아니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규제

○근거 및 외국사례

-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성적 지향”의 의미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

-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1991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성전환자임을 알릴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1996년 유럽법원은 성전환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음. 미국에서도 성적소수자에 대한 직장에서의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연방차원의 Employment Non-Discrimination Act(ENDA)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

○관련기관 :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7-3. 성전환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성전환수술 비용은 성기전환수술만 약 2000만원에 달하고, 부대 성형수술 및 수술 전후 장기간의 호르몬 치료와 우울증 등에 대한 정신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근거 성전환수술 및 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성전환수술은 외모에 대한 성형수술과는 달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존재의 근본적 결정으로 국가는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추진전략

7-3-1.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의 개정을 통해 성전환수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

○근거 및 외국사례

- 유럽인권법원은 성전환수술 및 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으며, 영국, 프랑스의 경우는 이 판결에 기초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은 성전환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성적 선호의 문제도 아니라고 하면서 성전환자인 교도소 내 수형자에 대해서도 의료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음.

- 200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의 감독위원회는 시 직원의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Sex-Change Benefits)을 규정한 조례안 통과시켜 호르몬 치료, 자궁 적출술, 유방절제술과 낙소 적출술 등에 대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음.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7-4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음에 비추어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현행 형법의 구성요건을 수정하여 객체를 “사람”으로, 범죄행위를 “유사성교행위” 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

○추진전략

7-4-1. 형법 제297조(강간) 및 형법상의 강간죄를 기본 구성요건으로 하는 다른 범죄 및 관련 특별법의 개정

○근거 및 외국사례

- 영국, 미국의 경우는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강간죄의 객체 및 성행위를 사람간의 질성교 및 구강 또는 항문성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비하였고, 독일의 경우도 형법개정법률로써 강간죄에 유사 성교행위를 포함하고, 범죄의 객체도 남성 및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개정.
- 국내의 경우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유사성교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관련기관 : 법무부

7-5. 전문 의료기관의 지정 운영

○필요성

트랜스젠더들은 그 특성상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난소암과 같은 여성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여성으로 살아가지만 남성 질환에 걸릴 수도 있음. 그러나 외모 상의 이유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름. 또한 일부 의료인의 경우 혐오증(transphobic)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문제는 성전환수술의 여부, 호적상 성별 정정의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트랜스젠더가 의료기관의 이용을 회피하거나, 의사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지 않아 신체적 조건이 정확히 설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는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곳이 필요.

○추진전략

7-5-1. 트랜스젠더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의 지정 운영

7-5-2. 의대 교육 과정 또는 의사 재교육 과정에 트랜스젠더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8. HIV/AIDS 감염인의 인권보장

8-0. 기본적인 정책 사항

8-0-1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 적극 실시

8-0-2 감염자 보호 및 복지 지원확대

8-1. HIV/AIDS 예방 뿐 아니라 인권보장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

○필요성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감염인에 대한 관리·통제의 관점에서 의무를 규정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HIV/AIDS 예방에 관한 국내·외적인 경험은 관리통제가 아닌 감염인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실효성있는 정책임이 입증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일부 조항들에 대하여는 법률 제정 이후 비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때로는 위헌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는 등 인권 보장 차원에서의 법률 정비가 필요함.

○추진전략

8-1-1. 입법방향은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및감염인보호에관한법률” 등의 방식으로 HIV/AIDS 예방과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동시에 규정하는 형태의 법을 제정하는 방식, 또는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폐지하고, HIV/AIDS 예방은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별도의 차별금지법에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

8-1-2.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규정 내용 중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① 강제검진, ② 취업제한, ③ 실명신고체계, ④ 전파매개행위의 처벌 등이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중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추방정책 역시 개선되어야 함.

○근거 및 외국사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병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1997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및 200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HIV/AIDS 인권권고안 등 국제 기준에서는 각 국의 법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법무부

8-2. 직장에서 수검자의 동의 없는 AIDS 검진 금지 및 감염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금지 법제화

○필요성

직장에서의 검진을 통해 에이즈 양성 반응을 받게 되는 경우 해고로 이어지거나, 감염인이라는 사실이 주위에 밝혀져 편견과 차별 속에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이 현실. 현행 근로기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해석상 이러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확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부당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인 감염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동의 없는 검진을 금지하고, 감염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추진전략

8-2-1. 차별금지법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및감염인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관련 내용 법제화

○근거 및 외국사례

- 1998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 제작한 “에이즈와 직장에 관한 성명” 및 “에이즈와 직장 에이즈에 대하여 알아둘 일”이라는 팜플렛에 의하면 직장에서의 집단검사(Screening)는 금지되며, HIV/AIDS 감염이 해고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은 장애인 보호의 범위를 ‘실제로는 장애를 갖고 있지 않지만, 사회에서 장애인처럼 취급받음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제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고, HIV/AIDS 감염인과 같은 의제 장애인의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한 기업들은 그 이유가 질병 또는 장애 때문이 아님을 따로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담.

○관련기관 : 노동부

8.3. 진료협조 의무규정 법제화

○필요성

현재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신고 및 보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진료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16조의 의무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HIV/AIDS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의료인에게도 심각하여 감염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현실.

○추진전략

7-3-1. 차별금지법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및감염인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관련 내용 법제화

○근거 및 사례

- 대한공중보건협회의 등이 공중보건기사 480명에 대해 진행한 “에이즈감염인 인권에 관한 공중보건의 인식조사”라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HIV/AIDS 감염인이 감기, 설사 등 가벼운 질환으로 진료받기를 원할 때, 진료를 하겠다는 응답은 691.1% 이고 나머지 약30%가 진료를 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 또한 HIV/AIDS 감염인 본인들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거절을 당하거나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처음부터 수술이나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8.4. 전문의료기관의 체제적 운영

○필요성

위와 같이 감염인들은 의료기관 및 사회 일반의 AIDS에 대한 편견으로 치질이나 맹장염과 같은 가벼운 질환도 제대로 치료받기 힘든 경우가 많음. 또한 감염인으로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거나 임종을 편안하게 준비할 의료시설은 아주 미비하며 이마저도 서울에 편중되어 있음.

○추진전략

8-4-1.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전문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

8-4-2.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국가차원에서 AIDS 전문 진료체계를 구축

○근거 및 사례

- 2003년 대선시 <버디>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가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질문에 대하여 당시 노무현 후보측에서 전문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국가차원의 전문의료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8-5. 동성애자 검진 활성화를 위한 드롭인센터(drop in center)의 확대 설치

○필요성

국내의 경우 남성 동성애자의 감염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위해서 동성애자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 문화공간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검사실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개인 정보의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정보 교환 등의 목적과 함께 검사를 받고 갈 수 있도록 하여 검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임. 현재 서울에 이와 같은 성격의 검진센터 설치가 추진 중이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요 대도시에는 설치되어야 하며, 그 성격은 동성애자 단체가 주체가 되어야하고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형태이어야 함.

○추진전략

8-5-1. 전국 주요 대도시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동성애자 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드롭인센터의 확대 설치

○근거 및 외국사례

- 일본의 경우 위와 같은 드롭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9. 시민사회 지원

9.1. 성적소수자 인권단체 지원

○ 필요성

-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누적된 결과, 성적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NGO도 전국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며, 고질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음. 호모포비아와 아웃팅 위협이 성적소수자 인권단체의 활동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음. 특히 정부에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성적소수자 인권을 위해선 관련 NGO등을 적극 육성해야 함.

○ 추진전략

- 9.1-1. 정부 각 부처에서 성적소수자 인권계획 수립
- 9.1-2. 성적소수자 인권과 복지 관련 예산책정
- 9.1-3. 각 인권 및 복지재단에 성적소수자 분야 편성 권고
- 9.1-4. 실명과 주민번호 요구 관행 재고
- 9.1-5. 학력과 경력, 단체규모 기준 하향

○ 근거 및 사례

-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에 따라 인권보호 및 복지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책정하고 분배해 지원함. 성매매특별법 실시와 더불어 여성부를 비롯해 서울시와 지자체에서도 탈성매매 지원을 위한 예산을 크게 책정해 쉼터 및 여성단체에 지원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음.

○ 관련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여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서울시 및 지자체

9.2. 성적소수자 상담소 및 쉼터 개소

○ 필요성

- 가정, 학교,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는 성정체성과 관련된 물음들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고, 성적소수자들을 지지해주고, 차별과 폭

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소 필요. 정부는 아웃팅 피해자 및 가출 청소년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음.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추진전략

9-2-1.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를 위한 상담소 개소 지원.

9-2-2. 성적소수자 상담원 양성교육과정 신설

9-2-3. 전국 단위 상담소와 핫라인 개설 지원

9-2-4. 청소년 성적소수자 쉼터 개소 지원

9-2-5. 성적소수자 전문상담원 교육 지원

○ 근거 및 외국사례

- 여성의전화, 노인의전화 등과 마찬가지로 성적소수자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소 및 핫라인이 개설되어야 함. 성교육 상담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원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인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원 양성교육과정 있어야 함.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가출청소년 쉼터,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쉼터처럼 성적소수자를 위한 쉼터도 개소되어야 함.

○ 관련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여성부, 서울시 및 지자체

부록 2 - 참고 자료

1. 국내 기관 및 사이트

1-1. 성적소수자 인권단체

○동성애자인권연대

시민사회단체 연대, 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연대 등 연대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상담업무, 정책마련업무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URL <http://outpridekorea.com>

E-mail lgbtpride@empal.com

Tel (02) 778-9982

Fax (02) 775-9983

○한국동성애자연합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단체와 개인이 모여 창립하였으며 동성애 바로알기 강좌 사업 등을 펼침.

URL <http://lgbt.or.kr>

E-mail admin@lgbt.or.kr

Tel (02) 745-7942

Fax (02) 744-7916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성적소수자인권단체로서 에이즈예방팀, 미디어감시단, 문화아카데미팀, 출판팀 등을 꾸려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URL <http://www.kscrc.org>

E-mail kscrc@kscrc.org

Tel (0505) 896-8080

Fax (0505) 893-8080

1-2. 여성 성적소수자 인권단체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10여 년간 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을 해오고 있으며 상담사업, 교육사업, 연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

URL <http://kirikiri.org>

E-mail kiri9411@chol.com

Tel (02) 703-3542

Fax (02) 703-35430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부산지역의 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단체로 상담사업, 교육사업 등을 진행하며 매해 부산무지개영화제를 개최함.

URL <http://www.womcenter.org>

E-mail womcenter@hanmail.net

Tel (051) 752-1966

Fax (051) 752-1977

○레즈비언인권연구소

레즈비언 권리를 위한 각종 연구 사업을 진행시키며 토론회, 열린기획 등을 통하여 다양한 레즈비언 권리에 관한 담론을 형성함.

URL <http://lesbian.or.kr>

E-mail lifl2003@empal.com

Tel (02) 714-4017

○반성폭력네트워크

여성이반 커뮤니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예방사업, 상담사업,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여성이반 연대체이다.

URL <http://kirikiri.org/network>

E-mail queer_adviser@yahoo.co.kr

Tel (02) 703-3542

Fax (02) 703-3543

1-3. 남성 성적소수자 인권단체

○친구사이

남성 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로서 상담사업, 교육사업, 연대사업 등의 활동을 펼침.
URL <http://www.chingusai.net>
E-mail chingusai@chingusai.net
Tel (02) 745-7942
Fax (02) 744-7916

1.4. 대학 성적소수자 인권단체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조직된 한국 최초의 대학 레즈비언 인권운동 모임으로, 매해 레즈비언인권문화제를 개최함.
E-mail flyonggurl2001@yahoo.co.kr
Tel (02) 3277-4712

○연세대학교동성애자모임 컴투게더
한국 최초의 대학 동성애자 인권운동모임으로 동성애 관련 서적 '커밍아웃'을 출판하기도 했음.
URL <http://queeryonsei.com>

○중앙대학교이반인권운동모임 레인보우피쉬
중앙대학교내 이반의 친목과 인권을 위한 활동을 펼치며 퀴어 영화제 상영회를 정기적으로 상영함.
URL <http://www.rfpeople.net>

○서울대학교이반모임 큐이즈
서울대학교 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URL <http://www.snumaum.org>

○고려대학교동성애자인권모임 사람과사람
'퀴어가이드'라는 비정기적인 간행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활동 등을 하고 있음.
URL <http://www.queerkorea.org>

1.5. HIV/AIDS 감염인

1-5-1. 동성애자를 위한 에이즈 예방 운동 단체

○ 아이샵

URL <http://ishap.org>

1-5-2. HIV/AIDS 예방활동 단체

○대한에이즈예방협회

URL <http://www.aids.or.kr>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에이즈 상담실

URL <http://www.aids114.org>

○구세군 HIV/AIDS 예방 사업단

URL <http://www.aidscares.or.kr>

1-5-3. HIV/AIDS 관련 정보제공 단체

○한국 UNAIDS 정보센터

URL <http://unaids.or.kr>

○에이즈 뉴스 매거진

URL <http://aidsnews.net>

○대한적십자사 사회봉사보건국

URL <http://www.redcross.or.kr>

1-5-4. HIV 감염인 모임

○K-PLUS(케이플러스)

URL <http://k-plus.org>

○LOVE4ONE(러브포원)
URL <http://love4one.com>

○KANOS(카노스)
URL <http://kanos.org>

1-6. 트랜스젠더

○김비넷
트랜스젠더 김비의 개인 사이트로, 트랜스젠더에 관한 논문 요약 및 트랜스젠더로서의 자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음.
URL <http://www.kimbee.net>

○화려하지않은고백
트랜스젠더 모임.
URL <http://www.okama.co.kr>

1-7. 웹진

○버디친구닷컴
한국 최초의 동성애 전문잡지였으며 현재 웹진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게이 및 레즈비언 국내외 뉴스 등을 제공.
URL <http://www.buddy79.com>

○웹진 또다른 세상
레즈비언 웹진으로 기획기사를 연재, 인터뷰 기사 제공 등의 일을 함.
URL <http://kirikiri.org/ttose>

1-8. 커뮤니티

○TGNet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레즈비언 커뮤니티.
URL <http://tgnet.co.kr>

○해피2반/해피이반

한국 최초의 동성애자 법인 회사인 <판생각>에서 운영 중인 동성애자 사이트.

URL <http://www.happy2van.com>

URL <http://www.happyeban.com>

○니아까 레볼루션

레즈비언을 위한 문화, 오락사이트. 웹진 니아까를 운영함.

URL <http://www.niagga.com>

○엑스존

한국 최초의 인터넷 동성애자 커뮤니티이나 '음란'을 사유로 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음. 엑스존 소송의 경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음.

URL <http://exzone.com>

○커밍아웃

커밍아웃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커밍아웃 사례를 모집함.

URL <http://comingout.narun.net>

○LGBT건강세상

성적소수자의 건강 문제를 이야기함.

URL <http://cafe.daum.net/pridecare>

1-9 . 정당 관련기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URL <http://www.lgbt.kdip.org>

○붉은이반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성적소수자 모임

URL <http://cafe.daum.net/ourpt>

2. 국외 기관 및 사이트

2-1. 성적소수자 인권단체

○ IGLHRC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IGLHRC은 국제적인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이며,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여 교육사업 등을 벌이고 있음.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제3세계와의 연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Felipa de Souza Awards라는 이름으로 인권 차별에 맞서 노력한 개인 혹은 단체를 위한 상을 수여함.

URL <http://www.iglhrc.org>

○ HRC (Human Rights Campaign)

미국의 대표적인 동성애 운동조직 중의 하나.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애 이슈와 관련된 상하원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들에게 보낼 편지문을 작성하여 이용자들의 간단한 클릭만으로도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URL <http://www.hrcusa.org>

○ NGLTF (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

NGLTF는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 젠더 등 성 소수자의 시민권 보장과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여러 정책대안을 내놓음.

URL <http://www.thetaskforce.org>

○ GLAA (Gay and Lesbian Activists Alliance)

1971년 워싱턴에 있는 게이와 레즈비언의 동등한 권리향상을 위해 설립된 자원봉사자 조직이자 비정당, 비영리 정치조직. 게이와 레즈비언의 인권조직으로서는 가장 오래되었음.

URL <http://www.glaa.org>

○ GLAAD (Gay & Lesbian Alliance Against Defamation)

게이와 레즈비언의 연합 단체로 동성애자 권리 향상을 위해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음. 특히 TV 등의 미디어에서 호모포비아에 기반한 농담, 이벤트 등을 통한 명예훼손에 적극적으로 대항함.

URL <http://www.glaad.org>

○IGIRTF (The Lesbian and Gay Immigration Right Task Force)

게이와 레즈비언,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들의 삶에 관계있는 여러 가지 차별 조항이 있는 이주법을 철폐하려는 비영리 조직으로, 1993년에 미국의 7개 도시에서 차별적 이주법을 철폐시켰음.

URL [http:// www.igirtf.org](http://www.igirtf.org)

○ALSO (The ALSO Foundation)

호주의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단체임.

URL <http://www.also.org.au>

2.2. 여성 성적소수자 인권단체

○ASTRAEA

1977년 레즈비언의 독자적인 움직임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재단으로, 레즈비언 인권운동과 커뮤니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 레즈비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고양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URL <http://www.astraea.org>

○icWOW

웹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아시아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리고 퀴어를 위한 정보 소통 연대체로, 2003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아시아 레즈비언 인권활동가 포럼을 주최하기도 함.

URL <http://wow.jinbo.net>

○NCLR (National Center for Lesbian Rights)

NCLR은 레즈비언과 그들의 가족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언과 상담, 공적 교육 등을 지원함.

URL <http://www.nclrights.org>

2.3. 성적소수자 상담기관

○ Gay & Lesbian Switchboard

호주의 동성애 전문 상담 기관입니다.

URL <http://home.vicnet.net.au/~glswitch/>

○Database of Gay-friendly Mental Health Professionals

미국 내 친동성애적인 각종 치료사들을 소개함. 지역별로 링크 되어 있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 주변의 치료사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게끔 하고 있음.

URL <http://www.wrnetwork.net/gay-friendly.htm>

○긍정적인 성을 위한 연합 (coalition for positive sexuality)

이 단체는 성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일과 성 관련 상담업무를 하며, 동성애 관련 상담을 진행함.

URL <http://www.positive.org>

2.4. 청소년 성적소수자 관련 기관

○HMI (Hetrick-Martin Institute)

하비 밀크 고등학교. 하비 밀크 고등학교는 청소년 성적소수자의 학교로, 12세-21세의 성 소수자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성 소수자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에 맞서고 있음.

URL <http://www.hmi.org/>

○NYAC (The National Youth Advocacy Coalition)

NYAC는 성 소수자 청소년들이 겪는 동성애 혐오범죄에 대항하며,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해 투쟁하는 단체임. 매년 봄 Washington, DC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에이즈 예방 및 방지 캠페인을 벌이기도 함.

URL <http://www.nyacyouth.org/nyac/about.html>

○GLSEN

동성애, 이성애 교육 연대. 미국 각지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URL <http://www.glsen.org>

○Minnesota Gay/Lesbian/Bisexual/Transgender Educational Fund

성적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장학제도.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주(州)별 장학제도를 알아볼 수 있음. 장학제도뿐만 아니라 성적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인턴쉽 제도도 소개하며, 성 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장학금 제도도 소개함.

URL <http://www.scc.net/~t-bonham/EDLINKS.HTM>

○Youth

영국의 성적소수자 청소년 지원센터. 성적소수자 청소년들이 그들을 표현하고 긍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URL <http://www.youth.org>

2-5. 트랜스젠더 관련 기관

○NTAC (National Transgender Advocacy Coalition)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 고양과 트랜스젠더의 시민권 획득을 위해 여러 활동을 펼침.

URL <http://www.ntac.org>

○ TLPI (The Transgender Law and Policy Institute)

트랜스젠더의 법적, 정치적 평등을 위하여 법과 정치 분야와 관련하여 여러 활동을 펼침.

URL <http://transgenderlaw.org>

○IFGE(International Foundation for Gender Education)

성별정체성의 선택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음. 'Transgender Tapestry'라는 잡지를 발간하기도 함.

URL <http://www.ifge.org>

2-6. 성적소수자 부모 연대

○PFLAG (Parents, Families & Friends of Lesbians & Gays)

레즈비언 혹은 게이 부모,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연대인 PFLAG는 20만명이 넘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 Washington, DC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 등에도 따로 지부를 가지고 있음.

URL <http://www.pflag.org>

○Family Pride Coalition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부모들의 연합

URL <http://www.familypride.org>

부록 3 - 관련 국내외 문헌

1. 성적 지향과 청소년에 관한 보고서 : 학교 교장, 교사, 교직원들을 위한 입문서

보고서 공동 지지 승인 단체들: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미국소아과학회)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미국상담협회)
-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Administrators (미국교직원협회)
-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미국교사노조)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미국심리학회)
- American School Health Association (미국학교보건학회)
- Interfaith Alliance Foundation (초교파재단)
-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전국학교심리학자협회)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전국사회사업협회)
-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전국교육학회)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에 관한 논의는 학교를 비롯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교장, 교육자, 교직원들은 이러한 논의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바이섹슈얼 학생들을 포함한 학교의 모든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에 관련되어 교육, 의학, 정신의학, 종교단체의 각 분야의 단체들에 의해 충분히 고려되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 안에서 건강한 발달과 배움을 위한 기회를 받을 가치가 있음을 공감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보고서를 출간하는 이유는 최근 “회복요법(reparative therapy)”와 “변환하는 목회활동(transformational ministry)”이란 매우 공격적인 조장행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회복요법”은 동성애에 느끼는 성적 욕구를 소거하는 심리요법을 말한다. “변환하는 목회활동”란 동성애에 대한 욕구를 소거하기 위해 종교적인 신앙심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998년 중반 이후, 많은 단체들이 텔레비전, 신문 그리고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 출판물 등에서 “회복요법”과 “변환하는 목회”를 권유하는 것을 중요한 방책으로 삼고 있다. 이 보고서는 “회복요법”과 “변환하는 목회활동”으로 인한 문제점과 청소년기의 성정체성 발달에 대해 권위 있는 의학자, 상담가, 사회학자, 심리학자,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작성되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학교 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동성애 논의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고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성적 지향의 발달

성적 지향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문화, 민족성, 성별 (gender), 그리고 개인적인 특성과 같은 다른 많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성적 지향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지속적인 감정적, 낭만적, 성적 혹은 호의적인 이끌림을 말한다. 성적 지향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오로지 동성애나 이성애를 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두 성을 대한 이끌림의 정도가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성적 지향은 한 사람의 평생에 걸쳐서 발달한다. 즉,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자신이 이성애,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인 것을 깨닫는 시기는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성적 행동이 성적 지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어떠한 성적 경험 없이도 자신들이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청소년들은 동성의 사람과 성적인 경험을 가졌더라도, 그들 자신이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청소년기가 자신을 검증, 실험하는 기간이기에 이러한 현상은 특히 청소년기에 두드러지며, 그것은 청소년의 발달기의 자연스러운 일이다.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청소년들은 이성애 청소년들이 거치는 것과는 매우 다르면서도 비슷한 발달 단계를 거친다. 모든 십대 청소년들은 사회적 기술 개발, 직업 선택에 대한 고민, 또래 무리와 어울리는 것과 같은 어떤 발달상의 의욕과 직면한다.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가족, 학교, 사회가 보내는 편견, 차별, 그리고 난폭한 말과 행동도 극복하여야 한다. 어떤 말과 행동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청소년들의 교육과 건강,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학생들은 이성애 학생들보다 학교에서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피해를 입고, 다른 학생들에게 위협을 받고 두려움으로 학교를 떠난다는 보고가 더욱 많다.¹⁵⁶⁾ “회복 요법”이나 “변환하는 목회활동”의 증가는 괴롭힘과 피해와 두려움을 더욱 증진시킬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청소년들의 경험은 또래나 가족의 애정 결핍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 고립으로 나타난다.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청소년들은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인 사람들의 총체적이고 문화적인 성향을 보여줄 궁

156) Garofalo, R, Wolf, R.C., Kessel, S., Palfrey, J., & Du Rant, R.H. (1998). The association between health risk behaviors and sexual orientation among a school-based sample of adolescents. *Pediatrics*, 101(5), 895-902.

정적인 모델을 볼 기회가 거의 없다. 이것은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청소년들이 이성애 학생들과 비교할 때 감정적 빈곤¹⁵⁷⁾, 자살기도¹⁵⁸⁾, 위험한 성적 행동¹⁵⁹⁾들이 빈번히 나타나며 고립과 애정 결핍의 원인이 된다.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청소년들의 진정한 고통은 끊임없는 시달림과 상처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가능한한 개방적이고 수용하는 주변 환경이 중요하며, 그런 환경 속에서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생각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수용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성 정체성 발달의 원리를 이해하고, 모든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커밍아웃"은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적인 끌림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고 인식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모든 청소년이 다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성적 지향을 또래의 다른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에게는 드러내지만, 또래 이성애자나 가족, 심지어는 부모님에게도 밝히지 않는다.¹⁶⁰⁾

많은 사람들이 왜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인 청소년들, 혹은 어른들이 "coming out", 다시 말하면 그들의 성적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힐 필요를 느끼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것은 게이, 레즈비언, 혹은 바이섹슈얼 청소년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길 원하는 정상적인 표현일 뿐이다. 청소년들에게 주말을 보내는 방법이나 최근 관심사에 대해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는 것은 건전한 일이다.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과정은 종종 어렵다. 왜냐하면 친구나 가족에게 거부당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157) Resnick, M.D., Bearman, P.S., Blum, R.W., Bauman, K.E., Harris, K.S., Jones, J., Tabor, J., Beuhring, T., Sieving, R.E., Shew, M., Ireland, M., Bearing, L.H., & Udry, J.R., (1997). Protecting adolescents from harm: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n Adolescent Health.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8(10), 823-832.

158) Garofalo, et al. 1998; Remafedi, G., Frenth, S., Story, M., Resnick, M.D., & Blum, R.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e risk and sexual orientation: Results of a population-based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8 (1), 57-60.

159) Garofalo et al. 1998; Resnick et al. 1997.

160) Ryan, C., & Futterman, D. (1997). Lesbian and gay youth: Care and counseling. *Adolescent Medicine: State of the Art Reviews*, 8(2). [Also published in 1998 by Columbia University Press.]

<요점정리>

- ◎ 성적 지향은 한 사람의 정체성 중 하나이다.
- ◎ 성적 지향은 한 사람의 일생에 걸쳐 발달된다.
- ◎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청소년들의 경험은 또래나 가족의 애정 결핍, 비난에 대한 두려움, 고립으로 나타난다.

회복 요법(Reparative Therapy)

"회복 요법"이란 동성애적 욕구를 소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심리치료로, 동성애가 사람의 성적 지향 중의 하나가 아니라, 일종의 정신적 혼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다. 흔히 "전환"요법이라고도 알려진 "회복 요법"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의학·정신의학 전문가들이 부인했던 동성애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477,000여명의 의학·정신의학 전문가를 대표하는 미국소아과학회(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미국상담협회(the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미국정신의학협회(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미국심리학협회(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국립 학교심리학자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그리고 국립사회사업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는 동성애는 정신적 혼란이 아니므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신적 혼란의 통계와 특징 안내서(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는 미국정신의학협회가 출판하였으며, 그 분야의 대표적 서적으로 손꼽히는데, 동성애를 정신적 혼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른 모든 의학 전문 잡지들도 1973년 정신적 혼란에서 동성애를 제외시킨 미국정신의학협회에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동성애가 정신적 혼란이라거나, 청소년들 사이에 같은 성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은 비정상이거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의학, 정신의학 전문 기관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점에서 의학, 정신의학 전문가들의 이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복 요법"이라는 생각은 미디어의 적극적인 조장과 보수적인 단체들에 의해 최근 까지 논의되고 있다. "회복 요법"의 적극적인 조장 때문에, 최근 의학·정신의학 전문기관들은 "회복 요법"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미국소아과학회(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의 동성애와 청소년 현실에 관한 정책 제시: 성정체성에 관한 혼란은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전혀 비정상적인 일

이 아니다. 정신상담은 성적체성이 불확실한 청소년들에게, 혹은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불확실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상담이나 정신치료를 통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성적체성을 바꾸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법은 불가능하지만 한 정체성 변환을 시도하면서 죄의식과 고민으로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금해야한다.¹⁶¹⁾

미국정신상담협회(The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가 채택한 결의문 : 성적체성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건전하다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의 청소년과 어른을 표현하는 것에 반대한다. 성적체성과 정신 건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보급하는데 힘쓸 것이며, 동성애자의 성적체성에 대한 무지하고 근거 없는 믿음에 바탕을 둔 편견을 없애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¹⁶²⁾ 더 나아가, 1999년 세계컨퍼런스, ACA에서 채택한 동성애자를 위한 “치료”로서의 “회복요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¹⁶³⁾

미국정신의학회(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신의학 치료와 성적체성에 관한 입장 발표 : “회복요법”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은 중대한데,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일관된 치료사의 경우, 환자가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자기 혐오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우울증, 불안과 자기 파괴적 행태를 동반한다. “회복요법”을 경험한 많은 환자들은 동성애자들은 만족하거나 용인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되고, 불행하다고 말하며,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언급을 한다. 한 개인이 게이나 레즈비언으로 대인관계에서 행복하거나 만족하는 가능성은 없고,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여론의 결과로만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다.¹⁶⁴⁾

미국심리학협회(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가 인증하는 성적체성에 대응하는 적절한 치료법에 대한 결의문 : 미국심리학협회는 성적체성 때문에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의 청소년과 어른을 정신적으로 불건전하다고 표현하는 것에 반대한다. 성적체성과 정신 건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보급하는데 힘쓸 것이며, 성적체성에 대한 무지하고 근거 없는 믿음에 바탕을 둔 편견을 없애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¹⁶⁵⁾

161) Policy Statement: Homosexuality and Adolescenc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993.

162) Resolution adopted by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Governing Council, March 1998.

163) Action by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Governing Council, April 1999.

164) Position Statement: Psychiatric Treatment and Sexual Orientatio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8.

165) Resolution on Appropriate Therapeutic Responses to Sexual Orienta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7.

국립사회사업가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의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문제에 대한 정책 제시 : 공공과 개인적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차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들의 의학·정신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문화의 이해를 위한 권장이 필요하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만연해 있고, 이것을 성적체성을 바꾸기를 유도하는 몇몇 사람들은 중요한 동기로 삼는다.¹⁶⁶⁾ 성적체성을 바꾸기 위한 치료는 동성애가 병적이고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회복 혹은 전환 치료법들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실제로 그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¹⁶⁷⁾ 국립사회사업가협회는 사회사업가는 회복 치료법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받은 데이터가 없으며, 성적체성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설명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 국립사회사업가협회는 성적체성을 바꾸도록 계획된 치료법이나 그러한 치료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의사나 프로그램을 철저히 배격할 것이다.¹⁶⁸⁾

이러한 공식성명들에 따르면, 의학과 정신의학 전문 기관들은 “회복 치료법”을 통한 젊은이들의 성적체성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지 않으며, 그러한 치료법에 잠재한 해로운 점을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이 보고서의 끝부분의 참고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많은 전문 기관들은 그들의 커뮤니티 내에서 학교의 논의와 관련 있는 학부모, 교사, 교육자, 의학·정신의학 전문가, 학교 행정가들을 돕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다.

<요점정리>

© “전환”요법이라고도 알려진 “회복 요법”은 의학·정신의학 전문가들이 부인했던 동성애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166) Haldeman, D.C. (1994). The practice and ethics of sexual orientation conversion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2), 221-227.

167) Davison, G.C. (1991). Constructionism and morality in therapy for homosexuality. In J.C. Gonsiorek & J.D. Weinrich, *Homosexuality: Research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Gonsiorek, J.C., & Weinrich, J.D. (1991). *Homosexuality: Research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Haldeman, D.C. (1994).

168) "Policy Statement: Lesbian, Gay, and Bisexual Issues. Approved by Delegate Assembly, August 1996. *Social Work Speaks*, 4th ed., NASW, 1997

© 477,000여명의 의학·정신의학 전문가를 대표하는 전문기관은 동성애는 정신적 혼란이 아니므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변환하는 목회활동(Transformational Ministry)

"변환하는 목회활동"은 동성애적 욕구를 제거하기 위한 종교적 용도로 기술되어 사용된 용어이다. “회복요법”이 세속적인 접근에 의존하였던 반면, "변환하는 목회활동"은 "동성애로부터의 자유로움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를 통해 가능하다"는 접근을 하고 있다.¹⁶⁹⁾ 이러한 움직임 내에서도 다양성은 있었지만, 대개의 "변환하는 목회활동"들은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취지로 이성애를 지향하고, 동성애적 표현은 하느님에 반대되는 것으로 본다."는 믿음을 고집한다.¹⁷⁰⁾ "변환하는 목회활동"은 197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으며, 기독교 출판업자나 보수적인 정치세력의 노력을 통해 최근 미디어에서 더욱 가시화 되었다.

"변환하는 목회활동"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시각이 신앙을 지닌 모든 사람들의 시각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깊은 신앙심을 지닌 많은 사람들과 종교적 집회, 종파들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의 차별적인 행동으로부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지지하고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기관들은 고용에 있어 성정체성에 기반을 둔 차별적 고용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비차별 행동을 표명한다.

American Ethical Union,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merican Jewish Committee, American Jewish Congress, Church of the Brethren, Church Women United, Dignity/USA, Episcopal Church,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Hadassah, WZOA, The Interfaith Alliance, Jewish Women International,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USA, National Council of Jewish Women, North Georgia United Methodists, Presbyterian Church (USA), Religious Action Center of Reform Judaism, Unitarian Universalist Association, United Church of Christ, United Methodist Church, Women of Reform Judaism,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비록 "변환하는 목회활동"이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의 수용과 종교적 신앙은 모순된다는 메시지를 조장하더라도, 이 메시지는 사랑과 수용을 찬양하는 대부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솔직한 성직자들에 의해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169) From the website of Exodus International, a transformational ministry

170) Exodus International

<요점정리>

- ◎ "변환하는 목회활동"을 신봉하는 시각은 모든 신앙인들의 시각을 대표하지 못한다.
- ◎ 깊은 신앙심을 지닌 많은 사람들과 종교적 집회, 종파들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의 차별적인 행동으로부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지지하고 인정하고 있다.

적절한 법적 방침 Relevant Legal Principles

학교에서 "회복 요법"과 "변환하는 목회활동"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로, 공립학교 행정관들은 학교의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학생들의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방침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숙지는 "치료법"이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과 학교 당국의 잠재적인 법적 책임 면에서 모두 중요하다. 대부분의 연방정부가 주정부 법률이나 지방 법률로 차별이나 유사한 피해로부터 게이와 레즈비언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서는, "개인권리침해" 법률과 같이, 현저한 물리적 혹은 감정적 침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U.S. 헌법(U.S. Constitution)으로부터 중요한 두 원칙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들에 적용될 수 있다. 그 두 원칙이란 (1)교회와 국가의 분리(정교분리)와 (2)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레즈비언, 게이, 혹은 바이섹슈얼임을 자각하는 학생들은 다른 상황에서도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요구하는 헌법 제1조(the Establishment Clause of the First Amendment)에 의해 보호받는다. 예를 들어, 공립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강제적으로 요구하거나 특정한 종교적 믿음을 추천하는 종교적 권장을 할 수 없다. 또한, 공립학교의 맥락에서 상담지도자는 동성애는 죄악이라든가, 학생의 입장에서 게이, 레즈비언, 혹은 바이섹슈얼의 종교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강요하는 종교적인 믿음을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학생에게 납득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없다. "변환하는 목회활동"은 종교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연관된 맥락에서 공립학교의 행정관이나 고용자들에 의한 추천 혹은 권장은 헌법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바이섹슈얼 학생들은 또한 헌법 14조의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대법원(The Supreme Court)은 공무원이 게이나 레즈비언을 향한 공공의 증오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나 차별적인 의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다.¹⁷¹⁾ 공립학교의 입장에서 이

것은 다른 종류의 괴롭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듯이, 안티게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6년, 나보즈니 사건(Nabozny case)에서, 학교에서 당한 괴롭힘에 대해 학생이 적절하게 대응하였으나, 학교가 계속되는 안티게이들의 괴롭힘을 막지 못하였음을 배심원이 발견하여 위스콘신의 한 학생이 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172)

게이와 게이아닌 학생들이 서로 평등하기 위한 법적 명령은 괴롭힘의 사건으로 한정지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립학교 행정관원의 모든 결정에 의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학생들의 사건 처리가 달라진다.

학교의 행정관들은 성적 지향을 바탕으로 두고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지 않게 다루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성적 지향을 인정하거나 실질적인 법을 따라야한다. 예를 들어, 나라 안의 학생들이 학내에서 "Gay-Straight Alliances"를 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 행정관들은 다른 학생 그룹과 동등한 입장에서 "Gay-Straight Alliances"를 대우하도록 평등에 관한 법적 조치를 반영(연방법률 보호에 의해)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편견에 의한 것이나 과학적으로 불합리한 것, 연구와 근거가 부족한 정보들이 학생들에게 유포되지 않도록 공립학교의 결정을 교육적 활동의 일부로서 남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이야기한 이러한 논의들은 학교 행정관들이 '치료'로서 게이, 레즈비언 혹은 바이섹슈얼이 불건전하다고 암시하거나, 개인의 성적 지향을 바꾸려고 유도하는 식의 표현이나 자료들이 지닌 편견과 정당성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염려를 가져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학교 행정관들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적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자문들은 교육자들이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을 돕기 위해 때때로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변환하는 목회활동" 은 종교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연관된 맥락에서 공립학교의 행정관이나 고용자들에 의한 추천 혹은 권장은 헌법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학교 구역은 다른 종류의 괴롭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듯이, 안티게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학교 행정관들은 "치료"로서 혹은 게이, 레즈비언 혹은 바이섹슈얼이 불건전하다고

171) Romer v. Evans, 116 S. Ct. 1620 (1996)

172) Nabozny v. Podlesny, 92 F. 3d 446 (7th Cir. 1996)

암시하며, 한 개인의 성적체성을 바꾸기를 유도하는 표현이나 자료의 편견과 정당성에 대해 깊이 염려하여야 한다.

2. 2003년 유럽의회 결의안 중 동성애자의 인권 조항

<한글번역본>

2000년 3월 16일,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의 1998-1999년도 인권 보고서와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음은 유럽 의회 결의안이 성적 지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의 전문이다. 아래 전제될 파트의 상위 제목은 [생활 양식 및 관계의 유형]임.

56. 유럽 의회는 회원국에게 한부모 가족, 비혼 커플, 그리고 동성 커플의 권리를, 전통적 의미의 이성 커플 및 가족에게 보장했던 권리를 비롯 특히, 세금법, 재정과 관련된 권리, 및 여러 사회적 권리들에 대해서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57. 유럽 의회는 다수의 회원국에서 혼인 외 동거 관계가 점차 그 성별과 관계없이 법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반갑게 생각한다. 우리는 회원국에게 요구한다. 아직 그러한 법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동성 간의 파트너십을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법안을 개정하라. 그리고 동성 커플에게도 기존에 이성 커플에게 부과했던 것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라. 그리고 혼인 외 동거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이들의 법적 권리를 그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의 성별과 무관하게 보장하라. 유럽 의회는 반드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 혼인 외 동거 관계에 대한 법적 인지와 동성 간의 혼인에 대한 합법적 보장의 상호 조화를 통해 이러한 권리 보장 방안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여긴다.

58. 유럽 의회는 아직도 무수한 유럽의 시민들이 그들의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에서 성적 지향을 매개로 한 차별과 불이익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유럽 의회는 회원국들과 유럽 연합의 각 기구들에게 그와 같은 차별적 환경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기울이라고 요구한다.

59. 유럽 의회는 몇몇 회원국이 여러 인권 단체들과 의회가 그러한 차별 법령을 비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군대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 여러 법안에서 뿐만 아니라 형법 조항에도 역시 동성애 관계를 차별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차별 법령을 삭제하도록 우리의 회원국에게 거듭 요구한다.

60. 유럽 의회는 동성애자 관련 법령을 수정하고자 하는 영국의 노력을 반갑게 여기는 반면 동성애자들을 박해하는 형법 209조를 여전히 적용시키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태도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오스트리아에 요구한다. 동성애자 차별 법령인 형법 209조를 폐지하라. 그리고 209조에 의해 투옥된 이들을 사면하고 석방하라.

76.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 가입 희망국에게 인권과 관련한 유럽 의회의 모든 사항들을 승인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의 국가에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77. 유럽 연합은, 자국의 법률 제정과 그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지 않는 국가들의 유럽 연합 가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영어원본>

European Parliament calls again for respect for human rights of lesbians and gay men

On 16 March, 2000, the European Parliament adopted its report and resolution on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European Union for 1998-99 (EP document A5-0050/2000).. Full text of the EP resolution - parts dealing with sexual orientation: The European Parliament,

[under the heading of:] LIFE STYLES AND TYPES OF RELATIONSHIP

56. Calls on Member States to guarantee one-parent families, unmarried couples and same-sex couples rights equal to those enjoyed by traditional couples and families, particularly as regards tax law, pecuniary rights and social rights;

57. Notes with satisfaction that, in a very large number of Member States, there is growing legal recognition for extramarital cohabitation, irrespective of gender; calls on the Member States - if they have not already done so - to amend their legislation recognising registered partnerships of persons of the same sex and

assigning them the same rights and obligations as exist for registered partnerships between men and women; calls on those States which have not yet granted legal recognition to amend their legislation to grant legal recognition of extramarital cohabitation, irrespective of gender; considers, therefore, that rapid progress should be made with mutual recognition of the different legally recognised non-marital modes of cohabitation and legal marriages between persons of the same sex in the EU;

58. Notes, however, that European citizens continue to suffer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s in their personal and professional life as a result of their sexual orientation; calls therefore on the Member States and the EU institutions concerned to remedy such situations urgently;

59. Deplores the fact that some Member States still have a discriminatory age-of-consent provision for homosexual relations in their criminal codes as well as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in particular within the army, although various competent human rights bodies and Parliament itself have condemned these provisions; repeats its demand for such clauses to be repealed;

60. Notes with satisfaction that the United Kingdom is undertaking to change the relevant legislation, but notes with deep concern that Austria continues to apply Article 209 of its Penal Code in persecuting homosexuals; urges Austria once more to repeal this discriminatory provision, and immediately to give amnesty to and to release from prison all persons imprisoned because of this provision;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applicant countries

76. Calls on candidate countries to ratify all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s on human rights and calls on Bulgaria, Cyprus, Estonia, Hungary, Lithuania and Romania to remove from their penal codes all laws which entail discrimination against lesbians and homosexuals;

77. States that the European Union will reject the accession of any applicant

country which, either in its legislation or in its practice, fails to guarantee respect for human rights;

3.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한글번역본>

1. 국가는 HIV/AIDS에 대응하기 위해 효과적인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 전략은 통합적, 참여적이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각국 정부기관의 HIV/AIDS 정책과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국가는 HIV/AIDS 정책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이행, 평가하는 모든 단계에서 지역사회가 자문할 수 있도록, 또한 지역사회단체가 윤리, 법, 인권의 영역을 포함하여 그들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3. 국가는 공공 건강에 관한 법을 검토하고 개혁해야 한다. 그 법은 HIV/AIDS를 통해 드러나는 공공건강 이슈를 적절하게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전염성질환에 적용되는 조항이 HIV/AIDS에 대해 부적절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국제인권규범에 합치되어야 한다.
4. 국가는 형법과 교정체계를 재검토하고 개혁해야 한다. 형법과 교정체계는 국제인권규범에 합치되어야 하며 HIV/AIDS와 관련된 정황에 오용되거나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5. 국가는 차별금지법과 기타 보호입법을 제정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그 법은 공적, 사적 영역에서 차별 받고 있는 취약계층과 HIV/AIDS 감염인,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하며 프라이버시와 비밀, 인간을 포함한 연구에서의 윤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 화해를 강조해야 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적, 시민적 구제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6. 국가는 HIV 관련 재화와 서비스, 정보의 조정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 법은 질 높은 예방기재와 서비스, HIV 예방과 치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 적절한 가격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국가는 법률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행해야 한다. 법률지원서비스는 HIV/AIDS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관하여 교육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HIV와 관련된 법적 이슈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구제기구-법원, 법무부, ombudsman, 건강제소단위, 국가인권위원회 등-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8. 국가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편견과 불평등에 시달리는 여성, 아동, 기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것은 지역사회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사회서비스와 건강서비스, 지역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토론되어야 한다.
9. 국가는 창조적인 교육, 훈련, 언론 프로그램의 폭넓고 지속적인 분배를 촉진해야 한다. 그것은 HIV/AIDS와 관련된 낙인과 차별의 태도를 이해와 수용으로 바꾸는 것을 명백하게 의도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10. 국가는 정부와 사적영역이 HIV/AIDS와 관련된 행동 규범을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 규범은 인권의 원칙들을 전문직의 책임과 실천의 규범으로 바꾼 것이어야 하며 이 규범들을 강화하고 이행하기 위한 제도와 병행되어야 한다.
11. 국가는 HIV/AIDS에 감염된 사람과 그 가족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HIV/AIDS 관련 인권보호를 위한 감시와 이행기관을 보장해야 한다.
12. 국가는 모든 관련 프로그램과 UNAIDS를 포함한 UN 기관들을 통해 HIV/AIDS에 관한 인권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협력해야 하며 HIV/AIDS 관련 규정을 통해 국제적 기준으로 인권문제를 보호하고 효과적인 기관들을 보장해야 한다.

<영어원본>

Summary of HIV/AIDS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Guidelines

Guideline 1:

States should establish an effective national framework for their response to HIV/AIDS which ensures a coordinated, participatory, transparent and accountable approach, integrating HIV/AIDS policy and programme responsibilities across all

branches of government.

Guideline 2:

States should ensure, through political and financial support, that community consultation occurs in all phases of HIV/AIDS policy design, programme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and that community organizations are enabled to carry out their activities, including in the field of ethics, law and human rights, effectively.

Guideline 3:

States should review and reform public health laws to ensure that they adequately address public health issues raised by HIV/AIDS, that their provisions applicable to casually transmitted diseases are not inappropriately applied to HIV/AIDS and that they ar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Guideline 4:

States should review and reform criminal laws and correctional systems to ensure that they ar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are not misused in the context of HIV/AIDS or targeted against vulnerable groups.

Guideline 5:

States should enact or strengthen anti-discrimination and other protective laws that protect vulnerable groups, people living with HIV/AID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discrimination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ensure privacy and confidentiality and ethics in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emphasize education and conciliation, and provide for speedy and effective administrative and civil remedies.

Guideline 6:

States should enact legislation to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HIV-related goods, services and information, so as to ensure widespread availability of qualitative prevention measures and services, adequate HIV prevention and care information and safe and effective medication at an affordable price.

Guideline 7:

States should implement and support legal support services that will educate people affected by HIV/AIDS about their rights, provide free legal services to enforce those rights, develop expertise on HIV-related legal issues and utilize means of protection in addition to the courts, such as offices of ministries of justice, ombudsmen, health complaint units and human rights commissions.

Guideline 8:

States, in collaboration with and through the community, should promote a supportive and enabling environment for women, children and other vulnerable groups by addressing underlying prejudices and inequalities through community dialogue, specially designed social and health services and support to community groups.

Guideline 9:

States should promote the wide and ongoing distribution of creative education, training and media programmes explicitly designed to change attitudes of discrimination and stigmatization associated with HIV/AIDS to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Guideline 10:

States should ensure that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develop codes of conduct regarding HIV/AIDS issues that translate human rights principles into code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practice, with accompanying mechanisms to implement and enforce those codes.

Guideline 11:

States should ensure monitoring and enforcement mechanisms to guarantee the protection of HIV-related human rights, including those of people living with HIV/AIDS,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Guideline 12:

States should cooperate through all relevant programmes an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including the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to share knowledge and experience concerning HIV-related human rights issues and should ensure effective mechanisms to protect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HIV/AIDS at the international level.

4.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 관한 특례 법안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4
----------	------

발의연월일 : 2002. 11. 4.

발 의 자 : 김홍신·송영길·김명섭

박인상·이호웅·이연숙

신기남·조배숙·정범구

이우재·김부겸·김성순

김원웅·심재권·권기술

윤여준·서상섭·원희룡

임종석·김상현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법에 의하면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출생시 신체적 성과 반대의 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호적상의 성별의 변경을 할 수 없고, 그 결과 결혼 및 가족의 형성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제반 사회활동에서도 불편함을 겪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소수자보호의 원리에도 배치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전환자들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성별의 변경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성전환자에 대하여도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함.

법률 제 호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의 호적상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전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림과 동시에 자신에게 부여된 성적 역할의 수행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익을 자유로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전환자”라 함은 출생시 확인된 신체의 성이 자신의 진정한 성이 아니라고 확신하면서, 적어도 2년 이상 다른 성의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외부성기로 표현된 신체의 성을 혐오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 성정을 얻으려는 강한 심리적 상태에 놓여있는 자를 말한다.
2. “성전환수술”이라 함은 성전환자가 지닌 고통의 경감을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정한 의사가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 등을 제거·변형하여 반대되는 성으로 전환할 의도로 외과적 침습을 가하는 의학상의 조치를 말한다.

제3조(성별의 변경)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인은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별변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전환자일 것
2. 성전환수술을 통하여 성적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명백히 변경되었을 것
3. 장래 성 인식의 재 전환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
4. 성년자로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닐 것
5.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성전환 현상을 이해하는 전문 의료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명하거나 수술을 한 의사 등에게 사실조사와 관련자료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③성별변경을 확인하는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에서 호적상 성별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개명) ①제3조제1항의 신청을 하는 자는 이와 함께 개명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개명을 허가하는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개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재판 등의 절차) 신청 및 재판 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성별변경의 효력) 이 법에 의하여 성별변경의 확인 결정을 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으로 호적에 그 내용이 기재된 날부터 변경된 성별이 지니는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부 칙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공무원에 대한 신청은 이를 호적법상의 신고로 본다.

부록 4 - 성적소수자 인권 관련 주요 성명서 모음

※ 에이즈 관련 왜곡보도

**KBS를 비롯한 언론들은 동성애자 - 에이즈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올바른 에이즈예방운동을 정립하라**

범동성애자비대위는 최근 언론의 동성애자 - 에이즈 관련 일련의 보도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에이즈예방운동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들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중대히 침해하고 에이즈의 예방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국내외의 모든 동성애자들을 모으고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사회단체들과 연대함으로써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최근 한국의 다수 언론들은 [국내 에이즈감염자 총 747, [에이즈연맹, 국내동성애자 11만명 추정] 등의 표제로 "전용상담소를 동성애자 밀집지역에 설치하고 어릴 때부터 성적 호기심이나 충격을 잘못 관리해 동성애로 빠져드는 경우가 없도록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우리는 약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기사를 보도한 언론들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최근 일련의 기사들은 에이즈 자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에이즈와 동성애자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킴으로써, 동성애라는 성적지향성을 HIV 감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편견을 조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들이 동성애자를 에이즈의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서 재현되는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

우리는 지난 1월 7일자 뉴스파노라마 보도에서 일부 동성애적 행위들이 성행위 자체가 에이즈 전파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과 같은 보도를 한 KBS에 사과방송과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구한다.

KBS는 에이즈와 동성애자 공동체체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동성애자 전반을 매도하고 동성애자에게 에이즈 전파의 모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에이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증폭시켰다.

우리는 KBS의 이러한 시도를 경계하며, KBS에 공정한 보도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

우리는 에이즈 연맹측에, 연맹의 명의로 보도된 기사들에 대해 해명하고 그 보도들의 근거가 된 논문에 대해 현재의 입장을 비롯해 동성애자에 대한 연맹측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연맹이 WHO에 제출한 의견서 형식의 논문을 비롯해, 지금까지 연맹측의 에이즈예방운동이 동성애자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조장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연맹이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과, 아울러 지금까지의 행위들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사과가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에이즈 정책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의 에이즈에 대해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 순수한 에이즈예방을 위한 정책을 세우길 바란다. 우리는 동성애자에 대한 에이즈예방운동 비용이 에이즈운동을 벌이고 있는 동성애자 인권단체에 지급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한국에서 동성애자에게 주어지는 에이즈와 관련된 오명을 씻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에이즈 예방을 위한 각종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998년 01월 25일

왜곡된 언론보도와 에이즈정책에 대항하는 범동성애자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 산하 여성동성애자인권단체 「끼리끼리」 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하이텔 동성애자인권단체 「또 하나의 사랑」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 「대동인」 나우누리 동성애자/퀴어 모임 「레인보우」 천리안 동성애자 모임 「퀴어넷」 서울대학교 동성애자인권운동 모임 [마음003]

※ 홍석천씨에 대한 언론의 아웃팅 및 인권침해 보도

<연예인 홍석천 씨를 둘러싼 최근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일부 언론 매체는 연예인 홍석천 씨의 성적체성을 다투어 폭로하였다. 그리고 이런 보도에 접한 일부 방송사는 홍석천씨가 출연하던 프로그램의 출연을 중지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차별과 폭력을 행하였다. 우리는 이런 사태에 마주하며 참담한 심정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는 성적체성의 차이가 긍정되고 다양한 삶의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우리 모두의 소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근일 숨가쁘게 전개된 정황을 지켜보며 우리는 홍석천 씨와 관련된 사태가 비단 홍석천 씨 개인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머무르지 않는 일임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둘러싼 명백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엄중한 항의와 거부를 보내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홍석천 씨의 성적체성을 폭로한 <여성중앙21>과 <일간스포츠>가 홍석천 씨에게 마땅히 사과와 배상을 하고, 아울러 해당 지면을 통하여 홍석천 씨의 인권을 유린한 기사 내용과 보도 방식에 대해 독자에게 사과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홍석천 씨가 자신의 동성애 정체성에 관해 발언한 것은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는 단순하고 명쾌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관련 기사나 그의 발언을 고려할 때, 홍석천 씨는 자신의 동성애 정체성을 숨기거나 비난받아야 할 사실로 여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동성애자로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이런 그의 용감하고 성숙한 행동을 악용한 해당 언론사의 보도 행태는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그가 스스로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도의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그의 의사를 묵살한 채 이뤄진 자의적인 보도는 관련 언론사들의 인권에 대한 자각과 감수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관련 언론사는 즉시 홍석천 씨에게 적절한 사과와 배상을 행하라.

둘째, 우리는 문화방송사와 한국방송공사는 홍석천 씨의 프로그램 출연 중지를 중단하고, 조속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요구한다. 아울러 이와 더불어 홍석천 씨의 출연정지 압력을 행사한 데 대해 시청자들에게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동성애와 관련한 그간의 반인권적인 보도 관행을 중단하고, 동성애를 비롯한 소수적 성적체성에 대한 새로운 방송 기준을 만들어내기를 요구한다. 홍석천 씨에 대한 출연 정지 처분을 통해 우리는 방송사들이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집단에 대해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공익적인 매체로서 관련 방송사들이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이를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지극히 정당한 일이라 확신한다.

셋째, 우리는 이번 사태가 다양한 차이가 긍정되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바람에 커다란 경종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금지의 사태를 목격하여 왔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헤쳐나가기 위한 성적 소수자들의 끈질긴 저항과 노력을 마주하여 왔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성적 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의 존엄과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런 우리의 의지와 소망을 짓밟는 폭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성적 소수자의 삶의 존엄과 행복의 권리를 옹호하며, 성적 소수자들이 시민으로서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싸울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이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삶의 존엄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희망에서 불가결한 부분임을 거듭 확인한다.

[우리의 요구]

1. <여성중앙21>과 <일간스포츠>는 홍석천 씨에 대한 인권 유린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정당한 사과와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문화방송>과 <한국방송공사>는 홍석천 씨의 방송출연 중단을 조속히 중지하고, 방송에 복귀시켜야 한다.
3. 방송사와 언론사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그간의 보도 관행을 청산하고, 성정체성의 차이를 존중하는 방송 및 보도 기준을 마련하라.

2000년 09월 28일

남성동성애자 인권모임 친구사이, 동성애자 인권연대,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 연대, 서울퀴어영화제 조직위원회, 동성애전문지 버디, 인권운동사랑방 (이상 가나다 순)

※ 청소년보호법과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차별

<동성애자 차별법 철폐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청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내 최초의 동성애자 웹커뮤니티인 엑스존을 단지 동성애를 소재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 음란사이트로 결정하였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였다. 인터

넷 내용등급제 시행과 더불어 엑스존은 이 제도가 요구하는 전자적 표시를 강요받았다.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도외시한 무리한 처분에 운영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응하지 않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벌칙조항을 명시한 협박성 공문까지 받게 되었다. 결국 엑스존은 동성애 차별법 철폐와 강제 검열에 반대하는 구호를 내걸고 항의파업의 형태로 사이트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이하 자유권조약)'의 조인국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를 앞세워 자유권조약 제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자유권조약 제2조와 제26조에 명시된 제 평등권 중 유엔인권이사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가 특별히 포함시킨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는 반면,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는 '동성애를 변태적 성행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도 동성애에 관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한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국제조약에 서명한 조인국이면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통치권자까지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고등학교 시절 동성애자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았다"는 어느 동성애자의 고백처럼, 동성애에 대해 철저히 왜곡된 시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오로지 검열과 통제, 그리고 차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청소년보호 논리로 위장한 반인권적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웹커뮤니티인 엑스존에 적용되었다. 동성애 자체를 음란하며 변태적인 성행위라고 규정해 버리고 청소년의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이같은 어이없는 사태는 시행기반법률 자체부터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시행과 그 파급효과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제가 지배하는 사회속에서, 무지로 방치되고 소외된 동성애자는 억압받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검열에 대한 국가의 무리한 욕망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론과 소통을 무시해 가면서 졸속적으로 급조되고 시행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합리적인 논의를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엑스존에 처벌조항을 공지하는 등 암묵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운영자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켰고, 동성애에 관한 알권리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동시에 청소년보호법과 통신질서확립법등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과 관련된 각종 법률의 일부 조항들은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

2. 동성애를 변태적성행위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은 엄연한 성적지향 차별규정으로써 엑스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재심,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고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제도시행의 주체가 되는 두 기관들 간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제도운영상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고, 그것은 곧 법률과 제도가 앞장서서 동성애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엑스존과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과 정보통신부장관고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2월 29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정보접근을 제한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고시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

장기간에 걸쳐 구호와 단식농성 등으로 검열과 차별에 반대하는 항의를 해 왔으나 관련기관과 제도의 형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경계하며, 이제 우리는 우리가 검토하고 분석한 위의 여러가지 결론들을 바탕으로 동성애 차별법 철폐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청구'라는 전면적인 법적 대응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원론적인 의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명확하고 현명한 해답을 기대한다. 또한 행정법원이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철회시킴으로써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허무맹랑한 규정을 폐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는 동성애자

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제인권단체들과 국내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 행동할 것이다.

2002년 1월 9일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 동성애 사이트 차단소프트웨어 <수호천사> 인권위 제소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는 인권침해이다!

- <수호천사>에 대한 끼리끼리의 국가인권위 제소를 지지하며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 <수호천사>를 10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컴퓨터통신이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이라는 기대는 상당히 많이 깎여 왔지만, 이 땅의 동성애 운동의 태동과 성장에 PC통신과 인터넷이 많은 기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받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가 어려운 동성애자들은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친목을 쌓을 수 있었고 친목은 소통으로, 그리고 다시 연대로 이어져, 동성애 인권운동이 촉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비롯한 검열 권력들은 동성애를 '퇴폐'로 간주해 인터넷에서도 억압하고 차별해 왔다.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근거가 모호한 '해외 불건전 사이트 차단 목록'이라는 것을 십수만건 구축하면서 수많은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여 물의를 빚었다. 그 차단 목록에는 클린턴도 과거 표지인물로 등장했던 권위 있는 동성애 잡지 [advocate.com]과 UN의 자문단체인 [동성애자인권운동네트웍] (ilga.org)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반시티]가 '불온하다'며 차단되었고 국내 최초의 인터넷 게이 커뮤니티인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인터넷내용 등급을 달지 않으면 형사처벌당할 위기에 처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한다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동성애 단체들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현실에서 이들이 그나마 동성애 단체로부터 상담이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높은 자살률 속에 방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동성애 사이트 차단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자퇴청소년 커뮤니티인 [아이노스쿨]을 폐쇄한 것과 더불어 소외된 청소년을 더욱 소외시킨 악명 높은 조치로 꼽힌다. 동성애 청소년 빼고, 자퇴 청소년 빼고, 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보호'란 대체 무엇인가.

국가가 이처럼 '동성애 사이트 차단'을 공인하는 상태에서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PC방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이런 차단 소프트웨어의 남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PC방에서는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에게만 차단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주요한 인터넷 접속장소인 PC방에서 동성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플러스기술(주)에서 개발한 '수호천사'라는 차단 소프트웨어 제품은 그 악명을 떨쳐 왔다. 수호천사는 [끼리끼리]와 같은 동성애 인권단체들도 차단해 왔다.

우리 공대위는 국가와 시장의 동성애 사이트 차단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것은 명백한 동성애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에서 차별을 할 경우 평등권 침해로 간주하고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례를 엄격히 조사하여 동성애 차별 행위에 일침을 가할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 우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한다며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이 이런 경향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의 개정을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엄중히 심판하라
- 모든 차단 소프트웨어 제작회사들은 동성애 사이트 차단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동성애 사이트 차단을 즉각 중단하라
-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청소년보호법을 즉각 개정하라

2002년 10월 15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옥인·진관·홍근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

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논,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5개 단체)

※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국회 제출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을 환영하며 >

지난 4일, 김홍신국회의원은 동료의원 20여명의 이름으로 "성전환자의 성별변동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자기 스스로의 삶과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열심히 뛰어다닌 몇몇 트랜스젠더들과 활동가들의 수고가 드디어 결실을 맺을려는 찰라인 것이다. 물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도 잊혀져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이 법률이 아직도 많은 부분이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고, 실제적인 한국의 트랜스젠더들의 여건과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되지도 못하는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성별변경의 요건도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또는 모호한 개념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채로 상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안은 쾌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 이미 한국은 1980년이후 성확정(전환) 수술이 합법화되어 시술이 되고 있고, 이러한 시술을 거친 자가 3~4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리고 현재, 한국의 트랜스젠더들을 3만여명으로 추산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숫자들은 급속히 증가되어져 나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일테다. 하지만 이들이 몇천만원이라는 수술비와 정신과 치료,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다년 간의 고통을 통해서 겨우 확정된 "성"은 오히려 그들을 다시 옳아매고 있다.

신체적으로는 이미 자신이 바라던 성이 되어 있으나, 은행을 가도 동사무소에 가도, 거리를 걸을 때도 내밀어야 하는_역사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이 치밀하게 조직되어진 신분증에는 자신이 버리고 싶었던 성이 여전히 버티고 앉아 그들을 "괴물"의 신세로 만들어 버리곤 하기 때문이며, 이들을 구제할 장치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하곤 한다. 염색체와 생식기의 형태, 그리고 생식능력, 또는 전통적 가족관, 기독교적 윤리관을 들이 밀며 이들의 서류상 성별 정정이 마치 죄악이나 일탈행위, 말세의 징조라고 외친다. 또 이들이 사회적 혼란과 정체성의 혼란을 조장하고 이러한 조치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대부분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하며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리곤 했으나 _성별판정이 생물학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정신, 심리학적인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학계, 사회적인식, 세계적 추세등을 고려 입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왔다. 이제 그러한 입법의 기회가 온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우려 가운데 어떠한 것도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다 우선하지 못한다고 일축한다. 1945년 스위스 법원이 내린 트랜스섹슈얼의 성별 정정 결정 판결문은 지극히 모범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법은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있어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법률적 효과를 부여해야한다..... 개인의 실리학적인 성의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이 행해진 경우 사회는 그가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권리가 없다. 무엇이 그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7월 부산지법 가정지원의 고종주부장판사가 윤모씨의 호적정정신청과 개명신청에 대해 허가결정을 내린 신념"헌법의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해

일정한 요건의 성전환자들에게 호적정정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위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헌법의 정신과 일치하며 인류의 궁극적 목표에도 부합한다.

우리는 이 법률안의 조속한 검토와 함께 신속하고도 발빠르게 입법화되고 이에 수반되는 법적절차들과 행정절차들이 갖추어 줄 것을 요구한다.

2002.11.06

한국동성애자연합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63번지 신아산 빌딩 302호

Tel: 02-3672-4214, Fax; 02-744-7916

<http://lgbtkorea.org> , admin@lgbtkorea.org

부산경남성적소수자인권센터, 하이텔 동성애자인권동호회 <또하나의 사랑>, 한국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충북동성애자모임 <푸른마을 사람들>한국남성 동성애자 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동호회<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 국제앰네스티, 대선후보에 인권개선 권고문 보내

<국제앰네스티의 '한국 대선후보들에게 보내는 인권개선 권고문'을 지지한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 이하 '우리')는 국제앰네스티(AI)가 지난 11월 7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일정에 때를 맞추어 대선 후보들에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문(Summary of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to Candidate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s in December 2002)을 발표한 사실에 주목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권고문에서 정치범 출신이자 인권활동가였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법적인 인권문제 개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하면서, 대선후보들은 당선될 경우 인권의 신장과 수호를 위한 조치들을 확고하게 밝히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권고문은 국가보안법, 사형제도, 보호관찰법, 근로자 및 노조 권리, 양심수문제, 동성

애커뮤니티의 인터넷검열문제, 고문.가혹행위, 불법체류자와 이주노동자 보호, 국가인권위원회 존속, 과거 인권침해사례의 조사 등 한국내의 여러 가지 당면 인권문제들에 대해 항목별로 상세히 보고하고, 대선후보들에게 인권적 측면에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심각하게 보고한 12개 항목의 인권문제들 하나 하나가 한국에 살아 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임을, 바로 나 자신의 문제임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성적소수자이면서 피해자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동성애 커뮤니티의 검열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권고한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며 지지한다.

권고문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정보통신부가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동성애 사이트를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검열을 강화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실행하였다고 밝히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작성한 불건전사이트목록에서 '동성애'를 '음란의 실'등급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기초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보고하고 있다.

또한 2001년 11월 1일, 통신검열법이 시행되자마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게이웹사이트인 엑스존(exzone.com)에게 사이트에 '유해매체물'표시를 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통보한 사실을 보고하면서, 국제앰네스티는 '합의된 동성간의 교제'와 '강제적인 성추행'을 교묘하게 혼동시켜 동일한 범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며, 동성애 사이트의 무분별한 검열은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인간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성애 커뮤니티의 검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조인을 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CPR 자유권조약)'의 제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한 제2조에서 천명한 차별로부터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권리침해'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할 뿐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조인국으로써 조약을 준수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성적지향을 이유로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로 부터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확고한 장치를 마련하라'고 대선 후보들에게 권고했다.

우리는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권고문이 보고하고 지적하는 한국의 현안 인권문제들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권고하는 내용들에 대해 지지한다. 보다 개선되고 향상된 한국의 인권상황을 위해 대선후보들은 물론, 한국의 법과 제도를 관장하는, 혹은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시민들 모두가 권고문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내에서 성적소수자로 살아 가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경계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2년 12월 9일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KSCRC)
<http://kscrc.org>

※ 포털사이트 '동성애' 성인전용 검색용어로 지정

<야후코리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야후코리아는 2002년 후반기부터 "동성애"라는 단어를 성인전용 검색 용어로 지정하였다. 야후 코리아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야후 코리아를 통하여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동성애자인권단체 및 동성애자소모임을 막론한 모든 동성애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야후 코리아 회원에 가입하고 로그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동성애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야후코리아가 그 외 성인전용 검색용어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포르노, 섹스, 패티쉬, 자위, 변태 등의 용어로 이것은 '동성애'가 그러한 것들과 성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불건전한 단어로 취급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10조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7조 개별 심의기준은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등과 같이 나열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근거하여 동성애표현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성애표현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한 법에 따라 야후 코리아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동성애사이트를 규제하는 자체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이러한 조치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 조항을 따르면 동성애는 음란함의 기준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근거로 한 동성애자 차별적 행위는 그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국내 최초 게이웹사이트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고, 이에 엑스존 운영자는 동성애자로서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한 상태이다. 대표적인 차단소프트웨어 "수호천사"가 깔려있는 pc방에서는 동성애자인권연대를 비롯한 동성애자인권단체 및 동성애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든 홈페이지가 접속 불가능하다. 급기야 야후코리아는 동성애를 청소년들이 접속할 수 없는 성인전용 검색 용어로 선정하여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자체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야후코리아만의 문제가 아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대표되는 국가검열권력이 청소년보호논리를 세워 성적 소수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것은 동성애자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청소년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그 자체로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불건전한 것이라는 인식을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갖게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도 위반하는 것이다.

지난 11월7일 권위있는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네셔널(Amnesty International)은 한국 대통령 후보에게 보내는 인권개선 권고문에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터넷 검열을 금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은 한국의 정보통신부가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동성애 사이트를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성애 사이트의 무분별한 검열은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야후 코리아가 '동성애'를 성인전용 검색 용어 목록에서 삭제할 것과 동성애 표현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2년 12월 23일
동성애자인권연대

※ 동성애자 청소년의 자살

<더 이상 동성애자들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몰지 말라! >

-한 동성애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수많은 성적 소수자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반성경적이고 반인류적인지... ..죽은 뒤엔 거리낌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윤○○은 동성애자 다라구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고통받지도 않아요.”

- 고 윤모 씨의 유서 중에서

지난 26일 한 동성애자가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다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는 윤모 씨가 회원으로 소속돼 있던 한 동성애자인권단체 사무실에서 쓸쓸히 자신의 목에다 죽음의 끈을 묶었을 그 순간을 떠올리며, 착잡함과 슬픔을 금할 길 없다. 또한 우리는 윤 씨의 죽음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당연시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뼈아픈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20살 꽃다운 그의 죽음은 형식적으로는 자살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가져온 사회적 타살이었기 때문이다.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윤 씨의 곁에는 여러 장의 유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윤 씨의 유서는 동성애자로서 당해야 했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한 동성애자의 애끓는 절규를 담고 있다. 윤 씨는 “수많은 성적 소

수자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반성경적이고 반인류적인지..."라며 동성애자들을 죄악시하는 우리 사회의 편견에 분노를 토해내고 있다.

윤 씨는 또 "죽은 뒤엔 거리낌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윤○○은 동성애자다 라구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고통받지도 않아요"라며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놓고 있다.

나아가 윤 씨는 자신이 속한 동성애자인권단체의 선배들에게 "형, 누나들의 수고가 다음 세대의 동성애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잊지 마시구요"라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철폐에 계속 힘써 달라는 당부를 남기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유서 내용에서 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는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동성애자로서 차별받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은 강렬한 희구를 간직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이번 윤 씨의 죽음이 단지 한 동성애자 개인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차가운 편견과 멸시, 소외와 차별의 빙벽 속에 갇혀 있는 이 땅 동성애자들 모두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 더더욱 주목한다.

현재 동성애자들을 외로움과 고립감,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편견에 찬 시선과 구조의 폭력이 멈추지 않는 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게 될 동성애자들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동성애자들은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멸시와 혐오의 시선으로 인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동성애자임이 밝혀진 후 당하게 될 폭력과 차별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

간신히 용기를 내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힌 경우에도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것이 우리 사회 동성애자들의 가슴아픈 현실이다.

더욱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는 청소년기에 대다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비정상', "죄악"으로 치부하는 편견에 부딪혀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더구나 우리는 간신히 힘겨운 삶을 추스르고 있는 이들 동성애자들을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죄악' 자체와 동일시하며 그들에게 '사회적 사망선고'를 내리고 있는 일부 기독교단체들과 언론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더 '죄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많은 동성애자들이 한두 번 이상씩 자살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편견과 폭력이 낳은 결과에 다름 아니다. 단지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야 말로 반인권적 폭력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윤 씨와 마찬가지로 절망과 외로움 속에 방황하는 동성애자들, 죽음 이외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절망한 채 손목을 긋고 줄에 목을 매대는 동성애자들이 더 있을지 모른다. 더 이상 윤 씨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간절히 회구했던 세상이 무엇이었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가장한 부당한 편견과 차별행위는 동성애자들을 끊임없이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모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 모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의 장막을 거둬내고 이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반인권적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성적 지향만 다를 뿐, 우리의 형제자매요 이웃이요 존엄성을 가진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03년 4월 2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광주NCC인권위원회,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성적소수자그룹,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강남갑 지구당, 민주노동당 중랑갑 지구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울퀴어영화제조직위원회, 성동건강복지센터, 안산인권노동센터, 여성해방연대(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추모단체연대회의,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

합, 한국DPI,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항소심 기각

<'엑스존'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하여>

지난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 6 특별부는 동성애사이트 '엑스존' 이 청구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엑스존)의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엑스존 운영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피고들)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7조 개별심의기준 중 '변태성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중 하나인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의 근거를 들어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고, 고시 처분하였으나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1항)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처분 결정을 무효화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또한 개별심의기준 조항이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 인정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시행령 규정이 위법,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례사례가 없고,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최종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아울러 해당 시행령에 대해서는 동성애자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동성애 자체를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 또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위헌, 위법성을 가지고 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난 4월의 국가인권위원회 삭제권고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변태성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로 보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동성애차별조항은 아직 살아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겠다고 했던 시기도 벌써 8개월이 지나가고 있으며, 법원 또한 엑스존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해당 시행령의 위헌, 위법 소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된 것은 없다. 동성애사이트는 인권단체를 포함해 여전히 차단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 의해 유해사이트로 낙인찍혀

있고,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이반'이라는 검색어로는 카페조차 검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우리들의 다각적인 노력과 사회의 변화된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여전히 동성애사이트를 검열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동성애자인권연대는 관련 법규상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되고,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철폐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다하여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유해매체물심의기준의 '동성애' 조항을 즉시 삭제하라!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내용에 대한 초법적인 심의행위를 전면 중단하라!

2003년 12월 23일

동성애자인권연대

※ 헌혈 문진표의 동성애자 차별

<동성애자는 헌혈할 권리도 없는가? >

헌혈은 그 어떤 대가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고귀한 행동이다. 이 뜻에 동의하는 사람이 헌혈을 하고자 할 때, 그 어떤 차별적인 제약도 가해져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의 건강상태와 수혈 전파성 감염질환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채혈금지 범위(공통, 제재별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를 헌혈문진을 통해 판단하고 있다. 수혈을 통해 각종 전염성 질환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혈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뜻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문진표 총 17개항목 중 15번 3번 문항 '동성이나 다수의 불특정 이성 또는 외국인과의 성접촉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헌혈하는데 동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면 헌혈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어 문제다.

'동성과 성접촉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에이즈 혹은 기타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규정짓고 헌혈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에이즈=동성애'라

는 편견을 더욱 고착화시킨다. 이미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에이즈관련 민간단체에서조차 이는 잘못된 정보라고 말하고 있고,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동성애가 AIDS의 직접원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감염원인을 밝히는 공개적 자료에서는 동성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통계적인 수치로 보았을 때도 감염확률이 이성간의 성적 접촉보다 특별히 더 높다고 말할 수 없다. 혈액사업본부도 동성애자가 소위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HIV의 감염확률을 높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HIV 양성반응자의 체액에 노출되기 쉬운 성관계 등의 '위험행동'이지 고위험군에 속해있는 위험집단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혈액문진에는 명확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동성간의 성접촉 자체를 위험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성애자 전체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제시하는 통계는 HIV 감염 원인에 대해 '양성반응자와의 성접촉'을 일차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성접촉의 대상이 'HIV 양성반응자'일 경우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 감염확률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의 헌혈문진중 '동성 혹은 다수의 불특정 이성과의...' 라는 부분은 건강한 한 명의 동성애자가 그의 동성 파트너와 안전한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 문진에 대해 '예' 라고 표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구를 그대로 따른다면, 단 한번이라도 동성과의 성접촉이 있는 사람은 감염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헌혈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므로 문진을 통해 이성간의 성접촉에 있어 '다수의 불특정'으로 그 횟수를 문제삼는다면 동성간의 성접촉에 있어서도 역시 '다수의 불특정'으로 그 횟수를 문제삼는 것이 정확하다 할 것이다.

특별한 이유없이 동성과의 성접촉은 곧 에이즈감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헌혈문진은 입증되지 않은 이론과 설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부정확한 문진으로써, 이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HIV의 명확한 감염 경로를 은폐, 결국 대중들이 에이즈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조차 방해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어 위험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동성과의 성접촉을 한 사람에 대해 헌혈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에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만이 존재할 뿐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한적십자사의 헌혈문진표 15번 3항 '동성이나 다수의 불특정 이성 또는 외국인과

성접촉이 있었다.’ 라는 문지방목을 “다수의 불특정 이성, 동성 또는 외국인과 성접촉이 있었다.’ 로 즉각 수정하라!

2003. 12. 1

동성애자인권연대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동성애 삭제’ 입법예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의 개정안 ‘동성애 삭제’ 입법예고를 지지한다.

2003년 4월 국가인권 위원회가 ‘동성애자 차별조항’이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동성애자 차별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했고, 엑스존 행정소송 판결에서도 법원은 이 조항의 위헌소지를 밝히는 등 그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위원회는 이에 상응하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1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제7조 별표1)중 변태성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던 ‘동성애’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2월 23일까지 단체, 개인의 의견을 거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04년 4월부터 ‘동성애’ 조항은 삭제될 것이다.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는 이번 입법예고를 지지하고 환영하지만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및 그 하위법령들의 개정 입법예고안들이 청소년보호를 빙자하여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와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벌위주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엑스존의 입장에 동의하며,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많은 인권단체들이 지난 3년간 목소리를 높여 요구한 사항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자율적인 규제에 청소년들의 자유와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아가길 요구한다.

이것이 입법예고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상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되어야 함은 극명한 사실이다. 그동안 이 조항으로 인해 국내 동성애자들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집단 내지는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동성연애자들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사람들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국내 최초 남성 동성애자 웹사이트였던 엑스존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어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이며,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반'이나 '동성애'라는 단어를 금칙어로 지정해 놓아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또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조항을 두고 소수의 인권만큼 보편적 가치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대며 삭제 반대 의사를 표시한 한기총 길자연 목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소수의 인권이 배제된 보편적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생각인 것인가.

이에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입법예고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령 상에서 '동성애'조항이 삭제되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4년 2월 8일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동성혼 법적 불인정

<동성혼과 이성혼의 차별은 부당하다 >

- 인천지방법원의 동성혼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해 줄 수 없다면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부당하다.
- 동성혼은 이성혼과 똑 같이, 동성혼 가족은 이성혼 가족과 똑 같이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준)은 성적 지향의 차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에 반대하며, 성적 지향의 차이에 근거한 차별을 없애는 데 앞장 설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은 7. 27. 동거하던 동성 배우자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동성

혼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법원은 판결에서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며, 동성혼은 우리의 사회 관념상이나 가족질서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성 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더라도 사회 관념상이나 가족질서면에서 용인될 수 없고, 동성간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인천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동성혼 가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이성혼 가족과 차별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본다.

우리 헌법과 민법 어디에도 이성혼만 혼인으로 인정하고, 동성혼은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

민법은 혼인이 가능한 나이만 지나면 혼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여,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합리적 근거 없이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동성혼 가족을 가족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법, 위헌적인 행위인 것이다.

법원은 민법의 혼인규정을 헌법의 규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했어야 하고, 만약 민법의 규정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성혼은 사회 관념상이나 가족질서면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헌법에 따라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야 할 법원이 자신의 임무를 내팽개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혼인과 가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가족에는 이성혼 부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성혼 부부와 입양한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족은 물론, 성년의 독신자가 양자를 입양하여 이루는 가족도 포함된다.

따라서 동성혼 부부로 이루어지는 가족이나, 동성혼 부부와 입양한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족이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가족에서 배제될 이유는 전혀 없다.

동성혼 부부와 입양한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족이 이성혼 부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나, 성년의 독신자와 양자로 이루어진 가족에 비해 보호받을 가치가 없을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동성혼 부부도 이성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애정에 기초하여 동거를 하면서 부양과 협력을 하는 공동체이며, 동성혼 부부와 입양한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도 애정을 기반으로 한 가족으로서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럽의 각국과 캐나다, 미국의 각주는 물론 대만, 심지어는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도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성혼 가족에 대하여 이성혼 가족과 똑 같은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 캐나다 연방대법원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의 법원은 동성혼을 이성혼과 구별하여 차별하는 것은 동성애자의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동성혼과 이성혼의 차별을 시정하라고 판결을 내려왔다.

우리는 다시 한번 법원이 동성혼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법원이 동성혼과 이성혼을 차별함으로써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이러한 결정과 그 결정의 근거를 흐르는 생각이 인권의 해를 넘어서, 성소수자

의 삶 자체를 얼마나 심각하게 질곡하며, 성소수자 사회 자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심대한가 하는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면 이러한 바람은 더더욱 간절해진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준)은 법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준)은 민주노동당의 당헌/당규,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17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성소수자 차별 철폐 관련 공약의 내용을 근거로 제도적으로 안착화된 성소수자 차별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04년 7월 30일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 여성동성애자 사실혼 관계 불인정

<동성간의 사실혼 불인정은 시대착오적 차별>

지난 2003년 3월 17일, 당시 46세 여성이었던 원고는 21년간 동거관계에 있던 여성 A씨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첫 번째 서울고법에서 원고 청구 기각되었지만 두 번째 재판에서 '7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27일 인천방법원 제 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다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권선진국이 동성간의 결혼을 법제화하기 전단계로 재산분할이나 유산상속 등과 관련해 동성부부를 이성부부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을 정립해왔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소송이 국내 동성애자 인권발전에 있어 가질 수 있었던 역사적 의의는 매우 컸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는 고답적 판결을 내림으로써, 동성애자 등 성적소수자들의 인권 및 권익증진이라는 시대적 대세와 현실적 필요성을 외면하였다.

성별·장애·사상·나이에 대한 차별 등을 금하는 '종합차별금지법' 제정을 국가인권위원

회가 추진하고 있고, 원내 정당인 민주노동당 내에 성적소수자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는 등 성적소수자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반차별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서는 아직 인정하기 힘들다”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회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담당 재판부의 무능을 드러낼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법 앞에 평등히 대해야 할 재판부가 앞장서서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저지른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를 보호하고, 신뢰로 맺어진 계약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한 편, 그 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사법부의 이러한 역할은 이성부부 관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동성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현실을 알면서도 사실혼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동성간의 관계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 어느 일방이 입을지도 모를 부당한 피해에 대해서 조차 눈을 감겠다는 책임방기의 극단적인 사례라 아니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 재판부의 이성애중심적이며 동성애차별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나아가 센터는 동성부부에게도 이성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한 편, 부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설립을 포함하는 법의 조속한 제정을 입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7월 27일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KSCRC)

<http://kscrc.org>

※ 청소년 레즈비언 대상 아웃팅협박 범죄

청소년 레즈비언 대상 아웃팅 협박 범죄 가해자의 구속에 부쳐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이하 끼리끼리) 는,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인천 지역에서, 프리랜서 기자를 사칭하여 청소년 레즈비언들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빌미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아웃팅 협박을 하며 수 차례 불필요한 만남을 요구하는 등, 당사자인 청소년 레즈비언들이 일상 생활에 커다란 제

약을 받을 만큼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행동을 일삼다가 지난 9월 10일 구속된 인천 지역 고등학교 교사 김 모씨 사건과 관련하여 본 단체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끼리끼리는 지난 8월 초, 몇몇 십대 후반의 레즈비언들로부터 유사한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건의 정황들을 종합해 본 결과 이들은 모두, 프리랜서 기자를 사칭하는 똑같은 핸드폰 번호의 주인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아웃팅 협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각의 피해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해자는 청소년 레즈비언들이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에 여성의 아이디를 만들어 가입하여 이 청소년 레즈비언들과 교제를 전제로 해서 채팅을 하며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학교며 가정에 그들의 성정체성을 폭로해 버리겠다고 지속적으로 피해 당사자들을 협박했던 것입니다. 가해자 김 모씨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 레즈비언들에게 인터뷰를 재차 종용하던 중 그들의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거나 학교로 찾아가겠다거나 하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으며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려 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피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외출을 꺼리게 하고 개학 이후의 등교에 극심한 부담을 느끼게 하면서 피해자들의 일상 생활을 공포로 점철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몇 건의 유사한 피해 사례를 접수받은 끼리끼리는 이미 피해를 입은 청소년 레즈비언들을 돕고 또 그와 같은 상황을 방지했을 경우 피해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인천 여성의 전화의 도움을 얻어 사건 발생 관할 지역 경찰서인 인천 서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1차 영장 신청이 기각되고 2차 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9월 10일 가해자가 구속 및 수감되기까지 총 세 차례의 피해자 조서 작성과 끈질긴 피해 사례 수집이 있었습니다. 끼리끼리는 피해자들을 경찰서로 연계시키는데 주력하고 관련 피해 입증 자료 수집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인천 서부 경찰서 강력반의 담당 형사들은 이번 사건이 정확히 청소년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건의 심각성에 깊게 공감하면서 수사에 임해 주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인천 지방 법원의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들이 레즈비언이면서 동시에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약점을 간파하고 그것을 악용하여 저지른 범죄입니다. 청소년 레즈비언들에게 '네가 레즈

비언이라는 것을 학교와 가정에 알려버리겠다' 고 말하는 것이 그 자체로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즉 '아웃팅 시키겠다' 고 협박하는 것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얼마나 큰 공포감에 시달리게 하는지를 그가 알고서 그 점을 십분 이용하여 자행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또한 청소년 레즈비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레즈비언으로 위장 잠입하여 커뮤니티의 생리에 대해 낱알이 알아냈으며 그렇게 얻은 정보로 각각의 청소년 레즈비언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해자가 매우 체계적이고 치밀한 방식으로 이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이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 및 혐오 그리고 여성인 레즈비언들을 선정적인 대상으로 보는 등의 통념을 자신의 범죄 구상 및 그것의 실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는 실로 동성애자를 궁지로 몰아온 사회와 그 점을 악용한 개인의 파렴치함이 어울려 빚어낸 대 동성애 범죄에 다름 아닙니다. 이전에도 아웃팅을 매개로 한 각종 사기 및 금품 갈취 그리고 폭력 범죄가 개별적으로 있어왔으나 이처럼 동일 사건의 피해자가 여러 명 연쇄적으로 생겨난 것은 동성애자 아웃팅 관련 범죄가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아갈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한국 사회에서 숨죽이고 살아가는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보다 더 큰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는 데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동성애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 제거되어야만 하는 존재로 취급받으며 존재 자체를 무시당해 온 암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성애자들의 존재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 등은 극악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성정체성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조차 꺼려할 수밖에 없는 동성애자들의 상황이 범죄자들이 보다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에 여과 없이 노출돼 있는 동성애자들의 취약한 위치가 범죄에 이용되기 쉽다는 것을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리고서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동성애자 인권 운동 진영에게도 무거운 과제를 안겨 줍니다. 우리는 대 동성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 마련을 국가에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에 대한 아웃팅은 동성애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인권 침해 행위라는 것을 대 사회적으로 알려나가는 데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대 동성애 범죄와 관련한 법 제정은 필수적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현실에 맞는 인권 보장 법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현재 당장 시급히 필요한 것 중 하나는 형사 사법 절차상에서의 동성애자 인권 보호입니다. 무수한 동성애자들이 현행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여러 가지 피해를 입으면서도 사건 신고 및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이 드러나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를 신고조차 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 동안 수많은 사건의 피해자들이 법제도적 해결을 모색해보지도 못한 채로 사건을 묻고 넘어갔으며 그러한 처지는 대 동성애 범죄의 가시화 역시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경찰, 검찰 및 법원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담당자들의 편견 섞인 언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절차 전반에 걸쳐 피해자인 동성애자들의 신변 보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끼리끼리는 이번 인천 사건에서 인천 서부 경찰서가 제출한 첫 번째 영장 신청이 검찰로부터 기각된 것은 검찰 측이 대 동성애 관련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 즉시 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고도 남았을 상황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차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가해자가 구속되어 있지만 사건 처리 과정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더욱 고통받는 것은 피해자들뿐입니다. 우리는 인천 지방 법원 측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고 가해자에게 부디 엄중한 판결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국가가 대 동성애 범죄 관련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요구 사항]

1. 인천 지방 법원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1. 국가는 대 동성애 범죄를 처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1. 국가는 동성애자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경찰과 검찰 및 법원을 비롯한 각 부처 및 기관의 실무자들에게 동성애자 인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
1. 언론은 동성애와 동성애자 및 대 동성애 범죄에 대한 선정적 보도를 지양하고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보도를 지향하는 자세를 가져라.

2004년 9월 23일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www.kirikiri.org, kiri9411@chollian.net, (02)703-3542

※ 부산광역시여성센터, 여성성적소수자 단체회원 교육수강 거부

<여성성적소수자단체를 여성단체에서 배제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를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2일, 본 단체(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운영위원이 부산광역시여성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차별행위를 인정하고 재발방지 권고를 하였다. 본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여성성적소수자단체도 여성인권단체이다.

부산광역시여성센터는 본 단체 활동가가 여성단체 회원 등에게 제공되는 여성리더십 향상과정 수강신청을 하자 '여성성적소수자단체는 여성단체로 볼 수 없다', '성적소수자문제는 아직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거부하였는데, 여성이자 성적소수자로서 이중의 억압과 차별을 당하는 여성성적소수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성적소수자인권단체를 여성단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부산광역시여성센터는 본 단체가 여성발전기본법상의 여성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대상 단체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본 단체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해당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질의에 대해 여성부도 본 단체가 여성단체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아직 우리사회에서 여성성적소수자의 인권문제는 여성의 문제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여성부나 여성관련재단 등에서 여성과제나 여성문제에 여성성적소수자문제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에 각종 기금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낳고 있으며, 여성성적소수자단체는 이중의 억압을 당하는 소외여성계층을 위한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성적소수자인권단체의 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사건은 여성성적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억압의 일부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여성성적소수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성성적소수자인권단체또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단체 활동가의 교육 신청에 대해 부산광역시여성센터는 '다른 여성단체 회원 자격으로 교육 신청을 하면 받아들

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본 단체 활동가가 다른 여성단체 회원 자격으로 수강신청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부산광역시여성센터는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본 단체를 여성센터의 회원단체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 '부산광역시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회에서 여성성적소수자가 '정상적' 여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땅의 여성성적소수자들은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정체성 관련 지식으로부터 배제되어 '변태, 비정상' 등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비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아웃팅 범죄나 협박, 성폭력 등의 피해를 당해도 구제받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 이번 사건은 여성성적소수자가 이 사회에서 당하는 차별과 억압의 일부분에 해당하며, 그러한 차별이 여성성적소수자단체에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이 여성성적소수자가 여성이자 성적소수자로서 당하는 이중의 억압과 차별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여성성적소수자 인권보호의 대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더욱 강력한 법규와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3월 3일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